

2016 홍콩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HongKong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Contents

 일러두기	1
 홍콩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규정	3
1. 개 요	5
2. 한국의 식품유형	13
3. 홍콩의 식품유형	14
4. 식품유형 매칭일람표	29
부록 I. 홍콩 규정 번역본	
1. 식품 보존료 규정	
2. 식품 착색료 규정	
3. 식품 감미료 규정	
4. 식품 및 의약품(성분 및 라벨링) 규정	
5. 식품 유해물질 규정	
6. 식품 이물(중금속 함량) 규정	
부록 II. 홍콩 규정 원본	
1. 食物內防腐劑規例(132BD)	
2. 食物內染色料規例(132H)	
3. 食物內甜味劑規例(132U)	
4. 食物及藥物(成分組合及標籤)規例(132W)	
5. 食物內有害物質規例(132AF)	
6. 食物攪雜(金屬雜質含量)規例(132V)	

일러두기

1. 추진단계 및 내용

1.1 추진단계

추진 단계	조사 추진 내용
조사계획 설계	• 해당 국가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 • 조사기본 방향설정 및 조사계획 수립
조사 실시	• 문헌조사, 실태조사 실시 •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 관련 사이트 및 문헌 조사 • 전문가 자문을 통한 자료 조사 및 협조 요청
자료 분석	•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자료 정리 • 조사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 조사결과의 활용을 위한 전문가 자문
결과 보고	• 조사결과 보고 및 번역본 제작 •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DB 구축

1.2 조사내용

- 식품유형 매칭일람표¹⁾
- 홍콩의 가공식품 품목별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관련 규정 번역본

1.3 조사방법

1.3.1 관련 규정 조사 및 취합

- 온라인 검색, 관련문헌 문서 조사 등 정보수집
- 관련 정부기관에 자료 요청 및 정보문의

1.3.2 관련 규정 번역본 제작

- 정부에서 제공하는 관련 법규 및 규정정보 번역
- 식품분야 전문위원에게 번역 검수 요청

1)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규정에서 분류된 식품유형을 한국식품유형과 매칭하여 만든 대조일람표로서 국가 간 상이한 식품유형을 어떻게 매칭하여 데이터 베이스화 했는지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

- 이상 번역 자료 및 보고서 내용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자가 해당 자료를 확인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자료집의 원어문서를 포함하고, 출처 및 유의사항을 개요사항에 작성함

1.3.3 식품매칭일람표 작성

- 규정 내 가공 식품유형 목록화
- 한국의 가공식품유형 목록화
- 한국과 홍콩의 식품유형 매칭일람표 작성
- 식품분야 전문위원에게 검수요청 및 교차검증

2.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및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데이터베이스 활용

-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및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은 품목코드, 품목명, 물질코드, 물질명과 함께 제시하여 관련 정보 검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의 식품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은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및 「식품유형별 식품첨가물의 적용범위」²⁾등을 참고로 하여 기재하였다.

3. 본 사업을 통해 보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 정보 사이트(www.kati.net)의 수출안전정보 > 식품첨가물 사용지침 부분에서 제공되며, 해당 검색데이터를 이용하는데 숙지해야 하는 사항들을 본 책자로 제공하고 있다.

<주의사항>

본 번역본 및 데이터베이스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의 비교는 한국과 홍콩의 유사 기준을 적용하여 해석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자료업데이트가 실시간 관리되지 않으므로 수출에 활용 시 조사대상국가(홍콩)의 현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법령·자료 사이트(<http://www.mfds.go.kr/index.do?mid=616>)



홍콩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규정

1 개 요

1.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관련 규정

1.1 규정

구분	규정명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식품 보존료 규정 132BD 《食物內防腐劑規例》
	식품 착색료 규정 132H 《食物內染色料規例》
	식품 감미료 규정 132U 《食物內甜味劑規例》
	식품 및 의약품(성분 및 라벨링) 규정 132W 《食物及藥物(成分組合及標籤)規例》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식품 유해물질 규정 132AF 《食物內有害物質規例》
	식품 이물 (중금속 함량) 규정 132V 《食物攪雜(金屬雜質含量)規例》

○ 홍콩 식품첨가물 정의³⁾

- 홍콩 식품첨가물은 보존료 또는 향산화제를 의미하며, 세부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보존료**는 식품의 발효, 산화, 기타 변질과정 또는 식품부패를 억제, 지연 또는 저지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의미하며, 아래 항목은 제외된다.
 - (a) 모든 허용된 착색료
 - (b) 식염(염화나트륨)
 - (c) 레시틴, 당 또는 토크페롤류
 - (d) 니코틴산 또는 그 아미드
 - (e) 식초 또는 초산, 젖산, 아스코르빈산, 구연산, 사과산, 인산, 폴리인산 또는 주석산 또는 본 조항이 정하는 모든 산의 칼슘,

3) 132BD규정에 근거하며, 그 외의 규정문서 내에는 정의 등의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칼륨 또는 나트륨-염

- (f) 글리세롤, 알코올 또는 음용 가능한 독한 술, 이소프로필 알코올,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아세틴, 디아세틴 또는 트리아세틴
- (g) 허브 또는 호프 추출물
- (h) 향미료로 사용되는 향신료나 정유
- (i) 혼제로 알려진 숙성과정에서 식품에 첨가되는 모든 물질
- (j) 밀봉된 용기로 식품을 포장할 때 사용되는 이산화탄소, 질소 또는 수소
- (k) 거품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아산화 질소, 또는
- (l) 아스페르길루스 니게르(흑국균) 변종으로 유래된 글루코오스 산화효소
- **항산화제**는 산화로 인해 야기되는 식품의 변질(지방산패 및 변색 포함)을 방지하는 모든 물질을 의미하며, 아래 항목은 제외된다.
 - (a) 레시틴
 - (b) 아스코르빈산 또는 아스코르빈산염, 아스코르빈산 에스테르
 - (c) 토코페놀류
 - (d) 에리쓰르빈산, 구연산, 주석산, 인산, 젖산 또는 그 산들의 칼슘, 칼륨, 또는 나트륨-염
 - (e) 글루콘산의 칼슘, 칼륨 또는 나트륨-염
 - (f) 글리세롤의 초산 및 지방산 에스테르, 글리세롤의 젖산 및 지방산 에스테르 또는 글리세롤의 구연산 및 지방산 에스테르
 - (g) *Aspergillus niger* var(흑국균)에서 유래된 글루코오스산화효소

1.2 출처

- 홍콩 정부에서 규정하는 법률 전체 문서를 관리 및 제공
 - 관리기관 : 다국어 법규정보시스템 관리부(Department of Justice Bilingual Laws Information System, 律政司雙語法例資料系統)
 - 홈페이지 : <http://www.legislation.gov.hk/blis/chi/index.html>
- 식품관련 법규 제공
 - 관리기관 : 식품안전센터(Centre for Food Safety, 食品安全中心)
 - 홈페이지 : <http://www.cfs.gov.hk/cindex.html>

2. DB 참고사항

2.1 범례

- 본 사업의 결과물인 국가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및 유해물질 잔류 허용기준 DB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 정보 사이트(www.kati.net)의 수출안전정보 > 식품첨가물 사용지침 부분에서 제공되며 표기상의 뜻을 아래와 같이 범례로 정하고 있다.
- 한국 및 홍콩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표기에 대한 범례는 다음과 같다.

한 국

- ① 사용기준없음 :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되어 해당 품목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량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이며, 식품첨가물 일반사용기준에 따라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미
- ② 사용제한없음 :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되어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함에 있어 사용량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는 경우이며, 식품첨가물 일반사용기준에 따라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미
- ③ 사용금지 :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되어 있으나 해당 품목에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

홍 콩

- ① 일반사용기준 : 식품첨가물 규정에 등재되어 있으며, 식품 중에 첨가되는 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는 일반사용기준이 적용된다는 의미
- ② GMP : 식품첨가물 규정에 등재되어있어 해당품목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로 우수제조관리기준

(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에 따라 식품분류에 따른 최소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

- 한국 및 홍콩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표기에 대한 범례는 다음과 같다.

한 국

- ① 불검출 : 해당품목에 검출되면 안 된다는 의미

홍 콩

- ① 불검출 : 해당품목에 검출되면 안 된다는 의미

2.2 홍콩 식품유형 분류

- FC란?
 - Food Category의 약어로, 식품첨가물 관련 규정 중 ‘식품 보존료 규정(132BD)’ 내 식품유형의 명칭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검색엔진 사용시 명확한 정보전달 위해 추가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 Food category number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FC + “132BD“ 규정 내 식품유형 분류번호
(ex. FC1.1의 의미 : 홍콩의 식품유형목록을 참고하여 ‘음료에 넣는 프림’으로 해석)

2.3 식품 보존료 규정(132BD) 내 허용된 식품첨가물의 대체제

- 대체제란 식품보존료 규정 내 부표 1A 제 2단에 나열된 식품첨가물로, 부표 1A 제 1단에 나열된 식품첨가물의 대체제이다.
- 제 2단에 나열된 대체제의 최대사용량은 제 1단에 나열된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과 같다.
- 단, 이디티에이나트륨(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의 대체제인 이디티에이칼슘이나트륨(calcium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만 무수 이디티에이칼슘이나트륨의 형태로 측정되어야 한다.

[식품 보존료 규정의 부표 1A]

항 목	제 1단	제 2단
	부표에 명시된 허용된 식품첨가물(INS번호)	허용된 식품첨가물 대체재(INS번호)
1	Sorbic acid (200)	Sodium sorbate (201) Potassium sorbate (202) Calcium sorbate (203)
2	Benzoic acid (210)	Sodium benzoate (211) Potassium benzoate (212) Calcium benzoate (213)
3	Ethyl para-hydroxybenzoate (214)	Sodium ethyl para-hydroxybenzoate (215)
4	Methyl para-hydroxybenzoate (218)	Sodium methyl para-hydroxybenzoate (219)
5	Sulphur dioxide (220)	Sodium sulphite (221) Sodium hydrogen sulphite (222) Sodium metabisulphite (223) Potassium metabisulphite (224) Potassium sulphite (225) Calcium sulphite (226) Calcium hydrogen sulphite (227) Potassium bisulphite (228) Sodium thiosulphate (539) Sulphurous acid
6	Ortho-phenylphenol (231)	Sodium ortho-phenylphenol (232)
7	Sodium nitrite (250)	Potassium nitrite (249)
8	Sodium nitrate (251)	Potassium nitrate (252)
9	Propionic acid (280)	Sodium propionate (281) Calcium propionate (282) Potassium propionate (283)
10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386)	Calcium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385)
11	Thiodipropionic acid (388)	Dilauryl thiodipropionate (389)

2.4 식품첨가물 DB의 주석

-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추가 내용을 각 문서의 주석을 통해 표기하였다. 검색 엔진상에는 직접적으로 들어있지 않으며 사용기준란에 주석 번호로 명시되어있다.

번호	내 용
주석1	부틸히드록시아니솔(Butylated hydroxyanisole, BHA), 부틸레이티드하이드록시톨루엔(butylated hydroxytoluene, BHT), 프로필갈레이트(propyl gallate), 옥틸갈레이트(octyl gallate), 도데실갈레이트(dodecyl gallate), 삼차부틸하이드로퀴논 (tertiarybutyl hydroquinone, TBHQ), 티오디프로피온산(thiodipropionic acid) 및 구아약 수지(guaiac resin)의 수치는 식품 중 지방의 무게나 유분 함량과 비교하여 계산된다.
주석2	butylated hydroxyanisole, butylated hydroxytoluene, propyl gallate, octyl gallate, dodecyl gallate 및 tertiary butylhydroquinone의 경우,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 2가지 이상의 식품첨가물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식품에 들어있는 각 식품첨가물의 양이 최대허용수치 중 퍼센트(%)로 표현되고, 해당 퍼센트(%)의 합이 10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주석3	식품표면에 피마리신을 뿌리고 최대 깊이 5mm이내가 되어야한다. mg/dm ² 는 식품표면의 20ppm에 해당한다.
주석4	hexamethylene tetramine의 수치는 formaldehyde로 계산된다.
주석5	소르빈산과 프로피온산의 경우,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식품에 들어있는 각 식품 첨가제의 양이 최대 허용 수치 중 퍼센트(%)로 표현되고, 해당 퍼센트(%)의 합이 10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주석6	프로필갈레이트의 수치는 건조 재료, 건조 중량, 건조 믹스 또는 농도 기준으로 계산된다.
주석7	Butylated hydroxyanisole, butylated hydroxytoluene, propyl gallate, octyl gallate 및 dodecyl gallate는 가급적 레벨 합계가 200ppm을 초과하지 않고, 개별 최대 허용 레벨이 초과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주석8	질산나트륨과 아질산나트륨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식품에 들어있는 각 식품 첨가제의 양이 최대 허용 수치 중 퍼센트(%)로 표현되고, 해당 퍼센트(%)의 합이 10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주석9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의 레벨은 calcium disodium ethylene diaminetetraacetate 무수물로 계산된다.
주석10	이산화황의수치는잔류이산화황으로계산된다.
주석11	염화 제 1주석은 주석으로 계산된다.
주석12	글로콘산철은 철로 계산된다.
주석13	최대허용수치란 식품 제조 과정에서 첨가된 수치를 가리킨다.

번호	내 용
주석14	관련 식품첨가물 수치는 제조사의 설명에 따라 환원되거나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식품형태로 측정된다.
주석15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는 건조 상태로, 난황의 중량과 비교하여 계산된다.
주석1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의 수치는 고강도 감미료의 건조 무게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주석17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과 파라옥시안식향메틸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식품에 들어있는 각 식품 첨가제의 양이 최대 허용 수치 중 퍼센트(%)로 표현되고, 해당 퍼센트(%)의 합이 10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주석18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및 소르빈산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식품에 들어있는 각 식품첨가물의 양이 최대허용수치 중 퍼센트(%)로 표현되고, 해당 퍼센트(%)의 합이 10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주석19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소르빈산 및 이산화황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식품에 들어있는 각 식품 첨가제의 양이 최대 허용 수치 중 퍼센트(%)로 표현되고, 해당 퍼센트(%)의 합이 1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주석20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및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식품에 들어있는 각 식품첨가제의 양이 최대허용수치 중 퍼센트(%)로 표현되고, 해당 퍼센트(%)의 합이 10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주석21	안식향산과 소르빈산은 수치의 합계가 가능하면 2000ppm을 초과하지 않고, 개별 최대 허용 레벨이 초과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주석22	안식향산과 소르빈산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식품에 들어있는 각 식품첨가물의 양이 최대허용수치 중 퍼센트(%)로 표현되고, 해당 퍼센트(%)의 합이 10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주석23	Butylated hydroxyanisole, butylated hydroxytoluene, propyl gallate, octyl gallate 및 dodecyl gallate의 수치의 합은 240ppm을 초과하지 않고 propyl gallate, octyl gallate 또는 dodecyl gallate이나 그 혼합물의 개별 수치가 80ppm을 초과하지 않으며, butylated hydroxyanisole이나 butylated hydroxytoluene 또는 그 혼합물의 개별 수치가 160ppm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주석24	탄산구리의 수치는 구리로 계산된다.
주석25	건조제품에만 적용된다.
주석26	건조제품 및 살라미타입제품에만 적용된다.

번호	내 용
주석27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레벨은 건조 중량 기준으로 계산된다.
주석28	Butylated hydroxyanisole, butylated hydroxytoluene, propyl gallate, octyl gallate 및 dodecyl gallate는 합계 수치가 300ppm을 초과하지 않고 propyl gallate, octyl gallate 또는 dodecyl gallate이나 그 혼합물의 개별 수치가 100ppm을 초과하지 않으며, butylated hydroxyanisole이나 butylated hydroxytoluene 또는 그 혼합물의 개별 수치가 각각 100ppm과 200ppm, 또는 그 혼합물이 200ppm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주석29	수용성 색소인 경우, 해당 색소의 알루미늄염 또는 칼슘염(lake)는 일반사용기준 적용
주석30	당의가 밀가루로 만들어진 디저트 장식에 사용되는 박 혹은 분말형태

2 한국의 식품유형

-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관련 DB의 기준이 되는 한국의 식품유형은 식품공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구성은 아래와 같다.
- 한국의 가공식품유형 목록

가공식품 목록		세부식품유형 개수
1	과자류	4
2	빵류 및 떡류	3
3	코코아가공품 및 초콜릿류	2
4	잼류	3
5	설탕	3
6	포도당	2
7	과당	3
8	엿류	3
9	당시럽류	1
10	올리고당류	7
11	식육 또는 알가공품	3
12	어육가공품	6
13	두부류 또는 묵류	5
14	식용유지류	20
15	면류	6
16	다류	3
17	커피	1
18	음료류	6
19	특수용도식품	7
20	장류	15
21	조미식품	7
22	드레싱류	2
23	김치류	3
24	젓갈류	5
25	절임식품	2
26	조림식품	3
27	주류	12
28	건포류	3
29	기타식품류	25
30	유가공품	21
31	장기보존식품	-
32	규격 외 일반가공식품	8
33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축산물 공전)	11
34	알가공품(축산물 공전)	1
총 계		206

3 홍콩의 식품유형

- 아래는 홍콩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규정 내 분류된 식품유형을 목록화 한 것이다.

홍콩규정 문서번호	FC 분류	홍콩의 식품유형	홍콩의 식품유형 (번체)
132BD	FC1	유제품 및 그 유사제품 (영아용 조제분유 및 유아용 조제분유 그리고 식품유형 2 및 그 하위 식품유형 제품제외)	乳製品及類似品, 不包括嬰兒配方粉及幼兒配方粉及屬食物分類2及其細分類的製品
	FC1.1	음료에 넣는 크림	加入飲料的奶精
	FC1.2	응고된 크림	凝塊忌廉
	FC1.3	분유와 크림 파우더(플레인), 카세인 및 카제인염 포함	奶粉及忌廉粉(原味), 包括酪蛋白及酪蛋白酸
	FC1.3.1	자판기용 분유	供自動售賣機銷售的奶粉
	FC1.4	분유와 크림 파우더 및 유사 제품	奶粉及忌廉粉的類似品
	FC1.5	치즈 및 유사 제품	乳酪及類似品
	FC1.5.1	생치즈(예를 들어, 코티지 치즈, 크림치즈, 모짜렐라 치즈)	未成熟乳酪(例如茅屋乳酪、忌廉乳酪及水牛乳酪)
	FC1.5.2	숙성 치즈(예를 들어, 까망베르 치즈, 체다 치즈, 아이딘 치즈, 고다 치즈)	成熟乳酪(例如卡門貝爾乳酪、切達乳酪、艾登乳酪及豪達乳酪)
	FC1.5.2.1	치즈 파우더(환원용(예를 들어, 환원용 치즈소스))	乳酪粉(供再造成用(例如用以再造乳酪醬))
	FC1.5.2.2	프로볼로네 치즈	波蘿伏洛乳酪
	FC1.5.3	유청 치즈	乳清乳酪
	FC1.5.4	가공 치즈	加工乳酪
	FC1.5.5	치즈 유사제품 (모조치즈, 모조 치즈 혼합물 및 모조치즈 파우더 포함)	乳酪類似品, 包括仿乳酪、仿乳酪混合物及仿乳酪粉
	FC1.5.6	유청 단백질 치즈(예를 들어, 리코타 치즈)	乳清蛋白質乳酪(例如力可達乳酪)
	FC1.6	플레인 요거트를 제외한 유제품 기반 디저트(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푸딩, 과일 또는 조미 요거트)	以乳類為主的甜品(例如雪糕、布甸, 及水果或調味酸乳酪), 不包括原味酸乳酪
	FC1.6.1	과일이 주재료인 우유 및 크림 디저트	以水果為主的奶及忌廉甜品
	FC1.6.2	과일 요거트	水果酸乳酪
	FC2	지방, 기름 및 지방 유탁액	脂肪及油, 以及脂肪乳狀液
	FC2.1	무수분 지방 및 기름	基本不含水的脂肪及油

홍콩규정 문서번호	FC 분류	홍콩의 식품유형	홍콩의 식품유형 (번체)
132BD	FC2.1.1	무수성 버터 및 유지방	無水奶油及酥油
	FC2.1.2	식물성 기름 및 지방	植物油脂
	FC2.1.3	돼지 기름, 소·양 유지, 어유 및 기타 동물성 지방	豬油、牛羊油脂、魚油及其他動物脂肪
	FC2.2	WO에멀전	主要為油中水類別的脂肪乳狀液
	FC2.2.1	지방 함유량이 최소 80% 이상인 유탕액	脂肪含量至少為80%的乳狀液
	FC2.2.1.1	마가린 및 유사제품	人造牛油及類似製品
	FC2.2.1.2	제조용 버터	供製造用的牛油
	FC2.2.1.3	버터와 마가린 혼합 제품	牛油與人造牛油混合物
	FC2.2.2	지방 함유량 80% 보다 적은 유탕액 (저지방 버터, 저지방 마가린 및 혼합 제품 포함)	脂肪含量少於80%的乳狀液, 包括減脂牛油、減脂人造牛 油及兩者的混合物
	FC2.3	수중유적형 지방 유탕액 (OW 에멀전) (지방 유탕액 위주의 혼합물 및 조미제품 포함; 지방성분이 유지제품과 식품 유형2.4 및 하위유형 (해당될 경우)에서 추출된 디저트제품 불포함)	主要為水中油類別的脂肪乳 狀液, 包括以脂肪乳狀液為 主的混合及 / 或調味製品, 不包括脂肪成分來自奶脂的 製品及屬食物分類2.4及其細 分類(如適用的話)的甜品製品
	FC2.4	지방 위주의 디저트(식품유형 1.6 및 하위 식품유형(해당될 경우)의 유류 디저트 제품 불 포함)	以脂肪為主的甜品, 不包括 屬食物分類1.6及其細分類(如 適用的話)的以乳類為主的甜 品製品
	FC3	식용 가능한 빙과류, 물 기반 냉동 디저트, (예를 들어, 아이 스크림, 샤베트)	可供食用的冰品, 包括以水 為主的冷凍甜品、甜點及巧 點(例如雪糕及雪葩)
	FC4	과일 및 채소(버섯과 진균, 뿌 리와 줄기, 콩과 콩꼬투리, 알 로에 포함), 해조류, 견과류, 씨앗류	水果及蔬菜(包括菇和真菌、 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海藻, 及果仁和種 子
	FC4.1	표면 처리된 신선 과일	面層經處理的新鮮水果
	FC4.1.1	사과	蘋果
	FC4.1.2	배	梨
	FC4.1.3	감귤류	柑橘屬水果
	FC4.2	냉동 슬라이스 사과	冷凍切片蘋果
	FC4.3	견과일	水果乾
	FC4.3.1	말린 무화과	無花果乾
	FC4.3.2	말린 매실	梅脯
	FC4.3.3	말린 살구	杏脯
	FC4.3.4	건포도	葡萄乾
	FC4.3.5	말린 코코넛	椰子乾

홍콩규정 문서번호	FC 분류	홍콩의 식품유형	홍콩의 식품유형 (번체)
132BD	FC4.4	식초, 기름 또는 소금물에 절인 과일	以醋、油或鹽水醃漬的水果
	FC4.5	캔 또는 병에 담긴 과일(저온 살균 또는 고온멸균)	罐頭或瓶裝(經巴士德消毒法消毒或加熱消毒)水果
	FC4.6	잼, 젤리포, 감귤잼	果醬、果凍、柑橘果醬
	FC4.7	과일 기반 스프레드(예를 들어, 애플 버터, 레몬 커드 및 처트니). 식품유형 4.6 및 하위 식품유형 제품(해당될 경우) 제외	以水果為主的塗醬(例如蘋果醬、檸檬酪及酸辣調味果醬), 不包括屬食物分類4.6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製品
	FC4.8	설탕 절임 과일	糖漬水果
	FC4.9	과일 조제식품, 과육, 푸레, 과일 소스, 식품표면용 과일토픽, 코코넛 밀크 및 코코넛 크림 포함	水果配製品, 包括果肉、果泥、果醬料、食物面層的水果配料、椰奶及椰漿
	FC4.10	과일 디저트, 물이 주로 들어간 과일 맛 디저트 포함. 식품유형7.2.1 및 7.2.2 그리고 그 하위식품유형(해당될 경우)의 과일 제빵제과, 식품유형3 및 그 하위식품유형(해당될 경우)의 식용가능한 과일 맛 빙과류 및 식품유형1.6및 그 하위 식품유형(해당될 경우)의 과일이 함유된 유류 디저트 불포함	以水果為主的甜品, 包括以水為主的果味甜品, 不包括屬食物分類7.2.1及7.2.2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含水果精製烘焙食品、屬食物分類3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可供食用的果味冰品, 及屬食物分類1.6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含水果冷凍乳類甜品
	FC4.11	발효 과일제품	發酵水果製品
	FC4.12	가오빙(糕餅: 케이크, 과자, 빵, 떡 등) 과일 소, 식품유형4.9 및 그 하위식품유형(해당될 경우)푸레	糕餅果餡, 不包括屬食物分類4.9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果泥
	FC4.13	익힌 과일	經烹煮的水果
	FC4.14	박피, 절개 또는 채를 썬 신선 감자 또는 백색류 채소	去皮、切開或切絲的新鮮馬鈴薯及白色類蔬菜
	FC4.15	냉동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견과류, 씨앗류	冷凍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海藻, 及果仁和種子
	FC4.15.1	냉동 프렌치 프라이 감자	冷凍炸馬鈴薯條
	FC4.15.2	냉동 아보카도	冷凍牛油果
	FC4.15.3	냉동 감자 및 백색류 채소	冷凍馬鈴薯及白色類蔬菜
	FC4.16	건조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견과류, 씨앗류	脫水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海藻, 及果仁和種子
	FC4.16.1	말린 감자	脫水馬鈴薯
	FC4.16.2	말린 콩	乾豆

홍콩규정 문서번호	FC 분류	홍콩의 식품유형	홍콩의 식품유형 (번체)
132BD	FC4.16.3	즉석 섭취 형태의 탈수된(건조) 채소	即食脫水蔬菜
	FC4.16.4	건호리병박 면	乾葫蘆條
	FC4.17	식초, 기름, 소금물 또는 간장에 절인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와 해조류. 식품유형 12.13, 12.14 및 하위 식품유형(해당되는 경우)의 발효대두제품 그리고 식품유형 4.21 및 하위식품유형(해당될 경우)의 발효채소는 제외	以醋、油、鹽水或豉油醃漬的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及海藻, 不包括屬食物分類12.13和12.14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發酵大豆製品, 及屬食物分類4.21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發酵蔬菜
	FC4.17.1	절인 올리브	醃漬橄欖
	FC4.18	캔 또는 병에 포장된(저온살균 또는 고온 멸균) 또는 살균 비닐 포장된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및 해조류	罐頭或瓶裝(經巴士德消毒法消毒或加熱消毒)或以殺菌軟袋包裝的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及海藻
	FC4.19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해조류, 견과류와 씨앗류, 푸레 및 스프레드(예를 들어, 토마토 푸레, 땅콩 버터, 캐슈 버터)	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海藻, 及果仁和種子泥及塗醬(例如番茄泥、花生醬及腰果醬)
	FC4.19.1	저열량 제품	經加工減低能量的製品
	FC4.19.2	토마토 푸레	番茄泥
	FC4.20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해조류, 견과류와 씨앗류, 과육, 페이스트 및 가공품(예를 들어, 채소 디저트와 소스, 설탕에 절인 채소), 식품 유형 4.19 및 하위식품유형 제품 제외 (해당될 경우)	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海藻, 及果仁和種子肉漿、糊及配製品(例如蔬菜甜品及蔬菜醬料, 以及糖漬蔬菜), 不包括屬食物分類4.19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製品
	FC4.20.1	토마토 과육 미 토마토 페이스트	番茄肉漿及番茄糊
	FC4.20.2	가당 견과류 페이스트	加糖的果仁糊
	FC4.20.3	고추냉이 과육	辣根肉漿
	FC4.21	발효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및 해조류 제품. 식품유형 12.13, 12.14 및 하위 식품유형(해당될 경우)의 발효대두제품 제외	發酵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及海藻製品, 不包括屬食物分類12.13及12.14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發酵大豆製品

홍콩규정 문서번호	FC 분류	홍콩의 식품유형	홍콩의 식품유형 (번체)
132BD	FC4.22	익히거나 튀긴 채소 (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 투리, 알로에 포함) 및 해조류	已烹煮或煎炸的蔬菜(包括菇 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 和豆莢, 及蘆薈)及海藻
	FC4.22.1	익히거나 사전 포장된 사탕무 뿌리	已烹煮及預先包裝的甜菜根
	FC5	디저트	甜點
	FC5.1	모조품과 초콜릿 대체품을 포 함한 코코아 제품 및 초콜릿 제품	可可製品及朱古力製品, 包 括仿朱古力及朱古力代替品
	FC5.1.1	코코아 혼합물(파우더) 및 코 코아 덩어리/유병	可可混合物(粉)及可可塊/油 餅
	FC5.1.2	코코아 혼합물(시럽)	可可混合物(糖漿)
	FC5.1.3	속재료를 포함한 코코아기반 스프레드 (예를 들어, 코코아 버터)	以可可為主的塗醬, 包括餡 料(例如可可脂)
	FC5.1.4	초콜릿을 입힌 견과류 및 과 일을 포함한 코코아 및 초콜 릿 제품	可可及朱古力製品, 包括外 加朱古力的果仁及水果
	FC5.1.4.1	화이트 초콜릿	白朱古力
	FC5.1.4.2	초콜릿을 입힌 마시멜로	外加朱古力的棉花糖
	FC5.1.5	모조 초콜릿, 초콜릿 대체품	仿朱古力製品、朱古力代替 品
	FC5.2	하드 캔디, 소프트 캔디, 너겟 을 포함한 디저트. 식품 유형 5.1, 5.3, 5.4 및 하위 식품유형 의 제품(해당될 경우) 불포함	甜點, 包括硬糖、軟糖及鳥 結糖, 不包括屬食物分類5. 1、5.3及5.4及其細分類(如適 用的話)的製品
	FC5.2.1	아몬드 시럽(마지팬)	杏仁糖膏
	FC5.3	껌	香口膠
	FC5.4	데코레이션(예를 들어, 베이커 리 제품 장식, 식품표면에 쓰 일 토핑(과일 외), 달콤한 소 스)	裝飾材料(例如供精製烘焙食 品用的裝飾材料)、食物面層 配料(非水果類)及甜味醬料
	FC6	곡물류와 곡립,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가 주재료인 곡 류식품. 식품분류 7 및 하위식 품유형의 제빵제과 불포함	穀類和以穀粒、根及塊根或 莖、豆和豆莢製成的穀類製 品, 不包括屬食物分類7及其 細分類的烘焙食品
	FC6.1	보리, 옥수수, 오트밀, 쌀, 수 수, 콩, 밀을 포함한 통곡물이 나 도정된 곡물	原粒穀物、碎穀物或穀物 片, 包括大麥、粟米、燕 麥、大米、高粱、大豆及小 麥
	FC6.2	밀가루	麵粉
	FC6.3	전분	澱粉
	FC6.4	분쇄 귀리를 포함한 아침식사 용 곡류식품	早餐穀類食品, 包括燕麥片

홍콩규정 문서번호	FC 분류	홍콩의 식품유형	홍콩의 식품유형 (번체)
132BD	FC6.5	사전에 조리된 면 제품 및 유사제품	預煮的麵食製品及麵條，以及類似製品
	FC6.5.1	인스턴트 면류	即食麵
	FC6.6	곡물 및 전분이 주재료인 디저트(예를 들어, 쌀푸딩, 카사바 푸딩), 곡물과 전분이 주재료인 디저트 소 포함	以穀類及澱粉為主的甜品(例如大米布甸、木薯布甸)，包括以穀類或澱粉為主的甜品餡料
	FC7	제빵제과	烘焙食品
	FC7.1	단맛이 첨가되지 않은 모든 제빵제과 및 빵 제품을 포함한 빵, 일반 제빵제과 및 혼합물	麵包、普通烘焙食品及混合料，包括各類沒有甜味的烘焙食品及以麵包製成的製品
	FC7.1.1	빵과 롤(예를 들어, 흰빵, 곡물빵, 건포도빵, 통밀빵, 통밀롤 및 소다 빵)	麵包及麵包捲，例如白麵包、裸麥麵包、提子乾麵包、全麥麵包、全麥麵包捲及蘇打麵包
	FC7.1.2	크래커(예를 들어, 소다 크래커, 호밀 과자). 식품유형14.1 및 하위 식품유형의 조미 크래커(해당될 경우)는 불포함	薄脆餅乾(例如蘇打餅乾、裸麥餅乾)，不包括屬食物分類14.1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調味薄脆餅乾
	FC7.1.3	기타 일반 제빵제과 식품(예를 들어, 베이글, 피타, 영국식 머핀)	其他普通烘焙食品(例如比高包、比得包及英式鬆餅)
	FC7.1.4	빵 고물과 빵가루를 포함한 빵류 제품	麵包類製品，包括以麵包製成的餡料及麵包糠
	FC7.1.5	찐빵(예를 들어, 만토우 및 만두)	蒸包(例如饅頭及包子)
	FC7.1.6	빵 및 일반 제빵제과를 만들 때 사용되는 혼합 재료	供製作麵包及普通烘焙食品用的混合料
	FC7.2	제빵제과 식품 및 혼합물	精製烘焙食品及混合料
	FC7.2.1	케이크와 쿠키(예를 들어, 치즈케이크, 서양식 케이크, 월병, 오트밀 쿠키, 과일 소 파이 및 커스터드 파이)	蛋糕、曲奇餅及批(例如乳酪蛋糕、西式蛋糕、月餅、燕麥曲奇餅、果餡批及吉士批)
	FC7.2.2	기타 정제 제빵제과 식품(예를 들어, 팬케이크, 대니시 페이스트리, 아이스크림 콘, 밀가루로 만든 디저트, 도넛, 롤, 스콘 및 머핀)	其他精製烘焙食品(例如班戟、窩芙、丹麥酥、雪糕筒、麵粉製甜點、冬甩、甜麵包捲、烤餅及鬆餅)
	FC7.2.3	정제 제빵제과용 혼합재료 (예를 들어, 케이크 혼합 재료, 밀가루 디저트 혼합 재료, 팬케이크 혼합재료, 파일 혼합재료 및 와플 혼합재료)	供製作精製烘焙食品用的混合料(例如蛋糕混合料、麵粉製甜點混合料、班戟混合料、批混合料及窩芙混合料)
	FC8	가금류와 야생고리를 포함한 육류와 육류 제품	肉及肉製品，包括家禽及野味

홍콩규정 문서번호	FC 분류	홍콩의 식품유형	홍콩의 식품유형 (번체)
132BD	FC8.1	분쇄한 신선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新鮮禽畜及野味碎肉
	FC8.2	전체 또는 절단된 부위가 가공된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原隻或切件的加工禽畜及野味肉製品
	FC8.2.1	전체 또는 절단된 비가열 절임방식(염장 포함)으로 가공된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제품	原隻或切件, 非經加熱處理的醃製(包括鹽醃)加工禽畜及野味肉製品
	FC8.2.2	전체 또는 절단된 비가열 절임(염장포함) 및 탈수방식으로 가공된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제품	原隻或切件, 非經加熱處理的醃製(包括鹽醃)及脫水加工禽畜及野味肉製品
	FC8.2.3	전체 또는 절단된 비가열 발효처리된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제품	原隻或切件, 非經加熱處理的發酵加工禽畜及野味肉製品
	FC8.2.4	전체 또는 절단된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제품. 삶거나 (염제 후 삶거나, 탈수 후 삶은 것 포함), 가열처리한 것(멸균포함) 그리고 캔 고기 포함.	原隻或切件, 經加熱處理的加工禽畜及野味肉製品, 包括煮熟(包括醃製並煮熟, 以及脫水並煮熟)、經加熱處理(包括消毒)及罐頭肉塊
	FC8.2.4.1	보존 처리 및 열 처리된 육류	經加熱處理的醃製肉類
	FC8.2.5	전체 또는 절단된 냉동 가공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식품, 냉동 생고기 및 익힌고기 포함	原隻或切件, 冷凍的加工禽畜及野味肉製品, 包括經冷凍的生及熟肉塊
	FC8.3	가공된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분쇄제품	加工禽畜及野味碎肉製品
	FC8.3.1	비가열 절임(염장 포함) 가공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분쇄제품	非經加熱處理的醃製(包括鹽醃)加工禽畜及野味碎肉製品
	FC8.3.2	비가열 절임(염장 포함) 또는 탈수처리된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분쇄제품	非經加熱處理的醃製(包括鹽醃)及脫水加工禽畜及野味碎肉製品
	FC8.3.3	비가열 발효처리된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분쇄제품	非經加熱處理的發酵加工禽畜及野味碎肉製品
	FC8.3.4	열처리된 가공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분쇄제품. 삶거나 (절이고 삶거나, 탈수하고 삶은 것 포함) 가열처리(소독 포함)된 통조림 분쇄제품 포함 (예를 들어, 푸아그라, 파테, 미트볼)	經加熱處理的加工禽畜及野味碎肉製品, 包括煮熟(包括醃製並煮熟, 以及脫水並煮熟)、經加熱處理(包括消毒)及罐頭碎肉製品(例如鵝肝醬及肉 / 肝醬、及熟肉丸)
	FC8.3.4.1	가열처리된 절임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분쇄제품(예를 들어, 익히고 절인 분쇄육, 캔에 옥수수과 함께 담긴 고기, 런	經加熱處理的醃製加工禽畜及野味碎肉製品(例如煮熟的醃碎肉、罐頭鹹牛肉及午餐肉)

홍콩규정 문서번호	FC 분류	홍콩의 식품유형	홍콩의 식품유형 (번체)
132BD		천 미트)	
	FC8.3.4.2	가열처리된 햄버거 고기패티 또는 유사 제품	經加熱處理的漢堡碎肉餅或類似製品
	FC8.3.4.3	가열처리된 소시지 또는 소시지 미트(예를 들어, 아침식사용 소시지)	經加熱處理的香腸或香腸肉(例如早餐香腸)
	FC8.3.5	냉동된 가공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분쇄제품. 날것, 반숙 및 완숙 제품(예를 들어, 빵가루나 튀김 반죽을 입힌 냉동 닭)포함	冷凍的加工禽畜及野味碎肉製品, 包括生、半熟及全熟的製品(例如沾麵包糠或炸漿的冷凍雞條)
	FC8.3.5.1	냉동 햄버거 고기패티 또는 유사제품	冷凍的漢堡碎肉餅或類似製品
	FC9	어류 및 어류가공품, 수상 척추 동물(어류 및 수생포유류(예를 들어, 고래)), 수생 무척추 동물(예를 들어, 해파리), 연체 동물(예를 들어, 재첩 및 달팽이), 갑각류(예를 들어, 새우, 게, 랍스터) 그리고 극피동물(예를 들어, 성개, 해삼)포함	魚及魚製品, 包括水棲脊椎動物(魚及水棲哺乳類動物(例如鯨魚)), 水棲無脊椎動物(例如水母)、軟體類動物(例如蜆及蝸牛)、甲殼類動物(例如蝦、蟹及龍蝦)及棘皮類動物(例如海膽及海參)
	FC9.1	신선 연체류, 갑각류 및 극피동물	新鮮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
	FC9.2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을 포함한 가공 어류 및 어류 제품	加工魚及魚製品, 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
	FC9.2.1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을 포함한 냉동(신선 및 반숙 포함) 생선, 생선 필렛, 어육 제품(예를 들어, 냉동 재첩, 냉동 대구포, 냉동 게, 냉동 새우, 냉동 어란, 냉동 연육)	冷凍(包括新鮮及半熟)的魚、魚柳及魚製品, 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例如冷凍的蜆、冷凍的鱈魚柳、冷凍的蟹、冷凍的鰭魚、冷凍的龍蝦、冷凍的蝦、冷凍的魚子及冷凍的魚漿)
	FC9.2.1.1	냉동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	冷凍的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
	FC9.2.2	냉동, 튀김옷을 입힌 또는 익히지 않은 생선, 생선 필렛 및 어육 제품. 연체동물, 갑각류 및 극피동물(예를 들어, 튀김가루가 묻은 냉동 생선핑거 및 튀김반죽이 묻은 냉동 생선 필렛)	冷凍、沾炸漿及未經烹煮的魚、魚柳及魚製品, 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例如冷凍沾麵包糠的魚手指及冷凍沾炸漿的魚柳)
	FC9.2.3	익힌(튀김 제외) 생선 및 어육 제품. 익힌 연육, 익힌 어묵 페이스트, 익힌 어란 포함	煮熟(不包括煎炸)的魚及魚製品, 包括熟魚漿、熟魚糊及熟魚子

홍콩규정 문서번호	FC 분류	홍콩의 식품유형	홍콩의 식품유형 (번체)
132BD	FC9.2.3.1	익힌(튀김 제외) 어단 및 어묵	煮熟(不包括煎炸)的魚丸及魚餅
	FC9.2.4	익힌(튀김 제외)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	煮熟(不包括煎炸)的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
	FC9.2.4.1	익힌(튀김 제외)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의 어단과 어묵	煮熟(不包括煎炸)的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的丸及餅
	FC9.2.4.2	익힌(튀김 제외) 새우	煮熟(不包括煎炸)的蝦
	FC9.2.4.2.1	익힌(튀김 제외) 갈색 새우	煮熟(不包括煎炸)的褐蝦
	FC9.2.5	튀긴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 어단과 어묵	煎炸魚丸及魚餅, 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
	FC9.2.6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을 포함한 훈제, 탈수, 발효 및/또는 염장 생선과 어육 제품. 연체동물, 갑각류 및 극피동물 포함	煙燻、脫水、發酵及 / 或鹽醃的魚及魚製品, 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
	FC9.2.6.1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을 포함한 채처럼 썰린 건조 생선	乾魚絲, 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
	FC9.2.6.2	발효 어육 제품	發酵魚製品
	FC9.2.6.3	염장 어육	鹹魚
	FC9.3	준 보존 처리된 생선 및 어육 제품.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 포함	半防腐的魚及魚製品, 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
	FC9.3.1	식초, 술에 절인 및/또는 젤리로 조제한 생선 및 어육 제품.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 포함	以醋或酒浸泡及 / 或以膠凍配製的魚及魚製品, 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
	FC9.3.2	절인 및/또는 소금물에 절인 생선 및 어육제품.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 포함.	醃漬及 / 或以鹽水浸泡的魚及魚製品, 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
	FC9.3.3	염장 및/또는 보존료로 처리한 준 보존 연어 대체품, 캐비어 및 기타 어란 제품	鹽醃及 / 或以防腐劑處理的半防腐三文魚代替品、魚子醬及其他魚子製品
	FC9.3.3.1	준 보존 처리된 캐비어	半防腐魚子醬
	FC9.3.4	준 보존 처리된 생선 및 어육 제품. 연체동물, 갑각류 및 극피동물 포함(예를 들어, 동양식 전통 어육 페이스트). 식품 유형 9.3.1부터 9.3.3 및 하위 식품유형(해당될 경우)제품 불 포함	半防腐的魚及魚製品, 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例如傳統的東方魚糊), 不包括屬食物分類9.3.1至 9.3.3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製品
	FC9.3.4.1	새우젓	蝦醬
	FC9.4	완전 보존 처리된 생선 및 어	完全防腐(包括罐頭或發酵)的

홍콩규정 문서번호	FC 분류	홍콩의 식품유형	홍콩의 식품유형 (번체)
132BD		육 제품. 연체동물, 갑각류 및 극피동물 포함	魚及魚製品, 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
	FC9.4.1	캔 전복	罐頭鮑魚
	FC10	난제품	蛋製品
	FC10.1	전란, 노른자 및 흰자를 포함하여 저온 살균 및 화학적으로 보존 처리된(예를 들어, 소금을 추가) 액란 제품	經巴士德消毒法消毒及化學防腐(例如加鹽)的液體蛋製品, 包括全蛋、蛋黃及蛋白
	FC10.2	탈수 및/또는 열 응고(저온 살균) 난제품	脫水及 / 或以熱凝固(經巴士德消毒法消毒)的蛋製品
	FC10.3	달걀 기반 디저트(예를 들어, 에그 커스타드 및 고급 제빵 제과용 속재료)	以蛋為主的甜品(例如蛋吉士及供精製烘焙食品用的吉士餡料)
	FC11	유당과 꿀을 제외한 당류 및 테이블 감미료	糖及餐桌甜味劑, 不包括乳糖及蜂蜜
	FC11.1	백설탕, 무수 포도당, 함수 포도당, 과당	白糖、無水葡萄糖、一水葡萄糖、果糖
	FC11.2	분말 설탕 및 분말 덱스트로오스	糖粉、葡萄糖粉
	FC11.3	고운 백설탕, 고운 황설탕, 포도당 시럽, 건포도당 시럽, 비정제 사탕수수 설탕	綿白糖、紅綿糖、葡萄糖漿、葡萄糖乾漿、原蔗糖
	FC11.3.1	캔디류 제조에 사용되는 건조된 포도당 시럽	用於製造糖果製品的葡萄糖乾漿
	FC11.3.2	캔디류 제조에 사용되는 포도당 시럽	用於製造糖果製品的葡萄糖漿
	FC11.4	원당 또는 압착 방식 백설탕	耕地白糖或壓榨法白糖
	FC11.5	갈색 설탕 (예를 들어, 갈색 자당). 식품유형 11.3 및 하위 식품유형(해당될 경우) 제품	紅糖(例如紅蔗糖), 不包括屬食物分類11.3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製品
	FC11.6	당밀을 포함한 설탕 용액 및 시럽 및 (부분)전화당. 식품유형 11.3 및 하위식품유형(해당될 경우)제품 불포함	糖液及糖漿, 以及(部分)轉化糖, 包括糖蜜, 但不包括屬食物分類11.3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製品
	FC11.7	기타 당 및 시럽(예를 들어, 자일로오스, 메이플 시럽 및 장식용 설탕)	其他糖及糖漿(例如木糖、楓糖漿及用作食物面層裝飾的糖)
	FC11.8	고강도 감미료 함유제품을 포함한 테이블 감미료 (예를 들어, 아세설팜 칼륨 및 솔비톨)	餐桌甜味劑, 包括含有高甜度甜味劑(例如醋磺內酯鉀及山梨醇)者
	FC12	향신료, 양념, 수프, 소스, 샐러드, 효모 및 유사제품, 간장, 메주, 대두 단백질 분말 및 혼합물	香料、佐料、湯、醬料、沙律、酵母及類似製品、豉油、發酵大豆, 以及大豆蛋白粉及其混合物

홍콩규정 문서번호	FC 분류	홍콩의 식품유형	홍콩의 식품유형 (번체)
132BD	FC12.1	허브 및 향신료 (예를 들어, 바질, 오레가노, 칠리 페이스트, 카레 페이스트)	香草及香料(例如羅勒、皮薩草、辣椒醬及咖喱醬)
	FC12.1.1	카레 페이스트	咖喱醬
	FC12.2	양념 (예를 들어, 연육제, 양파 소금, 마늘 소금). 양념 소스 (예를 들어, 케첩, 마요네즈, 머스타드) 불포함	佐料(例如鬆肉粉、洋蔥鹽及蒜鹽), 不包括佐料醬料(例如茄汁、蛋黃醬及芥末)
	FC12.3	사과 식초, 와인 식초, 맥아 식초, 알코올 식초, 곡물 식초, 건포도 식초 및 과일(와인) 식초를 포함한 식초	醋, 包括蘋果醋、酒醋、麥芽醋、酒精醋、穀醋、葡萄乾醋及果(酒)醋
	FC12.4	머스타드	芥末
	FC12.4.1	디종 머스타드	第戎芥末
	FC12.5	캔, 병입 및 냉동을 포함한 즉석 취식 수프와 죽(예를 들어, 부용, 콘소메, 물 & 크림 기반 수프, 차우더, 비스크)	即食湯及肉湯, 包括罐頭、瓶裝及冷凍製品(例如肉汁清湯、清肉湯、以水及忌廉為主的湯、周打湯及海鮮濃湯)
	FC12.6	수프와 죽용 혼합물(예를 들어, 부용 분말 및 각 제품, 분말 농축 수프 및 스톡 분말)	供調製湯及肉湯用的混合料(例如肉汁清湯粉及塊、粉狀及濃縮湯, 以及高湯塊及粉)
	FC12.7	유화 소스(예를 들어, 마요네즈 & 샐러드 드레싱)	乳化醬汁(例如蛋黃醬及沙律醬)
	FC12.8	물, 코코넛 밀크 및 우유 기반 소스를 포함한 비유화 소스(예를 들어, 바비큐 소스, 케첩, 치즈 소스, 크림 소스, 우스터 소스, 브라운 그래비, 칠리 소스)	非乳化醬汁, 包括以水、椰奶及奶為主的醬汁(例如燒烤醬汁、茄汁、乳酪醬汁、忌廉醬汁、喼汁、濃肉汁及辣椒醬)
	FC12.9	소스와 고기즙 제조용 혼합물 (예를 들어, 치즈 소스, 네덜란드 소스 및 샐러드 드레싱 제조용 혼합물)	供調製醬汁及肉汁用的混合料(例如用於調製乳酪醬、荷蘭醬及沙律醬的混合料)
	FC12.10	생선 소스와 굴 소스	魚露及蠔油
	FC12.11	샐러드(예를 들어, 마카로니 샐러드, 감자샐러드) 및 샌드위치 소스. 식품유형 4.19와 5.1.3 및 하위식품유형 (해당될 경우)의 코코아 및 견과류 기반의 소스	沙律(例如通心粉沙律、馬鈴薯沙律)及三文治塗醬, 不包括屬食物分類4.19及5.1.3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以可可及果仁為主的塗醬
	FC12.12	효모 및 유사 제품	酵母及類似製品
	FC12.13	간장	豉油
	FC12.13.1	비발효 간장	非發酵豉油
	FC12.14	발효 간장(예를 들어, 더우츠)	發酵大豆(例如豆豉)
	FC12.15	대두단백질 분말과 혼합물(환원용 (예를 들어, 대두 음료	大豆蛋白粉及混合物(供再造成用(例如用作調製大豆飲料及

홍콩규정 문서번호	FC 분류	홍콩의 식품유형	홍콩의 식품유형 (번체)
132BD		및 수제 두부))	自家製軟豆腐))
	FC13	유제품을 제외한 음료	飲料, 不包括乳製品
	FC13.1	과일 주스	果汁
	FC13.1.1	포도 주스 제품 (성찬용 비발효)	葡萄汁製品(未經發酵及擬於聖餐時使用)
	FC13.2	채소 주스	蔬菜汁
	FC13.3	농축 과일주스	濃縮果汁
	FC13.4	농축 채소주스	濃縮蔬菜汁
	FC13.5	과일 넥타	果蜜飲料
	FC13.6	채소 넥타	蔬菜蜜飲料
	FC13.7	과일 넥타 농축액	濃縮果蜜飲料
	FC13.8	채소 넥타 농축액	濃縮蔬菜蜜飲料
	FC13.9	물 기반 조미음료. 탄산, 비탄산, 농축물, "스포츠", "에너지" 또는 "전해질" 음료, 과일 음료, 즉석 섭취 커피 및 차류 음료, 그리고 허브 기반 음료(예를 들어, 아이스티, 과일향 아이스티, 냉동 캔 카푸치노 음료)	以水為主的調味飲料, 包括碳酸及非碳酸飲料、濃縮物、“運動”、“能量”或“電解質”飲料、顆粒飲料、即飲咖啡及茶類飲料, 及以香草為主的飲料(例如凍茶、果味凍茶及冰凍的罐裝泡沫咖啡飲料)
	FC13.9.1	과즙 기반 음료 및 무당도 생강음료	以果汁為主的飲料和無甜度薑汁飲料
	FC13.9.2	10리터 당 2.3 kg 이상의 포도당 시럽이 함유된 포도당 음료	每10公升含有不少於2.3公斤葡萄糖漿的葡萄糖飲料
	FC13.9.3	물 기반 향 첨가 음료 농축액 (액상 또는 고형)	供調製以水為主調味飲料用的濃縮物(液體或固體)
	FC13.10	커피, 커피대체품, 차, 허브차, 기타 곡류 및 곡물 뜨거운 음료. 커피제품 제조용 커피콩 포함. 코코아 불포함	咖啡、咖啡代替品、茶、香草茶, 以及其他穀類及穀物熱飲料, 包括用於製造咖啡製品的已處理咖啡豆, 不包括可可
	FC13.10.1	고형 커피 추출물	固體咖啡精
	FC13.11	맥주와 맥아 음료	啤酒及麥芽飲料
	FC13.12	사과주 및 배주	蘋果酒及梨酒
	FC13.12.1	알코올 함량 7%보다 적은 사과주 및 배주	乙醇含量少於7%的蘋果酒及梨酒
	FC13.13	포도주	葡萄酒
	FC13.13.1	백주	白酒
	FC13.14	술(포도주, 사과주 및 배주 제외) (예를 들어, 미주 (일본청주), 스파클링 과일주 및 비스파클링 과일주)	酒(葡萄酒、蘋果酒及梨酒除外)(例如米酒(日本清酒)及有氣泡及無氣泡的果酒)

홍콩규정 문서번호	FC 분류	홍콩의 식품유형	홍콩의 식품유형 (번체)
132BD	FC13.15	벌꿀 술	蜂蜜酒
	FC13.16	알코올 함량 15%를 초과한 증류알콜음료	酒精含量超過15%的蒸餾酒精飲料
	FC13.17	향이 첨가된 알코올 음료(예를 들어, 술, 쿨러타입 알코올 음료, 저도수 청량음료)	加香味的酒精飲料(例如酒及含酒精的清涼飲料, 以及低酒精的清涼飲料)
	FC14	즉석 섭취 스낵	即食小食
	FC14.1	감자, 곡류, 밀가루 또는 전분(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기반 스낵제품. 모든 플레인 및 조미 스낵(예를 들어, 감자칩, 팝콘 및 향 첨가 크래커) 포함. 식품유형7.1.2 및 하위식품유형(해당될 경우) 플레인 크래커 불포함	以馬鈴薯、穀類、麵粉或澱粉(取自根及塊根或莖、豆和豆莢)為主的小食, 包括各類原味及調味的小食(例如薯片、爆穀及調味薄脆餅乾), 不包括屬食物分類7.1.2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原味薄脆餅乾
	FC14.2	가공견과, 견과 표면이 입혀진 것과 견과 혼합물(예를 들어, 견과일이 혼합된 것)	加工果仁, 包括有沾裹層的果仁及果仁混合物(例如混有水果乾)
	FC14.3	생선 기반 스낵. 식품유형 9.2.6 및 하위 식품유형(해당될 경우)의 말린 생선 스낵류와 식품유형8.3.2 및 하위식품유형(해당될 경우)의 말린 육류 스낵식품	以魚為主的小食, 不包括屬食物分類9.2.6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魚乾小食及屬食物分類8.3.2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肉乾小食
	FC15	기타	雜項
	FC15.1	식품첨가물	食物添加劑
	FC15.1.1	착색료(허용된 착색료가 용액 형태일 경우)	染色料(如以准許染色料溶液的形式出現)
	FC15.1.2	허용된 감미료와 물만으로 구성된 조제물	只用准許甜味劑及水配製的食物
	FC15.1.3	Dimethylpolysiloxane	二甲基聚硅氧烷
	FC15.2	향료 및 향미 시럽	調味劑及調味糖漿
	FC15.3	효소	酶
	FC15.3.1	액상 레닛	液體凝乳酶
	FC15.3.2	고형 파파인	固體番瓜素
	FC15.3.3	수용액 파파인	水溶液番瓜素
	FC15.3.4	명시되지 않은 효소제 수용액, 고정된 효소제 수용액 포함	非指明的酶製劑的水溶液, 包括固定酶製劑的水溶液
	FC15.4	정유 및 정유 농축액 분리물	香精油及香精油濃縮物的分離物
	FC15.5	식품 표면에 흐르는 거품물질	食物面層流質泡沫物
	FC15.6	젤라틴	明膠
	FC15.7	젤라틴 캡슐	明膠製藥囊

홍콩규정 문서번호	FC 분류	홍콩의 식품유형	홍콩의 식품유형 (번체)
132BD	FC15.8	실리콘계 소포제 유탁액	矽酮抗泡沫乳狀液
	FC15.9	액상 팩틴	液體果膠
	FC15.10	부분 글리세롤 에스테르	部分丙三醇酯
132W	-	가당 연유, 가당 탈지유 및 무가당 연유	加糖煉奶、加糖淡奶、加糖脫脂煉奶、加糖離脂煉奶、不加糖煉奶及不加糖淡奶
	-	버터	牛油
	-	크림	忌廉
132AF	-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
	-	가금류의 간	家禽的肝
	-	가금류의 간과 신장	家禽的肝及腎
	-	가금류의 근육	家禽的肌肉
	-	가금류의 근육과 간	家禽的肌肉及肝
	-	가금류의 신장	家禽的腎
	-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	기름, 지방 또는 두 물질의 혼합물	任何油或脂肪或兩者的混合物
	-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	돼지, 가금류의 근육	豬及家禽的肌肉
	-	돼지, 가금류의 근육, 간 및 신장	豬及家禽的肌肉、肝及腎
	-	돼지와 가금류의 간	豬及家禽的肝
	-	돼지와 가금류의 신장	豬及家禽的腎
	-	돼지의 간	豬的肝
	-	돼지의 근육	豬的肌肉
	-	돼지의 신장	豬的腎
	-	땅콩 또는 땅콩제품	花生或花生產品
	-	모든 식용동물의 간	所有食用動物的肝
	-	모든 식용동물의 근육	所有食用動物的肌肉
	-	모든 식용동물의 근육, 간 및 신장	所有食用動物的肌肉、肝及腎
	-	모든 식용동물의 신장	所有食用動物的腎
	-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홍콩규정 문서번호	FC 분류	홍콩의 식품유형	홍콩의 식품유형 (번체)
132AF	-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	소, 돼지, 가금류의 간	牛、豬及家禽的肝
	-	소, 돼지, 가금류의 근육	牛、豬及家禽的肌肉
	-	소, 돼지, 가금류의 근육, 간 및 신장	牛、豬及家禽的肌肉、肝及腎
	-	소, 돼지, 가금류의 근육과 간	牛、豬及家禽的肌肉及肝
	-	소, 돼지, 가금류의 신장	牛、豬及家禽的腎
	-	소, 돼지, 가금류의 간과 신장	牛、豬及家禽的肝及腎
	-	소와 가금류의 간	牛及家禽的肝
	-	소와 가금류의 근육	牛及家禽的肌肉
	-	소와 가금류의 신장	牛及家禽的腎
	-	소와 돼지의 간	牛及豬的肝
	-	소와 돼지의 근육	牛及豬的肌肉
	-	소와 돼지의 신장	牛及豬的腎
	-	소의 간	牛的肝
	-	소의 신장	牛的腎
	-	우유	奶類
	-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
132V	-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固體食物(魚及魚產品)
	-	고체식품(조개류 및 조개류가공식품)	固體食物(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	곡물 및 채소	穀類及蔬菜
	-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	생선, 게살, 굴, 새우	魚、蟹肉、蠔、明蝦及小蝦
	-	육류 및 가금육류	動物肉類及家禽肉類

4 식품유형 매칭일람표

○ 식품유형 매칭일람표

- 식품유형 매칭일람표란, 조사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규정 내 분류된 식품유형을 한국의 식품유형과 매칭하여 만든 대조일람표를 말한다.
- 본 식품유형 매칭일람표에 사용된 홍콩의 식품유형은 각 규정 내 식품분류를 사용한 것으로 홍콩의 일반식품유형 분류체계로써의 대표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국가간 식품유형 및 분류가 상이하고 해당국가의 식품유형이 한국 식품유형으로 번역되어지는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또한 일관성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
- 단, 국가간 식문화, 정의 및 분류 등의 차이로 인해 매칭이 어려운 경우나, 1개의 한국 식품유형에 여러 식품유형이 매칭이 되는 경우 등은 규격외 일반가공식품으로 매칭하는 등의 부분이 있으므로 참고하여야 한다.
- 매칭일람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식품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축하고 검수 및 교차검증을 하였으나, 매칭일람표는 본 사업의 데이터 구축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한국				홍콩: 식품첨가물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홍콩 식품유형 한국어	홍콩식품유형번제
1	과자류	001-001	과자	FC5	디저트	甜點
				FC14	즉석 섭취 스낵	即食小食
				FC14.1	감자, 곡류, 밀가루 또는 전분(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기반 스낵제품. 모든 플레인 및 조미 스낵(예를 들어, 감자칩, 팝콘 및 향 첨가 크래커) 포함. 식품유형 7.1.2 및 하위식품유형(해당될 경우) 플레인 크래커 불포함	以馬鈴薯、穀類、麵粉或澱粉(取自根及塊根或莖、豆和豆莢)為主的小食, 包括各類原味及調味的小食(例如薯片、爆穀及調味薄脆餅乾), 不包括屬食物分類 7.1.2 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原味薄脆餅乾
				FC7.1.2	크래커(예를 들어, 소다 크래커, 호밀 과자). 식품유형 14.1 및 하위 식품유형의 조미 크래커(해당될 경우)는 불포함	薄脆餅乾(例如蘇打餅乾、裸麥餅乾), 不包括屬食物分類 14.1 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調味薄脆餅乾
				FC7.1.3	기타 일반 제빵제과 식품(예를 들어, 베이글, 피타, 영국식 머핀)	其他普通烘焙食品(例如比高包、比得包及英式鬆餅)
		001-002	캔디류	FC5	디저트	甜點
				FC5.2	하드 캔디, 소프트 캔디, 너겟을 포함한 디저트. 식품 유형 5.1, 5.3, 5.4 및 하위 식품유형의 제품(해당될 경우) 불포함	甜點, 包括硬糖、軟糖及鳥結糖, 不包括屬食物分類 5.1、5.3 及 5.4 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製品
		001-003	추잉껌	FC5.3	껌	香口膠
		001-004	빙과류	FC3	식용 가능한 빙과류, 물 기반 냉동 디저트,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샤베트)	可供食用的冰品, 包括以水為主的冷凍甜品、甜點及巧點(例如冰糕及雪葩)
2	빵 또는 떡류	002-001	빵류	FC7	제빵제과	烘焙食品
				FC7.1	단맛이 첨가되지 않은 모든 제빵제과 및 빵 제품을 포함한 빵, 일반 제빵제과 및 혼합물	麵包、普通烘焙食品及混合料, 包括各類沒有甜味的烘焙食品及以麵包製成的製品
				FC7.1.1	빵과 롤(예를 들어, 흰 빵, 곡물빵, 건포도 빵, 통밀빵, 통밀롤 및 소다 빵)	麵包及麵包捲, 例如白麵包、裸麥麵包、提子乾麵包、全麥麵包、全麥麵包捲及蘇打麵包
				FC7.1.4	빵 고물과 빵가루를 포함한 빵류 제품	麵包類製品, 包括以麵包製成的餡料及麵包糠
				FC7.2.1	케이크와 쿠키(예를 들어, 치즈케이크, 서양식 케이크, 월병, 오토밀 쿠키, 과일 소파이 및 커스터드 파이)	蛋糕、曲奇餅及批(例如乳酪蛋糕、西式蛋糕、月餅、燕麥曲奇餅、果餡批及吉士批)
				FC7.2.2	기타 정제 제빵제과 식품(예를 들어, 팬케이크, 대니시 페이스트리, 아이스크림 콘, 밀가루로 만든 디저트, 도넛, 롤, 스콘 및 머핀)	其他精製烘焙食品(例如班戟、窩芙、丹麥酥、雪糕筒、麵粉製甜點、冬甩、甜麵包捲、烤餅及鬆餅)
		002-002	떡류	FC7.1.5	찐빵(예를 들어, 만토우 및 만두)	蒸包(例如饅頭及包子)
		002-003	만두류	FC7.1.5	찐빵(예를 들어, 만토우 및 만두)	蒸包(例如饅頭及包子)
3	코코아가 공품 및 초콜릿류	003-001	코코아가 공품류	FC5.1	모조품과 초콜릿 대체품을 포함한 코코아 제품 및 초콜릿 제품	可可製品及朱古力製品, 包括仿朱古力及朱古力代替品
				FC5.1.1	코코아 혼합물(파우더) 및 코코아 덩어리/유병	可可混合物(粉)及可可塊/油餅
				FC5.1.2	코코아 혼합물(시럽)	可可混合物(糖漿)
				FC5.1.3	속재료를 포함한 코코아가기반 스프레드 (예를 들어, 코코아 버터)	以可可為主的塗醬, 包括餡料(例如可可脂)
				FC5.1.4	초콜릿을 입힌 견과류 및 과일을 포함한 코코아 및 초콜릿 제품	可可及朱古力製品, 包括外加朱古力的果仁及水果
				FC5	디저트	甜點
		003-002	초콜릿류	FC5	디저트	甜點
				FC5.1	모조품과 초콜릿 대체품을 포함한 코코아 제품 및 초콜릿 제품	可可製品及朱古力製品, 包括仿朱古力及朱古力代替品

한국				홍콩: 식품첨가물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홍콩 식품유형 한국어	홍콩식품유형번제
				FC5.1.1	코코아 혼합물(파우더) 및 코코아 덩어리/유병	可可混合物(粉)及可可塊/油餅
				FC5.1.2	코코아 혼합물(시럽)	可可混合物(糖漿)
				FC5.1.3	속재료를 포함한 코코아가반 스프레드 (예를 들어, 코코아 버터)	以可可為主的塗醬, 包括餡料(例如可可脂)
				FC5.1.4	초콜릿을 입힌 견과류 및 과일을 포함한 코코아 및 초콜릿 제품	可可及朱古力製品, 包括外加朱古力的果仁及水果
				FC5.1.4.1	화이트 초콜릿	白朱古力
				FC5.1.4.2	초콜릿을 입힌 마시멜로	外加朱古力的棉花糖
				FC5.2	하드 캔디, 소프트 캔디, 너겟을 포함한 디저트. 식품 유형 5.1, 5.3, 5.4 및 하위 식품유형의 제품(해당될 경우) 불포함	甜點, 包括硬糖、軟糖及鳥結糖, 不包括屬食物分類5.1、5.3及5.4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製品
4	잼류	004-001	잼	FC4.6	잼, 젤리포, 감귤잼	果醬、果凍、柑橘果醬
				FC4.7	과일 기반 스프레드(예를 들어, 애플 버터, 레몬 커드 및 처트니). 식품유형 4.6 및 하위 식품유형 제품(해당될 경우) 제외	以水果為主的塗醬(例如蘋果醬、檸檬酸及酸辣調味果醬), 不包括屬食物分類4.6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製品
				FC4.19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 꼬투리, 알로에 포함), 해조류, 견과류와 씨앗류 위에 및 스트레드(예를 들어, 토마토 푸레, 땅콩 버터, 캐슈 버터)	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海藻, 及果仁和種子泥及塗醬(例如番茄泥、花生醬及腰果醬)
		004-002	마말레이드	FC4.6	잼, 젤리포, 감귤잼	果醬、果凍、柑橘果醬
		004-003	기타 잼류	FC4.6	잼, 젤리포, 감귤잼	果醬、果凍、柑橘果醬
5	설탕	005-001	백설탕	FC11.1	백설탕, 무수 포도당, 함수 포도당, 과당	白糖、無水葡萄糖、一水葡萄糖、果糖
				FC11.2	분말 설탕 및 분말 덱스트로오스	糖粉、葡萄糖粉
				FC11.3	고운 백설탕, 고운 황설탕, 포도당 시럽, 건포도당 시럽, 비정제 사탕수수 설탕	綿白糖、紅綿糖、葡萄糖漿、葡萄糖乾漿、原蔗糖
				FC11.4	원당 또는 압착 방식 백설탕	耕地白糖或壓榨法白糖
		005-002	갈색설탕	FC11.3	고운 백설탕, 고운 황설탕, 포도당 시럽, 건포도당 시럽, 비정제 사탕수수 설탕	綿白糖、紅綿糖、葡萄糖漿、葡萄糖乾漿、原蔗糖
				FC11.5	갈색 설탕 (예를 들어, 갈색 자당). 식품유형 11.3 및 하위식품유형(해당될 경우) 제품	紅糖(例如紅蔗糖), 不包括屬食物分類11.3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製品
		005-003	기타설탕	FC11	유당과 꿀을 제외한 당류 및 테이블 감미료	糖及餐桌甜味劑, 不包括乳糖及蜂蜜
				FC11.6	당밀을 포함한 설탕 용액 및 시럽 및 (부분)전화당. 식품유형 11.3 및 하위식품유형(해당될 경우)제품 불포함	糖液及糖漿, 以及(部分)轉化糖, 包括糖蜜, 但不包括屬食物分類11.3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製品
				FC11.7	기타 당 및 시럽(예를 들어, 자일로오스, 메이플 시럽 및 장식용 설탕)	其他糖及糖漿(例如木糖、楓糖漿及用作食物面層裝飾的糖)
6	포도당	006-001	액상포도당	FC11.3	고운 백설탕, 고운 황설탕, 포도당 시럽, 건포도당 시럽, 비정제 사탕수수 설탕	綿白糖、紅綿糖、葡萄糖漿、葡萄糖乾漿、原蔗糖
				FC11.3.2	캔디류 제조에 사용되는 포도당 시럽	用於製造糖果製品的葡萄糖漿
		006-002	분말-결정 포도당	FC11.1	백설탕, 무수 포도당, 함수 포도당, 과당	白糖、無水葡萄糖、一水葡萄糖、果糖
				FC11.2	분말 설탕 및 분말 덱스트로오스	糖粉、葡萄糖粉
				FC11.3.1	캔디류 제조에 사용되는 건조된 포도당 시럽	用於製造糖果製品的葡萄糖乾漿

한국				홍콩: 식품첨가물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홍콩 식품유형 한국어	홍콩식품유형번체
7	과당	007-001	액상과당	FC11.6	당밀을 포함한 설탕 용액 및 시럽 및 (부분)전화당. 식품유형 11.3 및 하위식품유형(해당될 경우)제품 불포함	糖液及糖漿, 以及(部分)轉化糖, 包括糖蜜, 但不包括屬食物分類11.3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製品
		007-002	결정과당	FC11.1	백설탕, 무수 포도당, 함수 포도당, 과당	白糖、無水葡萄糖、一水葡萄糖、果糖
		007-003	기타과당	FC11.6	당밀을 포함한 설탕 용액 및 시럽 및 (부분)전화당. 식품유형 11.3 및 하위식품유형(해당될 경우)제품 불포함	糖液及糖漿, 以及(部分)轉化糖, 包括糖蜜, 但不包括屬食物分類11.3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製品
8	엿류	008-001	물엿	FC11.6	당밀을 포함한 설탕 용액 및 시럽 및 (부분)전화당. 식품유형 11.3 및 하위식품유형(해당될 경우)제품 불포함	糖液及糖漿, 以及(部分)轉化糖, 包括糖蜜, 但不包括屬食物分類11.3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製品
		008-002	기타엿	FC11.6	당밀을 포함한 설탕 용액 및 시럽 및 (부분)전화당. 식품유형 11.3 및 하위식품유형(해당될 경우)제품 불포함	糖液及糖漿, 以及(部分)轉化糖, 包括糖蜜, 但不包括屬食物分類11.3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製品
		008-003	텍스트린	FC11.6	당밀을 포함한 설탕 용액 및 시럽 및 (부분)전화당. 식품유형 11.3 및 하위식품유형(해당될 경우)제품 불포함	糖液及糖漿, 以及(部分)轉化糖, 包括糖蜜, 但不包括屬食物分類11.3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製品
9	당시럽류	009-001	당시럽류	FC11.3	고운 백설탕, 고운 황설탕, 포도당 시럽, 건포도당 시럽, 비정제 사탕수수 설탕	綿白糖、紅綿糖、葡萄糖漿、葡萄糖乾漿、原蔗糖
10	올리고당류	010-001	프락토올리고당	FC11.8	고강도 감미료 함유제품을 포함한 테이블 감미료 (예를 들어, 아세설팜 칼륨 및 솔비톨)	餐桌甜味劑, 包括含有高甜度甜味劑(例如醋磺內酯鉀及山梨醇)者
		010-002	이소말토올리고당	FC11.8	고강도 감미료 함유제품을 포함한 테이블 감미료 (예를 들어, 아세설팜 칼륨 및 솔비톨)	餐桌甜味劑, 包括含有高甜度甜味劑(例如醋磺內酯鉀及山梨醇)者
		010-003	갈락토올리고당	FC11.8	고강도 감미료 함유제품을 포함한 테이블 감미료 (예를 들어, 아세설팜 칼륨 및 솔비톨)	餐桌甜味劑, 包括含有高甜度甜味劑(例如醋磺內酯鉀及山梨醇)者
		010-004	말토올리고당	FC11.8	고강도 감미료 함유제품을 포함한 테이블 감미료 (예를 들어, 아세설팜 칼륨 및 솔비톨)	餐桌甜味劑, 包括含有高甜度甜味劑(例如醋磺內酯鉀及山梨醇)者
		010-005	자일로올리고당	FC11.8	고강도 감미료 함유제품을 포함한 테이블 감미료 (예를 들어, 아세설팜 칼륨 및 솔비톨)	餐桌甜味劑, 包括含有高甜度甜味劑(例如醋磺內酯鉀及山梨醇)者
		010-006	젠티오올리고당	FC11.8	고강도 감미료 함유제품을 포함한 테이블 감미료 (예를 들어, 아세설팜 칼륨 및 솔비톨)	餐桌甜味劑, 包括含有高甜度甜味劑(例如醋磺內酯鉀及山梨醇)者
		010-007	기타올리고당	FC11.8	고강도 감미료 함유제품을 포함한 테이블 감미료 (예를 들어, 아세설팜 칼륨 및 솔비톨)	餐桌甜味劑, 包括含有高甜度甜味劑(例如醋磺內酯鉀及山梨醇)者
11	식육 또는 알함유가공품	011-001	식육 또는 알제품	FC8	가금류와 야생고리를 포함한 육류와 육류제품	肉及肉製品, 包括家禽及野味
				FC8.1	분쇄한 신선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新鮮禽畜及野味碎肉
		011-002	식육함유가공품(햄, 베이컨)	FC8.2	전체 또는 절단된 부위가 가공된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原隻或切件的加工禽畜及野味肉製品
				FC8.3	가공된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분쇄제품	加工禽畜及野味碎肉製品
		011-003	알함유가공품(계란, 새알가공품)	FC10	난제품	蛋製品
				FC10.2	탈수 및/또는 열 응고(저온 살균) 난제품	脫水及 / 或以熱凝固(經巴士德消毒法消毒)的蛋製品
				FC10.3	달걀 기반 디저트(예를 들어, 예그 커스타드 및 고급 제빵제과용 속재료)	以蛋為主的甜品(例如蛋吉士及供精製烘焙食品用的吉士餡料)

한국				홍콩: 식품첨가물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홍콩 식품유형 한국어	홍콩식품유형번체
12	어육가공품	012-001	어묵	FC9.2.3	익힌(튀김 제외) 생선 및 어육제품. 익힌 연육, 익힌 어묵 페이스트, 익힌 어란 포함	煮熟(不包括煎炸)的魚及魚製品, 包括熟魚漿、熟魚糊及熟魚子
		012-002	어육소시지	FC9.2.3	익힌(튀김 제외) 생선 및 어육제품. 익힌 연육, 익힌 어묵 페이스트, 익힌 어란 포함	煮熟(不包括煎炸)的魚及魚製品, 包括熟魚漿、熟魚糊及熟魚子
		012-003	어육반제품	FC9.2.1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을 포함한 냉동(신선 및 반숙 포함) 생선, 생선 필렛, 어육 제품(예를 들어, 냉동 재첩, 냉동 대구포, 냉동 게, 냉동 새우, 냉동 어란, 냉동 연육)	冷凍(包括新鮮及半熟)的魚、魚柳及魚製品, 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例如冷凍的蜆、冷凍的鱈魚柳、冷凍的蟹、冷凍的鰭魚、冷凍的龍蝦、冷凍的蝦、冷凍的魚子及冷凍的魚漿)
		012-004	어육살	FC9.2.1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을 포함한 냉동(신선 및 반숙 포함) 생선, 생선 필렛, 어육 제품(예를 들어, 냉동 재첩, 냉동 대구포, 냉동 게, 냉동 새우, 냉동 어란, 냉동 연육)	冷凍(包括新鮮及半熟)的魚、魚柳及魚製品, 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例如冷凍的蜆、冷凍的鱈魚柳、冷凍的蟹、冷凍的鰭魚、冷凍的龍蝦、冷凍的蝦、冷凍的魚子及冷凍的魚漿)
		012-005	연육	FC9.2.1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을 포함한 냉동(신선 및 반숙 포함) 생선, 생선 필렛, 어육 제품(예를 들어, 냉동 재첩, 냉동 대구포, 냉동 게, 냉동 새우, 냉동 어란, 냉동 연육)	冷凍(包括新鮮及半熟)的魚、魚柳及魚製品, 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例如冷凍的蜆、冷凍的鱈魚柳、冷凍的蟹、冷凍的鰭魚、冷凍的龍蝦、冷凍的蝦、冷凍的魚子及冷凍的魚漿)
					익힌(튀김 제외) 생선 및 어육제품. 익힌 연육, 익힌 어묵 페이스트, 익힌 어란 포함	煮熟(不包括煎炸)的魚及魚製品, 包括熟魚漿、熟魚糊及熟魚子
					FC9.2.3.1 익힌(튀김 제외) 어란 및 어묵	煮熟(不包括煎炸)的魚丸及魚餅
					FC9.2.6.2 발효 어육 제품	發酵魚製品
					FC9.2.6.3 염장 어육	鹹魚
					FC9.3.3 염장 및/ 또는 보존료로 처리한 준 보존 연어 대체품, 캐비어 및 기타 어란 제품	鹽醃及 / 或以防腐劑處理的半防腐三文魚代替品、魚子醬及其他魚子製品
		012-006	기타 어육가공품	FC9.2.3	익힌(튀김 제외) 생선 및 어육제품. 익힌 연육, 익힌 어묵 페이스트, 익힌 어란 포함	煮熟(不包括煎炸)的魚及魚製品, 包括熟魚漿、熟魚糊及熟魚子
				FC9.2.3.1	익힌(튀김 제외) 어란 및 어묵	煮熟(不包括煎炸)的魚丸及魚餅
				FC9.2.6.2	발효 어육 제품	發酵魚製品
				FC9.2.6.3	염장 어육	鹹魚
				FC9.3.3	염장 및/ 또는 보존료로 처리한 준 보존 연어 대체품, 캐비어 및 기타 어란 제품	鹽醃及 / 或以防腐劑處理的半防腐三文魚代替品、魚子醬及其他魚子製品
13	두부류 또는 묵류	013-001	두부			
		013-002	전두부			
		013-003	유바			
		013-004	가공두부			
		013-005	묵류			
14	식용유지류	014-001	콩기름 (대두유)	FC2.1.2	식물성 기름 및 지방	植物油脂
		014-002	옥수수기름(옥배유)	FC2.1.2	식물성 기름 및 지방	植物油脂
		014-003	채종유 (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FC2.1.2	식물성 기름 및 지방	植物油脂
		014-004	미강유 (현미유)	FC2.1.2	식물성 기름 및 지방	植物油脂
		014-005	참기름	FC2.1.2	식물성 기름 및 지방	植物油脂
		014-006	들기름	FC2.1.2	식물성 기름 및 지방	植物油脂
		014-007	호화유 (시플라워유 또는 잇꽃유)	FC2.1.2	식물성 기름 및 지방	植物油脂

한국				홍콩: 식품첨가물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홍콩 식품유형 한국어	홍콩식품유형번체
		014-008	해바라기유	FC2.1.2	식물성 기름 및 지방	植物油脂
		014-009	목화씨기름(면실유)	FC2.1.2	식물성 기름 및 지방	植物油脂
		014-010	땅콩기름(낙화생유)	FC2.1.2	식물성 기름 및 지방	植物油脂
		014-011	올리브유	FC2.1.2	식물성 기름 및 지방	植物油脂
		014-012	팜유류	FC2.1.2	식물성 기름 및 지방	植物油脂
		014-013	야자유	FC2.1.2	식물성 기름 및 지방	植物油脂
		014-014	혼합식용유	FC2.1.2	식물성 기름 및 지방	植物油脂
		014-015	가공유지	FC2.1.2	식물성 기름 및 지방	植物油脂
		014-016	쇼트닝	FC2.2.1.1	마가린 및 유사제품	人造牛油及類似製品
		014-017	마가린류	FC2.2.1.1	마가린 및 유사제품	人造牛油及類似製品
		014-018	고추씨기름	FC2.1.2	식물성 기름 및 지방	植物油脂
		014-019	향미유	FC2.1	무수분 지방 및 기름	基本不含水的脂肪及油
		014-020	기타 식용유지	FC2.1	무수분 지방 및 기름	基本不含水的脂肪及油
				FC2.2	WO에멀전	主要為油中水類別的脂肪乳狀液
				FC2.3	수중유적형 지방 유탁액 (OW에멀전) (지방 유탁액 위주의 혼합물 및 조미제품 포함; 지방성분이 유지제품과 식품유형2.4 및 하위유형 (해당될 경우)에서 추출된 디저트제품 불포함)	主要為水中油類別的脂肪乳狀液, 包括以脂肪乳狀液為主的混合及 / 或調味製品, 不包括脂肪成分來自奶粉的製品及屬食物分類2.4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甜品製品
15	면류	015-001	국수	FC6.5	사전에 조리된 면 제품 및 유사제품	預煮的麵食製品及麵條, 以及類似製品
		015-002	냉면	FC6.5	사전에 조리된 면 제품 및 유사제품	預煮的麵食製品及麵條, 以及類似製品
		015-003	당면	FC6.5	사전에 조리된 면 제품 및 유사제품	預煮的麵食製品及麵條, 以及類似製品
		015-004	유당면류	FC6.5.1	인스턴트 면류	即食麵
		015-005	파스타류	FC6.5	사전에 조리된 면 제품 및 유사제품	預煮的麵食製品及麵條, 以及類似製品
		015-006	기타 면류	FC6.5	사전에 조리된 면 제품 및 유사제품	預煮的麵食製品及麵條, 以及類似製品
16	다류	016-001	침출차	FC13.10	커피, 커피대체품, 차, 허브차, 기타 곡류 및 곡물 뜨거운 음료. 커피제품 제조용 커피콩 포함. 코코아 불포함	咖啡、咖啡代替品、茶、香草茶, 以及其他穀類及穀物熱飲料, 包括用於製造咖啡製品的已處理咖啡豆, 不包括可可
		016-002	엑상차	FC13.9	물 기반 조미음료. 탄산, 비탄산, 농축물, "스포츠", "에너지" 또는 "전해질" 음료, 과일 음료, 즉석 섭취 커피 및 차류음료, 그리고 허브 기반 음료(예를 들어, 아이스티, 과일향 아이스티, 냉동 캔 카푸치노 음료)	以水為主的調味飲料, 包括碳酸及非碳酸飲料、濃縮物、“運動”、“能量”或“電解質”飲料、顆粒飲料、即飲咖啡及茶類飲料, 及以香草為主的飲料(例如凍茶、果味凍茶及冰凍的罐裝泡沫咖啡飲料)
		016-003	고형차	FC13.10	커피, 커피대체품, 차, 허브차, 기타 곡류 및 곡물 뜨거운 음료. 커피제품 제조용 커피콩 포함. 코코아 불포함	咖啡、咖啡代替品、茶、香草茶, 以及其他穀類及穀物熱飲料, 包括用於製造咖啡製品的已處理咖啡豆, 不包括可可
17	커피	017-001	커피	FC13.9	물 기반 조미음료. 탄산, 비탄산, 농축물, "스포츠", "에너지" 또는 "전해질" 음료, 과일 음료, 즉석 섭취 커피 및 차류음료, 그리고 허브 기반 음료(예를 들어, 아이스티, 과일향 아이스티, 냉동 캔 카푸치노 음료)	以水為主的調味飲料, 包括碳酸及非碳酸飲料、濃縮物、“運動”、“能量”或“電解質”飲料、顆粒飲料、即飲咖啡及茶類飲料, 及以香草為主的飲料(例如凍茶、果味凍茶及冰凍的罐裝泡沫咖啡飲料)

한국				홍콩: 식품첨가물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홍콩 식품유형 한국어	홍콩식품유형번체
18	음료류	018-001	과일·채소 음료(농축과·채즙, 과채주스, 과채음료)	FC13.10	커피, 커피대체품, 차, 허브차, 기타 곡류 및 곡물 뜨거운 음료. 커피제품 제조용 커피콩 포함. 코코아 불포함	咖啡、咖啡代替品、茶、香草茶, 以及其他穀類及穀物熱飲料, 包括用於製造咖啡製品的已處理咖啡豆, 不包括可可
				FC13.10.1	고형 커피 추출물	固體咖啡精
		018-001	과일·채소 음료(농축과·채즙, 과채주스, 과채음료)	FC13.1	과일 주스	果汁
				FC13.1.1	포도 주스 제품 (성찬용 비발효)	葡萄汁製品(未經發酵及擬於聖餐時使用)
				FC13.2	채소 주스	蔬菜汁
				FC13.3	농축 과일주스	濃縮果汁
				FC13.4	농축 채소주스	濃縮蔬菜汁
				FC13.5	과일 넥타	果蜜飲料
				FC13.6	채소 넥타	蔬菜蜜飲料
				FC13.7	과일 넥타 농축액	濃縮果蜜飲料
				FC13.8	채소 넥타 농축액	濃縮蔬菜蜜飲料
				FC13.9.1	과즙 기반 음료 및 무당도 생강음료	以果汁為主的飲料和無甜度薑汁飲料
				FC13.9.2	10리터 당 2.3 kg 이상의 포도당 시럽이 함유된 포도당 음료	每10公升含有不少於2.3公斤葡萄糖漿的葡萄糖飲料
		018-002	탄산음료류(탄산 음료, 탄산수)	FC13.9	물 기반 조미음료. 탄산, 비탄산, 농축물, "스포츠", "에너지" 또는 "전해질"음료, 과일 음료, 즉석 섭취 커피 및 차류음료, 그리고 허브 기반 음료(예를 들어, 아이스티, 과일향 아이스티, 냉동 캔 카푸치노 음료)	以水為主的調味飲料, 包括碳酸及非碳酸飲料、濃縮物、“運動”、“能量”或“電解質”飲料、顆粒飲料、即飲咖啡及茶類飲料, 及以香草為主的飲料(例如凍茶、果味凍茶及冰凍的罐裝泡沫咖啡飲料)
		018-003	두유류 (두유액, 두유, 분말 두유, 기타 두유)	FC12.15	대두단백질 분말과 혼합물(한원용 (예를 들어, 대두 음료 및 수제 두부))	大豆蛋白粉及混合物(供再造成(例如用作調製大豆飲料及自家製軟豆腐))
		018-004	발효음료류(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FC13.9	물 기반 조미음료. 탄산, 비탄산, 농축물, "스포츠", "에너지" 또는 "전해질"음료, 과일 음료, 즉석 섭취 커피 및 차류음료, 그리고 허브 기반 음료(예를 들어, 아이스티, 과일향 아이스티, 냉동 캔 카푸치노 음료)	以水為主的調味飲料, 包括碳酸及非碳酸飲料、濃縮物、“運動”、“能量”或“電解質”飲料、顆粒飲料、即飲咖啡及茶類飲料, 及以香草為主的飲料(例如凍茶、果味凍茶及冰凍的罐裝泡沫咖啡飲料)
		018-005	인삼·홍삼 음료	FC13.9	물 기반 조미음료. 탄산, 비탄산, 농축물, "스포츠", "에너지" 또는 "전해질"음료, 과일 음료, 즉석 섭취 커피 및 차류음료, 그리고 허브 기반 음료(예를 들어, 아이스티, 과일향 아이스티, 냉동 캔 카푸치노 음료)	以水為主的調味飲料, 包括碳酸及非碳酸飲料、濃縮物、“運動”、“能量”或“電解質”飲料、顆粒飲料、即飲咖啡及茶類飲料, 及以香草為主的飲料(例如凍茶、果味凍茶及冰凍的罐裝泡沫咖啡飲料)
		018-006	기타음료 (혼합음료, 음료 베이스)	FC13.9	물 기반 조미음료. 탄산, 비탄산, 농축물, "스포츠", "에너지" 또는 "전해질"음료, 과일 음료, 즉석 섭취 커피 및 차류음료, 그리고 허브 기반 음료(예를 들어, 아이스티, 과일향 아이스티, 냉동 캔 카푸치노 음료)	以水為主的調味飲料, 包括碳酸及非碳酸飲料、濃縮物、“運動”、“能量”或“電解質”飲料、顆粒飲料、即飲咖啡及茶類飲料, 及以香草為主的飲料(例如凍茶、果味凍茶及冰凍的罐裝泡沫咖啡飲料)
				FC13.9.3	물 기반 향 첨가 음료 농축액(액상 또는 고형)	供調製以水為主調味飲料用的濃縮物(液體或固體)
19	특수용도 식품	019-001	영아용 조제식			

한국				홍콩: 식품첨가물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홍콩 식품유형 한국어	홍콩식품유형번체
		019-002	성장기용 조제식			
		019-003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019-004	기타 영·유아식			
		019-005	특수의료 용도등식품(당뇨/신장질환 환자용식품 등)			
		019-006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FC4.19.1	저열량 제품	經加工減低能量的製品
		019-007	임산·수유부용 식품			
20	장류	020-001	메주	FC12.14	발효 간장(예를 들어, 더우츠)	發酵大豆(例如豆豉)
		020-002	한식간장	FC12.13	간장	豉油
		020-004	산분해간장	FC12.13	간장	豉油
		020-005	효소분해간장	FC12.13	간장	豉油
		020-006	혼합간장	FC12.13	간장	豉油
		020-007	한식된장	FC12.14	발효 간장(예를 들어, 더우츠)	發酵大豆(例如豆豉)
		020-008	된장	FC12.14	발효 간장(예를 들어, 더우츠)	發酵大豆(例如豆豉)
		020-009	조미된장	FC12.14	발효 간장(예를 들어, 더우츠)	發酵大豆(例如豆豉)
		020-010	고추장	FC12.1	허브 및 향신료 (예를 들어, 바질, 오레가노, 칠리 페이스트, 카레 페이스트)	香草及香料(例如羅勒、皮薩草、辣椒醬及咖喱醬)
		020-011	조미고추장	FC12.1	허브 및 향신료 (예를 들어, 바질, 오레가노, 칠리 페이스트, 카레 페이스트)	香草及香料(例如羅勒、皮薩草、辣椒醬及咖喱醬)
		020-012	춘장	FC12.14	발효 간장(예를 들어, 더우츠)	發酵大豆(例如豆豉)
		020-013	청국장	FC12.14	발효 간장(예를 들어, 더우츠)	發酵大豆(例如豆豉)
		020-014	혼합장	FC12.14	발효 간장(예를 들어, 더우츠)	發酵大豆(例如豆豉)
		020-015	기타장류	FC12.8	물, 코코넛 밀크 및 우유 기반 소스를 포함한 비유화 소스(예를 들어, 바비큐 소스, 케첩, 치즈 소스, 크림 소스, 우스터 소스, 브라운 그라비, 칠리 소스)	非乳化醬汁, 包括以水、椰奶及奶為主的醬汁(例如燒烤醬汁、茄汁、乳酪醬汁、忌廉醬汁、喼汁、濃肉汁及辣椒醬)
				FC12.10	생선 소스와 굴 소스	魚露及蠔油
				FC12.13.1	비발효 간장	非發酵豉油
21	조미식품	021-001	식초(발효식초, 합성식초, 기타 식초)	FC12.3	사과 식초, 와인 식초, 맥아 식초, 알코올 식초, 곡물 식초, 건포도 식초 및 과일(와인) 식초를 포함한 식초	醋, 包括蘋果醋、酒醋、麥芽醋、酒精醋、穀醋、葡萄乾醋及果(酒)醋
		021-002	소스류	FC12.4	머스타드	芥末
				FC12.4.1	디종 머스타드	第戎芥末

한국				홍콩: 식품첨가물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홍콩 식품유형 한국어	홍콩식품유형번체
				FC12.8	물, 코코넛 밀크 및 우유 기반 소스를 포함한 비유화 소스(예를 들어, 바비큐 소스, 케첩, 치즈 소스, 크림 소스, 우스터 소스, 브라운 그라비, 칠리 소스)	非乳化醬汁, 包括以水、椰奶及奶為主的醬汁(例如燒烤醬汁、茄汁、乳酪醬汁、忌廉醬汁、鴨汁、濃肉汁及辣椒醬)
				FC12.9	소스와 고기즙 제조용 혼합물(예를 들어, 치즈 소스, 네덜란드 소스 및 샐러드 드레싱 제조용 혼합물)	供調製醬汁及肉汁用的混合料(例如用於調製乳酪醬、荷蘭醬及沙律醬的混合料)
				FC15.2	향료 및 향미 시럽	調味劑及調味糖漿
		021-003	토마토케첩	FC12.8	물, 코코넛 밀크 및 우유 기반 소스를 포함한 비유화 소스(예를 들어, 바비큐 소스, 케첩, 치즈 소스, 크림 소스, 우스터 소스, 브라운 그라비, 칠리 소스)	非乳化醬汁, 包括以水、椰奶及奶為主的醬汁(例如燒烤醬汁、茄汁、乳酪醬汁、忌廉醬汁、鴨汁、濃肉汁及辣椒醬)
		021-004	카레(카레분, 카레)	FC12.1	허브 및 향신료 (예를 들어, 바질, 오레가노, 칠리 페이스트, 카레 페이스트)	香草及香料(例如羅勒、皮薩草、辣椒醬及咖喱醬)
				FC12.1.1	카레 페이스트	咖喱醬
		021-005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FC12.1	허브 및 향신료 (예를 들어, 바질, 오레가노, 칠리 페이스트, 카레 페이스트)	香草及香料(例如羅勒、皮薩草、辣椒醬及咖喱醬)
		021-006	향신료가 공품(천연향신료, 향신료조제품)	FC12	향신료, 양념, 수프, 소스, 샐러드, 효모 및 유사제품, 간장, 메주, 대두 단백질 분말 및 혼합물	香料、佐料、湯、醬料、沙律、酵母及類似製品、豉油、發酵大豆, 以及大豆蛋白粉及其混合物
				FC12.1	허브 및 향신료 (예를 들어, 바질, 오레가노, 칠리 페이스트, 카레 페이스트)	香草及香料(例如羅勒、皮薩草、辣椒醬及咖喱醬)
		021-007	복합조미식품	FC11	유당과 꿀을 제외한 당류 및 테이블 감미료	糖及餐桌甜味劑, 不包括乳糖及蜂蜜
				FC11.8	고강도 감미료 함유제품을 포함한 테이블 감미료 (예를 들어, 아세설팜 칼륨 및 솔비톨)	餐桌甜味劑, 包括含有高甜度甜味劑(例如醋磺內酯鉀及山梨醇)者
				FC12	향신료, 양념, 수프, 소스, 샐러드, 효모 및 유사제품, 간장, 메주, 대두 단백질 분말 및 혼합물	香料、佐料、湯、醬料、沙律、酵母及類似製品、豉油、發酵大豆, 以及大豆蛋白粉及其混合物
				FC12.2	양념 (예를 들어, 연육제, 양파 소금, 마늘 소금). 양념 소스(예를 들어, 케첩, 마요네즈, 머스타드) 불포함	佐料(例如鬆肉粉、洋蔥鹽及蒜鹽), 不包括佐料醬料(例如茄汁、蛋黃醬及芥末)
				FC12.6	수프와 죽용 혼합물(예를 들어, 부용 분말 및 각 제품, 분말 농축 수프 및 스톱 분말)	供調製湯及肉湯用的混合料(例如肉汁清湯粉及塊、粉狀及濃縮湯, 以及高湯塊及粉)
	22	드레싱류	드레싱	FC12	향신료, 양념, 수프, 소스, 샐러드, 효모 및 유사제품, 간장, 메주, 대두 단백질 분말 및 혼합물	香料、佐料、湯、醬料、沙律、酵母及類似製品、豉油、發酵大豆, 以及大豆蛋白粉及其混合物
				FC12.4.1	디종 머스타드	第戎芥末
				FC12.7	유화 소스(예를 들어, 마요네즈 & 샐러드 드레싱)	乳化醬汁(例如蛋黃醬及沙律醬)
				FC12.8	물, 코코넛 밀크 및 우유 기반 소스를 포함한 비유화 소스(예를 들어, 바비큐 소스, 케첩, 치즈 소스, 크림 소스, 우스터 소스, 브라운 그라비, 칠리 소스)	非乳化醬汁, 包括以水、椰奶及奶為主的醬汁(例如燒烤醬汁、茄汁、乳酪醬汁、忌廉醬汁、鴨汁、濃肉汁及辣椒醬)
				FC12.9	소스와 고기즙 제조용 혼합물(예를 들어, 치즈 소스, 네덜란드 소스 및 샐러드 드레싱 제조용 혼합물)	供調製醬汁及肉汁用的混合料(例如用於調製乳酪醬、荷蘭醬及沙律醬的混合料)

한국				홍콩: 식품첨가물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홍콩 식품유형 한국어	홍콩식품유형번체
		022-002	마요네즈	FC12.7	유화 소스(예를 들어, 마요네즈 & 샐러드 드레싱)	乳化醬汁(例如蛋黃醬及沙律醬)
23	김치류	023-001	김치속	FC4.21	발효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및 해조류 제품. 식품 유형 12.13, 12.14 및 하위 식품유형(해당될 경우)의 발효대두제품 제외	發酵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及海藻製品, 不包括屬食物分類12.13及12.14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發酵大豆製品
		023-002	배추김치	FC4.21	발효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및 해조류 제품. 식품 유형 12.13, 12.14 및 하위 식품유형(해당될 경우)의 발효대두제품 제외	發酵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及海藻製品, 不包括屬食物分類12.13及12.14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發酵大豆製品
		023-003	기타김치	FC4.21	발효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및 해조류 제품. 식품 유형 12.13, 12.14 및 하위 식품유형(해당될 경우)의 발효대두제품 제외	發酵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及海藻製品, 不包括屬食物分類12.13及12.14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發酵大豆製品
24	젓갈류	024-001	젓갈	FC4.21	발효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및 해조류 제품. 식품 유형 12.13, 12.14 및 하위 식품유형(해당될 경우)의 발효대두제품 제외	發酵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及海藻製品, 不包括屬食物分類12.13及12.14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發酵大豆製品
		024-002	양념젓갈	FC9.4	완전 보존 처리된 생선 및 어육 제품. 연체동물, 갑각류 및 극피동물 포함	完全防腐(包括罐頭或發酵)的魚及魚製品, 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
		024-003	액젓	FC9.4	완전 보존 처리된 생선 및 어육 제품. 연체동물, 갑각류 및 극피동물 포함	完全防腐(包括罐頭或發酵)的魚及魚製品, 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
		024-004	조미액젓	FC9.4	완전 보존 처리된 생선 및 어육 제품. 연체동물, 갑각류 및 극피동물 포함	完全防腐(包括罐頭或發酵)的魚及魚製品, 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
		024-005	식해류	FC9.4	완전 보존 처리된 생선 및 어육 제품. 연체동물, 갑각류 및 극피동물 포함	完全防腐(包括罐頭或發酵)的魚及魚製品, 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
25	절임식품	025-001	절임류 (단무지 등)	FC4.4	식초, 기름 또는 소금물에 절인 과일	以醋、油或鹽水醃漬的水果
				FC4.17	식초, 기름, 소금물 또는 간장에 절인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와 해조류. 식품유형 12.13, 12.14 및 하위 식품유형(해당되는 경우)의 발효대두제품 그리고 식품유형 4.21 및 하위식품유형(해당될 경우)의 발효채소는 제외	以醋、油、鹽水或豉油醃漬的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及海藻, 不包括屬食物分類12.13和12.14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發酵大豆製品, 及屬食物分類4.21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發酵蔬菜
				FC4.17.1	절인 올리브	醃漬橄欖
				FC4.20.2	가당 견과류 페이스트	加糖的果仁糊
				FC4.21	발효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및 해조류 제품. 식품 유형 12.13, 12.14 및 하위 식품유형(해당될 경우)의 발효대두제품 제외	發酵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及海藻製品, 不包括屬食物分類12.13及12.14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發酵大豆製品
				FC9.3.1	식초, 술에 절인 및/또는 젤리로 조제한 생선 및 어육 제품.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 포함	以醋或酒浸泡及 / 或以膠凍配製的魚及魚製品, 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

한국				홍콩: 식품첨가물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홍콩 식품유형 한국어	홍콩식품유형번체
				FC9.2.6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을 포함한 훈제, 탈수, 발효 및/또는 염장 생선과 어육 제품. 연체동물, 갑각류 및 극피동물 포함	煙燻、脫水、發酵及 / 或鹽醃的魚及魚製品, 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
				FC9.3.2	절인 및/또는 소금물에 절인 생선 및 어육제품.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 포함.	醃漬及 / 或以鹽水浸泡的魚及魚製品, 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
				FC9.3.3	염장 및/또는 보존료로 처리한 준 보존 연어 대체품, 캐비어 및 기타 어란 제품	鹽醃及 / 或以防腐劑處理的半防腐三文魚代替品、魚子醬及其他魚子製品
		025-002	당절임	FC4.8	설탕 절임 과일	糖漬水果
		025-002	당절임	FC4.11	발효 과일제품	發酵水果製品
26	조림식품	026-001	농산물조림	FC4.22	익히거나 튀긴 채소 (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및 해조류	已烹煮或煎炸的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及海藻
		026-002	수산물조림	FC9.2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을 포함한 가공 어류 및 어류 제품	加工魚及魚製品, 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
		026-003	축산물조림	FC8.2.4	전체 또는 절단된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제품. 삶거나(염제 후 삶거나, 탈수 후 삶은 것 포함), 가열처리한 것(멸균포함) 그리고 캔 고기 포함.	原隻或切件, 經加熱處理的加工禽畜及野味肉製品, 包括煮熟(包括醃製並煮熟, 以及脫水並煮熟)、經加熱處理(包括消毒)及罐頭肉塊
27	주류	027-001	탁주	FC13.14	술(포도주, 사과주 및 배주 제외) (예를 들어, 미주 (일본청주), 스파클링 과일주 및 비 스파클링 과일주)	酒(葡萄酒、蘋果酒及梨酒除外)(例如米酒(日本清酒)及有氣泡及無氣泡的果酒)
		027-002	약주	FC13.14	술(포도주, 사과주 및 배주 제외) (예를 들어, 미주 (일본청주), 스파클링 과일주 및 비 스파클링 과일주)	酒(葡萄酒、蘋果酒及梨酒除外)(例如米酒(日本清酒)及有氣泡及無氣泡的果酒)
		027-003	청주	FC13.14	술(포도주, 사과주 및 배주 제외) (예를 들어, 미주 (일본청주), 스파클링 과일주 및 비 스파클링 과일주)	酒(葡萄酒、蘋果酒及梨酒除外)(例如米酒(日本清酒)及有氣泡及無氣泡的果酒)
		027-004	맥주	FC13.11	맥주와 맥아 음료	啤酒及麥芽飲料
		027-005 과실주		FC13.12	사과주 및 배주	蘋果酒及梨酒
				FC13.12.1	알코올 함량 7%보다 적은 사과주 및 배주	乙醇含量少於7%的蘋果酒及梨酒
				FC13.13	포도주	葡萄酒
				FC13.14	술(포도주, 사과주 및 배주 제외) (예를 들어, 미주 (일본청주), 스파클링 과일주 및 비 스파클링 과일주)	酒(葡萄酒、蘋果酒及梨酒除外)(例如米酒(日本清酒)及有氣泡及無氣泡的果酒)
		027-006	소주	FC13.13.1	백주	白酒
				FC13.16	알코올 함량 15%를 초과한 증류알콜음료	酒精含量超過15%的蒸餾酒精飲料
		027-007	위스키	FC13.16	알코올 함량 15%를 초과한 증류알콜음료	酒精含量超過15%的蒸餾酒精飲料
		027-008	브랜디	FC13.16	알코올 함량 15%를 초과한 증류알콜음료	酒精含量超過15%的蒸餾酒精飲料
		027-009	일반증류주	FC13.16	알코올 함량 15%를 초과한 증류알콜음료	酒精含量超過15%的蒸餾酒精飲料
		027-010	리큐르	FC13.17	향이 첨가된 알코올 음료(예를 들어, 술, 쿨러타입 알코올 음료, 저도수 청량음료)	加香味的酒精飲料(例如酒及含酒精的清涼飲料, 以及低酒精的清涼飲料)
		027-011	기타주류	FC13.15	벌꿀 술	蜂蜜酒

한국				홍콩: 식품첨가물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홍콩 식품유형 한국어	홍콩식품유형번체
				FC13.17	향이 첨가된 알코올 음료(예를 들어, 술, 쿨러타입 알코올 음료, 저도수 청량음료)	加香味的酒精飲料(例如酒及含酒精的清涼飲料, 以及低酒精的清涼飲料)
		027-012	주정	FC13.16	알코올 함량 15%를 초과한 증류알콜음료	酒精含量超過15%的蒸餾酒精飲料
28	건포류	028-001	조미건어포류	FC14.3	생선 기반 스낵. 식품유형 9.2.6 및 하위 식품유형(해당될 경우)의 말린 생선 스낵류와 식품유형8.3.2 및 하위식품유형(해당될 경우)의 말린 육류 스낵식품	以魚為主的小食, 不包括屬食物分類9.2.6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魚乾小食及屬食物分類8.3.2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肉乾小食
		028-002	건어포류	FC9.2.6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을 포함한 훈제, 탈수, 발효 및/또는 염장 생선과 어육 제품. 연체동물, 갑각류 및 극피동물 포함	煙燻、脫水、發酵及 / 或鹽醃的魚及魚製品, 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
		028-003	기타 건포류	FC9.2.6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을 포함한 훈제, 탈수, 발효 및/또는 염장 생선과 어육 제품. 연체동물, 갑각류 및 극피동물 포함	煙燻、脫水、發酵及 / 或鹽醃的魚及魚製品, 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
29	기타식품류	029-001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류(땅콩버터, 견과류가공품)	FC4.20.2	가당 견과류 페이스트	加糖的果仁糊
				FC4.15	냉동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견과류, 씨앗류	冷凍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海藻, 及果仁和種子
				FC4.16	건조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견과류, 씨앗류	脫水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海藻, 及果仁和種子
				FC4.18	캔 또는 병에 포장된(저온살균 또는 고온 멸균) 또는 살균 비닐 포장된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및 해조류	罐頭或瓶裝(經巴士德消毒法消毒或加熱消毒)或以殺菌軟袋包裝的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及海藻
				FC4.19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해조류, 견과류와 씨앗류 푸레 및 스프레드(예를 들어, 토마토 푸레, 땅콩 버터, 캐슈 버터)	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海藻, 及果仁和種子泥及塗醬(例如番茄泥、花生醬及腰果醬)
				FC5.2.1	아몬드 시럽(마지팬)	杏仁糖膏
				FC14.2	가공견과, 견과 표면이 입혀진 것과 견과 혼합물(예를 들어, 견과일이 혼합된 것)	加工果仁, 包括有沾裹層的果仁及果仁混合物(例如混有水果乾)
		029-002	캡슐류	FC15.7	젤라틴 캡슐	明膠製藥囊
		029-003	전분류	FC6.3	전분	澱粉
		029-004	과-채가공품류	FC4.1	표면 처리된 신선 과일	面層經處理的新鮮水果
				FC4.1.1	사과	蘋果
				FC4.1.2	배	梨
				FC4.1.3	감귤류	柑橘屬水果
				FC4.2	냉동 슬라이스 사과	冷凍切片蘋果
				FC4.3	건과일	水果乾
				FC4.3.1	말린 무화과	無花果乾
				FC4.3.2	말린 매실	梅脯
				FC4.3.3	말린 살구	杏脯
				FC4.3.4	건포도	葡萄乾
				FC4.3.5	말린 코코넛	椰子乾
				FC4.4	식초, 기름 또는 소금물에 절인 과일	以醋、油或鹽水醃漬的水果
				FC4.5	캔 또는 병에 담긴 과일(저온살균 또는 고온 멸균)	罐頭或瓶裝(經巴士德消毒法消毒或加熱消毒)水果

한국				홍콩: 식품첨가물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홍콩 식품유형 한국어	홍콩식품유형번체
				FC4.6	잼, 젤리포, 감귤잼	果醬、果凍、柑橘果醬
				FC4.7	과일 기반 스프레드(예를 들어, 애플 버터, 레몬 커드 및 처트니). 식품유형 4.6 및 하위 식품유형 제품(해당될 경우) 제외	以水果為主的塗醬(例如蘋果醬、檸檬酪及酸辣調味果醬), 不包括屬食物分類4.6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製品
				FC4.8	설탕 절임 과일	糖漬水果
				FC4.9	과일 조제식품, 과육, 푸레, 과일 소스, 식품표면용 과일토팡, 코코넛 밀크 및 코코넛 크림 포함	水果配製品, 包括果肉、果泥、果醬料、食物面層的水果配料、椰奶及椰漿
				FC4.10	과일 디저트, 물이 주로 들어간 과일 맛 디저트 포함. 식품유형7.2.1 및 7.2.2 그리고 그 하위식품유형(해당될 경우)의 과일 제빵제과, 식품유형3 및 그 하위식품유형(해당될 경우)의 식용가능한 과일 맛 빙과류 및 식품유형1.6및 그 하위식품유형(해당될 경우)의 과일이 함유된 유류 디저트 불포함	以水果為主的甜品, 包括以水為主的果味甜品, 不包括屬食物分類7.2.1及7.2.2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含水果精製烘焙食品、屬食物分類3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可供食用的果味冰品, 及屬食物分類1.6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含水果冷凍乳類甜品
				FC4.11	발효 과일제품	發酵水果製品
				FC4.12	가오빙(糕餅: 케이크, 과자, 빵, 떡 등) 과일 소, 식품유형4.9 및 그 하위식품유형(해당될 경우)푸레	糕餅果餡, 不包括屬食物分類4.9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果泥
				FC4.13	익힌 과일	經烹煮的水果
				FC4.14	박피, 절개 또는 채를 썬 신선 감자 또는 백색류 채소	去皮、切開或切絲的新鮮馬鈴薯及白色類蔬菜
				FC4.15	냉동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견과류, 씨앗류	冷凍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海藻, 及果仁和種子
				FC4.15.1	냉동 프렌치 프라이 감자	冷凍炸馬鈴薯條
				FC4.15.2	냉동 아보카도	冷凍牛油果
				FC4.15.3	냉동 감자 및 백색류 채소	冷凍馬鈴薯及白色類蔬菜
				FC4.16	건조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견과류, 씨앗류	脫水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海藻, 及果仁和種子
				FC4.16.1	말린 감자	脫水馬鈴薯
				FC4.16.3	즉석 섭취 형태의 탈수된(건조) 채소	即食脫水蔬菜
				FC4.17	식초, 기름, 소금물 또는 간장에 절인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와 해조류. 식품유형 12.13, 12.14 및 하위 식품유형(해당되는 경우)의 발효대두제품 그리고 식품유형 4.21및 하위식품유형(해당될 경우)의 발효채소는 제외	以醋、油、鹽水或豉油醃漬的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及海藻, 不包括屬食物分類12.13和12.14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發酵大豆製品, 及屬食物分類4.21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發酵蔬菜
				FC4.17.1	절인 올리브	醃漬橄欖
				FC4.18	캔 또는 병에 포장된(저온살균 또는 고온 멸균) 또는 살균 비닐 포장된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및 해조류	罐頭或瓶裝(經巴士德消毒法消毒或加熱消毒)或以殺菌軟袋包裝的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及海藻
				FC4.19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해조류, 견과류와 씨앗류 푸레 및 스프레드(예를 들어, 토마토 푸레, 땅콩 버터, 캐슈 버터)	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海藻, 及果仁和種子泥及塗醬(例如番茄泥、花生醬及腰果醬)
				FC4.19.2	토마토 푸레	番茄泥

한국				홍콩: 식품첨가물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홍콩 식품유형 한국어	홍콩식품유형번제
				FC4.20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해조류, 견과류와 씨앗류 과육, 페이스트 및 가공품(예를 들어, 채소 디저트와 소스, 설탕에 절인 채소), 식품 유형 4.19 및 하위식품유형 제품 제외 (해당될 경우)	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及蘆薈)、海藻、及果仁和種子肉漿、糊及配製品(例如蔬菜甜品及蔬菜醬料, 以及糖漬蔬菜), 不包括屬食物分類4.19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製品
				FC4.20.1	토마토 과육 미 토마토 페이스트	番茄肉漿及番茄糊
				FC4.20.3	고추냉이 과육	辣根肉漿
				FC4.21	발효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및 해조류 제품. 식품 유형 12.13, 12.14 및 하위 식품유형 (해당될 경우)의 발효대두제품 제외	發酵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及蘆薈)及海藻製品, 不包括屬食物分類12.13及12.14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發酵大豆製品
				FC4.22	익히거나 튀긴 채소 (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및 해조류	已烹煮或煎炸的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及蘆薈)及海藻
				FC4.22.1	익히거나 사전 포장된 사탕무 뿌리	已烹煮及預先包裝的甜菜根
		029-005	조미김			
		029-006	튀김식품			
		029-007	별꿀류			
		029-008	모조치즈	FC1.5	치즈 및 유사 제품	乳酪及類似品
				FC1.5.5	치즈 유사제품 (모조치즈, 모조치즈 혼합물 및 모조치즈 파우더 포함)	乳酪類似品, 包括仿乳酪、仿乳酪混合物及仿乳酪粉
		029-009	식물성크림	FC1.1	음료에 넣는 크림	加入飲料的奶精
					크림	忌廉
		029-010	추출가공식품류	FC15	기타	雜項
		029-011	팝콘용옥수수가공품	FC6.1	보리, 옥수수, 오토밀, 쌀, 수수, 콩, 밀을 포함한 통곡물이나 도정된 곡물	原粒穀物、碎穀物或穀物片, 包括大麥、粟米、燕麥、大米、高粱、大豆及小麥
		029-012	식염(천일염,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가공소금)	FC15	기타	雜項
		029-013	밀가루류	FC6.2	밀가루	麵粉
		029-014	찐쌀	FC6.5	사전에 조리된 면 제품 및 유사제품	預煮的麵食製品及麵條, 以及類似製品
		029-015	생식류	FC6.4	분쇄 귀리를 포함한 아침식사용 곡류식품	早餐穀類食品, 包括燕麥片
		029-016	시리얼류	FC6.4	분쇄 귀리를 포함한 아침식사용 곡류식품	早餐穀類食品, 包括燕麥片
		029-017	얼음류	FC3	식용 가능한 빙과류, 물 기반 냉동 디저트,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샤베트)	可供食用的冰品, 包括以水為主的冷凍甜品、甜點及巧點(例如冰糕及雪葩)
		029-018	죽석섭취·편의식품류	FC4.12	가오빙(糕餅: 케이크, 과자, 빵, 떡 등) 과 일 소, 식품유형4.9 및 그 하위식품유형 (해당될 경우)튀레	糕餅果餡, 不包括屬食物分類4.9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果泥
		029-019	효모식품	FC12	향신료, 양념, 수프, 소스, 샐러드, 효모 및 유사제품, 간장, 메주, 대두 단백질 분말 및 혼합물	香料、佐料、湯、醬料、沙律、酵母及類似製品、豉油、發酵大豆, 以及大豆蛋白粉及其混合物
				FC12.12	효모 및 유사 제품	酵母及類似製品
				FC15.3	효소	酶

한국				홍콩: 식품첨가물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홍콩 식품유형 한국어	홍콩식품유형번제
		029-020	버섯가공 식품	FC4.20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해조류, 견과류와 씨앗류 과육, 페이스트 및 가공품(예를 들어, 채소 디저트와 소스, 설탕에 절인 채소), 식품 유형 4.19 및 하위식품유형 제품 제외 (해당될 경우)	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及蘆薈)、海藻、及果仁和種子肉漿、糊及配製品(例如蔬菜甜品及蔬菜醬料, 以及糖漬蔬菜), 不包括屬食物分類4.19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製品
				FC4.21	발효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및 해조류 제품. 식품 유형 12.13, 12.14 및 하위 식품유형 (해당될 경우)의 발효대두제품 제외	發酵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及蘆薈)及海藻製品, 不包括屬食物分類12.13及12.14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發酵大豆製品
				FC4.22	익히거나 튀긴 채소 (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및 해조류	已烹煮或煎炸的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及蘆薈)及海藻
				FC4.15	냉동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견과류, 씨앗류	冷凍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及蘆薈)、海藻、及果仁和種子
				FC4.16	건조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견과류, 씨앗류	脫水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及蘆薈)、海藻、及果仁和種子
				FC4.18	캔 또는 병에 포장된(저온살균 또는 고온 멸균) 또는 살균 비닐 포장된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및 해조류	罐頭或瓶裝(經巴士德消毒法消毒或加熱消毒)或以殺菌軟袋包裝的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及蘆薈)及海藻
				FC4.19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해조류, 견과류와 씨앗류 푸레 및 스르페드(예를 들어, 토마토 푸레, 땅콩 버터, 캐슈 버터)	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及蘆薈)、海藻、及果仁和種子泥及塗醬(例如番茄泥、花生醬及腰果醬)
		029-021	자라가공 식품	FC8.2.4	전체 또는 절단된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제품. 삶거나(염제 후 삶거나, 탈수 후 삶은 것 포함), 가열처리한 것(멸균포함) 그리고 캔 고기 포함.	原隻或切件, 經加熱處理的加工禽畜及野味肉製品, 包括煮熟(包括醃製並煮熟, 以及脫水並煮熟)、經加熱處理(包括消毒)及罐頭肉塊
		029-023	화분가공 식품			
		029-024	로얄젤리 가공식품			
30	유가공품 (축산물 공전)	030-001	우유류	FC1	유제품 및 그 유사제품 (영아용 조제분유 및 유아용 조제분유 그리고 식품유형 2 및 그 하위식품유형 제품 제외)	乳製品及類似品, 不包括嬰兒配方粉及幼兒配方粉及屬食物分類2及其細分類的製品
		030-002	가공유류	FC1	유제품 및 그 유사제품 (영아용 조제분유 및 유아용 조제분유 그리고 식품유형 2 및 그 하위식품유형 제품 제외)	乳製品及類似品, 不包括嬰兒配方粉及幼兒配方粉及屬食物分類2及其細分類的製品
		030-003	유단백 가수분해식품	FC1.3	분유와 크림 파우더(플레인), 카세인 및 카제인염 포함	奶粉及忌廉粉(原味), 包括酪蛋白及酪蛋白酸
		030-004	발효유류	FC1.6	플레인 요거트를 제외한 유제품 기반 디저트(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푸딩, 과일 또는 조미 요거트)	以乳類為主的甜品(例如雪糕、布甸, 及水果或調味酸乳酪), 不包括原味酸乳酪
				FC1.6.2	과일 요거트	水果酸乳酪
		030-005	버터류	FC2.1.1	무수성 버터 및 유지방	無水奶油及酥油

한국				홍콩: 식품첨가물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홍콩 식품유형 한국어	홍콩식품유형번체
				FC2.2.1	지방 함유량이 최소 80% 이상인 유탁액	脂肪含量至少為80%的乳狀液
				FC2.2.1.1	마가린 및 유사제품	人造牛油及類似製品
				FC2.2.1.2	제조용 버터	供製造用的牛油
				FC2.2.1.3	버터와 마가린 혼합 제품	牛油與人造牛油混合物
				FC2.2.2	지방 함유량 80% 보다 적은 유탁액 (저지방 버터, 저지방 마가린 및 혼합 제품 포함)	脂肪含量少於80%的乳狀液, 包括減脂牛油、減脂人造牛油及兩者的混合物
					버터	牛油
		030-006	자연치즈	FC1.5	치즈 및 유사 제품	乳酪及類似品
				FC1.5.1	생치즈(예를 들어, 코티지 치즈, 크림치즈, 모짜렐라 치즈).	未成熟乳酪(例如茅屋乳酪、忌廉乳酪及水牛乳酪)
				FC1.5.2	숙성 치즈(예를 들어, 까망베르 치즈, 체다 치즈, 아이딘 치즈, 고다 치즈)	成熟乳酪(例如卡門貝爾乳酪、切達乳酪、艾登乳酪及豪達乳酪)
				FC1.5.2.1	치즈 파우더(환원용(예를 들어, 환원용 치즈소스))	乳酪粉(供再選用(例如用以再造乳酪醬))
				FC1.5.2.2	프로볼로네 치즈	波羅伏洛乳酪
				FC1.5.3	유청 치즈	乳清乳酪
				FC1.5.6	유청 단백질 치즈(예를 들어, 리코타 치즈)	乳清蛋白質乳酪(例如力可達乳酪)
		030-007	분유류	FC1.3	분유와 크림 파우더(플레인), 카세인 및 카제인염 포함	奶粉及忌廉粉(原味), 包括酪蛋白及酪蛋白酸
				FC1.3.1	자판기용 분유	供自動售賣機銷售的奶粉
				FC1.4	분유와 크림 파우더 및 유사 제품	奶粉及忌廉粉的類似品
		030-008	아이스크림류	FC1.6	플레인 요거트를 제외한 유제품 기반 디저트(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푸딩, 과일 또는 조미 요거트)	以乳類為主的甜品(例如雪糕、布甸, 及水果或調味酸乳酪), 不包括原味酸乳酪
		030-009	저지방우유류	FC1	유제품 및 그 유사제품 (영아용 조제분유 및 유아용 조제분유 그리고 식품유형 2 및 그 하위식품유형 제품 제외)	乳製品及類似品, 不包括嬰兒配方粉及幼兒配方粉及屬食物分類2及其細分類的製品
		030-010	가공치즈	FC1.5	치즈 및 유사 제품	乳酪及類似品
				FC1.5.2.1	치즈 파우더(환원용(예를 들어, 환원용 치즈소스))	乳酪粉(供再選用(例如用以再造乳酪醬))
				FC1.5.4	가공 치즈	加工乳酪
		030-011	무지방우유류	FC1	유제품 및 그 유사제품 (영아용 조제분유 및 유아용 조제분유 그리고 식품유형 2 및 그 하위식품유형 제품 제외)	乳製品及類似品, 不包括嬰兒配方粉及幼兒配方粉及屬食物分類2及其細分類的製品
		030-012	유당분해우유	FC1	유제품 및 그 유사제품 (영아용 조제분유 및 유아용 조제분유 그리고 식품유형 2 및 그 하위식품유형 제품 제외)	乳製品及類似品, 不包括嬰兒配方粉及幼兒配方粉及屬食物分類2及其細分類的製品
		030-013	산양유	FC1	유제품 및 그 유사제품 (영아용 조제분유 및 유아용 조제분유 그리고 식품유형 2 및 그 하위식품유형 제품 제외)	乳製品及類似品, 不包括嬰兒配方粉及幼兒配方粉及屬食物分類2及其細分類的製品
		030-014	버터유류	FC2.2.2	지방 함유량 80% 보다 적은 유탁액 (저지방 버터, 저지방 마가린 및 혼합 제품 포함)	脂肪含量少於80%的乳狀液, 包括減脂牛油、減脂人造牛油及兩者的混合物
		030-015	농축유류	FC1	유제품 및 그 유사제품 (영아용 조제분유 및 유아용 조제분유 그리고 식품유형 2 및 그 하위식품유형 제품 제외)	乳製品及類似品, 不包括嬰兒配方粉及幼兒配方粉及屬食物分類2及其細分類的製品
					가당 연유, 가당 탈지유 및 무가당 연유	加糖煉奶、加糖淡奶、加糖脫脂煉奶、加糖離脂煉奶、不加糖煉奶及不加糖淡奶
		030-016	유크림류	FC1.2	응고된 크림	凝塊忌廉

한국				홍콩: 식품첨가물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홍콩 식품유형 한국어	홍콩식품유형번제
				FC1.6.1	과일이 주재료인 우유 및 크림 디저트	以水果為主的奶及忌廉甜品
					크림	忌廉
		030-017	유청류	FC1.3	분유와 크림 파우더(플레인), 카세인 및 카제인염 포함	奶粉及忌廉粉(原味), 包括酪蛋白及酪蛋白酸
		030-018	유당	FC15.1	식품첨가물	食物添加劑
		030-019	조제유류	FC1	유제품 및 그 유사제품 (영아용 조제분유 및 유아용 조제분유 그리고 식품유형 2 및 그 하위식품유형 제품 제외)	乳製品及類似品, 不包括嬰兒配方粉及幼兒配方粉及屬食物分類2及其細分類的製品
		030-020	아이스크림분말류	FC1.6	플레인 요거트를 제외한 유제품 기반 디저트(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푸딩, 과일 또는 조미 요거트)	以乳類為主的甜品(例如雪糕、布甸, 及水果或調味酸乳酪), 不包括原味酸乳酪
		030-021	아이스크림믹스류	FC1.6	플레인 요거트를 제외한 유제품 기반 디저트(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푸딩, 과일 또는 조미 요거트)	以乳類為主的甜品(例如雪糕、布甸, 及水果或調味酸乳酪), 不包括原味酸乳酪
32	규격 외 일반가공 식품	032-001	곡류가공품	FC6	곡물류와 곡립,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가 주재료인 곡류식품. 식품분류 7 및 하위식품유형의 제빵제과 불포함	穀類和以穀粒、根及塊根或莖、豆和豆莢製成的穀類製品, 不包括屬食物分類7及其細分類的烘焙食品
				FC4.20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해조류, 견과류와 씨앗류 과육, 페이스트 및 가공품(예를 들어, 채소 디저트와 소스, 설탕에 절인 채소), 식품 유형 4.19 및 하위식품유형 제품 제외 (해당될 경우)	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海藻, 及果仁和種子肉漿、糊及配製品(例如蔬菜甜品及蔬菜醬料, 以及糖漬蔬菜), 不包括屬食物分類4.19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製品
				FC4.21	발효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및 해조류 제품. 식품 유형 12.13, 12.14 및 하위 식품유형 (해당될 경우)의 발효대두제품 제외	發酵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及海藻製品, 不包括屬食物分類12.13及12.14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發酵大豆製品
				FC4.22	익히거나 튀긴 채소 (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및 해조류	已烹煮或煎炸的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及海藻
				FC4.15	냉동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견과류, 씨앗류	冷凍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海藻, 及果仁和種子
				FC4.16	건조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견과류, 씨앗류	脫水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海藻, 及果仁和種子
				FC4.18	캔 또는 병에 포장된(저온살균 또는 고온 멸균) 또는 살균 비닐 포장된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및 해조류	罐頭或瓶裝(經巴士德消毒法消毒或加熱消毒)或以殺菌軟袋包裝的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及海藻
				FC4.19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해조류, 견과류와 씨앗류 푸레 및 스프레드(예를 들어, 토마토 푸레, 땅콩 버터, 캐슈 버터)	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海藻, 及果仁和種子泥及塗醬(例如番茄泥、花生醬及腰果醬)
				FC6	곡물류와 곡립,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가 주재료인 곡류식품. 식품분류 7 및 하위식품유형의 제빵제과 불포함	穀類和以穀粒、根及塊根或莖、豆和豆莢製成的穀類製品, 不包括屬食物分類7及其細分類的烘焙食品
				FC6.1	보리, 옥수수, 오토밀, 쌀, 수수, 콩, 밀을 포함한 통곡물이나 도정된 곡물	原粒穀物、碎穀物或穀物片, 包括大麥、粟米、燕麥、大米、高粱、大豆及小麥

한국				홍콩: 식품첨가물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홍콩 식품유형 한국어	홍콩식품유형번제
		032-002	두류가공품	FC6.4	분쇄 귀리를 포함한 아침식사용 곡류식품	早餐穀類食品, 包括燕麥片
				FC6.4	분쇄 귀리를 포함한 아침식사용 곡류식품	早餐穀類食品, 包括燕麥片
				FC6.6	곡물 및 전분이 주재료인 디저트(예를 들어, 쌀푸딩, 카사바 푸딩), 곡물과 전분이 주재료인 디저트 소 포함	以穀類及澱粉為主的甜品(例如大米布甸、木薯布甸), 包括以穀類或澱粉為主的甜品餡料
				FC13.10	커피, 커피대체품, 차, 허브차, 기타 곡류 및 곡물 뜨거운 음료. 커피제품 제조용 커피콩 포함. 코코아 불포함	咖啡、咖啡代替品、茶、香草茶, 以及其他穀類及穀物熱飲料, 包括用於製造咖啡製品的已處理咖啡豆, 不包括可可
				FC7.1.4	빵 고물과 빵가루를 포함한 빵류 제품	麵包類製品, 包括以麵包製成的餡料及麵包糠
				FC6	곡물류와 곡립,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가 주재료인 곡류식품. 식품분류 7 및 하위식품유형의 제빵제과 불포함	穀類和以穀粒、根及塊根或莖、豆和豆莢製成的穀類製品, 不包括屬食物分類7及其細分類的烘焙食品
				FC4.16.2	말린 콩	乾豆
				FC4.20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해조류, 견과류와 씨앗류 과육, 페이스트 및 가공품(예를 들어, 채소 디저트와 소스, 설탕에 절인 채소), 식품 유형 4.19 및 하위식품유형 제품 제외 (해당될 경우)	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海藻, 及果仁和種子肉漿、糊及配製品(例如蔬菜甜品及蔬菜醬料, 以及糖漬蔬菜), 不包括屬食物分類4.19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製品
				FC4.21	발효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및 해조류 제품. 식품 유형 12.13, 12.14 및 하위 식품유형 (해당될 경우)의 발효대두제품 제외	發酵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及海藻製品, 不包括屬食物分類12.13及12.14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發酵大豆製品
				FC4.22	익히거나 튀긴 채소 (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및 해조류	已烹煮或煎炸的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及海藻
				FC4.15	냉동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견과류, 씨앗류	冷凍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海藻, 及果仁和種子
				FC4.16	건조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견과류, 씨앗류	脫水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海藻, 及果仁和種子
				FC4.18	캔 또는 병에 포장된(저온살균 또는 고온 멸균) 또는 살균 비닐 포장된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및 해조류	罐頭或瓶裝(經巴士德消毒法消毒或加熱消毒)或以殺菌軟袋包裝的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及海藻
				FC4.19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해조류, 견과류와 씨앗류 푸레 및 스프레드(예를 들어, 토마토 푸레, 땅콩 버터, 캐슈 버터)	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海藻, 及果仁和種子泥及塗醬(例如番茄泥、花生醬及腰果醬)
				FC6	곡물류와 곡립,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가 주재료인 곡류식품. 식품분류 7 및 하위식품유형의 제빵제과 불포함	穀類和以穀粒、根及塊根或莖、豆和豆莢製成的穀類製品, 不包括屬食物分類7及其細分類的烘焙食品
				FC12	향신료, 양념, 수프, 소스, 샐러드, 효모 및 유사제품, 간장, 메주, 대두 단백질 분말 및 혼합물	香料、佐料、湯、醬料、沙律、酵母及類似製品、豉油、發酵大豆, 以及大豆蛋白粉及其混合物

한국				홍콩: 식품첨가물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홍콩 식품유형 한국어	홍콩식품유형번제
				FC12.15	대두단백질 분말과 혼합물(환원용 (예를 들어, 대두 음료 및 수제 두부))	大豆蛋白粉及混合物(供再選用(例如用作調製大豆飲料及自家製軟豆腐))
		032-003	서류가공품			
		032-004	전분가공품	FC6.6	곡물 및 전분이 주재료인 디저트(예를 들어, 쌀푸딩, 카사바 푸딩), 곡물과 전분이 주재료인 디저트 소 포함	以穀類及澱粉為主的甜品(例如大米布甸、木薯布甸), 包括以穀類或澱粉為主的甜品餡料
				FC14.1	감자, 곡류, 밀가루 또는 전분(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기반 스낵제품. 모든 플레인 및 조미 스낵(예를 들어, 감자칩, 팝콘 및 향 첨가 크래커) 포함. 식품유형 7.1.2 및 하위식품유형(해당될 경우) 플레인 크래커 불포함	以馬鈴薯、穀類、麵粉或澱粉(取自根及塊根或莖、豆和豆莢)為主的小食, 包括各類原味及調味的小食(例如薯片、爆穀及調味薄脆餅乾), 不包括屬食物分類 7.1.2 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原味薄脆餅乾
		032-005	식용유지 가공품	FC2.4	지방 위주의 디저트(식품유형 1.6 및 하위 식품유형(해당될 경우)의 유류 디저트 제품 불포함)	以脂肪為主的甜品, 不包括屬食物分類 1.6 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以乳類為主的甜品製品
		032-006	당류가공품	FC5.4	데코레이션(예를 들어, 베이커리 제품 장식, 식품표면에 쓰일 토핑(과일 외), 달콤한 소스)	裝飾材料(例如供精製烘焙食品用的裝飾材料)、食物面層配料(非水果類)及甜味醬料
		032-007	수산물가공품	FC4.20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해조류, 견과류와 씨앗류 과육, 페이스트 및 가공품(예를 들어, 채소 디저트와 소스, 설탕에 절인 채소), 식품 유형 4.19 및 하위식품유형 제품 제외 (해당될 경우)	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海藻, 及果仁和種子肉漿、糊及配製品(例如蔬菜甜品及蔬菜醬料, 以及糖漬蔬菜), 不包括屬食物分類 4.19 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製品
				FC4.15	냉동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견과류, 씨앗류	冷凍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海藻, 及果仁和種子
				FC4.16	건조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견과류, 씨앗류	脫水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海藻, 及果仁和種子
				FC4.18	캔 또는 병에 포장된(저온살균 또는 고온 멸균) 또는 살균 비닐 포장된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및 해조류	罐頭或瓶裝(經巴士德消毒法消毒或加熱消毒)或以殺菌軟袋包裝的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及海藻
				FC4.19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해조류, 견과류와 씨앗류 푸레 및 스프레드(예를 들어, 토마토 푸레, 땅콩 버터, 캐슈 버터)	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海藻, 及果仁和種子泥及塗醬(例如番茄泥、花生醬及腰果醬)
				FC4.22	익히거나 튀긴 채소 (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 알로에 포함) 및 해조류	已烹煮或煎炸的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及海藻
				FC9	어류 및 어류가공품, 수상 척추 동물(어류 및 수생포유류(예를 들어, 고래)), 수생 무척추 동물(예를 들어, 해파리), 연체 동물(예를 들어, 재첩 및 달팽이), 갑각류(예를 들어, 새우, 게, 랍스터) 그리고 극피동물(예를 들어, 성게, 해삼)포함	魚及魚製品, 包括水棲脊椎動物(魚及水棲哺乳類動物(例如鯨魚)), 水棲無脊椎動物(例如水母)、軟體類動物(例如蜆及蝸牛)、甲殼類動物(例如蝦、蟹及龍蝦)及棘皮類動物(例如海膽及海參)
				FC9.1	신선 연체류, 갑각류 및 극피동물	新鮮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
				FC9.2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을 포함한 가공 어류 및 어류 제품	加工魚及魚製品, 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

한국				홍콩: 식품첨가물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홍콩 식품유형 한국어	홍콩식품유형번체
				FC9.2.1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을 포함한 냉동(신선 및 반숙 포함) 생선, 생선 필렛, 어육 제품(예를 들어, 냉동 재첩, 냉동 대구포, 냉동 게, 냉동 새우, 냉동 어란, 냉동 연육)	冷凍(包括新鮮及半熟)的魚、魚柳及魚製品, 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例如冷凍的蜆、冷凍的鱈魚柳、冷凍的蟹、冷凍的鰭魚、冷凍的龍蝦、冷凍的蝦、冷凍的魚子及冷凍的魚漿)
				FC9.2.1.1	냉동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	冷凍的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
				FC9.2.2	냉동, 튀김옷을 입힌 또는 익히지 않은 생선, 생선 필렛 및 어육 제품. 연체동물, 갑각류 및 극피동물(예를 들어, 튀김가루가 묻은 냉동 생선 핑거 및 튀김반죽이 묻은 냉동 생선 필렛)	冷凍、沾炸漿及未經烹煮的魚、魚柳及魚製品, 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例如冷凍沾麵包糠的魚手指及冷凍沾炸漿的魚柳)
				FC9.2.3	익힌(튀김 제외) 생선 및 어육제품. 익힌 연육, 익힌 어육 페이스트, 익힌 어란 포함	煮熟(不包括煎炸)的魚及魚製品, 包括熟魚漿、熟魚糊及熟魚子
				FC9.2.4	익힌(튀김 제외)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	煮熟(不包括煎炸)的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
				FC9.2.4.1	익힌(튀김 제외)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의 어단과 어묵	煮熟(不包括煎炸)的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的丸及餅
				FC9.2.4.2	익힌(튀김 제외) 새우	煮熟(不包括煎炸)的蝦
				FC9.2.4.2.1	익힌(튀김 제외) 갈색 새우	煮熟(不包括煎炸)的褐蝦
				FC9.2.5	튀긴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 어단과 어묵	煎炸魚丸及魚餅, 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
				FC9.2.6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을 포함한 훈제, 탈수, 발효 및/또는 염장 생선과 어육 제품. 연체동물, 갑각류 및 극피동물 포함	煙燻、脫水、發酵及 / 或鹽醃的魚及魚製品, 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
				FC9.2.6.1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을 포함한 채처럼 썰린 건조 생선	乾魚絲, 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
				FC9.2.6.2	발효 어육 제품	發酵魚製品
				FC9.2.6.3	염장 어육	鹹魚
				FC9.3	준 보존 처리된 생선 및 어육 제품.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 포함	半防腐的魚及魚製品, 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
				FC9.3.1	식초, 술에 절인 및/또는 젤리로 조제한 생선 및 어육 제품.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 포함	以醋或酒浸泡及 / 或以膠凍配製的魚及魚製品, 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
				FC9.3.2	절인 및/또는 소금물에 절인 생선 및 어육제품.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 포함	醃漬及 / 或以鹽水浸泡的魚及魚製品, 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
				FC9.3.3	염장 및/또는 보존료로 처리한 준 보존 연어 대체품, 캐비어 및 기타 어란 제품	鹽醃及 / 或以防腐劑處理的半防腐三文魚代替品、魚子醬及其他魚子製品
				FC9.3.3.1	준 보존 처리된 캐비어	半防腐魚子醬
				FC9.3.4	준 보존 처리된 생선 및 어육제품. 연체동물, 갑각류 및 극피동물 포함(예를 들어, 동양식 전통 어육 페이스트). 식품유형 9.3.1부터 9.3.3 및 하위식품유형(해당될 경우)제품 불포함	半防腐的魚及魚製品, 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例如傳統的東方魚糊), 不包括屬食物分類9.3.1至9.3.3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製品
				FC9.3.4.1	새우젓	蝦醬
				FC9.4	완전 보존 처리된 생선 및 어육 제품. 연체동물, 갑각류 및 극피동물 포함	完全防腐(包括罐頭或發酵)的魚及魚製品, 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
				FC9.4.1	캔 전복	罐頭鮑魚

한국				홍콩: 식품첨가물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홍콩 식품유형 한국어	홍콩식품유형번제
		032-008	기타가공품	FC4.16.4	건호리병박 면	乾葫蘆條
				FC5	디저트	甜點
				FC5.1.5	모조 초콜릿, 초콜릿 대체품	仿朱古力製品、朱古力代替品
				FC5.4	데코레이션(예를 들어, 베이커리 제품 장식, 식품표면에 쓰일 토픽(과일 외), 달콤한 소스)	裝飾材料(例如供精製烘焙食品用的裝飾材料)、食物面層配料(非水果類)及甜味醬料
				FC7.1.6	빵 및 일반 제빵제과를 만들 때 사용되는 혼합 재료	供製作麵包及普通烘焙食品用的混合料
				FC7.2	제빵제과 식품 및 혼합물	精製烘焙食品及混合料
				FC7.2.3	정제 제빵제과용 혼합재료 (예를 들어, 케이크 혼합 재료, 밀가루 디저트 혼합 재료, 팬케이크 혼합재료, 파일 혼합재료 및 와플 혼합재료)	供製作精製烘焙食品用的混合料(例如蛋糕混合料、麵粉製甜點混合料、班戟混合料、批混合料及窩芙混合料)
				FC12.5	캔, 병입 및 냉동을 포함한 즉석 취식 수프와 죽(예를 들어, 부용, 콘소메, 물 & 크림 기반 수프, 차우더, 비스크)	即食湯及肉湯, 包括罐頭、瓶裝及冷凍製品(例如肉汁清湯、清肉湯、以水及忌廉為主的湯、周打湯及海鮮濃湯)
				FC12.6	수프와 죽용 혼합물(예를 들어, 부용 분말 및 각 제품, 분말 농축 수프 및 스톡 분말)	供調製湯及肉湯用的混合料(例如肉汁清湯粉及塊、粉狀及濃縮湯, 以及高湯塊及粉)
				FC12.11	샐러드(예를 들어, 마카로니 샐러드, 감자 샐러드) 및 샌드위치 소스. 식품유형 4.19와 5.1.3 및 하위식품유형 (해당될 경우)의 코코아 및 견과류 기반의 소스	沙律(例如通心粉沙律、馬鈴薯沙律)及三文治塗醬, 不包括屬食物分類4.19及5.1.3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以可可及果仁為主的塗醬
				FC15.1	식품첨가물	食物添加劑
				FC15.1.1	착색료(허용된 착색료가 용액 형태일 경우)	染色料(如以准許染色料溶液的形式出現)
				FC15.1.2	허용된 감미료와 물만으로 구성된 조제물	只用准許甜味劑及水配製的食物
				FC15.1.3	Dimethylpolysiloxane	二甲基聚硅氧烷
				FC15.2	향료 및 향미 시럽	調味劑及調味糖漿
				FC15.3	효소	酶
				FC15.3.1	액상 레닛	液體凝乳酶
				FC15.3.2	고형 파파인	固體番瓜素
				FC15.3.3	수용액 파파인	水溶液番瓜素
				FC15.3.4	명시되지 않은 효소제 수용액, 고정된 효소제 수용액 포함	非指明的酶製劑的水溶液, 包括固定酶製劑的水溶液
				FC15.4	정유 및 정유 농축액 분리물	香精油及香精油濃縮物的分離物
				FC15.5	식품 표면에 흐르는 거품물질	食物面層流質泡沫物
				FC15.6	젤라틴	明膠
				FC15.8	실리콘계 소포제 유탁액	矽酮抗泡沫乳狀液
				FC15.9	액상 팩틴	液體果膠
				FC15.10	부분 글리세롤 에스테르	部分丙三醇酯
				FC7.1.4	빵 고물과 빵가루를 포함한 빵류 제품	麵包類製品, 包括以麵包製成的餡料及麵包糠
33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축산물공전)	033-001	햄류	FC8.2.1	전체 또는 절단된 비가열 절임방식(염장 포함)으로 가공된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제품	原隻或切件, 非經加熱處理的醃製(包括鹽醃)加工禽畜及野味肉製品
				FC8.2.2	전체 또는 절단된 비가열 절임(염장포함) 및 탈수방식으로 가공된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제품	原隻或切件, 非經加熱處理的醃製(包括鹽醃)及脫水加工禽畜及野味肉製品

한국				홍콩: 식품첨가물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홍콩 식품유형 한국어	홍콩식품유형번체
				FC8.2.3	전체 또는 절단된 비가열 발효처리된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제품	原隻或切件, 非經加熱處理的發酵加工禽畜及野味肉製品
				FC8.2.4	전체 또는 절단된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제품. 삶거나(염제 후 삶거나, 탈수 후 삶은 것 포함), 가열처리한 것(멸균포함) 그리고 캔 고기 포함.	原隻或切件, 經加熱處理的加工禽畜及野味肉製品, 包括煮熟(包括醃製並煮熟, 以及脫水並煮熟)、經加熱處理(包括消毒)及罐頭肉塊
				FC8.2.4.1	보존 처리 및 열 처리된 육류	經加熱處理的醃製肉類
				FC8.3.4.1	가열처리된 절임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분쇄제품(예를 들어, 익히고 절인 분쇄육, 캔에 옥수수과 함께 담긴 고기, 런치 미트)	經加熱處理的醃製加工禽畜及野味碎肉製品(例如煮熟的醃碎肉、罐頭鹹牛肉及午餐肉)
		033-002	소시지류	FC8.3.2	비가열 절임(염장 포함) 또는 탈수처리된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분쇄제품	非經加熱處理的醃製(包括鹽醃)及脫水加工禽畜及野味碎肉製品
				FC8.3.1	비가열 절임(염장 포함) 가공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분쇄제품	非經加熱處理的醃製(包括鹽醃)加工禽畜及野味碎肉製品
				FC8.3.3	비가열 발효처리된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분쇄제품	非經加熱處理的發酵加工禽畜及野味碎肉製品
				FC8.3.4	열처리된 가공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분쇄제품. 삶거나(절이고 삶거나, 탈수하고 삶은 것 포함) 가열처리(소독 포함)된 통조림 분쇄제품 포함(예를 들어, 푸아그라, 파테, 미트볼)	經加熱處理的加工禽畜及野味碎肉製品, 包括煮熟(包括醃製並煮熟, 以及脫水並煮熟)、經加熱處理(包括消毒)及罐頭碎肉製品(例如鵝肝醬及肉 / 肝醬、及熟肉丸)
				FC8.3.4.3	가열처리된 소시지 또는 소시지 미트(예를 들어, 아침식사용 소시지)	經加熱處理的香腸或香腸肉(例如早餐香腸)
		033-003	베이컨류			
		033-004	건조저장 육류	FC8.2.2	전체 또는 절단된 비가열 절임(염장포함) 및 탈수방식으로 가공된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제품	原隻或切件, 非經加熱處理的醃製(包括鹽醃)及脫水加工禽畜及野味肉製品
				FC8.3.2	비가열 절임(염장 포함) 또는 탈수처리된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분쇄제품	非經加熱處理的醃製(包括鹽醃)及脫水加工禽畜及野味碎肉製品
				FC14.3	생선 기반 스낵. 식품유형 9.2.6 및 하위 식품유형(해당될 경우)의 말린 생선 스낵류와 식품유형8.3.2 및 하위식품유형(해당될 경우)의 말린 육류 스낵식품	以魚為主的小食, 不包括屬食物分類9.2.6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魚乾小食及屬食物分類8.3.2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肉乾小食
		033-005	양념육류			
		033-006	분쇄가공 육제품	FC8.3.4.2	가열처리된 햄버거 고기패티 또는 유사제품	經加熱處理的漢堡碎肉餅或類似製品
				FC8.3.5	냉동된 가공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분쇄제품. 날것, 반숙 및 완숙 제품(예를 들어, 빵가루나 튀김 반죽을 입힌 냉동 닭) 포함	冷凍的加工禽畜及野味碎肉製品, 包括生、半熟及全熟的製品(例如沾麵包糠或炸漿的冷凍雞條)
				FC8.3.5.1	냉동 햄버거 고기패티 또는 유사제품	冷凍的漢堡碎肉餅或類似製品
		033-007	갈비가공품	FC8.2	전체 또는 절단된 부위가 가공된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原隻或切件的加工禽畜及野味肉製品
		033-008	식육추출가공품	FC15.1	식품첨가물	食物添加劑
		033-009	식용유지	FC2.1.3	돼지 기름, 소·양 유지, 어유 및 기타 동물성 지방	豬油、牛羊油脂、魚油及其他動物脂肪
		033-010	식용돈지	FC2.1.3	돼지 기름, 소·양 유지, 어유 및 기타 동물성 지방	豬油、牛羊油脂、魚油及其他動物脂肪

한국				홍콩: 식품첨가물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홍콩 식품유형 한국어	홍콩식품유형번체
		033-011	포장육	FC8.2.5	전체 또는 절단된 냉동 가공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식품, 냉동 생고기 및 익힌고기 포함	原隻或切件，冷凍的加工禽畜及野味肉製品，包括經冷凍的生及熟肉塊
34	알가공품	034-001	알가공품	FC10.1	전란, 노른자 및 흰자를 포함하여 저온 살균 및 화학적으로 보존 처리된(예를 들어, 소금을 추가) 액란 제품	經巴士德消毒法消毒及化學防腐(例如加鹽)的液體蛋製品，包括全蛋、蛋黃及蛋白
				FC10.2	탈수 및/또는 열 응고(저온 살균) 난제품	脫水及 / 或以熱凝固(經巴士德消毒法消毒)的蛋製品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1	과자류	001-001	과자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01-002	캔디류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01-003	추잉껌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01-004	빙과류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2	빵 또는 떡류	002-001	빵류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002-002	떡류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002-003	만두류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3	코코아가공품 및 초콜릿류	003-001	코코아가공품류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4	잼류	003-002	초콜릿류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04-001	잼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04-002	마멀레이드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04-003	기타 잼류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5	설탕	005-001	백설탕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05-002	갈색설탕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05-003	기타설탕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6	포도당	006-001	액상포도당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7	과당	006-002	분말-결정포도당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07-001	액상과당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07-002	결정과당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07-003	기타과당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8	옛류	008-001	물엿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08-002	기타엿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08-003	텍스트린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9	당시럽류	009-001	당시럽류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10	올리고당류	010-001	프락토올리고당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10-002	이소말토올리고당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10-003	갈락토올리고당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10-004	말토올리고당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010-005	자일로올리고당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10-006	겐티오올리고당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10-007	기타올리고당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11	식육 또는 알함유가공품	011-001	식육 또는 알제품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가금류의 간	家禽的肝
				가금류의 간과 신장	家禽的肝及腎
				가금류의 근육	家禽的肌肉
				가금류의 근육과 간	家禽的肌肉及肝
				가금류의 신장	家禽的腎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 류	대분 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돼지, 가금류의 근육	豬及家禽的肌肉
				돼지, 가금류의 근육, 간 및 신장	豬及家禽的肌肉、肝及腎
				돼지와 가금류의 간	豬及家禽的肝
				돼지와 가금류의 신장	豬及家禽的腎
				돼지의 간	豬的肝
				돼지의 근육	豬的肌肉
				돼지의 신장	豬的腎
				모든 식용동물의 간	所有食用動物的肝
				모든 식용동물의 근육	所有食用動物的肌肉
				모든 식용동물의 근육, 간 및 신장	所有食用動物的肌肉、肝及腎
				모든 식용동물의 신장	所有食用動物的腎
				소, 돼지, 가금류의 간	牛、豬及家禽的肝
				소, 돼지, 가금류의 간과 신장	牛、豬及家禽的肝及腎
				소, 돼지, 가금류의 근육	牛、豬及家禽的肌肉
				소, 돼지, 가금류의 근육, 간 및 신장	牛、豬及家禽的肌肉、肝及腎
				소, 돼지, 가금류의 근육과 간	牛、豬及家禽的肌肉及肝
				소, 돼지, 가금류의 신장	牛、豬及家禽的腎
				소와 가금류의 간	牛及家禽的肝
				소와 가금류의 근육	牛及家禽的肌肉
				소와 가금류의 신장	牛及家禽的腎
				소와 돼지의 간	牛及豬的肝
				소와 돼지의 근육	牛及豬的肌肉
				소와 돼지의 신장	牛及豬的腎
				소의 간	牛的肝
				소의 신장	牛的腎
				육류 및 가금육류	動物肉類及家禽肉類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11-002	식육함유 가공품 (햄, 베이컨)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육류 및 가금육류	動物肉類及家禽肉類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11-003	알함유가 공품(계란, 새알 가공품)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12	어육가공품	012-001	어육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固體食物(魚及魚產品)
				고체식품(조개류 및 조개류가공식품)	固體食物(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12-002	어육소시지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固體食物(魚及魚產品)
				고체식품(조개류 및 조개류가공식품)	固體食物(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固體食物(魚及魚產品)
				고체식품(조개류 및 조개류가공식품)	固體食物(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12-003	어육반제품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固體食物(魚及魚產品)
				고체식품(조개류 및 조개류가공식품)	固體食物(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012-004	어육살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固體食物(魚及魚產品)
				고체식품(조개류 및 조개류가공식품)	固體食物(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고체식품(조개류 및 조개류가공식품)	固體食物(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12-005	연육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固體食物(魚及魚產品)
				고체식품(조개류 및 조개류가공식품)	固體食物(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12-006	기타 어육가공품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固體食物(魚及魚產品)
				고체식품(조개류 및 조개류가공식품)	固體食物(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固體食物(魚及魚產品)
				고체식품(조개류 및 조개류가공식품)	固體食物(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13	두부류 또는 묵류	013-001	두부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고체식품(조개류 및 조개류가공식품)	固體食物(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13-002	전두부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013-003	유바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013-004	가공두부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013-005	목류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14	식용유 지류	014-001	콩기름 (대두유)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기름, 지방 또는 두 물질의 혼합물	任何油或脂肪或兩者的混合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14-002	옥수수기름(옥배유)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기름, 지방 또는 두 물질의 혼합물	任何油或脂肪或兩者的混合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14-003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기름, 지방 또는 두 물질의 혼합물		任何油或脂肪或兩者的混合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14-004		미강유(현미유)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기름, 지방 또는 두 물질의 혼합물	任何油或脂肪或兩者的混合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14-005	참기름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기름, 지방 또는 두 물질의 혼합물	任何油或脂肪或兩者的混合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14-006	들기름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기름, 지방 또는 두 물질의 혼합물	任何油或脂肪或兩者的混合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14-007	홍화유 (시플라워유 또는 잇꽃유)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기름, 지방 또는 두 물질의 혼합물	任何油或脂肪或兩者的混合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14-008	해바라기유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기름, 지방 또는 두 물질의 혼합물	任何油或脂肪或兩者的混合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014-009	목화씨기름(면실유)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기름, 지방 또는 두 물질의 혼합물	任何油或脂肪或兩者的混合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14-010	땅콩기름(낙화생유)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기름, 지방 또는 두 물질의 혼합물	任何油或脂肪或兩者的混合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14-011	올리브유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기름, 지방 또는 두 물질의 혼합물	任何油或脂肪或兩者的混合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14-012	팜유류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기름, 지방 또는 두 물질의 혼합물	任何油或脂肪或兩者的混合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014-013	야자유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기름, 지방 또는 두 물질의 혼합물	任何油或脂肪或兩者的混合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14-014	혼합식용유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기름, 지방 또는 두 물질의 혼합물	任何油或脂肪或兩者的混合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14-015	가공유지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기름, 지방 또는 두 물질의 혼합물	任何油或脂肪或兩者的混合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14-016	쇼트닝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기름, 지방 또는 두 물질의 혼합물	任何油或脂肪或兩者的混合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 ; 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14-017	마가린류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기름, 지방 또는 두 물질의 혼합물	任何油或脂肪或兩者的混合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 ; 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14-018	고추씨 기름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기름, 지방 또는 두 물질의 혼합물	任何油或脂肪或兩者的混合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 ; 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14-019	향미유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기름, 지방 또는 두 물질의 혼합물	任何油或脂肪或兩者的混合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 ; 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14-020	기타 식용유지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15	면류	015-001	국수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기름, 지방 또는 두 물질의 혼합물	任何油或脂肪或兩者的混合物
		015-002	냉면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015-003	당면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015-004	유당면류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 류	대분 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015-005	파스타류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15-006	기타 면류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16	다류	016-001	침출차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16-002	액상차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16-003	고형차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17	커피	017-001	커피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18	음료류	018-001	과일·채소음료 (농축과채즙, 과채주스, 과채음료)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018-002	탄산음료류(탄산음료, 탄산수)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18-003	두유류(두유액, 두유, 분말두유, 기타두유)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18-004	발효음료류(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 발효음료)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18-005	인삼·홍삼음료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19	특수용도식품	018-006	기타음료 (혼합음료, 음료 베이스)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19-001	영아용 조제식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19-002	성장기용 조제식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19-003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19-004	기타 영·유아식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019-005	특수의료 용도등식 품(당뇨/ 신장질환 환자용식 품 등)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19-006	체중조절 용 조제 식품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019-007	임산·수 유부용 식품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20	장류	020-001	메주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020-002	한식간장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0-003	양조간장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0-004	산분해간장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0-005	효소분해간장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020-006	혼합간장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신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0-007	한식된장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신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0-008	된장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신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0-009	조미된장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신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020-010	고추장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0-011	조미고추장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0-012	춘장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0-013	청국장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020-014	혼합장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당콩 또는 당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0-015	기타장류	모든 식품(당콩 또는 당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21	조미식품	021-001	식초(발효 식초, 합성 식초, 기타 식초)	모든 식품(당콩 또는 당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1-002	소스류	모든 식품(당콩 또는 당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021-003	토마토케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당콩 또는 당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1-004	카레(카레분, 카레)	모든 식품(당콩 또는 당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1-005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모든 식품(당콩 또는 당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1-006	향신료(천연 향신료, 향신료조제품)	모든 식품(당콩 또는 당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021-007	복합조미 식품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당콩 또는 당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22	드레싱류	022-001	드레싱	모든 식품(당콩 또는 당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당콩 또는 당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022-002	마요네즈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23	김치류	023-001	김치속	모든 식품(당콩 또는 당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당콩 또는 당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023-002	배추김치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023-003	기타김치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24	첫갈류	024-001	첫갈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固體食物(魚及魚產品)
		024-002	양념첫갈	고체식품(조개류 및 조개류가공식품)	固體食物(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固體食物(魚及魚產品)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024-003	액젓	고체식품(조개류 및 조개류가공식품)	固體食物(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固體食物(魚及魚產品)
				고체식품(조개류 및 조개류가공식품)	固體食物(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4-004	조미액젓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固體食物(魚及魚產品)
				고체식품(조개류 및 조개류가공식품)	固體食物(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4-005	식혜류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固體食物(魚及魚產品)
				고체식품(조개류 및 조개류가공식품)	固體食物(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25	절임식품	025-001	절임류 (단무지 등)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모든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식품	所有液體食物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固體食物(魚及魚產品)
				고체식품(조개류 및 조개류가공식품)	固體食物(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5-002	당절임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固體食物(魚及魚產品)
				고체식품(조개류 및 조개류가공식품)	固體食物(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6-001	농산물 조림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固體食物(魚及魚產品)
				고체식품(조개류 및 조개류가공식품)	固體食物(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6-002	수산물 조림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固體食物(魚及魚產品)
				고체식품(조개류 및 조개류가공식품)	固體食物(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6-003	축산물 조림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27	주류	027-001	탁주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027-002	약주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7-003	청주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027-004	맥주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027-005	과실주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027-006	소주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027-007	위스키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027-008	브랜드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027-009	일반증류주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7-010	리큐르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7-011	기타주류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7-012	주정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28	건포류	028-001	조미건어포류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028-002	건어포류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固體食物(魚及魚產品)
				고체식품(조개류 및 조개류가공식품)	固體食物(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固體食物(魚及魚產品)
				고체식품(조개류 및 조개류가공식품)	固體食物(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8-003	기타 건포류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固體食物(魚及魚產品)
				고체식품(조개류 및 조개류가공식품)	固體食物(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29	기타식품류	029-001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류(땅콩버터, 견과류가공품)	땅콩 또는 땅콩제품	花生或花生產品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9-002	캡슐류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029-003	전분류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9-004	과채가 공품류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곡물 및 채소	穀類及蔬菜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9-005	조미김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9-006	튀김식품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固體食物(魚及魚產品)
				고체식품(조개류 및 조개류가공식품)	固體食物(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9-007	별곡류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9-008	모조치즈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9-009	식물성크림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9-010	추출가공식품류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029-011	팝콘용옥수수 가공품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029-012	식염(천일염,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가공소금)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9-013	밀가루류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9-014	찐쌀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029-015	생식류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9-016	시리얼류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9-017	얼음류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9-018	즉석섭취·편의식품류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029-019	효모식품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9-020	버섯가공 식품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9-021	자라가공 식품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9-022	효소식품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029-023	화분가공식품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9-024	로알젤리 가공식품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29-025	한천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우유	奶類
30	유가공품 (축산물 공전)	030-001	우유류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030-002	가공유류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030-003	유단백가수분해식품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우유	奶類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30-004	발효유류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우유	奶類
		030-005	버터류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30-006	자연치즈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030-007	분류류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030-008	아이스크림류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030-009	저지방우유류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030-010	가공치즈	모든 식품	奶類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030-011	무지방우유류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030-012	유당분해우유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우유	奶類
		030-013	산양유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우유	奶類
		030-014	버터유류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30-015	농축유류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우유	奶類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030-016	유크림류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30-017	유청류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30-018	유당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30-019	조제유류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우유	奶類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030-020	아이스크림분말류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30-021	아이스크림믹스류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32	규격 외 일반가공식품	032-001	곡류가공품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곡물 및 채소	穀類及蔬菜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32-002	두류가공품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땅콩 또는 땅콩제품	花生或花生產品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032-003	서류가공품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32-004	전분가공품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32-005	식용유지가공품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32-006	당류가공품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032-007	수산물가공품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생선, 개살, 굴, 새우	魚、蟹肉、蠔、明蝦及小蝦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固體食物(魚及魚產品)
				고체식품(조개류 및 조개류가공식품)	固體食物(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32-008	기타가공품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육류 및 가금육류	動物肉類及家禽肉類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33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축산물공전)	033-001	햄류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033-002	소시지류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육류 및 가금육류	動物肉類及家禽肉類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33-003	베이컨류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육류 및 가금육류	動物肉類及家禽肉類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33-004	건조저장 육류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육류 및 가금육류	動物肉類及家禽肉類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33-005	양념육류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육류 및 가금육류	動物肉類及家禽肉類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033-006	분쇄가공육제품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육류 및 가금육류	動物肉類及家禽肉類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33-007	갈비가공품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육류 및 가금육류	動物肉類及家禽肉類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33-008	식육추출가공품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육류 및 가금육류	動物肉類及家禽肉類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33-009	식용우지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한국				홍콩 : 유해물질 문서 기준	
대분류	대분류명	품목코드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번체)
		033-010	식용돈지	기름, 지방 또는 두 물질의 혼합물	任何油或脂肪或兩者的混合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기름, 지방 또는 두 물질의 혼합물	任何油或脂肪或兩者的混合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33-011	포장육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육류 및 가금육류	動物肉類及家禽肉類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034-001	알가공품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34	알가공품	034-001	알가공품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모든 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기타 모든 식품(우유,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제외)	任何其他食物(奶類、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除外)
				모든 고체 식품	所有固體食物
				모든 액상 식품	所有液體食物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제외)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魚及魚產品；及 (ii)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부록

홍콩 규정 번역본

1 식품 보존료 규정

장 :	132BD	식품 보존료 규정	헌보 번호	버전 날짜
		효력부여 질		30/06/1997

(제 132 장 제 55 및 143 조)

[1973 년 2 월 2 일]

(본문 1973 년 제 20 호 법률공고)

조:	1	(2008 년 제 85 호 법률공고로 인해 폐지)	L.N. 85 of 2008	01/07/2008
----	---	-----------------------------	-----------------	------------

조:	2	해석	L.N. 85 of 2008	01/07/2008
----	---	----	-----------------	------------

(1) 본 규정에서,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합성식품”(compounded food) 둘 혹은 둘 이상의 원료가 들어있는 식품;

“해당식품”(relevant food) 부표에 나열된 식품유형처럼, 관련 식품유형이거나 이에 속한 식품을 의미한다.
(2008 년 제 85 호 법률공고)

“항산화제”(antioxidant) 산화로 인해 야기되는 식품의 변질(지방산패 및 변색 포함)을 방지하는 모든 물질,
아래항목 제외-

(a) 레시틴

(b) 아스코르빈산 또는 아스코르빈산염, 아스코르빈산 에스테르

(c) 토코페롤류

(d) 에리쓰르빈산, 구연산, 주석산, 인산, 젖산 또는 그 산들의 칼슘, 칼륨, 또는 나트륨-염

(e) 글루콘산의 칼슘, 칼륨 또는 나트륨-염

(f) 글리세롤의 초산 및 지방산 에스테르, 글리세롤의 젖산 및 지방산 에스테르 또는 글리세롤의 구연산 및 지방산 에스테르

(g) *Aspergillus niger var*(흑국균)에서 유래된 글루코오스산화효소 (2008년 제 85호 법률공고)

“보존료”(preservative) 식품의 발효, 산화, 기타 변질과정 또는 식품부패를 억제, 지연 또는 저지할 수 있는 모든 물질, 아래 항목 제외-

(a) (2008 년 제 85 호 법률공고로 폐지)

(b) 모든 허용된 착색료

(c) 식염(염화나트륨)

(d) 레시틴, 당 또는 토코페롤류

(e) 니코틴산 또는 그 아미드

(f) 식초 또는 초산, 젖산, 아스코르빈산, 구연산, 사과산, 인산, 폴리인산 또는 주석산 또는 본 조항이 정하는 모든 산의 칼슘, 칼륨 또는 나트륨-염

(g) 글리세롤, 알코올 또는 음용 가능한 독한 술, 이소프로필 알코올,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아세틴, 디아세틴 또는 트리아세틴

- (h) 허브 또는 호프 추출물
 - (i) 향미료로 사용되는 향신료나 정유
 - (j) 혼제로 알려진 숙성과정에서 식품에 첨가되는 모든 물질
 - (k) 밀봉된 용기로 식품을 포장할 때 사용되는 이산화탄소, 질소 또는 수소
 - (l) 거품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아산화 질소, 또는 (2008 년 제 85 호 법률공고)
 - (m) 아스페르길루스 니게르(흑국균) 변종으로 유래된 글루코오스 산화 효소. (2008 년 제 85 호 법률공고)
- “부표에 나열된 식품유형”(scheduled food category) 부표 1 제 1 단에 명시된 식품유형 또는 세부 식품유형 (2008 년 제 85 호 법률공고)
- “식품첨가물”(food additive) 보존료 또는 항산화제를 의미한다. (2008 년제 85 호 법률공고)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1963 년 세계보건기구와 식량농업기구가 식품표준, 가이드라인 및 관련 텍스트를 개발하기 위해 창설된 기구. (2004 년 제 85 호 법률공고)
- “항공운송화물”(air transit cargo)은 항공기로 수입 및 수출 위탁되는 모든 품목을 의미한다. (2000 년 제 29 호 제 5 조)
- “항공환적화물”(air transhipment cargo) 은 수출입법규(제 60 장) 제 2 조에서 지정된 의미를 가진다. (2000 년 제 29 호 제 5 조)
- “허용된 항산화제”(permitted antioxidant) 부표 1 제 2 단에 명시된 주로 산화방지 작용을 하는 물질 (2008 년 제 85 호 법률공고)
- “허용된 보존료”(permitted preservative) 부표 1 제 2 단에 명시된 주로 보존료 작용을 하는 물질 (2008 년 제 85 호 법률공고)
- “허용된 착색료”(permitted colouring matter) 란《식품 속 착색료 규정》(제 132 장, 부속법규 H)에서 허용한 모든 착색료
- “허용된 식품첨가물”(permitted food additive) 란 부표 1 제 2 단에서 명시된 식품첨가물을 의미한다. (2008 년 제 85 호 법률공고)
- “조제”(preparation) 식품에 대한 제조 또는 모든 형태의 처리를 포함, “판매를 위한 조제” (preparation for sale)에는 포장 포함
- “용기”(container) 모든 형식의 식품포장을 의미한다. 식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밀봉하거나 식품을 다른 물건에 부착하는 방법도 포함한다. 단품으로 판매될 경우, 포장지나 포장끈도 포함한다.
- “국제분류번호 체계”(INS)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미리 포장된 식품의 재료 속 식품첨가물을 식별하기 위해 “식품첨가물 국제분류번호 체계”라고 불리는 번호체계이다. (2008 년 제 85 호 법률공고)
- “판매”(sell)란 판매를 위한 계약, 노출 또는 판매 목적의 보관이 포함된다.
- “수입상”(importer) 소유자, 양수인, 에이전트 또는 브로커든 아니든, 홍콩 외의 곳으로부터 들여온 식품을 소유하거나 그 보관이나 관리의 권한을 가진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 (1986 년 제 10 호 제 32(2)조)
- “대체재” (alternative form) 부표 1A 제 1 단에 나열된 허용된 식품첨가물에 대해, 해당 부표 제 2 단에 명시된 식품첨가물 관련 물질을 의미한다. (2008 년 제 85 호 법률공고)
- “저장”(storage) 농장, 저장고, 차량, 창고, 훈증실, 냉장 또는 홍콩내수면의 바지선이나 선박에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 “최대 허용함량”(maximum permitted level)부표 1 제 2 단에 나열된 허용된 식품첨가물에 대해, 해당 부표 제 3 단 속 명시된 식품첨가물 함량을 말한다. (2008 년 제 85 호 법률공고)
- “사전포장”(pre-packed) 용기에 들어 있거나 그 위에 얹어서 소매로 판매할 수 있는 상태, 또는 판매용으로 보관 또는 저장될 수 있는 상태로 미리 만들어진 모든 종류의 식품을 의미하며, 이와 다름이 입증 되지 않는 한 사전포장 된 것으로 간주한다.
- “식음료공급사업”(catering business) 여관, 여인숙, 호텔, 레스토랑, 카페, 찻집, 뷔페, 커피 노점 기타 일반대

중에 공개된 휴식장소 또는 하숙집, 아파트, 휴식업자, 학교급식센터, 직원식당 또는 매점 등의 사업이나 영업이 포함된다.

“소매”(retail sale)、“소매 방식으로 판매”(sale by retail)은 모두 재판매가 아닌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에 대한 모든 판매를 의미하며, 식음료공급사업자에게 식음료공급사업용으로 판매하는 것, 또는 제조업자에게 제조용으로 판매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수송 물품”(article in transit)은 수출입법규(제 60 장)제 2 조에서 지정된 의미를 가진다. (2000 년 제 29 호 제 5 조)

“홍콩국제공항 화물환적구역”(cargo transhipment area of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은 수출입법규(제 60 장) 제 2 조에서 지정된 의미를 가진다. (2000 년 제 29 호 제 5 조)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a) 식품에 첨가되는 첨가물의 양을 가능하면 원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 (b) 식품 제조, 가공처리 또는 포장 과정에서 성분이 식품에 남아 있지만, 식품 자체에 대해 어떠한 물리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그 사용량을 최소로 하며 적정수준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 (c) 해당식품첨가물의 조제 및 처리방식은 식품원료의 조제 및 처리방식과 같다. (2008 년 제 85 호 법률공고)

“변질”(deterioration) 식품은 세균, 효모 또는 곰팡이의 작용으로 인해 변질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조림 식품”(canned food) 용기 속 식품을 밀봉하는 것으로, 밀봉용기는 이미 가열공정을 통해 식품 혹은 용기 속 모든 보툴리누스균을 멸균했거나, 밀봉된 용기 식품의 PH 가 4.5 미만인 것을 의미한다. (2008 년 제 85 호 법률공고)

(2) 본 규정에서 백분율 또는 백만분율은 모두 중량으로 계산한다.

(3) (2008 년 제 85 호 법률공고로 인해 폐지)

조:	2A	대체재 사용	L.N. 85 of 2008	01/07/2008
----	----	--------	-----------------	------------

(1)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만 대체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대체재는 부표 1A 제 1 단에 명시된 식품첨가물을 대체한 것이다-

- (a) 대체재의 최대사용량은 허용된 식품첨가물의 최대허용함량과 같으며, (b)에서 별도로 규정할 것 외에, 대체재는 허용된 식품첨가물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다.
- (b) 이디티에이이나트륨(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의 대체재인 이디티에이칼슘이나트륨(calcium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은 무수 이디티에이칼슘이나트륨의 형태로 측정되어야 한다.

(2) 본 규정에서 허용된 식품첨가물은 모두 (1)항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2008 년 제 85 호 법률공고)

조:	3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 판매 규제	L.N. 85 of 2008	01/07/2008
----	---	---------------------	-----------------	------------

(1) 본 규제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누구도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식품을 수입, 판매를 위한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없다.

(2) 모든 해당식품에는 해당 부표에 나열된 식품유형별 허용된 식품첨가물을 함유할 수 있으며, 비율은 최대허용함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3) 제 (4)항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모든 해당식품 또는 해당식품을 만들기 위한 모든 식품-

- (a) 판매를 위한 수입을 할 경우(소매 불포함), 식품을 수입할 때, 식품에는 부표에서 나열된 해당 식품유형에 사용가능한 허용된 보존료가 어떤 비율로든 함유될 수 있다. 또는
- (b) 판매를 위한 위탁 또는 위임일 경우(소매 불포함), 식품을 위탁 또는 위임할 때, 식품에는 부표에서 나열된 해당 식품유형에 사용가능한 허용된 보존료가 어떤 비율로든 함유될 수 있다.
- (4) 제 (3)항은-
- (a) 판매자가 수입상이 식품을 수입 혹은 수입하기 전에 부표 2 에 명시된 형식에 부합한 문서를 전달하거나, 식품을 판매 또는 판매하기 전에 구매자에게 부표 2 에 명시된 형식에 부합한 문서를 줄 경우에만 해당되며, 정확하게 식품 속 보존료의 명칭설명과 최대함량을 기술해야 한다. 또한
- (b) 사전포장된 식품이거나 이산화황이 함유된 과일이나 과육 또는 제조용 과일이나 과육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 (5) 부표에 나열된 식품유형에 두개 혹은 두개 이상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식품유형에 속한 모든 해당식품에 해당 식품첨가물의 혼합물이 함유될 수 있다-
- (a) 매 항목에 해당하는 식품첨가물 모두 해당 최대허용함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또는
- (b) 만약 부표 1 제 4 단에 해당 식품유형과 상반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a)보다 해당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6) 모든 식품에는 아래 물질로부터 유래된 포름알데히드가 5ppm 이하의 비율로 들어있을 수 있다-
- (a) 포름알데히드를 기초로한 수지가 들어있는 내습포장재. 또는
- (b) 포름알데히드가 원료 축합 성분으로 함유된 수지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용기나 용품.
- (7) 바나나 껍질에는 나이스타틴이 함유될 수 있지만, 바나나 속살에는 함유될 수 없다.
- (8) 모든 통조림식품에는 니신이 들어갈 수 있으며, 니신이 들어간 통조림식품으로 조리한 모든 식품도 니신이 함유될 수 있다.
- (9) 합성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해당식품으로 인해 허용된 식품첨가물을 사용해야 할 경우, 허용된 식품첨가물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면, 합성식품에 허용된 식품첨가물이 함유될 수 있다-
- (a) 허용된 식품첨가물이란 부표 1 에 해당된 합성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해당식품에 속한 식품유형에 명시된 내용이다. 또한
- (b) 해당식품에 사용된 비율은 합성식품에 함유된 허용된 식품첨가물이 최대허용함량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
- (10) 제 (1)항은 자연적으로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모든 식품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008 년 제 85 호 법률공고)

조:	4	항산화제가 들어간 식품은 영아 또는 유아에게 권장할 수 없다		30/06/1997
----	---	-----------------------------------	--	------------

누구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a) 해당 라벨이 식품용기에 부착 또는 인쇄 여부와 상관없이, 판매된 식품과 같이 증명하거나, 식품을 판매할 때 진열하는 것. 또는
- (b) 식품 판매를 위해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홍보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 또는
- (c)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된 식품의 설명서에 해당 라벨, 홍보물 또는 설명서에 어떠한 글귀로 식품이 주로 영유아 섭취용이라는 직접적인 서술 또는 암시가 있는 경우(라벨, 홍보물 또는

설명서가 있는 식품 속 또는 표면에 향산화제가 첨가된 경우).

[비교 S.I. 1966/1500 r. 7 U.K.]

조:	5	보존료 및 향산화제의 판매, 라벨 및 홍보	L.N. 85 of 2008	01/07/2008
----	---	-------------------------	-----------------	------------

(1) 어떤 물질이 담긴 용기에 마크 혹은 라벨이 부착되고, 해당 물질이 식품에서 보존료 혹은 향산화제로 쓰인다고 추천할 경우, 해당 용기가 부표 2의 조문에 따라 라벨이 부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해당 물질을 판매할 수 없다.

(2) 모든 용기는 제(1)조의 조문에 따라 상술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해당 용기가 종이 혹은 기타 포장 물질로 포장되어 부착된 라벨을 잘 읽을 수 없을 경우, 소매 방식으로 판매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혹은 요약해 소매 방식으로 판매할 때, 해당 용기는 가장 바깥쪽 포장물질에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제(1)조에 적용된 용기와 동일하다.

(3) 누구도 다음과 같은 식품첨가물을 식품배합 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판매 혹은 판매를 위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2008년 제 85호 법률공고)

(a) 허용된 식품첨가물이 아닌 모든 식품첨가물 (2008년 제 85호 법률공고)

(b) (2008년 제 85호 법률공고로 폐지)

(c) 허용된 식품첨가물이나, 판매 혹은 판매를 위해 해당 식품첨가물을 홍보하는 방식이 본 규정을 위반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의해 사용될 경우.

[비교 S.I. 1962/1532 r. 6 U.K.]

조:	6	보존료 혹은 향산화제가 함유된 식품의 라벨	L.N. 85 of 2008	01/07/2008
----	---	-------------------------	-----------------	------------

(1) 부표 2 제 1 조에서 서술된 모든 해당식품에 부표에 나열된 식품유형 중 이 식품에 명시된 허용된 보존료 혹은 허용된 향산화제가 있지만, 부표 2의 조문에 따라 라벨이 부착된 용기에 담겨있지 않은 경우, 본 조항 조문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도 해당 식품을 판매, 위탁 혹은 납품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소매 부분에 있어서 눈에 띄는 부분에 이미 해당 식품에 보존료 혹은 향산화제가 함유되어 있다는 중문과 영문 고지가 있어 고객이 쉽게 읽을 수 있다면,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모든 용기는 제 (1)조에 따라 반드시 상술한 라벨을 부착되어야 한다. 해당 용기가 종이 혹은 기타 포장 물질로 포장되어 부착된 라벨을 잘 읽을 수 없을 경우, 소매 방식으로 판매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혹은 요약해 소매 방식으로 판매할 때, 해당 용기의 가장 바깥쪽 포장 물질에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이 조항에 적용된 용기와 동일하다.

(3) 해당식품이 판매자가 있는 곳이나 노점 내 혹은 이동할 수 있는 작은 푸드트럭 옆에서 실시간 식사하는 곳에서 판매될 경우, 본 조항은 관련된 판매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2008년 제 85호 법률공고)

[비교 S.I. 1962/1532 r. 5 U.K.]

조:	7	본 규정은 중계무역되는 식품에 적용되지 않는다		30/06/1997
----	---	---------------------------	--	------------

본 규정에서 보존료 또는 향산화제 함유가 금지된 식품과 특정식품 또는 보존료, 향산화제로 판매되는 물품에는 라벨을 붙여야 하는 규제에 대해, 중계무역을 목적으로 홍콩에 수입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홍콩에서 제조된 식품 또는 물품은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986 년 제 10 호 제 32(2)조)

조:	7A	항공 국경 통과 혹은 항공 환적화물의 적용	29 of 2000	26/05/2000
----	----	-------------------------	------------	------------

(1) 제 3 조에서 서술한 식품이 항공운송화물 혹은 항공환적화물일 경우, 해당 조항은 이 식품 수입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식품이 홍콩으로 반출된 기간 공항 화물 환적구역을 벗어난 경우, 이 조항을 시행한다—

(a) 해당 식품이 해당 구역을 벗어났을 때 수입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b) 해당 식품을 항공운송화물 혹은 항공환적화물로 홍콩에 들어왔거나 해당 식품을 이렇게 홍콩에 가져온 사람은 식품이 해당 구역을 벗어났을 때 해당 식품을 수입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a) 혹은 (b)에서 지정한 범위를 제외하고, 제 3 조는 본 조항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효력을 가지게 된다.

(2) 누군가 제 9 조에서 규정한 범죄 행위를 하였다고 고발 기소한

법률절차에서 만약—

(a) 해당 법률절차가 제 3 조에서 서술한 수입과 관련되고 항공운송화물 혹은 항공환적화물인 식품일 때,

(b) 기소자는 해당 식품이 홍콩으로 반출된 기간 공항 화물 환적구역을 벗어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당사자가 이미 해당 식품이 이 구역을 떠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정을 채택하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이것으로 면책변호가 될 수 있다.

(3) 어떠한 법률절차에서 제(2)조에서 규정한 면책변호 관련 사항이란 해당 범죄 행위의 발생이—

(a) 제삼자의 소행 혹은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b) 제삼자가 제공한 데이터에 의존해 발생한 것일 때,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해당 면책변호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이 해당 법률절차 10 일 전 혹은 그 이전에 청문해 기소자에게 서면 통보를 전달했을 때, 피고인이 이 통보를 전달해 알게 된—

(i) 제삼자의 모든 상세정보 및

(ii) 해당 소행, 과실 혹은 자료의 모든 상세정보는 예외에 속한다.

(4) 누군가 제(2)조에서 제정한 면책변호를 인용할 때, 근거가 되는 이유가 제삼자가 제공한 데이터에 의존한 것일 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특히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후 해당 자료 의존이 정말 합리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면책변호를 인용할 수 없다—

(a) 해당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채택한 절차가 데이터 확인을 위해 마땅히 채택해야 할 절차이다. 그리고

(b) 그가 해당 자료를 신뢰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2000 년 제 29 호 제 5 조)

조:	8	면책변호	L.N. 85 of 2008	01/07/2008
----	---	------	-----------------	------------

(1) 본 규례에서 제정한 홍보물 발행 관련 범죄 행위에 제기된 법률절차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업무가 홍보물 발행 혹은 안배라는 것을 증명하고, 관련 홍보물이 본인의 통상적인 업무 활동 중 받아 발행한 것이라면 면책변호가 된다. [비교 S.I. 1962/1532 r. 8(4) U.K.]

(2) 본 규례에서 제정한 홍보물 발행 관련 범죄 행위로 제조업체 혹은 수입업체에 제기된 법률절차에서 피고인은 본인이 관련 홍보물을 발행했거나 관련 홍보물 발행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비교 S.I. 1966/1500 r. 10(2) U.K.]

(3) 제 3 조에서 제정한 범죄 행위로 제기된 법률절차에서 피고인이 식품에 승인되지 않은 보존료 함유가 함유되어 있거나 관련이 없는 식품에 비준된 보존료가 함유된 이유가 순수하게 식품을 저장할 때 해당 보존료를 사용했다고 증명한 경우— (2008 년 제 85 호 법률공고)

(a) 진드기약, 살균제, 살충제 혹은 살서제로 상술한 각 상황에서 해당 보존료는 모두 저장기간 식품 보호에 사용된다. 혹은

(b) 발아억제제이지만, 식품이 저장된 장소에서 식품을 포장하지 않고 소매 장소로 공급될 때, 면책변호가 된다. [비교 S.I. 1962/1532 r. 8(5) U.K.]

조:	9	범죄 행위 및 벌칙		30/06/1997
----	---	------------	--	------------

제 3, 4, 5 혹은 6 조의 조문을 위반할 경우 범죄 행위에 속하며 약식절차로 선고가 내려지고 5 등급 벌금 및 6 개월 금고에 처할 수 있다.

(1984 년 제 114 호 법률공고 ; 1987 년 제 334 호 법률공고 ; 1996 년 제 177 호 법률공고)

조:	10	범죄 행위에 법률절차 제기 시 사용 가능한 명의	L.N. 320 of	01/01/2000
----	----	----------------------------	-------------	------------

형사 범죄 고발 기소와 관련한 기타 성문법규의 조문을 침해하지 않고 법무부 국장의 형사 범죄 고발 기소 관련 권력을 침해하지 않는 원칙에서 본 규례의 모든 조문에서 제정한 범죄 행위에 대한 고발 기소는 모두 식품환경위생처 처장의 명의로 제기된다.

(1997 년 제 362 호 법률공고 ; 1999 년 제 78 호 제 7 조)

조:	10A	과도성 조문: 과도기간 폐지된 조문 계속 적용	L.N. 85 of 2008	01/07/2008
----	-----	---------------------------	-----------------	------------

(1) 과도기간 내 누군가 보존료 혹은 항산화제가 함유(수정을 거친 규례에서 정의한 것)된 식품을 수입, 판매를 위한 제조 혹은 판매할 경우, 해당 항목의 수입, 제조 혹은 판매는 기존 규례 제 3 조의 어떠한 규정도 위반하지 않으며 당사자는 제 3 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과도기간 내 라벨, 홍보물 혹은 명칭 설명과 관련된 식품 내부 혹은 표면에 함유된 항산화제(수정을 거친 규례에서 정의한 것)의 경우, 기존 규례에서 지정한 항산화제가 아니며, 제 4 조 위반이 아니다.

(3) 과도기간 내 만약—

(a) 누군가 어떤 물질을 판매하고,

(b) 해당 물질이 식품 속 보존료 혹은 항산화제(수정을 거친 규례에서 정의한 것)로 사용되도록 권장될 때 이 물질은 기존 규례에서 지정한 보존료 혹은 항산화제가 아니면 당사자는 제 5(1)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과도기간 내 누군가 식품 배합에서 어떤 보존료 혹은 항산화제(수정을 거친 규례에서 정의한 것)를 사용할 것을 출발점으로, 판매 혹은 판매를 위해 해당 보존료 혹은 항산화제를 홍보할 경우, 해당 판매 혹은 홍보는 기존 규례 제 5(3)조를 위반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제 5(3)조를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과도기간 내 누군가 기존 규례 부표 1 에서 허가된 첨가 보존료 혹은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명시된 식품을 판매, 위탁 혹은 납품할 때, 당사자가 기존 규례 제 6 조에 따라 이 식품을 판매, 위탁 혹은 납품했다면 제 6 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의문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재 《2008 년 식품 내 보존료(수정) 규제》(2008 년 제 85 호 법률공고) 폐지 혹은 기존 규제의 일부 조문 수정을 확실히 하는 바이며 해당 조문은 본 조항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계속 적용된다.

(7) 의문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 조항(목적은 기존 규제가 《2008 년 식품 내 보존료(수정) 규제》(2008 년 제 85 호 법률공고)을 대체하면서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이 《2008 년 식품 내 보존료(수정) 규제》(2008 년 제 85 호 법률공고)의 시행에 있어 제한하거나 훼손하지 않는 다는 것을 밝힌다.

(8) 본 조항에서—

“수정을 거친 규제”(Amended Regulation)란 《2008 년 식품 내 보존료(수정) 규제》(2008 년 제 85 호 법률공고)을 통해 수정한 기존 규제를 말한다.

“과도기”(transitional period)란 2008 년 7 월 1 일부터 2010 년 6 월 30 일까지의 기간이다. (처음과 마지막 이들 포함)

“기존 규제”(former Regulations)란 《2008 년 식품 내 보존료(수정) 규제》(2008 년 제 85 호 법률공고)의 효력을 발생하기 전 유효한 《식품 내 보존료 규제》(제 132 장, 부속 법률 BD)를 말한다.

(2008 년 제 85 호 법률공고)

주 :

* 효력발생일 : 2008 년 7 월 1 일.

조:	11	부표 1 의 수정	L.N. 85 of 2008	01/07/2008
----	----	-----------	-----------------	------------

식품환경위생처 처장이 헌보 공지를 통해 부표 1 제 3 단에서 명시된 농도를 수정할 수 있다.
(1984 년 제 114 호 법률공고 ; 1985 년 제 67 호 법률공고 ; 1990 년 제 85 호 법률공고 ; 1999 년 제 78 호 제 7 조 ; 2008 년 제 85 호 법률공고)

부표 :	1	식품첨가물이 함유될 수 있는 식품과 각 조건에서의 식품첨가물 종류 및 허용량	L.N. 85 of 2008	01/07/2008
------	---	--	-----------------	------------

제 1 단		제 2 단		제 3 단	제 4 단
번호	식품유형 또는 하위 식품유형	허용된 식품첨가물		최대허용함량 (ppm, 별도로 명시된 경우 제외)	주석
		INS 번호	명칭설명		
1	유제품 및 그 유사제품 (영아용 조제분유 및 유아용 조제분유 그리고 식품유형 2 및 그 하위식품유형 제품 제외)				
1.1	음료에 넣는 크림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100	주 1, 2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1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100	주 1, 2
1.2	응고된 크림	234	Nisin	GMP	

제 1 단		제 2 단		제 3 단	제 4 단
번호	식품유형 또는 하위 식품유형	허용된 식품첨가물		최대허용함량 (ppm, 별도로 명시된 경우 제외)	주석
		INS 번호	명칭설명		
1.3	분유와 크림 파우더(플레인), 카세인 및 카제인염 포함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1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1.3.1	자판기용 분유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2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1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1.4	분유와 크림 파우더 및 유사 제품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100	주 1, 2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1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100	주 1, 2
1.5	치즈 및 유사 제품				
1.5.1	생치즈(예를 들어, 코티지 치즈, 크림치즈, 모짜렐라 치즈).	200	Sorbic acid	1000	
		234	Nisin	12.5	
		235	Pimaricin	2mg/dm2	주 3
		250	Sodium nitrite	10	주 8
		251	Sodium nitrate	50	주 8
		280	Propionic acid	GMP	
1.5.2	숙성 치즈(예를 들어, 까망베르 치즈, 체다 치즈, 아이딘 치즈, 고다 치즈)	200	Sorbic acid	3000	
		234	Nisin	12.5	
		235	Pimaricin	2mg/dm2	주 3
		250	Sodium nitrite	10	주 8
		251	Sodium nitrate	50	주 8
		280	Propionic acid	3000	
1.5.2.1	치즈 파우더(환원용(예를 들어, 환원용 치즈소스))	1105	Lysozyme	GMP	
		200	Sorbic acid	3000	
		234	Nisin	12.5	
		235	Pimaricin	2mg/dm2	주 3
		250	Sodium nitrite	10	주 8
		251	Sodium nitrate	50	주 8
1.5.2.2	프로볼로네 치즈	280	Propionic acid	3000	
		1105	Lysozyme	GMP	
		200	Sorbic acid	3000	
		234	Nisin	12.5	
		235	Pimaricin	2 mg/dm2	주 3

제 1 단		제 2 단		제 3 단	제 4 단
번호	식품유형 또는 하위 식품유형	허용된 식품첨가물		최대허용함량 (ppm, 별도로 명시된 경우 제외)	주석
		INS 번호	명칭설명		
		239	Hexamethylene tetramine	25	주 4
		250	Sodium nitrite	10	주 8
		251	Sodium nitrate	50	주 8
		280	Propionic acid	3000	
		1105	Lysozyme	GMP	
1.5.3	유청 치즈	200	Sorbic acid	1000	
		234	Nisin	12.5	
		235	Pimaricin	2 mg/dm2	주 3
		250	Sodium nitrite	10	주 8
		251	Sodium nitrate	50	주 8
		280	Propionic acid	3000	
1.5.4	가공 치즈	200	Sorbic acid	3000	주 5
		234	Nisin	12.5	
		235	Pimaricin	2 mg/dm2	주 3
		250	Sodium nitrite	10	주 8
		251	Sodium nitrate	50	주 8
		280	Propionic acid	3000	주 5
1.5.5	치즈 유사제품 (모조치즈, 모조치즈 혼합물 및 모조치즈 파우더 포함)	200	Sorbic acid	1000	
		235	Pimaricin	2 mg/dm2	주 3
		250	Sodium nitrite	10	주 8
		251	Sodium nitrate	50	주 8
1.5.6	유청 단백질 치즈	200	Sorbic acid	3000	
	(예를 들어, 리코타 치즈)	234	Nisin	12.5	
		235	Pimaricin	2 mg/dm2	주 3
		250	Sodium nitrite	10	주 8
		251	Sodium nitrate	50	주 8
		280	Propionic acid	3000	
1.6	플레인 요거트를 제외한 유제품 기반 디저트(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푸딩, 과일 또는 조미 요거트)	210	Benzoic acid	300	
		310	Propyl gallate	90	주 1, 6
1.6.1	과일이 주재료인 우유 및 크림 디저트	200	Sorbic acid	300	주 22
		210	Benzoic acid	300	주 22
		220	Sulphur dioxide	100	주 10

제 1 단		제 2 단		제 3 단	제 4 단
번호	식품유형 또는 하위 식품유형	허용된 식품첨가물		최대허용함량 (ppm, 별도로 명시된 경우 제외)	주석
		INS 번호	명칭설명		
		310	Propyl gallate	90	주 1, 6
1.6.2	과일 요거트	200	Sorbic acid	300	주 18
		210	Benzoic acid	300	주 18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120	주 18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120	주 18
		220	Sulphur dioxide	60	주 10
		310	Propyl gallate	90	주 1, 6
2	지방, 기름 및 지방 유탁액				
2.1	무수분 지방 및 기름				
2.1.1	무수성 버터	310	P ropyl gallate	100	주 1, 7
	및 유지방	311	Octyl gallate	100	주 1, 7
		312	Dodecyl gallate	100	주 1, 7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175	주 1, 7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75	주 1, 7
2.1.2	식물성 기름 및 지방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2
		311	Octyl gallate	100	주 1, 2
		312	Dodecyl gallate	100	주 1, 2
		314	Guaiac resin	1000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200	주 1, 2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384	Isopropyl citrates	200	
		388	Thiodipropionic acid	200	
2.1.3	돼지 기름, 소·양 유지, 어유 및 기타 동물성 지방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2
		311	Octyl gallate	100	주 1, 2
		312	Dodecyl gallate	100	주 1, 2
		314	Guaiac resin	1000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200	주 1, 2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제 1 단		제 2 단		제 3 단	제 4 단
번호	식품유형 또는 하위 식품유형	허용된 식품첨가물		최대허용함량 (ppm, 별도로 명시된 경우 제외)	주석
		INS 번호	명칭설명		
		384	Isopropyl citrates	200	
		388	Thiodipropionic acid	200	
2.2	WO 에멀전				
2.2.1	지방 함유량이 최소 80% 이상인 유탁액				
2.2.1.1	마가린 및 유사제품	200	Sorbic acid	1000	주 18
		210	Benzoic acid	1000	주 18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1000	주 18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1000	주 18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2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200	주 1, 2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384	Isopropyl citrates	200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75	주 9
		388	Thiodipropionic acid	200	
2.2.1.2	제조용 버터	310	Propyl gallate	80	주 1, 23
		311	Octyl gallate	80	주 1, 23
		312	Dodecyl gallate	80	주 1, 23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160	주 1, 23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160	주 1, 23
2.2.1.3	버터와 마가린 혼합 제품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2
		314	Guaiac resin	1000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200	주 1, 2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2.2.2	지방 함유량 80% 보다 적은 유탁액 (저지방 버터, 저지방 마가린 및 혼합 제품 포함)	200	Sorbic acid	2000	주 21
		210	Benzoic acid	1000	주 21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2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200	주 1, 2

제 1 단		제 2 단		제 3 단	제 4 단
번호	식품유형 또는 하위 식품유형	허용된 식품첨가물		최대허용함량 (ppm, 별도로 명시된 경우 제외)	주석
		INS 번호	명칭설명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384	Isopropyl citrates	100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100	주 9
		388	Thiodipropionic acid	200	
2.3	수중유적형 지방 유탁액 (OW 에멀전) (지방 유탁액 위주의 혼합물 및 조미제품 포함; 지방성분이 유지제품과 식품유형 2.4 및 하위유형 (해당될 경우)에서 추출된 디저트제품 불포함)	210	Benzoic acid	1000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2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200	주 1, 2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2.4	지방 위주의 디저트(식품유형 1.6 및 하위 식품유형(해당될 경우)의 유류 디저트 제품 불포함)	210	Benzoic acid	1000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2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200	주 1, 2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3	식용 가능한 빙과류, 물 기반 냉동 디저트,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샤베트)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200	주 1, 2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100	주 1, 2
4	과일 및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꼬투리, 알로에 포함), 해조류, 견과류, 씨앗류				
4.1	표면 처리된 신선 과일	220	Sulphur dioxide	50	주 10
4.1.1	사과	220	Sulphur dioxide	50	주 10
		324	Ethoxyquin	3	
4.1.2	배		Copper carbonate	3	주 24
		220	Sulphur dioxide	50	주 10
		324	Ethoxyquin	3	
4.1.3	감귤류	220	Sulphur dioxide	50	주 10

제 1 단		제 2 단		제 3 단	제 4 단
번호	식품유형 또는 하위 식품유형	허용된 식품첨가물		최대허용함량 (ppm, 별도로 명시된 경우 제외)	주석
		INS 번호	명칭설명		
		230	Diphenyl	100	
		231	Ortho-phenylphenol	12	
4.2	냉동 슬라이스 사과	220	Sulphur dioxide	500	주 10
4.3	건과일	210	Benzoic acid	800	
		220	Sulphur dioxide	1000	주 10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265	주 9
4.3.1	말린 무화과	200	Sorbic acid	500	주 22
		210	Benzoic acid	800	주 22
		220	Sulphur dioxide	1000	주 10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265	주 9
4.3.2	말린 매실	200	Sorbic acid	1000	주 22
		210	Benzoic acid	800	주 22
		220	Sulphur dioxide	1000	주 10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265	주 9
4.3.3	말린 살구	200	Sorbic acid	500	주 22
		210	Benzoic acid	800	주 22
		220	Sulphur dioxide	2000	주 10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265	주 9
4.3.4	건포도	210	Benzoic acid	800	
		220	Sulphur dioxide	1500	주 10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265	주 9
4.3.5	말린 코코넛	210	Benzoic acid	800	
		220	Sulphur dioxide	50	주 10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265	주 9
4.4	식초, 기름 또는 소금물에 절인 과일	200	Sorbic acid	1000	
		210	Benzoic acid	1000	주 20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250	주 20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250	주 20
		220	Sulphur dioxide	100	주 10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250	주 9

제 1 단		제 2 단		제 3 단	제 4 단
번호	식품유형 또는 하위 식품유형	허용된 식품첨가물		최대허용함량 (ppm, 별도로 명시된 경우 제외)	주석
		INS 번호	명칭설명		
4.5	캔 또는 병에 담긴 과일(저온살균 또는 고온 멸균)	210	Benzoic acid	800	주 20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800	주 20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800	주 20
		220	Sulphur dioxide	350	주 10
		512	Stannous chloride	20	주 11
4.6	잼, 젤리포, 감귤잼	200	Sorbic acid	1000	주 18
		210	Benzoic acid	1000	주 18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500	주 18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500	주 18
		220	Sulphur dioxide	100	주 10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130	주 9
4.7	과일 기반 스프레드(예를 들어, 애플 버터, 레몬 커드 및 처트니). 식품유형 4.6 및 하위 식품유형 제품(해당될 경우) 제외	200	Sorbic acid	1000	주 22
		210	Benzoic acid	1000	주 22
		220	Sulphur dioxide	500	주 10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100	주 9
4.8	설탕 절임 과일	200	Sorbic acid	1000	주 18
		210	Benzoic acid	1000	주 18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1000	주 18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1000	주 18
		220	Sulphur dioxide	100	주 10
4.9	과일 조제식품, 과육, 푸레, 과일 소스, 식품표면용 과일토피, 코코넛 밀크 및 코코넛 크림 포함	200	Sorbic acid	1000	주 18
		210	Benzoic acid	1000	주 18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800	주 18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800	주 18
		220	Sulphur dioxide	500	주 10
4.10	과일 디저트, 물이 주로 들어간 과일 맛 디저트 포함. 식품유형 7.2.1 및 7.2.2 그리고 그 하위식품유형(해당될	210	Benzoic acid	1000	
		310	Propyl gallate	90	주 1, 6

제 1 단		제 2 단		제 3 단	제 4 단
번호	식품유형 또는 하위 식품유형	허용된 식품첨가물		최대허용함량 (ppm, 별도로 명시된 경우 제외)	주석
		INS 번호	명칭설명		
	경우)의 과일 제빵제과, 식품유형 3 및 그 하위식품유형(해당될 경우)의 식용가능한 과일 맛 빙과류 및 식품유형 1.6 및 그 하위식품유형(해당될 경우)의 과일이 함유된 유류 디저트 불포함				
4.11	발효 과일제품	200	Sorbic acid	1000	
		210	Benzoic acid	1000	주 20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250	주 20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250	주 20
		220	Sulphur dioxide	100	주 10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250	주 9
4.12	가오빙(糕餅: 케이크, 과자, 빵, 떡 등) 과일 소, 식품유형 4.9 및 그 하위식품유형(해당될 경우)푸레	200	Sorbic acid	450	주 18
		210	Benzoic acid	1000	주 18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800	주 18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800	주 18
		220	Sulphur dioxide	100	주 10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650	주 9
4.13	익힌 과일	210	Benzoic acid	1000	주 20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800	주 20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800	주 20
		220	Sulphur dioxide	350	주 10
4.14	박피, 절개 또는 채를 썬 신선 감자 또는 백색류 채소	220	Sulphur dioxide	50	주 10
4.15	냉동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꼬투리, 알로에 포함), 견과류, 씨앗류				

제 1 단		제 2 단		제 3 단	제 4 단
번호	식품유형 또는 하위 식품유형	허용된 식품첨가물		최대허용함량 (ppm, 별도로 명시된 경우 제외)	주석
		INS 번호	명칭설명		
4.15.1	냉동 프렌치 프라이 감자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100	주 9
4.15.2	냉동 아보카도	220	Sulphur dioxide	300	주 10
4.15.3	냉동 감자 및 백색류 채소	220	Sulphur dioxide	50	주 10
4.16	건조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꼬투리, 알로에 포함), 견과류, 씨앗류	210	Benzoic acid	1000	
		220	Sulphur dioxide	500	주 10
4.16.1	말린 감자	210	Benzoic acid	1000	
		220	Sulphur dioxide	500	주 10
		310	Propyl gallate	50	주 1, 2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4.16.2	말린 콩	210	Benzoic acid	1000	
		220	Sulphur dioxide	500	주 10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800	주 9,27
4.16.3	즉석 섭취 형태의 탈수된(건조) 채소	210	Benzoic acid	1000	
		220	Sulphur dioxide	500	주 10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200	주 9,27
4.16.4	건호리병박 면	210	Benzoic acid	1000	
		220	Sulphur dioxide	5000	주 10
4.17	식초, 기름, 소금물 또는 간장에 절인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꼬투리, 알로에 포함)와 해조류. 식품유형 12.13, 12.14 및 하위 식품유형(해당되는 경우)의 발효대두제품 그리고 식품유형 4.21 및 하위식품유형(해당될 경우)의 발효채소는 제외	200	Sorbic acid	1000	주 18
		210	Benzoic acid	2000	주 18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250	주 18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250	주 18
		220	Sulphur dioxide	100	주 10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250	주 9
4.17.1	절인 올리브	200	Sorbic acid	500	주 18
		210	Benzoic acid	2000	주 18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250	주 18

제 1 단		제 2 단		제 3 단	제 4 단
번호	식품유형 또는 하위 식품유형	허용된 식품첨가물		최대허용함량 (ppm, 별도로 명시된 경우 제외)	주석
		INS 번호	명칭설명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250	주 18
		220	Sulphur dioxide	100	주 10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250	주 9
		579	Ferrous gluconate	150	주 12
4.18	캔 또는 병에 포장된(저온살균 또는 고온 멸균) 또는 살균 비닐 포장된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꼬투리, 알로에 포함) 및 해조류	220	Sulphur dioxide	50	주 10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365	주 9
		512	Stannous chloride	25	주 11
4.19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꼬투리, 알로에 포함), 해조류, 견과류와 씨앗류 푸레 및 스르페드(예를 들어, 토마토 푸레, 땅콩 버터, 캐슈 버터)	210	Benzoic acid	1000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250	주 9
4.19.1	저열량 제품	210	Benzoic acid	1000	
		220	Sulphur dioxide	500	주 10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250	주 9
4.19.2	토마토 푸레	210	Benzoic acid	1000	주 20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800	주 20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800	주 20
		220	Sulphur dioxide	350	주 10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250	주 9
4.20	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꼬투리, 알로에 포함), 해조류, 견과류와 씨앗류 과육, 페이스트 및 가공품(예를 들어, 채소 디저트와 소스, 설탕에 절인 채소), 식품 유형 4.19 및 하위식품유형 제품 제외 (해당될 경우)	210	Benzoic acid	3000	
		220	Sulphur dioxide	500	주 10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80	주 9

제 1 단		제 2 단		제 3 단	제 4 단
번호	식품유형 또는 하위 식품유형	허용된 식품첨가물		최대허용함량 (ppm, 별도로 명시된 경우 제외)	주석
		INS 번호	명칭설명		
4.20.1	토마토 과육 미 토마토 페이스트	210	Benzoic acid	3000	주 20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800	주 20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800	주 20
		220	Sulphur dioxide	500	주 10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80	주 9
4.20.2	가당 견과류 페이스트	200	Sorbic acid	1000	주 22
		210	Benzoic acid	3000	주 22
		220	Sulphur dioxide	500	주 10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80	주 9
4.20.3	고추냉이 과육	210	Benzoic acid	3000	주 20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250	주 20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250	주 20
		220	Sulphur dioxide	500	주 10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80	주 9
4.21	발효채소(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꼬투리, 알로에 포함) 및 해조류 제품. 식품 유형 12.13, 12.14 및 하위 식품유형(해당될 경우)의 발효대두제품 제외	200	Sorbic acid	1000	주 18
		210	Benzoic acid	1000	주 18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250	주 18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250	주 18
		220	Sulphur dioxide	500	주 10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250	주 9
4.22	익히거나 튀긴 채소 (버섯과 진균, 뿌리와 줄기, 콩과 콩꼬투리, 알로에 포함) 및 해조류	210	Benzoic acid	1000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250	주 9
4.22.1	익히거나 사전 포장된 사탕무 뿌리	210	Benzoic acid	1000	주 20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250	주 20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250	주 20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250	주 9

제 1 단		제 2 단		제 3 단	제 4 단
번호	식품유형 또는 하위 식품유형	허용된 식품첨가물		최대허용함량 (ppm, 별도로 명시된 경우 제외)	주석
		INS 번호	명칭설명		
5	디저트				
5.1	모조품과 초콜릿 대체품을 포함한 코코아 제품 및 초콜릿 제품				
5.1.1	코코아 혼합물(파우더) 및 코코아 덩어리/유병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5.1.2	코코아 혼합물(시럽)	210	Benzoic acid	700	주 20
		214	Ethyl para- hydroxybenzoate	700	주 20
		218	Methyl para- hydroxybenzoate	700	주 20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5.1.3	속재료를 포함한	210	Benzoic acid	1500	
	코코아기반 스프레드 (예를 들어, 코코아 버터)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50	주 9
5.1.4	초콜릿을 입힌 견과류 및 과일을 포함한 코코아 및 초콜릿 제품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5.1.4.1	화이트 초콜릿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2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200	주 1, 2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5.1.4.2	초콜릿을 입힌 마시멜로	200	Sorbic acid	1000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5.1.5	모조 초콜릿,	210	Benzoic acid	1500	
	초콜릿 대체품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5.2	하드 캔디, 소프트 캔디, 너겟을 포함한 디저트. 식품 유형 5.1, 5.3, 5.4 및 하위 식품유형의 제품(해당될 경우) 불포함	210	Benzoic acid	1500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2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200	주 1, 2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제 1 단		제 2 단		제 3 단	제 4 단
번호	식품유형 또는 하위 식품유형	허용된 식품첨가물		최대허용함량 (ppm, 별도로 명시된 경우 제외)	주석
		INS 번호	명칭설명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5.2.1	아몬드 시럽(마지팬)	200	Sorbic acid	1000	주 22
		210	Benzoic acid	1500	주 22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2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200	주 1, 2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5.3	껌	210	Benzoic acid	1500	
		310	Propyl gallate	1000	주 2
		314	Guaiac resin	1500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400	주 2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400	주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400	주 2
5.4	데코레이션 (예를 들어, 베이커리 제품 장식, 식품표면에 쓰일 토픽(과일 외), 달콤한 소스)	200	Sorbic acid	1000	주 22
		210	Benzoic acid	1500	주 22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2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200	주 1, 2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6	곡물류와 곡립, 뿌리와 줄기, 콩과 콩고투리가 주재료인 곡류식품. 식품분류 7 및 하위식품유형의 제빵제과 불포함				
6.1	보리, 옥수수, �트밀, 쌀, 수수, 콩, 밀을 포함한 통곡물이나 도정된 곡물	310	Propyl gallate	100	주 1
6.2	밀가루	220	Sulphur dioxide	200	주 10
6.3	전분	220	Sulphur dioxide	50	주 10
6.4	분쇄 귀리를 포함한 아침식사용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2

제 1 단		제 2 단		제 3 단	제 4 단
번호	식품유형 또는 하위 식품유형	허용된 식품첨가물		최대허용함량 (ppm, 별도로 명시된 경우 제외)	주석
		INS 번호	명칭설명		
	곡류식품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100	주 1, 2
6.5	사전에 조리된 면 제품 및 유사제품	210	Benzoic acid	1000	
		220	Sulphur dioxide	20	주 10
		310	Propyl gallate	100	주 1, 2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200	주 1, 2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6.5.1	인스턴트 면류	200	Sorbic acid	2000	
		210	Benzoic acid	1000	
		220	Sulphur dioxide	20	주 10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2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200	주 1, 2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6.6	곡물 및 전분이 주재료인 디저트(예를 들어, 쌀푸딩, 카사바 푸딩), 곡물과 전분이 주재료인 디저트 소 포함	210	Benzoic acid	1000	
		310	Propyl gallate	90	주 1, 6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315	주 9
7	제빵제과				
7.1	단맛이 첨가되지 않은 모든 제빵제과 및 빵 제품을 포함한 빵, 일반 제빵제과 및 혼합물				
7.1.1	빵과 롤(예를 들어, 흰 빵, 곡물빵, 건포도빵, 통밀빵, 통밀롤 및 소다 빵)	210	Benzoic acid	1000	
		280	Propionic acid	3000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200	주 1, 2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7.1.2	크래커(예를 들어, 소다 크래커,	200	Sorbic acid	1000	주 5

제 1 단		제 2 단		제 3 단	제 4 단
번호	식품유형 또는 하위 식품유형	허용된 식품첨가물		최대허용함량 (ppm, 별도로 명시된 경우 제외)	주석
		INS 번호	명칭설명		
	호밀 과자). 식품유형 14.1 및 하위 식품유형의 조미 크래커(해당될 경우)는 불포함	210	Benzoic acid	1000	
		280	Propionic acid	1000	주 5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200	주 1, 2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7.1.3	기타 일반 제빵제과 식품(예를 들어, 베이글, 피타, 영국식 머핀)	210	Benzoic acid	1000	
		280	Propionic acid	3000	
		310	Propyl gallate	100	주 1, 2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200	주 1, 2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7.1.4	빵 고물과 빵가루를 포함한 빵류 제품	210	Benzoic acid	1000	
		280	Propionic acid	3000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200	주 1, 2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7.1.5	찐빵(예를 들어, 만토우 및 만두)	210	Benzoic acid	1000	
		280	Propionic acid	3000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7.1.6	빵 및 일반 제빵제과를 만들 때 사용되는 혼합 재료	210	Benzoic acid	1000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7.2	제빵제과 식품 및 혼합물				
7.2.1	케이크와 쿠키(예를 들어, 치즈케이크, 서양식 케이크, 월병, 오토밀 쿠키, 과일 소 파이 및 커스터드 파이)	200	Sorbic acid	1000	주 5
		210	Benzoic acid	1000	
		220	Sulphur dioxide	50	주 10
		280	Propionic acid	1000	주 5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200	주 1, 2

제 1 단		제 2 단		제 3 단	제 4 단
번호	식품유형 또는 하위 식품유형	허용된 식품첨가물		최대허용함량 (ppm, 별도로 명시된 경우 제외)	주석
		INS 번호	명칭설명		
			hydroxytoluene		
7.2.2	기타 정제 제빵제과 식품(예를 들어, 팬케이크, 대니시 페이스트리, 아이스크림 콘, 밀가루로 만든 디저트, 도넛, 롤, 스콘 및 머핀)	200	Sorbic acid	1000	주 5
		210	Benzoic acid	1000	
		220	Sulphur dioxide	50	주 10
		280	Propionic acid	1000	주 5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7.2.3	정제 제빵제과용 혼합재료 (예를 들어, 케이크 혼합 재료, 밀가루 디저트 혼합 재료, 팬케이크 혼합재료, 파일 혼합재료 및 와플 혼합재료)	210	Benzoic acid	1000	
		220	Sulphur dioxide	50	주 10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2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8	가금류와 야생고리를 포함한 육류와 육류 제품				
8.1	분쇄한 신선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384	Isopropyl citrates	200	
8.2	전체 또는 절단된 부위가 가공된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8.2.1	전체 또는 절단된 비가열 절임방식(염장 포함)으로 가공된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제품	250	Sodium nitrite	200	
		251	Sodium nitrate	500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2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100	주 1, 2, 25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100	주 1, 2, 25
8.2.2	전체 또는 절단된 비가열 절임(염장포함) 및 탈수방식으로 가공된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제품	210	Benzoic acid	1000	
		235	Pimaricin	6	
		250	Sodium nitrite	200	
		251	Sodium nitrate	500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2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100	주 1, 2, 25

제 1 단		제 2 단		제 3 단	제 4 단
번호	식품유형 또는 하위 식품유형	허용된 식품첨가물		최대허용함량 (ppm, 별도로 명시된 경우 제외)	주석
		INS 번호	명칭설명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100	주 1, 2, 25
		384	Isopropyl citrates	200	
8.2.3	전체 또는 절단된 비가열 발효처리된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제품	250	Sodium nitrite	200	
		251	Sodium nitrate	500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2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100	주 1, 2, 25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100	주 1, 2, 25
8.2.4	전체 또는 절단된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제품. 삶거나(염제 후 삶거나, 탈수 후 삶은 것 포함), 가열처리한 것(멸균포함) 그리고 캔 고기 포함.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2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100	주 1, 2, 25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100	주 1, 2, 25
8.2.4.1	보존 처리 및 열 처리된 육류	250	Sodium nitrite	125	
		251	Sodium nitrate	500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2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100	주 1, 2, 25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100	주 1, 2, 25
8.2.5	전체 또는 절단된 냉동 가공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식품, 냉동 생고기 및 익힌고기 포함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2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100	주 1, 2, 25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100	주 1, 2, 25
8.3	가공된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분쇄제품				
8.3.1	비가열 절임(염장 포함) 가공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분쇄제품	220	Sulphur dioxide	450	주 10
		250	Sodium nitrite	200	
		251	Sodium nitrate	500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2
		319	Tertiary	100	주 1, 2, 26

제 1 단		제 2 단		제 3 단	제 4 단
번호	식품유형 또는 하위 식품유형	허용된 식품첨가물		최대허용함량 (ppm, 별도로 명시된 경우 제외)	주석
		INS 번호	명칭설명		
			butylhydroquinone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100	주 1, 2, 26
8.3.2	비가열 절임(염장 포함) 또는 탈수처리된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분쇄제품	210	Benzoic acid	1000	
		220	Sulphur dioxide	450	주 10
		235	Pimaricin	1 mg/dm ²	주 3
		250	Sodium nitrite	200	
		251	Sodium nitrate	500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2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100	주 1, 2, 26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100	주 1, 2, 26
		384	Isopropyl citrates	200	
8.3.3	비가열 발효처리된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분쇄제품	220	Sulphur dioxide	450	주 10
		250	Sodium nitrite	200	
		251	Sodium nitrate	500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2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100	주 1, 2, 26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100	주 1, 2, 26
8.3.4	열처리된 가공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분쇄제품. 삶거나(절이고 삶거나, 탈수하고 삶은 것 포함) 가열처리(소독 포함)된 통조림 분쇄제품 포함(예를 들어, 푸아그라, 파테, 미트볼)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2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100	주 1, 2, 26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100	주 1, 2, 26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35	주 9
8.3.4.1	가열처리된 절임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분쇄제품(예를 들어, 익히고 절인 분쇄육, 캔에 옥수수과 함께 담긴 고기, 런천 미트)	220	Sulphur dioxide	450	주 10
		250	Sodium nitrite	125	
		251	Sodium nitrate	500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2
		319	Tertiary	100	주 1, 2, 26

제 1 단		제 2 단		제 3 단	제 4 단
번호	식품유형 또는 하위 식품유형	허용된 식품첨가물		최대허용함량 (ppm, 별도로 명시된 경우 제외)	주석
		INS 번호	명칭설명		
			butylhydroquinone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100	주 1, 2, 26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35	주 9
8.3.4.2	가열처리된 햄버거 고기패티 또는 유사 제품	220	Sulphur dioxide	450	주 10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2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100	주 1, 2, 26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100	주 1, 2, 26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35	주 9
8.3.4.3	가열처리된 소시지 또는 소시지 미트(예를 들어, 아침식사용 소시지)	220	Sulphur dioxide	450	주 10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2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100	주 1, 2, 26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100	주 1, 2, 26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35	주 9
8.3.5	냉동된 가공 가축과 가금 및 야생고기 분쇄제품. 날것, 반숙 및 완숙 제품(예를 들어, 빵가루나 튀김 반죽을 입힌 냉동 닭)포함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2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100	주 1, 2, 26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100	주 1, 2, 26
8.3.5.1	냉동 햄버거 고기패티 또는 유사제품	220	Sulphur dioxide	450	주 10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2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100	주 1, 2, 26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100	주 1, 2, 26

제 1 단		제 2 단		제 3 단	제 4 단
번호	식품유형 또는 하위 식품유형	허용된 식품첨가물		최대허용함량 (ppm, 별도로 명시된 경우 제외)	주석
		INS 번호	명칭설명		
9	어류 및 어류가공품, 수상 척추 동물(어류 및 수생포유류(예를 들어, 고래)), 수생 무척추 동물(예를 들어, 해파리), 연체 동물(예를 들어, 재첩 및 달팽이), 갑각류(예를 들어, 새우, 게, 랍스터) 그리고 극피동물(예를 들어, 성개, 해삼)포함				
9.1	신선 연체류, 갑각류 및 극피동물	220	Sulphur dioxide	100	주 10
9.2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을 포함한 가공 어류 및 어류 제품				
9.2.1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을 포함한 냉동(신선 및 반숙 포함) 생선, 생선 필렛, 어육 제품(예를 들어, 냉동 재첩, 냉동 대구포, 냉동 게, 냉동 새우, 냉동 어란, 냉동 연육)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75	주 9
9.2.1.1	냉동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	220	Sulphur dioxide	100	주 10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75	주 9
9.2.2	냉동, 튀김옷을 입힌 또는 익히지 않은 생선, 생선 필렛 및 어육 제품. 연체동물, 갑각류 및 극피 동물(예, 튀김가루가 묻은 냉동 생선핑거 및 튀김반죽이 묻은 냉동 생선 필렛)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75	주 9
		388	Thiodipropionic acid	200	주 1

제 1 단		제 2 단		제 3 단	제 4 단
번호	식품유형 또는 하위 식품유형	허용된 식품첨가물		최대허용함량 (ppm, 별도로 명시된 경우 제외)	주석
		INS 번호	명칭설명		
9.2.3	익힌(튀김 제외) 생선 및 어육제품. 익힌 연육, 익힌 어묵 페이스트, 익힌 어란 포함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50	주 9
9.2.3.1	익힌(튀김 제외) 어단 및 어묵	200	Sorbic acid	1000	주 18
		210	Benzoic acid	1000	주 18
		214	Ethyl para- hydroxybenzoate	1000	주 18
		218	Methyl para- hydroxybenzoate	1000	주 18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50	주 9
9.2.4	익힌(튀김 제외)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	220	Sulphur dioxide	150	주 10
9.2.4.1	익힌(튀김 제외)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의 어단과 어묵	200	Sorbic acid	1000	주 18
		210	Benzoic acid	1000	주 18
		214	Ethyl para- hydroxybenzoate	1000	주 18
		218	Methyl para- hydroxybenzoate	1000	주 18
		220	Sulphur dioxide	150	주 10
9.2.4.2	익힌(튀김 제외) 새우	210	Benzoic acid	2000	
		220	Sulphur dioxide	150	주 10
9.2.4.2.1	익힌(튀김 제외) 갈색 새우	210	Benzoic acid	6000	
		220	Sulphur dioxide	150	주 10
9.2.5	튀긴 연체동물,	200	Sorbic acid	1000	주 18
	갑각류, 극피동물	210	Benzoic acid	1000	주 18
	어단과 어묵	214	Ethyl para- hydroxybenzoate	1000	주 18
		218	Methyl para- hydroxybenzoate	1000	주 18
9.2.6	연체동물, 갑각류,	210	Benzoic acid	200	
	극피동물을 포함한	220	Sulphur dioxide	30	주 10
	훈제, 탈수, 발효	310	Propyl gallate	100	주 1, 2
	및/또는 염장 생선과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어육 제품. 연체동물, 갑각류 및 극피동물 포함)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9.2.6.1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을	200	Sorbic acid	1000	주 18

제 1 단		제 2 단		제 3 단	제 4 단
번호	식품유형 또는 하위 식품유형	허용된 식품첨가물		최대허용함량 (ppm, 별도로 명시된 경우 제외)	주석
		INS 번호	명칭설명		
	포함한 채처럼 썰린 건조 생선	210	Benzoic acid	200	주 18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200	주 18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200	주 18
		220	Sulphur dioxide	30	주 10
		310	Propyl gallate	100	주 1, 2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9.2.6.2	발효 어육 제품	210	Benzoic acid	1000	
		220	Sulphur dioxide	30	주 10
		310	Propyl gallate	100	주 1, 2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9.2.6.3	염장 어육	200	Sorbic acid	200	
		210	Benzoic acid	200	
		220	Sulphur dioxide	30	주 10
		310	Propyl gallate	100	주 1, 2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9.3	준 보존 처리된 생선 및 어육 제품.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 포함				
9.3.1	식초, 술에 절인 및/또는 젤리로 조제한 생선 및 어육 제품.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 동물 포함	200	Sorbic acid	1000	주 18
		210	Benzoic acid	2000	주 18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250	주 18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250	주 18
		220	Sulphur dioxide	100	주 10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9.3.2	절인 및/또한 소금물에 절인 생선 및 어육제품. 연체동물,	200	Sorbic acid	1000	주 18
		210	Benzoic acid	2000	주 18

제 1 단		제 2 단		제 3 단	제 4 단
번호	식품유형 또는 하위 식품유형	허용된 식품첨가물		최대허용함량 (ppm, 별도로 명시된 경우 제외)	주석
		INS 번호	명칭설명		
	갑각류, 극피동물 포함.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250	주 18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250	주 18
		220	Sulphur dioxide	100	주 10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250	주 9
9.3.3	염장 및/ 또는 보존료로 처리한 준 보존 연어 대체품, 캐비어 및 기타 어란 제품	200	Sorbic acid	1000	주 18
		210	Benzoic acid	2000	주 18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250	주 18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250	주 18
		220	Sulphur dioxide	100	주 10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9.3.3.1	준 보존 처리된 캐비어	200	Sorbic acid	1000	주 18
		210	Benzoic acid	2500	주 18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250	주 18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250	주 18
		220	Sulphur dioxide	100	주 10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9.3.4	준 보존처리된 생선 및 어류제품. 연체동물, 갑각류 및 극피동물 포함(예를 들어, 동양식 전통 어육 페이스트). 식품유형 9.3.1 부터 9.3.3 및 하위식품유형(해당될 경우)제품 불포함	210	Benzoic acid	2000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9.3.4.1	새우젓	210	Benzoic acid	2000	주 20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1000	주 20

제 1 단		제 2 단		제 3 단	제 4 단
번호	식품유형 또는 하위 식품유형	허용된 식품첨가물		최대허용함량 (ppm, 별도로 명시된 경우 제외)	주석
		INS 번호	명칭설명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1000	주 20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9.4	완전 보존 처리된 생선 및 어육 제품. 연체동물, 갑각류 및 극피동물 포함	220	Sulphur dioxide	150	주 10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340	주 9
9.4.1	캔 전복	220	Sulphur dioxide	1000	주 10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340	주 9

제 1 단		제 2 단		제 3 단	제 4 단
번호	식품유형 또는 하위 식품유형	허용된 식품첨가물		최대허용함량 (ppm, 별도로 명시된 경우 제외)	주석
10	난제품				
10.1	전란, 노른자 및 흰자를 포함하여 저온 살균 및 화학적으로 보존 처리된(예를 들어, 소금을 추가) 액란 제품	210	Benzoic acid	5000	
10.2	탈수 및/또는 열 응고(저온 살균) 난제품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200	주 9, 15
10.3	달걀 기반 디저트 (예를 들어, 에그 커스타드 및 고급 제빵제과용 속재료)	210	Benzoic acid	1000	주 1, 6
		310	Propyl gallate	90	
11	유당과 꿀을 제외한 당류 및 테이블 감미료				
11.1	백설탕, 무수 포도당, 함수 포도당, 과당	220	Sulphur dioxide	15	주 10
11.2	분말 설탕 및 분말 덱스트로오스	220	Sulphur dioxide	15	주 10
11.3	고운 백설탕, 고운 황설탕, 포도당 시럽, 건포도당 시럽, 비정제 사탕수수 설탕	220	Sulphur dioxide	20	주 10
11.3.1	캔디류 제조에 사용되는 건조된 포도당 시럽	220	Sulphur dioxide	150	주 10
11.3.2	캔디류 제조에 사용되는 포도당 시럽	220	Sulphur dioxide	400	주 10
11.4	원당 또는 압착 방식 백설탕	220	Sulphur dioxide	70	주 10
11.5	갈색 설탕 (예를 들어, 갈색 자당). 식품유형 11.3 및 하위식품유형(해당될 경우) 제품	220	Sulphur dioxide	40	주 10
11.6	당밀을 포함한 설탕 용액 및 시럽 및 (부분)전화당. 식품유형 11.3 및 하위식품유형(해당될 경우)제품 불포함	220	Sulphur dioxide	70	주 10

제 1 단		제 2 단		제 3 단	제 4 단
번호	식품유형 또는 하위 식품유형	허용된 식품첨가물		최대허용함량 (ppm, 별도로 명시된 경우 제외)	주석
11.7	기타 당 및 시럽 (예를 들어, 자일로오스, 메이플 시럽 및 장식용 설탕)	210	Benzoic acid	1000	
		220	Sulphur dioxide	40	주 10
11.8	고강도 감미료 함유 제품을 포함한 테이블 감미료 (예를 들어, 아세설팜 칼륨 및 솔비톨)	210	Benzoic acid	2000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1000	주 9, 16
12	향신료, 양념, 수프, 소스, 샐러드, 효모 및 유사제품, 간장, 메주, 대두 단백질 분말 및 혼합물				
12.1	허브 및 향신료 (예를 들어, 바질, 오레가노, 칠리 페이스트, 카레 페이스트)	220	Sulphur dioxide	150	주 10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2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200	주 1, 2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70	주 9
12.1.1	카레 페이스트	210	Benzoic acid	350	주 20
		214	Ethyl para- hydroxybenzoate	350	주 20
		218	Methyl para- hydroxybenzoate	350	주 20
		220	Sulphur dioxide	150	주 10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2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200	주 1, 2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70	주 9
12.2	양념 (예를 들어, 연육제, 양파 소금, 마늘 소금). 양념 소스(예를 들어, 캐첩, 마요네즈, 머스타드) 불포함	210	Benzoic acid	1000	
		220	Sulphur dioxide	200	주 10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2
		319	Tertiary	200	주 1, 2

제 1 단		제 2 단		제 3 단	제 4 단
번호	식품유형 또는 하위 식품유형	허용된 식품첨가물		최대허용함량 (ppm, 별도로 명시된 경우 제외)	주석
			butylhydroquinone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70	주 9
12.3	사과 식초, 와인 식초, 맥아 식초, 알코올 식초, 곡물 식초, 건포도 식초 및 과일(와인) 식초를 포함한 식초	210	Benzoic acid	1000	
		220	Sulphur dioxide	100	주 10
12.4	머스타드	210	Benzoic acid	1000	
		220	Sulphur dioxide	250	주 10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200	주 1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75	주 9
12.4.1	디종 머스타드	210	Benzoic acid	1000	
		220	Sulphur dioxide	500	주 10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200	주 1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75	주 9
12.5	캔, 병입 및 냉동을 포함한 즉석 취식 수프와 죽(예를 들어, 부용, 콘소메, 물 & 크림 기반 수프, 차우더, 비스크)	200	Sorbic acid	500	주 22
		210	Benzoic acid	500	주 22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2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200	주 1, 2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12.6	수프와 죽용 혼합물 (예를 들어, 부용 분말 및 각 제품, 분말 농축 수프 및 스톱 분말)	200	Sorbic acid	500	주 22
		210	Benzoic acid	500	주 22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175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2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200	주 1, 2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제 1 단		제 2 단		제 3 단	제 4 단
번호	식품유형 또는 하위 식품유형	허용된 식품첨가물		최대허용함량 (ppm, 별도로 명시된 경우 제외)	주석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12.7	유화 소스(예를 들어, 마요네즈 & 샐러드 드레싱)	200	Sorbic acid	1000	주 18
		210	Benzoic acid	1000	주 18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250	주 18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250	주 18
		220	Sulphur dioxide	300	주 10
		236	Formic acid	200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2
		314	Guaiac resin	600	주 1, 2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200	주 1, 2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100	주 1, 2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100	주 9
12.8	물, 코코넛 밀크 및 우유 기반 소스를 포함한 비유화 소스(예를 들어, 바비큐 소스, 케첩, 치즈 소스, 크림 소스, 우스터 소스, 브라운 그래비, 칠리 소스)	200	Sorbic acid	1000	주 18
		210	Benzoic acid	1000	주 18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250	주 18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250	주 18
		220	Sulphur dioxide	300	주 10
		236	Formic acid	200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2
		314	Guaiac resin	600	주 1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200	주 1, 2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100	주 1, 2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75	주 9
12.9	소스와 고기즙 제조용 혼합물(예를 들어, 치즈 소스,	210	Benzoic acid	1000	
		220	Sulphur dioxide	300	주 10
		236	Formic acid	200	

제 1 단		제 2 단		제 3 단	제 4 단
번호	식품유형 또는 하위 식품유형	허용된 식품첨가물		최대허용함량 (ppm, 별도로 명시된 경우 제외)	주석
	네덜란드 소스 및 샐러드 드레싱 제조용 혼합물)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2
		314	Guaiac resin	600	주 1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200	주 1, 2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100	주 1, 2
12.10	생선 소스와 굴 소스	200	Sorbic acid	1000	주 18
		210	Benzoic acid	1000	주 18
		214	Ethyl para- hydroxybenzoate	1000	주 18
		218	Methyl para- hydroxybenzoate	1000	주 18
		220	Sulphur dioxide	300	주 10
		236	Formic acid	200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2
		314	Guaiac resin	600	주 1, 2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200	주 1, 2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100	주 1, 2
12.11	샐러드(예를 들어, 마카로니 샐러드, 감자샐러드) 및 샌드위치 소스. 식품유형 4.19 와 5.1.3 및 하위식품유형 (해당될 경우)의 코코아 및 견과류 기반의 소스	210	Benzoic acid	1500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100	주 9
12.12	효모 및 유사 제품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12.13	간장	200	Sorbic acid	1000	주 18
		210	Benzoic acid	550	주 18
		214	Ethyl para- hydroxybenzoate	550	주 18
		218	Methyl para- hydroxybenzoate	550	주 18
12.13.1	비발효 간장	200	Sorbic acid	1000	주 18
		210	Benzoic acid	1000	주 18

제 1 단		제 2 단		제 3 단	제 4 단
번호	식품유형 또는 하위 식품유형	허용된 식품첨가물		최대허용함량 (ppm, 별도로 명시된 경우 제외)	주석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550	주 18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550	주 18
12.14	발효 간장 (예를 들어, 더우츠)	210	Benzoic acid	1000	주 20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1000	주 20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1000	주 20
12.15	대두단백질 분말과 혼합물(환원용 (예를 들어, 대두 음료 및 수제 두부))	210	Benzoic acid	1000	
13	유제품을 제외한 음료				
13.1	과일 주스	200	Sorbic acid	1000	주 18
		210	Benzoic acid	800	주 18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800	주 18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800	주 18
		220	Sulphur dioxide	50	주 10
13.1.1	포도 주스 제품 (성찬용 비발효)	200	Sorbic acid	1000	주 18
		210	Benzoic acid	2000	주 18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2000	주 18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2000	주 18
		220	Sulphur dioxide	70	주 10
13.2	채소 주스	200	Sorbic acid	400	주 18
		210	Benzoic acid	160	주 18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160	주 18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160	주 18
		220	Sulphur dioxide	50	주 10
13.3	농축 과일주스	200	Sorbic acid	1000	주 14, 18
		210	Benzoic acid	800	주 18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800	주 18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800	주 18

제 1 단		제 2 단		제 3 단	제 4 단
번호	식품유형 또는 하위 식품유형	허용된 식품첨가물		최대허용함량 (ppm, 별도로 명시된 경우 제외)	주석
		220	Sulphur dioxide	50	주 10, 14
13.4	농축 채소주스	200	Sorbic acid	2000	주 18
		210	Benzoic acid	800	주 18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800	주 18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800	주 18
		220	Sulphur dioxide	50	주 10
13.5	과일 넥타	200	Sorbic acid	1000	주 18
		210	Benzoic acid	800	주 18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800	주 18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800	주 18
		220	Sulphur dioxide	50	
13.6	채소 넥타	200	Sorbic acid	400	주 18
		210	Benzoic acid	160	주 18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160	주 18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160	주 18
		220	Sulphur dioxide	50	주 10
13.7	과일 넥타 농축액	200	Sorbic acid	1000	주 14, 18
		210	Benzoic acid	800	주 18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800	주 18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800	주 18
		220	Sulphur dioxide	50	주 10, 14
13.8	채소 넥타 농축액	200	Sorbic acid	2000	주 18
		210	Benzoic acid	600	주 18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600	주 18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600	주 18
		220	Sulphur dioxide	50	주 10, 14
13.9	물 기반 조미음료. 탄산, 비탄산, 농축물, "스포츠", "에너지" 또는 "전해질"음료,	200	Sorbic acid	400	주 18
		210	Benzoic acid	160	주 18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160	주 18

제 1 단		제 2 단		제 3 단	제 4 단
번호	식품유형 또는 하위 식품유형	허용된 식품첨가물		최대허용함량 (ppm, 별도로 명시된 경우 제외)	주석
	과립 음료, 즉석 섭취 커피 및 차류음료, 그리고 허브 기반 음료(예를 들어, 아이스티, 과일향 아이스티, 냉동 캔 카푸치노 음료)	218	Methyl para- hydroxybenzoate	160	주 18
		236	Formic acid	100	
		242	Dimethyl dicarbonate	250	주 13
		310	Propyl gallate	1000	주 1
		384	Isopropyl citrates	200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200	주 9
		388	Thiodipropionic acid	1000	주 11
		512	Stannous chloride	20	주 11
13.9.1	과즙 기반 음료 및 무당도 생강음료	200	Sorbic acid	400	주 18
		210	Benzoic acid	160	주 18
		214	Ethyl para- hydroxybenzoate	160	주 18
		218	Methyl para- hydroxybenzoate	160	주 18
		220	Sulphur dioxide	70	주 10, 14
		236	Formic acid	100	
		242	Dimethyl dicarbonate	250	주 13
		310	Propyl gallate	1000	주 1
		384	Isopropyl citrates	200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200	주 9
		388	Thiodipropionic acid	1000	주 1
		512	Stannous chloride	20	주 11
13.9.2	10 리터 당 2.3 kg 이상의 포도당 시럽이 함유된 포도당 음료	200	Sorbic acid	400	주 18
		210	Benzoic acid	800	주 18
		214	Ethyl para- hydroxybenzoate	800	주 18
		218	Methyl para- hydroxybenzoate	800	주 18
		236	Formic acid	100	
		242	Dimethyl dicarbonate	250	주 13
		310	Propyl gallate	1000	주 1
		384	Isopropyl citrates	200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200	주 9
		388	Thiodipropionic acid	1000	주 1

제 1 단		제 2 단		제 3 단	제 4 단
번호	식품유형 또는 하위 식품유형	허용된 식품첨가물		최대허용함량 (ppm, 별도로 명시된 경우 제외)	주석
		512	Stannous chloride	20	주 11
13.9.3	물 기반 향 첨가 음료 농축액(액상 또는 고형)	200	Sorbic acid	2000	주 18
		210	Benzoic acid	800	주 18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800	주 18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800	주 18
		236	Formic acid	100	
		242	Dimethyl dicarbonate	250	주 13
		310	Propyl gallate	1000	주 1
		384	Isopropyl citrates	200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200	주 9
		388	Thiodipropionic acid	1000	주 1
		512	Stannous chloride	20	주 11
13.10	커피, 커피대체품, 차, 허브차, 기타 곡류 및 곡물 뜨거운 음료. 커피제품 제조용 커피콩 포함. 코코아 불포함	210	Benzoic acid	1000	주 20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450	주 20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450	주 20
		242	Dimethyl dicarbonate	250	주 13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35	주 9
13.10.1	고형 커피 추출물	210	Benzoic acid	1000	주 20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450	주 20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450	주 20
		220	Sulphur dioxide	150	주 10
		242	Dimethyl dicarbonate	250	주 13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35	주 9
13.11	맥주와 맥아 음료	210	Benzoic acid	70	주 20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70	주 20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70	주 20
		220	Sulphur dioxide	50	주 10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25	주 9

제 1 단		제 2 단		제 3 단	제 4 단
번호	식품유형 또는 하위 식품유형	허용된 식품첨가물		최대허용함량 (ppm, 별도로 명시된 경우 제외)	주석
13.12	사과주 및 배주	200	Sorbic acid	200	
		220	Sulphur dioxide	200	주 10
		242	Dimethyl dicarbonate	250	주 13
		1105	Lysozyme	500	
13.12.1	알코올 함량 7%보다 적은 사과주 및 배주	200	Sorbic acid	200	주 22
		210	Benzoic acid	1000	주 22
		220	Sulphur dioxide	200	주 10
		242	Dimethyl dicarbonate	250	주 13
		1105	Lysozyme	500	
13.13	포도주	200	Sorbic acid	400	
		220	Sulphur dioxide	350	주 10
		242	Dimethyl dicarbonate	200	주 13
		1105	Lysozyme	500	
13.13.1	백주	200	Sorbic acid	400	
		220	Sulphur dioxide	400	주 10
		242	Dimethyl dicarbonate	200	주 13
		1105	Lysozyme	500	
13.14	술(포도주, 사과주 및 배주 제외) (예를 들어, 미주 (일본청주), 스파클링 과일주 및 비 스파클링 과일주)	200	Sorbic acid	400	주 22
		210	Benzoic acid	1000	주 22
		220	Sulphur dioxide	200	주 10
		242	Dimethyl dicarbonate	250	주 13
13.15	벌꿀 술	200	Sorbic acid	400	주 22
		210	Benzoic acid	1000	주 22
		220	Sulphur dioxide	200	주 10
		242	Dimethyl dicarbonate	200	주 13
13.16	알코올 함량 15%를 초과한 증류알콜음료	200	Sorbic acid	400	
		220	Sulphur dioxide	200	주 10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25	주 9
13.17	향이 첨가된 알코올 음료(예를 들어, 술, 쿨러타입 알코올 음료, 저도수 청량음료)	200	Sorbic acid	400	주 22
		210	Benzoic acid	1000	주 22
		220	Sulphur dioxide	70	주 10
		38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25	주 10

제 1 단		제 2 단		제 3 단	제 4 단
번호	식품유형 또는 하위 식품유형	허용된 식품첨가물		최대허용함량 (ppm, 별도로 명시된 경우 제외)	주석
14	즉석 섭취 스낵				
14.1	감자, 곡류, 밀가루 또는 전분(뿌리와 줄기, 콩과 콩꼬투리) 기반 스낵제품. 모든 플레인 및 조미 스낵(예를 들어, 감자칩, 팝콘 및 향 첨가 크래커) 포함. 식품유형 7.1.2 및 하위식품유형(해당될 경우) 플레인 크래커 불포함	210	Benzoic acid	1000	
		220	Sulphur dioxide	50	주 10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2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200	주 1, 2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388	Thiodipropionic acid	200	
14.2	가공견과, 견과 표면이 입혀진 것과 견과 혼합물(예를 들어, 견과일이 혼합된 것)	310	Propyl gallate	200	주 1, 2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200	주 1, 2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388	Thiodipropionic acid	200	
14.3	생선 기반 스낵. 식품유형 9.2.6 및 하위 식품유형(해당될 경우)의 말린 생선 스낵류와 식품유형 8.3.2 및 하위식품유형(해당될 경우)의 말린 육류 스낵식품	319	Tertiary butylhydroquinone	2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
		388	Thiodipropionic acid	200	
15	기타				
15.1	식품첨가물				
15.1.1	착색료(허용된 착색료가 용액 형태일 경우)	200	Sorbic acid	1000	주 18
		210	Benzoic acid	2000	주 18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2000	주 18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2000	주 18
15.1.2	허용된 감미료와 물만으로 구성된 조제물	210	Benzoic acid	750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250	주 17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250	주 17
15.1.3	Dimethylpolysiloxane	200	Sorbic acid	1000	주 19
		210	Benzoic acid	2000	주 19

제 1 단		제 2 단		제 3 단	제 4 단
번호	식품유형 또는 하위 식품유형	허용된 식품첨가물		최대허용함량 (ppm, 별도로 명시된 경우 제외)	주석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2000	주 19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2000	주 19
		220	Sulphur dioxide	1000	주 10, 19
15.2	향료 및 향미 시럽	210	Benzoic acid	800	주 19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800	주 19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800	주 19
		220	Sulphur dioxide	350	주 10, 19
15.3	효소				
15.3.1	액상 레닛	210	Benzoic acid	2000	주 20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2000	주 20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2000	주 20
15.3.2	고형 파파인	220	Sulphur dioxide	30000	주 10
15.3.3	수용액 파파인	200	Sorbic acid	1000	주 19
		220	Sulphur dioxide	5000	주 10, 19
15.3.4	명시되지 않은 효소제 수용액, 고정된 효소제 수용액 포함	200	Sorbic acid	3000	주 19
		210	Benzoic acid	3000	주 19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3000	주 19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3000	주 19
		220	Sulphur dioxide	500	주 10, 19
15.4	정유 및 정유 농축액 분리물	310	Propyl gallate	1000	주 1, 2
		311	Octyl gallate	1000	주 1, 2
		312	Dodecyl gallate	1000	주 1, 2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1000	주 1, 2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1000	주 1, 2
15.5	식품 표면에 흐르는 거품물질	210	Benzoic acid	10000	주 19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10000	주 19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10000	주 19
		220	Sulphur dioxide	5000	주 10, 19

제 1 단		제 2 단		제 3 단	제 4 단
번호	식품유형 또는 하위 식품유형	허용된 식품첨가물		최대허용함량 (ppm, 별도로 명시된 경우 제외)	주석
15.6	젤라틴	220	Sulphur dioxide	1000	주 10
15.7	젤라틴 캡슐	200	Sorbic acid	3000	
15.8	실리콘계 소포제 유탁액	200	Sorbic acid	1000	주 18
		210	Benzoic acid	2000	주 18
		214	Ethyl para-hydroxybenzoate	2000	주 18
		218	Methyl para-hydroxybenzoate	2000	주 18
15.9	액상 팩틴	220	Sulphur dioxide	250	주 10
15.10	부분 글리세롤 에스테르	310	Propyl gallate	100	주 1, 28
		311	Octyl gallate	100	주 1, 28
		312	Dodecyl gallate	100	주 1, 28
		320	Butylated hydroxyanisole	100	주 1, 28
		321	Butylated hydroxytoluene	200	주 1, 28

주석 1 부틸히드록시아니솔(Butylated hydroxyanisole, BHA), 부틸레이티드하이드록시톨루엔(butylated hydroxytoluene, BHT), 프로필갈레이트(propyl gallate), 옥틸갈레이트(octyl gallate), 도데실갈레이트(dodecyl gallate), 삼차부틸하이드로퀴논(tertiarybutylhydroquinone, TBHQ), 티오디프로피온산(thiodipropionic acid) 및 구아악 수지(guaiac resin)의 수치는 식품 중 지방의 무게나 유분 함량과 비교하여 계산된다.

주석 2 butylated hydroxyanisole, butylated hydroxytoluene, propyl gallate, octyl gallate, dodecyl gallate 및 tertiary butylhydroquinone 의 경우,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 2 가지 이상의 식품첨가물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식품에 들어있는 각 식품첨가물의 양이 최대허용수치 중 퍼센트(%)로 표현되고, 해당 퍼센트(%)의 합이 100 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주석 3 식품 표면에 피마리신을 뿌리고 최대 깊이 5mm 이내가 되어야 한다. mg/dm² 는 식품 표면의 20 ppm 에 해당한다.

주석 4 hexamethylene tetramine 의 수치는 formaldehyde 로 계산된다.

주석 5 소르빈산과 프로피온산의 경우,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식품에 들어있는 각 식품 첨가제의 양이 최대 허용 수치 중 퍼센트(%)로 표현되고, 해당 퍼센트(%)의 합이 100 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주석 6 프로필갈레이트의 수치는 건조 재료, 건조 중량, 건조 믹스 또는 농도 기준으로 계산된다.

주석 7 Butylated hydroxyanisole, butylated hydroxytoluene, propyl gallate, octyl gallate 및 dodecyl gallate 는 가급적 레벨 합계가 200ppm 을 초과하지 않고, 개별 최대 허용 레벨이 초과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주석 8 질산나트륨과 아질산나트륨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식품에 들어있는 각 식품 첨가제의 양이 최대 허용 수치 중 퍼센트(%)로 표현되고, 해당 퍼센트(%)의 합이 100 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주석 9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의 레벨은 calcium disodium ethylene diaminetetraacetate 무수물로 계산된다.

주석 10 이산화황의 수치는 잔류 이산화황으로 계산된다.

주석 11 염화제 1 주석은 주석으로 계산된다.

주석 12 글로콘산철은 철로 계산된다.

주석 13 최대허용수치란 식품 제조 과정에서 첨가된 수치를 가리킨다.

주석 14 관련 식품 첨가물 수치는 제조사의 설명에 따라 환원되거나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식품 형태로 측정된다.

주석 15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는 건조 상태로, 난황의 중량과 비교하여 계산된다.

주석 16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의 수치는 고강도 감미료의 건조 무게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주석 17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과 파라옥시안식향메틸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식품에 들어있는 각 식품 첨가제의 양이 최대 허용 수치 중 퍼센트(%)로 표현되고, 해당 퍼센트(%)의 합이 100 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주석 18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및 소르빈산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식품에 들어있는 각 식품첨가물의 양이 최대허용수치 중 퍼센트(%)로 표현되고, 해당 퍼센트(%)의 합이 100 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주석 19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소르빈산 및 이산화황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식품에 들어있는 각 식품 첨가제의 양이 최대 허용 수치 중

퍼센트(%)로 표현되고, 해당 퍼센트(%)의 합이 100 을 초과하지 않을 것.

주석 20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및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식품에 들어있는 각 식품 첨가제의 양이 최대 허용 수치 중 퍼센트(%)로 표현되고, 해당 퍼센트(%)의 합이 100 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주석 21 안식향산과 소르빈산은 수치의 합계가 가능하면 2000ppm 을 초과하지 않고, 개별 최대 허용 레벨이 초과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주석 22 안식향산과 소르빈산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식품에 들어있는 각 식품첨가물의 양이 최대 허용 수치 중 퍼센트(%)로 표현되고, 해당 퍼센트(%)의 합이 100 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주석 23 Butylated hydroxyanisole, butylated hydroxytoluene, propyl gallate, octyl gallate 및 dodecyl gallate 의 수치의 합은 240ppm 을 초과하지 않고 propyl gallate, octyl gallate 또는 dodecyl gallate 이나 그 혼합물의 개별 수치가 80ppm 을 초과하지 않으며, butylated hydroxyanisole 이나 butylated hydroxytoluene 또는 그 혼합물의 개별 수치가 160ppm 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주석 24 탄산구리의 수치는 구리로 계산된다.

주석 25 건조 제품에만 적용된다.

주석 26 건조 제품 및 살라미 타입 제품에만 적용된다.

주석 27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레벨은 건조 중량 기준으로 계산된다.

주석 28 Butylated hydroxyanisole, butylated hydroxytoluene, propyl gallate, octyl gallate 및 dodecyl gallate 는 합계 수치가 300ppm 을 초과하지 않고 propyl gallate, octyl gallate 또는 dodecyl gallate 이나 그 혼합물의 개별 수치가 100ppm 을 초과하지 않으며, butylated hydroxyanisole 이나 butylated hydroxytoluene 또는 그 혼합물의 개별 수치가 각각 100ppm 과 200ppm, 또는 그 혼합물이 200ppm 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부표 1 은 2008 년 제 85 호 법률공고로 인해 대체)

부표 :	1A	L.N. 85 of 2008	01/07/2008
------	----	-----------------	------------

[제 2 및 2A 조]

항목	제 1단	제 2단
	부표1에 명시된 허용된 식품첨가물 (INS번호 포함)	사용가능한 허용된 식품첨가물 대체재(INS번호 포함) (제 1단에 나와있는 허용된 식품첨가물로 계산)
1	Sorbic acid (200)	Sodium sorbate (201) Potassium sorbate (202)
2	Benzoic acid (210)	Sodium benzoate (211) Potassium benzoate (212)
3	Ethyl para-hydroxybenzoate (214)	Sodium ethyl para-hydroxybenzoate (215)
4	Methyl para-hydroxybenzoate (218)	Sodium methyl para-hydroxybenzoate (219)
5	Sulphur dioxide (220)	Sodium sulphite (221) Sodium hydrogen sulphite (222) Sodium metabisulphite (223) Potassium metabisulphite (224) Potassium sulphite (225) Calcium sulphite (226) Calcium hydrogen sulphite (227) Potassium bisulphite (228) Sodium thiosulphate (539) Sulphurous acid
6	Ortho-phenylphenol (231)	Sodium ortho-phenylphenol (232)
7	Sodium nitrite (250)	Potassium nitrite (249)
8	Sodium nitrate (251)	Potassium nitrate (252)
9	Propionic acid (280)	Sodium propionate (281) Calcium propionate (282) Potassium propionate (283)
10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386)	Calcium disodium 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385)
11	Thiodipropionic acid (388)	Dilauryl thiodipropionate (389)

(부표 1A 은 2008 년 제 85 호 법률공고로 증보)

부표 :	2	보존료 혹은 항산화제 포함 식품의 라벨 보존료 혹은 항산화제의 라벨 및 식품 보존료 허용 초과 설명	L.N. 85 of 2008	01/07/2008
------	---	---	-----------------	------------

[제 3, 5 및 6 조]

(2008 년 제 85 호 법률공고)

1. 부표에 나열된 라벨 규정에 적용되는 보존료 함유 식품(해당식품)은 소시지, 소시지 고기, 액상 커피 에센스, 액상 티 에센스, 젓갈 및 소스(안식향산의 중량이 800ppm 을 초과할 때), 그리고 성찬식에서 사용하는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 제품과 항산화제가 함유된 제품이다. (2008 년 제 85 호 법률공고)

2. (1) 제 6 조와 관련된 모든 용기에 반드시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다음의 양식에 따라 또렷하고 잘 보이도록 설명을 인쇄되어야 한다—

(X) PRESERVATIVE(S)

(2) 해당 설명을 기재할 때 (X)에 “This” 혹은 “These”글자를 추가한 다음, 그 뒤에 본 부표 제 1 조에서 설명한 식품의 상용 혹은 일반 명칭을 추가한다. (2008 년 제 85 호 법률공고)

(3) 본 규례가 적용되는 성찬식에서 사용되는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 제품에 속한다면 반드시 설명에 “and is not intended for use as a beverage”글자를 추가해야 한다.

3. 상술한 모든 식품에 항산화제가 함유되면 라벨로 표시해야 하며 함유된 모든 첨가 항산화제를 인쇄한다—

(a) 해당 항산화제의 정확한 명칭 설명, 그리고

(b) 해당 항산화제의 최고 함량은 ppm(중량으로 계산)으로 계산한다.

4. (1)과 제 3(3) 및 (4)조의 관련 설명은 다음의 설명 양식에 따라 확실하게 인쇄한다— (2008 년 제 85 호 법률공고)

(X) NOT MORE THAN (Y) PER CENT OF (Z) (Y) PER CENT OF (Z) AND IS/ARE NOT FOR RETAIL SALE
--

(2) 해당 설명을 기재할 때, (X)에 “This” 혹은 “These”글자를 추가하고, 그 뒤에 식품의 상용 혹은 일반 명칭을 추가해야 한다. (Y)에 문자 및 숫자(예: “seventy (70)”)로 식품에 함유된 각종 보존료를 함량으로 계산한 최고 백분율(가장 가까운 정수로 조정)을 추가하고 (Z)에 해당 백분율과 관련한 보존료의 정확한 명칭 설명을 추가한다: 하지만 해당 설명 속의 “per cent”글자는 “parts per million”글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Y)에 추가한 문자와 숫자는 식품에 함유된 각종 보존료를 중량에 따라 계산한 ppm 이다.

5. (1) 제 5(1)조와 관련된 모든 용기에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다음의 양식에 따라 뚜렷하고 잘 보이도록 설명을 인쇄되어야 한다—

THIS PRESERVATIVE CONTAINS	
(X)	PER CENT
OF (Y)	
(X)	PER CENT
OF (Y)	

(2) 해당 설명을 기재할 때, (X)에 문자 및 숫자(예: “seventy (70)”)로 해당 용기 내 물질에 함유된 각종 보존료를 중량에 따라 계산한 백분율(가장 가까운 정수로 조정)을 추가해야 하며, (Y)에 해당 백분율과 관련한 보존료의 정확한 명칭 설명을 추가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설명 속의 “per cent”글자는 “parts per million”글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X)에 추가한 문자와 숫자는 식품에 함유된 각종 보존료를 중량에 따라 계산한 ppm 이다.

6. (1) 항산화제에 속한다면 제 5(1)조와 관련된 모든 용기에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다음의 양식에 따라 설명을 인쇄한다—

This antioxidant contains
(X)
(Y)

(2) 각 항목 해당 설명의 (X)에는 모두 숫자 혹은 문자와 데이터로 해당 용기에 담긴 제품에 함유된 각종 항산화제를 중량에 따라 계산한 정확한 백분율 혹은 ppm(분수는 계산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조정)의 진실된 설명과 해당 항목의 설명과 관련한 각종 항산화제의 정확한 명칭 설명을 추가한다. 설명의 (Y)에는 해당 용기에 담긴 조제품에 함유된 모든 기타 물질의 정확한 명칭 설명을 추가해야 한다. 해당 물질은 1 가지 이상으로 제조업체에서 조제품을 판매할 때 해당 물질이 조제품에 차지하는 중량의 비율(중량에 따라 계산)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해당 물질의 정확한 명칭을 설명해야 한다.

7. 본 부표 각 항목의 설명은 모두 진한 색 글자체를 확실하게 읽을 수 있도록 연한 색 바탕 혹은 연한 색 글자체를 확실하게 읽을 수 있도록 진한 색 바탕에 작성해야 하며 글자체의 높이는 3mm 이상이어야 한다. 설명은 반드시 둘레선 안에 인쇄하고 둘레선 내 기타 내용을 인쇄해서는 안 된다. 해당 설명 안의 글자와

숫자의 크기 및 색상이 모두 일치해야 하며 둘레선 내 바탕색 역시 일치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글자의 첫 번째 알파벳은 다른 알파벳보다 클 수 있다. (1979 년 제 89 호 법률공고)

8. 본 부표에서 규정한 라벨은 포장물 혹은 용기에 견고하게 부착되거나 포장물 혹은 용기의 일부분이어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위치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주요 라벨의 일부분 혹은 주요 라벨 옆에 독립 라벨로 부착되어야 한다. 하지만 물품에 라벨이 부착되었을 때 물품의 명칭, 상표 혹은 해당 물품 브랜드를 상징하는 디자인이 기재되어 있거나 제조업체 혹은 판매업체 명칭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확실하게 정한 설명이 해당 라벨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9. 다음의 모든 상황에서 본 부표에서 확실하게 정한 설명이 읽기 쉽게 중문으로 인쇄되어야 한다 —

- (a) 포장물 혹은 용기의 물품이 홍콩에서 제조, 가공 처리 혹은 포장된 것일 때 혹은
- (b) 포장물 혹은 용기 내 식품이 홍콩으로 수입되어 홍콩에서 판매 사용될 때, 중문으로 인쇄된 라벨 혹은 마크를 부착한다.

10. 라벨, 포장물 혹은 용기에 확실하게 정한 설명의 평론 혹은 해석(보존료 혹은 항산화제의 상요 방법 제외)이 부착되어서는 안 된다.

2 식품 착색료 규정

장 :	132H	식품 착색료 규정	헌보 번호	버전 날짜
		효력부여 절		30/06/1997

(제 132 장 제 55 절)

[1960 년 11 월 11 일] 1960 년 A132 호 정부공고

(본문 1960 년 A72 호 정부공고)

조:	1	인용		30/06/1997
----	---	----	--	------------

본 규례는 식품 착색료 규정으로 인용될 수 있다.

조:	2	해석	29 of 2000	26/05/2000
----	---	----	------------	------------

본 규정에서,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가공처리”(processed)란 훈제 또는 식품이 자연 상태에서, 그 본질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어떠한 가공처리 및 공정도 포함된다. 단, 발골, 탈피, 분쇄, 절단, 세척 또는 표면제거는 가공처리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미 가공처리”(unprocessed)이라는 용어도 이에 따라 해석된다.

“색소 색인 번호”(Colour Index Number)는 영국 염색컬러리스트협회* 및 미국 섬유화학채색연구자협회#에 의해 정리된 색소 색인에 사용되는 식별 번호를 의미한다. (1993 년 제 368 호 법률공고)

“항공운송화물”(air transit cargo)은 항공기로 수입 및 수출 위탁되는 모든 품목을 의미한다. (2000 년 제 29 호 제 5 조)

“항공환적화물”(air transhipment cargo) 은 수출입법규(제 60 장) 제 2 조에서 지정된 의미를 가진다. (2000 년 제 29 호 제 5 조)

“허용된 착색료”(permitted colouring matter)는 부록 1 에 명시된 착색물질이나 명시된 착색물질 한 가지 이상의 조합을 의미한다.

“판매”(sell)란 출고(sale)를 위한 노출 또는 제안, 또는 출고(sale) 목적의 보관이 포함되며, “출고”(sale)란 용어도 이에 따라 해석된다.

“수송 물품”(article in transit)은 수출입법규(제 60 장) 제 2 조에서 지정된 의미를 가진다. (2000 년 제 29 호 제 5 조)

“채소”(vegetable) 는 두류도 포함된다.

“홍콩국제공항 화물환적구역”(cargo transhipment area of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은 수출입법규(제 60 장) 제 2 조에서 지정된 의미를 가진다. (2000 년 제 29 호 제 5 조)

주 :

* “영국 염색 컬러리스트협회”는 British Society of Dyers and Colourists”의 번역명.

“ 미국 섬유화학채색연구자협회”는 “ American Association of Textile Chemists and Colourists”의 번역명.

조:	3	허용된 착색료 외의 착색료 사용제한		30/06/1997
----	---	---------------------	--	------------

식용 목적으로 판매되는 식품에는 허용된 착색료 외의 착색물질이 첨가되어선 아니 되며, 본 규제 조항과 부합하지 않는 식품은 그 누구도 홍콩으로 판매, 위탁, 납품, 또는 수입할 수 없다.

(1986 년제 10 호 제 32(2)조)

조:	4	특정 상품 착색료 사용금지		30/06/1997
----	---	----------------	--	------------

(1) 익히거나 가공처리 되지 않은 육류, 야생고기, 가금류, 생선, 과일 또는 채소와 같이, 식용을 목적으로 판매되는 식품은 표시 목적 외에 어떠한 착색료도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 감귤류 과일에는 허용된 착색료를 첨가할 수 있다—

(a) 해당 과일류 표면에 허용된 착색료로 “착색료 첨가”글귀를 표기할 것. 그리고

(b) 해당 글귀는 뚜렷하고 잘 읽히도록 인쇄되어야 하며, 한 눈에 들어오는 크기여야 한다.

(2) 그 누구도 제 (1)항에 언급되었으며, 해당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홍콩으로 판매, 위탁, 납품 또는 수입할 수 없다.

(1986 년 제 10 호 제 32(2)조)

조:	5	판매 혹은 홍보가 제한 허용된 착색료 이외의 착색료		30/06/1997
----	---	------------------------------	--	------------

(1) 누구도 식품에 사용되며 허용되지 않은 착색료를 판매 혹은 판매를 위해 홍보해서는 안 된다.

(2) 제(1)항에서 책정한 홍보물 발행 관련 범죄 행위에 제기된 법률절차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업무가 홍보물 발행 혹은 안배라는 것을 증명하고 관련 홍보물이 본인의 통상적인 업무 활동 중 받아 발행한 것이라면 면책변호가 된다.

(3) 누구도 식품에 사용되는 착색료 혹은 색소 및 조미화합물을 판매, 위탁 혹은 납품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부표 2 규정에 부합하는 라벨을 부착한 용기에 담을 경우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조:	5A	항공 국경 통과 혹은 항공 환적화물의 적용	29 of 2000	26/05/2000
----	----	-------------------------	------------	------------

(1) 제 3 및 4(2)조에서 설명한 식품이 항공운송화물 혹은 항공환적화물일 경우, 해당 식품의 수입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해상 식품이 홍콩으로 반출된 기간 공항 화물 환적구역을 벗어난 경우, 제 3 및 4(2)조(어떠한 상황에 속하는지에 따라 결정)를 시행한다—

(a) 해당 식품이 해당 구역을 벗어났을 때 수입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b) 해당 식품을 항공운송화물 혹은 항공환적화물로 홍콩에 들어왔거나 해당 식품을 이렇게 홍콩에 가져온 사람은 식품이 해당 구역을 벗어났을 때 해당 식품을 수입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a) 혹은 (b)에서 지정한 범위를 제외하고, 제 3 및 4(2)조(어떠한 상황에 속하는지에 따라 결정)는 본 조항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효력을 가지게 된다.

(2) 누군가 제 6 조에서 규정한 범죄 행위를 하였다고 고발 기소한 법률절차에서 만약 —

(a) 해당 법률절차가 제 3 혹은 4(2)조에서 서술한 항공운송화물 혹은 항공환적화물인 식품일 때,

(b) 기소자는 해당 식품이 홍콩으로 반출된 기간 공항 화물 환적구역을 벗어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당사자가 이미 해당 식품이 이 구역을 떠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정을 채택하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이것으로 면책번호가 될 수 있다.

(3) 어떠한 법률절차에서 제(2)항에서 규정한 면책번호 관련 사항이란 해당 범죄 행위의 발생이—

(a) 제삼자의 소행 혹은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b) 제삼자가 제공한 데이터에 의존해 발생한 것일 때, 피고인이 해당 법률절차 10 일 전 혹은 그 이전에 청문해 기소자에게 서면 통보를 전달했을 때, 피고인이 이 통보를 전달해 알게 된—

(i) 제삼자의 모든 상세정보 및

(ii) 해당 소행, 과실 혹은 자료의 모든 상세정보는 예외에 속한다.

(4) 누군가 제(2)항에서 제정한 면책번호 인용할 때, 근거가 되는 이유가 제삼자가 제공한 데이터에 의존한 것일 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특히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후 해당 자료 의존이 정말 합리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면책번호를 인용할 수 없다—

(a) 해당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채택한 절차가 데이터 확인을 위해 마땅히 채택해야 할 절차이다. 그리고

(b) 그가 해당 자료를 신뢰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2000 년 제 29 호 제 5 조)

조:	6	범죄 행위 및 벌칙		30/06/1997
----	---	------------	--	------------

제 3, 4, 5(1) 혹은 (3)조의 조문을 위반할 경우 범죄 행위에 속하며 약식절차로 선고가 내려지고 5 등급 벌금 및 6 개월 금고에 처할 수 있다. 해당 범죄 행위가 지속된 범죄 행위일 경우, 해당 범죄 행위의 지속기간 내 매일 \$300 의 벌금을 부과한다.

(1987 년 제 326 호 법률공고 ; 1996 년 제 177 호 법률공고)

조:	7	법률절차 제기 시 사용 가능한 명의	L.N. 320 of	01/01/2000
----	---	---------------------	-------------	------------

형사 범죄 고발 기소와 관련한 기타 성문법규의 조문을 침해하지 않고 법무부 국장의 형사 범죄 고발 기소 관련 권력을 침해하지 않는 원칙에서 본 규례의 모든 조문에서 제정한 범죄 행위에 대한 고발 기소는 모두 식품환경위생처 처장의 명의로 제기된다.

(1965 년 제 107 호 법률공고 ; 1997 년 제 362 호 법률공고 ; 1999 년 제 78 호 제 7 조)

부표 :	1	허용된 착색료	L.N. 98 of 2008	01/12/2008
------	---	---------	-----------------	------------

[제 2 조]

제 I 부—콜 타르 색소

색소 일반명칭	과학명	색소 색인 번호 (1982)
Sunset Yellow FCF	disodium salt of 1-p-sulphophenylazo-2-naphthol-6-sulphonic acid.	15985
Lithol Rubine BK	disodium salt of 3-hydroxy-4-[(2-sulpho-p-tolyl)azo]-2- naphthoic acid.	15850
Chocolate Brown HT	disodium salt of 2:4-dihydroxy-3:5-di-(4-sulpho-l-naphthylazo) benzyl alcohol.	20285
Erythrosine(BS)	disodium or dipotassium salt of 2:4:5:7-tetra-iodo-fluorescein.	45430
Brilliant Blue FCF(Brilliant Blue FD & C No. 1)	disodium salt of 4-(4-(N-ethyl-p-sulphobenzylamino)-phenyl) -(2-sulphoniumphenyl)-methylene-(1-(N-ethyl-N-p-sulphobenzyl)-2, 5-cyclohexadien-imine).	42090
Tartrazine	trisodium salt of 5-hydroxy-1-p-sulphophenyl-4-p- sulphophenylazo-pyrazole-3-carboxylic acid.	19140
Patent Blue V	calcium salt of (4-[x-(p-(diethylamino) phenyl)-5-hydroxy-2, 4-disulphobenzylidene]-2, 5-cyclohexadien-1-ylidene) diethyl -ammonium hydroxide inner salt.	42051
Carmoisine Brown FK	disodium salt of 2-(4-sulpho-l-naphthylazo)-l-naphthol-4 -sulphonic acid. a mixture consisting essentially of the disodium salt of 1:3-diamino-4:6-di- (p-sulphophenylazo) benzene and the sodium salt of 2:4-diamino-5-(p-sulphophenylazo) toluene.	14720 -
Black PN (Brilliant Black BN)	tetrasodium salt of 8-acetamido-2- (7-sulpho-4-p-sulphophenylazo-1-naphthylazo)-1-naphthol-3: 5-disulphonic acid.	28440
Green S	sodium salt of di-(p-dimethylaminophenyl)-2-hydroxy-3:6-disulphonaphthylmethanol andydride.	44090
Quinoline Yellow	disodium salt of disulphonic acid of 2-(2 quinolyl)-1,3-indandione.	47005
Indigotine(indigo Carmine)	disodium salt of indigotin-5:5'-disulphonic acid.	73015
Amaranth	trisodium salt of 1-(4-sulpho-1-naphthylazo)-2-naphthol-3: 6-disulphonic acid.	16185

Ponceau 4R	trisodium salt of 1-(4-sulpho-1-naphthylazo)-2-naphthol-6:8- disulphonic acid.	16255
Allura Red AC	disodium salt of 6-hydroxy-5-[(2-methoxy-5-methyl-4- sulphophenyl)-azo]-2-naphthalene-sulphonic acid.	16035

(1970 년 제 146 호 법률공고; 1976 년 제 102 호 법률공고; 1982 년 제 376 호 법률공고; 1993 년 제 368 호 법률공고; 2008 년 제 98 호 법률공고)

제 II부—기타색소

분류	색소 색인번호 (1982)
Caramel	-
Cochineal (Carminic acid)	75470
식용 과일 또는 채소에서 추출한 천연색소, 혹은 천연색소에서 분리되거나 인공합성된 색소 ,	
그리고 다음과 같은 색소를 포함한다-	
(a) Annatto	75120
(b) Vegetable Black	-
(c) Carotenes	75130
(d) Beta-Apo-8'-carotenal	40820
(e) Beta-Apo-8'-carotenoic acid ethyl ester	40825
(f) Chlorophylls and Chlorophyllins	75810
including Copper complexes	75815
(g) Saffron	75100
(h) Tumeric (Curcumin)	75300
Iron Oxides	77491
Titanium dioxide	77891
당의 알약 외부에 사용되는 색소 및 당의가 밀가루로 만들어진 디저트 장식에 사용되는 박	-
혹은 분말형태의 은(Silver), 금(Gold) 및 알루미늄(Aluminium)	
부표에 나열된 수용성 색소의 알루미늄염(Aluminium) 또는 칼슘염(레이크)(Calcium salts	-
(lakes))	

(1993 년 제 368 호 법률공고)

부표 2:	2	착색료, 색소 및 조미화합물의 라벨	30/06/1997
-------	---	---------------------	------------

[제 5(3)조]

1. 제 5(3)조와 관련된 용기는 모두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다음 중 하나의 성명 양식에 따라 중문과 영문으로 진실하게 서술해야 한다——

착색료에 대해서는——

THIS FOOD COLOUR CONFORMS
TO THE LEGAL REQUIREMENTS
OF HONG KONG
이 식품의 색소는 홍콩 법례
규정에 부합한다.

색소 및 조미화합물에 대해서는——

THE FOOD COLOUR IN THIS
COMPOUND CONFORMS TO THE
LEGAL REQUIREMENTS OF
HONG KONG
이 화합물 속 식품색소는
홍콩 법례 규정에 부합한다.

하지만 용기의 적재 중량이 100g 혹은 100mL 이하면(상황에 따라 결정) 라벨에 중문과 영문으로 확실하게 읽을 수 있도록 “식품색소” (FOOD COLOUR), “식품색소 및 조미화합물” (FOOD COLOUR AND FLAVOURING COMPOUND)(상황에 따라 결정) 혹은 같은 의미의 성명을 인쇄해도 충분하다. (1979 년 제 89 호 법률공고)

2. 모든 성명은 짙은 색 해서체로 확실하게 읽을 수 있도록 연한 색 바탕에 인쇄한다. 앞의 단서에 따라 규정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각 항목의 모두 둘레선 안에 인쇄되어야 하며 둘레선 안에 다른 것을 인쇄해서는 안 된다. 적재 중량이 1kg 혹은 1L(상황에 따라 결정)를 초과하는 용기에 사용되는 글자체 높이는 5mm 이상이어야 한다. 적재 중량이 1kg 혹은 1L 이하지만 100g 혹은 100mL 이상인(상황에 따라 결정) 용기에 사용되는 글자체 높이는 3mm 이상이어야 한다. (1979 년 제 89 호 법률공고)

3. 라벨이 단단하게 포장물 혹은 용기에 부착되어 있거나 포장물 혹은 용기의 일부일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며 주요 라벨의 일부 혹은 주요 라벨에 인접한 독립 라벨이어야 한다.

2 식품 착색료 규정

장 :	132H	식품 착색료 규정	헌보 번호	버전 날짜
		효력부여 절		30/06/1997

(제 132 장 제 55 절)

[1960 년 11 월 11 일] 1960 년 A132 호 정부공고

(본문 1960 년 A72 호 정부공고)

조:	1	인용		30/06/1997
----	---	----	--	------------

본 규례는 식품 착색료 규정으로 인용될 수 있다.

조:	2	해석	29 of 2000	26/05/2000
----	---	----	------------	------------

본 규정에서,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가공처리”(processed)란 훈제 또는 식품이 자연 상태에서, 그 본질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어떠한 가공처리 및 공정도 포함된다. 단, 발골, 탈피, 분쇄, 절단, 세척 또는 표면제거는 가공처리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미 가공처리”(unprocessed)이라는 용어도 이에 따라 해석된다.

“색소 색인 번호”(Colour Index Number)는 영국 염색컬러리스트협회* 및 미국 섬유화학채색연구자협회#에 의해 정리된 색소 색인에 사용되는 식별 번호를 의미한다. (1993 년 제 368 호 법률공고)

“항공운송화물”(air transit cargo)은 항공기로 수입 및 수출 위탁되는 모든 품목을 의미한다. (2000 년 제 29 호 제 5 조)

“항공환적화물”(air transhipment cargo) 은 수출입법규(제 60 장) 제 2 조에서 지정된 의미를 가진다. (2000 년 제 29 호 제 5 조)

“허용된 착색료”(permitted colouring matter)는 부록 1 에 명시된 착색물질이나 명시된 착색물질 한 가지 이상의 조합을 의미한다.

“판매”(sell)란 출고(sale)를 위한 노출 또는 제안, 또는 출고(sale) 목적의 보관이 포함되며, “출고”(sale)란 용어도 이에 따라 해석된다.

“수송 물품”(article in transit)은 수출입법규(제 60 장) 제 2 조에서 지정된 의미를 가진다. (2000 년 제 29 호 제 5 조)

“채소”(vegetable) 는 두류도 포함된다.

“홍콩국제공항 화물환적구역”(cargo transhipment area of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은 수출입법규(제 60 장) 제 2 조에서 지정된 의미를 가진다. (2000 년 제 29 호 제 5 조)

주 :

* “영국 염색 컬러리스트협회”는 British Society of Dyers and Colourists”의 번역명.

“ 미국 섬유화학채색연구자협회”는 “ American Association of Textile Chemists and Colourists”의 번역명.

조:	3	허용된 착색료 외의 착색료 사용제한		30/06/1997
----	---	---------------------	--	------------

식용 목적으로 판매되는 식품에는 허용된 착색료 외의 착색물질이 첨가되어선 아니 되며, 본 규제 조항과 부합하지 않는 식품은 그 누구도 홍콩으로 판매, 위탁, 납품, 또는 수입할 수 없다.

(1986 년제 10 호 제 32(2)조)

조:	4	특정 상품 착색료 사용금지		30/06/1997
----	---	----------------	--	------------

(1) 익히거나 가공처리 되지 않은 육류, 야생고기, 가금류, 생선, 과일 또는 채소와 같이, 식용을 목적으로 판매되는 식품은 표시 목적 외에 어떠한 착색료도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 감귤류 과일에는 허용된 착색료를 첨가할 수 있다—

(a) 해당 과일류 표면에 허용된 착색료로 “착색료 첨가”글귀를 표기할 것. 그리고

(b) 해당 글귀는 뚜렷하고 잘 읽히도록 인쇄되어야 하며, 한 눈에 들어오는 크기여야 한다.

(2) 그 누구도 제 (1)항에 언급되었으며, 해당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홍콩으로 판매, 위탁, 납품 또는 수입할 수 없다.

(1986 년 제 10 호 제 32(2)조)

조:	5	판매 혹은 홍보가 제한 허용된 착색료 이외의 착색료		30/06/1997
----	---	------------------------------	--	------------

(1) 누구도 식품에 사용되며 허용되지 않은 착색료를 판매 혹은 판매를 위해 홍보해서는 안 된다.

(2) 제(1)항에서 책정한 홍보물 발행 관련 범죄 행위에 제기된 법률절차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업무가 홍보물 발행 혹은 안배라는 것을 증명하고 관련 홍보물이 본인의 통상적인 업무 활동 중 받아 발행한 것이라면 면책변호가 된다.

(3) 누구도 식품에 사용되는 착색료 혹은 색소 및 조미화합물을 판매, 위탁 혹은 납품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부표 2 규정에 부합하는 라벨을 부착한 용기에 담을 경우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조:	5A	항공 국경 통과 혹은 항공 환적화물의 적용	29 of 2000	26/05/2000
----	----	-------------------------	------------	------------

(1) 제 3 및 4(2)조에서 설명한 식품이 항공운송화물 혹은 항공환적화물일 경우, 해당 식품의 수입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해상 식품이 홍콩으로 반출된 기간 공항 화물 환적구역을 벗어난 경우, 제 3 및 4(2)조(어떠한 상황에 속하는지에 따라 결정)를 시행한다—

(a) 해당 식품이 해당 구역을 벗어났을 때 수입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b) 해당 식품을 항공운송화물 혹은 항공환적화물로 홍콩에 들어왔거나 해당 식품을 이렇게 홍콩에 가져온 사람은 식품이 해당 구역을 벗어났을 때 해당 식품을 수입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a) 혹은 (b)에서 지정한 범위를 제외하고, 제 3 및 4(2)조(어떠한 상황에 속하는지에 따라 결정)는 본 조항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효력을 가지게 된다.

(2) 누군가 제 6 조에서 규정한 범죄 행위를 하였다고 고발 기소한 법률절차에서 만약 —

(a) 해당 법률절차가 제 3 혹은 4(2)조에서 서술한 항공운송화물 혹은 항공환적화물인 식품일 때,

(b) 기소자는 해당 식품이 홍콩으로 반출된 기간 공항 화물 환적구역을 벗어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당사자가 이미 해당 식품이 이 구역을 떠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정을 채택하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이것으로 면책번호가 될 수 있다.

(3) 어떠한 법률절차에서 제(2)항에서 규정한 면책번호 관련 사항이란 해당 범죄 행위의 발생이—

(a) 제삼자의 소행 혹은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b) 제삼자가 제공한 데이터에 의존해 발생한 것일 때, 피고인이 해당 법률절차 10 일 전 혹은 그 이전에 청문해 기소자에게 서면 통보를 전달했을 때, 피고인이 이 통보를 전달해 알게 된—

(i) 제삼자의 모든 상세정보 및

(ii) 해당 소행, 과실 혹은 자료의 모든 상세정보는 예외에 속한다.

(4) 누군가 제(2)항에서 제정한 면책번호 인용할 때, 근거가 되는 이유가 제삼자가 제공한 데이터에 의존한 것일 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특히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후 해당 자료 의존이 정말 합리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면책번호를 인용할 수 없다—

(a) 해당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채택한 절차가 데이터 확인을 위해 마땅히 채택해야 할 절차이다. 그리고

(b) 그가 해당 자료를 신뢰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2000 년 제 29 호 제 5 조)

조:	6	범죄 행위 및 벌칙		30/06/1997
----	---	------------	--	------------

제 3, 4, 5(1) 혹은 (3)조의 조문을 위반할 경우 범죄 행위에 속하며 약식절차로 선고가 내려지고 5 등급 벌금 및 6 개월 금고에 처할 수 있다. 해당 범죄 행위가 지속된 범죄 행위일 경우, 해당 범죄 행위의 지속기간 내 매일 \$300 의 벌금을 부과한다.

(1987 년 제 326 호 법률공고 ; 1996 년 제 177 호 법률공고)

조:	7	법률절차 제기 시 사용 가능한 명의	L.N. 320 of	01/01/2000
----	---	---------------------	-------------	------------

형사 범죄 고발 기소와 관련한 기타 성문법규의 조문을 침해하지 않고 법무부 국장의 형사 범죄 고발 기소 관련 권력을 침해하지 않는 원칙에서 본 규례의 모든 조문에서 제정한 범죄 행위에 대한 고발 기소는 모두 식품환경위생처 처장의 명의로 제기된다.

(1965 년 제 107 호 법률공고 ; 1997 년 제 362 호 법률공고 ; 1999 년 제 78 호 제 7 조)

부표 :	1	허용된 착색료	L.N. 98 of 2008	01/12/2008
------	---	---------	-----------------	------------

[제 2 조]

제 I 부—콜 타르 색소

색소 일반명칭	과학명	색소 색인 번호 (1982)
Sunset Yellow FCF	disodium salt of 1-p-sulphophenylazo-2-naphthol-6-sulphonic acid.	15985
Lithol Rubine BK	disodium salt of 3-hydroxy-4-[(2-sulpho-p-tolyl)azo]-2- naphthoic acid.	15850
Chocolate Brown HT	disodium salt of 2:4-dihydroxy-3:5-di-(4-sulpho-l-naphthylazo) benzyl alcohol.	20285
Erythrosine(BS)	disodium or dipotassium salt of 2:4:5:7-tetra-iodo-fluorescein.	45430
Brilliant Blue FCF(Brilliant Blue FD & C No. 1)	disodium salt of 4-(4-(N-ethyl-p-sulphobenzylamino)-phenyl) -(2-sulphoniumphenyl)-methylene-(1-(N-ethyl-N-p-sulphobenzyl)-2, 5-cyclohexadien-imine).	42090
Tartrazine	trisodium salt of 5-hydroxy-1-p-sulphophenyl-4-p- sulphophenylazo-pyrazole-3-carboxylic acid.	19140
Patent Blue V	calcium salt of (4-[x-(p-(diethylamino) phenyl)-5-hydroxy-2, 4-disulphobenzylidene]-2, 5-cyclohexadien-1-ylidene) diethyl -ammonium hydroxide inner salt.	42051
Carmoisine Brown FK	disodium salt of 2-(4-sulpho-l-naphthylazo)-l-naphthol-4 -sulphonic acid. a mixture consisting essentially of the disodium salt of 1:3-diamino-4:6-di- (p-sulphophenylazo) benzene and the sodium salt of 2:4-diamino-5-(p-sulphophenylazo) toluene.	14720 -
Black PN (Brilliant Black BN)	tetrasodium salt of 8-acetamido-2- (7-sulpho-4-p-sulphophenylazo-1-naphthylazo)-1-naphthol-3: 5-disulphonic acid.	28440
Green S	sodium salt of di-(p-dimethylaminophenyl)-2-hydroxy-3:6-disulphonaphthylmethanol andydride.	44090
Quinoline Yellow	disodium salt of disulphonic acid of 2-(2 quinolyl)-1,3-indandione.	47005
Indigotine(indigo Carmine)	disodium salt of indigotin-5:5'-disulphonic acid.	73015
Amaranth	trisodium salt of 1-(4-sulpho-1-naphthylazo)-2-naphthol-3: 6-disulphonic acid.	16185

Ponceau 4R	trisodium salt of 1-(4-sulpho-1-naphthylazo)-2-naphthol-6:8- disulphonic acid.	16255
Allura Red AC	disodium salt of 6-hydroxy-5-[(2-methoxy-5-methyl-4- sulphophenyl)-azo]-2-naphthalene-sulphonic acid.	16035

(1970 년 제 146 호 법률공고; 1976 년 제 102 호 법률공고; 1982 년 제 376 호 법률공고; 1993 년 제 368 호 법률공고; 2008 년 제 98 호 법률공고)

제 II부—기타색소

분류	색소 색인번호 (1982)
Caramel	-
Cochineal (Carminic acid)	75470
식용 과일 또는 채소에서 추출한 천연색소, 혹은 천연색소에서 분리되거나 인공합성된 색소 ,	
그리고 다음과 같은 색소를 포함한다-	
(a) Annatto	75120
(b) Vegetable Black	-
(c) Carotenes	75130
(d) Beta-Apo-8'-carotenal	40820
(e) Beta-Apo-8'-carotenoic acid ethyl ester	40825
(f) Chlorophylls and Chlorophyllins	75810
including Copper complexes	75815
(g) Saffron	75100
(h) Tumeric (Curcumin)	75300
Iron Oxides	77491
Titanium dioxide	77891
당의 알약 외부에 사용되는 색소 및 당의가 밀가루로 만들어진 디저트 장식에 사용되는 박	-
혹은 분말형태의 은(Silver), 금(Gold) 및 알루미늄(Aluminium)	
부표에 나열된 수용성 색소의 알루미늄염(Aluminium) 또는 칼슘염(레이크)(Calcium salts	-
(lakes))	

(1993 년 제 368 호 법률공고)

부표 2:	2	착색료, 색소 및 조미화합물의 라벨	30/06/1997
-------	---	---------------------	------------

[제 5(3)조]

1. 제 5(3)조와 관련된 용기는 모두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다음 중 하나의 성명 양식에 따라 중문과 영문으로 진실하게 서술해야 한다——

착색료에 대해서는——

THIS FOOD COLOUR CONFORMS
TO THE LEGAL REQUIREMENTS
OF HONG KONG
이 식품의 색소는 홍콩 법례
규정에 부합한다.

색소 및 조미화합물에 대해서는——

THE FOOD COLOUR IN THIS
COMPOUND CONFORMS TO THE
LEGAL REQUIREMENTS OF
HONG KONG
이 화합물 속 식품색소는
홍콩 법례 규정에 부합한다.

하지만 용기의 적재 중량이 100g 혹은 100mL 이하면(상황에 따라 결정) 라벨에 중문과 영문으로 확실하게 읽을 수 있도록 “식품색소” (FOOD COLOUR), “식품색소 및 조미화합물” (FOOD COLOUR AND FLAVOURING COMPOUND)(상황에 따라 결정) 혹은 같은 의미의 성명을 인쇄해도 충분하다. (1979 년 제 89 호 법률공고)

2. 모든 성명은 짙은 색 해서체로 확실하게 읽을 수 있도록 연한 색 바탕에 인쇄한다. 앞의 단서에 따라 규정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각 항목의 모두 둘레선 안에 인쇄되어야 하며 둘레선 안에 다른 것을 인쇄해서는 안 된다. 적재 중량이 1kg 혹은 1L(상황에 따라 결정)를 초과하는 용기에 사용되는 글자체 높이는 5mm 이상이어야 한다. 적재 중량이 1kg 혹은 1L 이하지만 100g 혹은 100mL 이상인(상황에 따라 결정) 용기에 사용되는 글자체 높이는 3mm 이상이어야 한다. (1979 년 제 89 호 법률공고)

3. 라벨이 단단하게 포장물 혹은 용기에 부착되어 있거나 포장물 혹은 용기의 일부일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며 주요 라벨의 일부 혹은 주요 라벨에 인접한 독립 라벨이어야 한다.

3 식품 감미료 규정

장 :	132U	식품 감미료 규정	헌보 번호	버전 날짜
		효력부여 절	L.N. 225 of	19/12/2003

(제 132 장 제 55 및 143 절)

[1970 년 1 월 1 일]

(본문 1969 년 제 183 호 법률공고)

주: 본 규례는 식품 불순물(인공당)규정에서 식품 감미료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 2003 년 제 225 호 법률공고 참조.

조:	1	인용	L.N. 225 of	19/12/2003
----	---	----	-------------	------------

본 규례는 식품 감미료 규정으로 인용될 수 있다.

(2003 년 제 225 호 법률공고)

조:	2	해석	L.N. 225 of	19/12/2003
----	---	----	-------------	------------

본 규정에서,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항공운송화물”(air transit cargo)은 항공기로 수입 및 수출 위탁되는 모든 품목을 의미한다. (2000 년 제 29 호 제 5 조)

“항공환적화물”(air transhipment cargo) 은 수출입법규(제 60 장) 제 2 조에서 지정된 의미를 가진다. (2000 년 제 29 호 제 5 조)

“감미료”(sweetener)는 단맛을 갖은 모든 화합물을 의미하며, 당류나 기타 탄수화물 또는 다가 알코올을 포함하지 않는다. (2003 년 제 225 호 법률공고)

“판매(sell)란 판매를 위한 계약, 노출 또는 판매 목적의 보관이 포함된다.

“수송 물품”(article in transit)은 수출입법규(제 60 장)제 2 조에서 지정된 의미를 가진다. (2000 년 제 29 호 제 5 조)

“탄수화물”(carbohydrate)이란 탄소, 수소, 및 산소만을 함유한 물질로, 수소와 산소의 비율이 수중에서도 같은 비율을 유지하는 물질을 말한다.

“당”(sugar)이란 단맛을 갖은 모든 수용성 탄수화물을 말한다.

“홍콩국제공항 화물환적구역”(cargo transhipment area of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은 수출입법규(제 60 장)제 2 조에서 지정된 의미를 가진다. (2000 년 제 29 호 제 5 조)

조:	3	감미료 판매 및 사용 제한	L.N. 225 of	19/12/2003
----	---	----------------	-------------	------------

- (1) 부표에 명시되지 않은 감미료를 그 누구도 판매, 위탁, 납품, 또는 수입할 수 없다.
- (2) 부표에 명시되지 않은 감미료가 함유된 식품을 그 누구도 판매, 위탁, 납품, 또는 수입할 수 없다.

(2003 년 제 225 호 법률공고)

조:	3A	항공 국경 통과 혹은 항공환적화물의 적용	L.N. 225 of	19/12/2003
----	----	------------------------	-------------	------------

- (1) 제 3 조에서 서술한 감미료 또는 식품이 항공운송화물 혹은 항공환적화물일 경우, 해당 조항은 이 감미료 또는 식품 수입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감미료 또는 식품이 홍콩으로 반출된 기간 공항 화물 환적구역을 벗어난 경우, 이 조항을 시행한다—(2003 년 제 225 호 법률공고)
 - (a) 해당 감미료 또는 식품이 해당 구역을 벗어났을 때 수입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 (b) 해당 감미료 또는 식품을 항공운송화물 혹은 항공환적화물로 홍콩에 들어왔거나 해당 감미료 또는 식품을 이렇게 홍콩에 가져온 사람은 식품이 해당 구역을 벗어났을 때 해당 감미료 또는 식품을 수입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a) 혹은 (b)에서 지정한 범위를 제외하고 제 3 조는 본 조항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효력을 가지게 된다.
- (2) 누군가 제 4 조에서 규정한 범죄 행위를 하였다고 고발 기소한 법률절차에서 만약 —
 - (a) 해당 법률절차가 제 3 조에서 서술한 수입과 관련되고 항공운송화물 혹은 항공환적화물인 감미료 또는 식품일 때,
 - (b) 기소자는 해당 감미료 또는 식품이 홍콩으로 반출된 기간 공항 화물 환적구역을 벗어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당사자가 이미 해당 감미료 또는 식품이 이 구역을 떠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정을 채택하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이것으로 면책변호가 될 수 있다.
- (3) 어떠한 법률절차에서 제 (2)항에서 규정한 면책변호 관련 사항이란 해당 범죄 행위의 발생이—
 - (a) 제삼자의 소행 혹은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 (b) 제삼자가 제공한 데이터에 의존해 발생한 것일 때,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해당 면책변호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이 해당 법률절차 10 일 전 혹은 그 이전에 청문해 기소자에게 서면 통보를 전달했을 때, 피고인이 이 통보를 전달해 알게 된—
 - (i) 제삼자의 모든 상세정보 및
 - (ii) 해당 소행, 과실 혹은 자료의 모든 상세정보는 예외에 속한다.
- (4) 누군가 제 (2)항에서 제정한 면책변호를 인용할 때, 근거가 되는 이유가 제삼자가 제공한 데이터에 의존한 것일 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특히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후 해당 자료 의존이 정말 합리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면책변호를 인용할 수 없다—
 - (a) 해당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채택한 절차가 데이터 확인을 위해 마땅히 채택해야 할 절차이다. 그리고
 - (b) 그가 해당 자료를 신뢰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2000 년 제 29 호 제 5 조 ; 2003 년 제 225 호 법률공지)

조:	4	범죄 행위 및 벌칙	L.N. 225 of	19/12/2003
----	---	------------	-------------	------------

제 3 조의 조문을 위반할 경우 범죄 행위에 속하며 약식절차로 선고가 내려지고 5 등급 벌금 및 6 개월 금고에 처할 수 있다.

(1983 년 제 299 호 법률공고 ; 1987 년 제 328 호 법률공고 ; 1996 년 제 177 호 법률공고)

조:	5	범죄 행위에 법률절차 제기 시 사용 가능한 명의	L.N. 225 of	19/12/2003
----	---	----------------------------	-------------	------------

형사 범죄 고발 기소와 관련한 기타 성문법규의 조문을 침해하지 않고 법무부 국장의 형사 범죄 고발 기소 관련 권력을 침해하지 않는 원칙에서 본 규례의 모든 조문에서 제정한 범죄 행위에 대한 고발 기소는 모두 식품환경위생처 처장의 명의로 제기된다.

(1997 년 제 362 호 법률공고 ; 1999 년 제 78 호 제 7 조)

부표 :		부표	L.N. 61 of 2010	01/08/2010
------	--	----	-----------------	------------

[제 3 조]

허용된 감미료

- 1 AcesulfamePotassium
- 2 Alitame
- 3 Aspartame
- 4 Aspartame-acesulfameSalt
- 5 Cyclamic Acid (and Sodium, Potassium, Calcium Salts)
- 6 Saccharin (and Sodium, Potassium, Calcium Salts)
- 7 Sucralose
- 8 Thaumatin
- 9 Neotame(2010 년 제 61 호 법률공고)
- 10 Steviol Glycosides(2010 년 제 61 호 법률공고)

(2003 년 제 225 호 법률공고 부표대체)

4 식품 및 의약품(성분 및 라벨링) 규정

장 :	132W	식품 및 의약품(성분 및 라벨링)규정	헌보 번호	버전 날짜
		효력부여 절		30/06/1997

(제 132 장 제 55 조)

[1960 년 11 월 11 일] 1960 년 A132 호 정부공고

(본문 1960 년 A74 호 정부공고)

조:	1	인용		30/06/1997
----	---	----	--	------------

본 규례는 식품 및 의약품(성분 및 라벨링)규정으로 인용될 수 있다.

조:	2	해석	L.N. 90 of 2014	13/12/2015
----	---	----	-----------------	------------

(1) 본 규정에서,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트랜스지방산”(trans fatty acids)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공액 트랜스 이중결합을 포함하는 모든 불포화지방산의 합을 의미한다. (2008 년 제 69 호 법률공고)

“가공연화육”(tenderized meat)은 단백질 분해 효소로 처리된 육류 또는 그렇게 처리된 동물이나 조류에서 유래된 고기를 의미한다. (1970 년 제 116 호 법률공고)

“주관당국”(Authority) 은 식품환경위생국(the Director of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을 의미한다. (1999 년 제 78 호 제 7 조)

“가용 탄수화물”(available carbohydrates) 은 식이섬유를 제외한 모든 탄수화물을 의미한다. (2008 년 제 69 호 법률공고)

“우유”(milk)는 소의 젖을 의미하며, 크림, 탈지유를 포함하지만, 분유, 연유, 환원유, 버팔로 우유 또는 염소우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1963 년 제 32 호 제 20 조)

“유음료”(milk beverage) 식품첨가물 또는 기타물질의 함유와 상관없이, 액체유지와 우유에서 나온 기타 고체를 합성하여 만든 음료이다. (1977 년 제 217 호 법률공고)

“빙과류”(frozen confection) 라 함은 일반적으로 냉동 또는 냉장 상태로 사람의 섭취 목적으로 판매되는 모든 디저트류를 의미한다. (1969 년 제 163 호 법률공고)

“환원유”(reconstituted milk) 우유성분(유지 및 우유에서 추출된 기타 고체(비유류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과 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제품이며, 냉동 연유로 만든 제품을 포함한다, 환원유(to reconstitute milk)도 이와 같이 해석해야 한다.

(1967 년 제 30 호 법률공고)

“육류”(meat) 사람이 섭취하기 위한—

(a) 모든 동물의 고기살 또는 식용 가능한 부위, 또는

(b) 모든 조류의 고기살 또는 식용 가능한 부위 (1970 년 제 116 호 법률공고 ; 1985 년 제 222 호 법률공고)

“식품첨가물 국제분류번호 체계”(International Numbering System for Food Additives) 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미리 포장된 식품의 재료 속 식품첨가물을 식별하기 위해 만든 번호체계이다. (2004 년 제 85 호 법률공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는 1963 년 세계보건기구와 식량농업기구가

식품표준, 가이드라인 및 관련 텍스트를 개발하기 위해 창설한 기구이다. (2004 년 제 85 호 법률공고)

“홍보물”(advertisement) 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는 모든 형식의 홍보를 포함한다—

- (a) 신문이나 기타 간행물
- (b)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
- (c) 전자 메시지
- (d) 공지문, 게시문, 라벨, 광고 전단 또는 상품전시
- (e) 샘플, 전단지, 카탈로그, 가격표 또는 기타 자료 배포, 또는
- (f) 사진, 모델 또는 필름 전시

“홍보”(advertise) 는 이에 따라 해석된다. (2008 년 제 69 호 법률공고)

“재료”(ingredient)식품 제조 또는 배합하는 데 사용되며, 완제품에도 남아있는 모든 물질(형태 변형 포함), 모든 첨가물 또는 배합재료의 모든 성분 포함. (1985 년 제 222 호 법률공고)

특수의료용 영유아식 (formula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은 다음과 같은 제품을 의미한다-

- (a) 본 제품은 사용설명서처럼 특별가공 또는 제조된 것으로, 특정한 상황과 36 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식이관리를 위해 사용된다.(사용설명서에 이와 같이 명시되어 있어도, 36 개월인 영아유도 경우에 따라 섭취 가능하다), 위에서 언급된 특정한 상황이란, 일부 사람들이-
 - (i) 일반식품이나 영양소의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에 있어, 능력이 제한적이거나 장애가 있을 경우
 - (ii) 의학적 견해로, 특수영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 (iii) 단순 섭취로 식이관리를 달성할 수 없거나, 일반 식단을 변형하여 식이관리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 또한

(b) 본 제품은 의학적 감독 하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2014 년 제 90 호 법률공고)

“허용된 색소”(permitted colouring matter) 는 《식품 속 색소 규정》(제 132 장, 부록법규 H) 부표 1 에 명시된 색소 또는 해당 색소의 모든 혼합물이다.

“열량”(energy) 해당 식품이 제공하며, 아래와 같은 설명에 부합되는 열량(모든 식품에 해당) —

(a)가용 탄수화물(또는 영유아용 조제분유일 경우 총 탄수화물), 단백질, 총 지방, 에탄올 및 유기산류에 의해 발생하는 총 열량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2014 년 제 90 호 법률공고)

(b) 국제식품규격회에서 채택된 영양소 표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산된다. (2008 년 제 69 호 법률공고)

“용기”(container)란 각종 식품 또는 물질을 포장하는 상자, 병, 캔, 판지상자, 포장 또는 포장재료가 포함된다. 위탁 또는 납품을 위해 덧씌운 외부커버나 포장재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첨가물”(additive)은 흔히 식품으로 간주되거나 사용되지는 않지만, 특정 단계에서 품질, 질감, 농도, 외관, 맛, 향, 알칼리성, 또는 산성을 보존하거나 식품과 관련한 기타 기술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식품에 첨가되거나 사용되는 모든 물질을 의미하며, 모든 가공 보조 물질을 포함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a) 식품 성분의 강화 또는 증진, 복원을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비타민, 무기질 또는 기타 영양소
- (b) 양념으로 사용되는 허브 또는 향신료
- (c) 호프

- (d) 염
- (e) 효모 또는 효모 추출물
- (f) 식품 단백질 가수분해 또는 자가분해 제품
- (g) 종균배양
- (h) 맥아 또는 맥아추출물
- (i) 동물, 조류 또는 어류 사료로만 첨가되어 식품에 존재하는 물질, 또는 농업, 축산, 수의 또는 저장과정에서만 실행되며 식품 속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모든 살충제, 브롬화메틸, 발아 억제제 또는 수의 약물 포함), 또는
- (j) 공기 또는 물 (1985 년 제 222 호 법률공고)

“판매”(sell) 출고를 위한 제안, 노출 또는 출고 목적의 보관이 포함된다, “出售”(sale) 와 “售出”(sold)이란 용어도 이를 근거로 해석해야 한다. (1985 년 제 222 호 법률공고)

“급식 시설”(catering establishment)은 영업 중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 가능한 식품이 제공되는 레스토랑, 구내 식당, 클럽, 선물집, 학교, 병원 또는 기타 시설(차량이나 고정 또는 이동식 가판 포함)을 의미한다. (1985 년 제 222 호 법률공고)

“최종 소비자”(ultimate consumer) 아래와 같은 목적 외로 구매를 하는 모든 홍콩 사람을 의미한다—

- (a) 재판매 목적
- (b) 급식 시설 제공용, 또는
- (c) 제조업 제공용 (1985 년 제 222 호 법률공고)

조금 큰 영아 및 유아 조제식품 (follow-up formula) 은 아래와 같은 설명에 부합된 제품을 의미한다—

- (a) 해당 제품의 사용설명에 따르면-
 - (i) 모유 또는 영아 조제식품의 대체품이라고 설명되어 있고
 - (ii) 6 개월~36 개월 미만 연령대에서 점차 식단이 다양화될 때, 액상 형태로 섭취되도록 만들어진 제품(사용설명서에 이와 같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 다른 연령대도 소비하기 적합하다), 또는
- (b) “조금 큰 영아 및 유아 조제식품”, “follow-up formula” 또는 유사한 의미의 문구로 표기된 제품. (2014 년 제 90 호 법률공고)

“사전 포장 식품”(prepackaged food) 다음과 같이 완전 또는 부분 포장된 식품을 의미한다—

- (a) 포장을 개봉하거나 변경하지 않고서는 내용물을 바꿀 수 없는 식품, 그리고
- (b) 단일 식품 품목으로 최종 소비자 또는 급식 시설로 납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식품 (1985 년 제 222 호 법률공고)

사전포장 영유아 식품(prepackaged food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아래 설명에 부합되는 사전포장식품을 의미한다. 식품 사용설명서에 따라 36 개월 미만의 영아가 섭취할 수 있는 식품(사용설명서에 이와 같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 36 개월 영아도 섭취할 수 있다). 영아 조제식품 또는 유아 조제식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2014 년 제 90 호 법률공고)

나이아신 (niacin)—

- (a) 영아조제식품에 관해서는 니코틴산과 니코틴산아마이드를 의미한다, 또한
- (b) 유아 조제식품에 관해서는 니코틴산아마이드를 의미한다. (2014 년 제 90 호 법률공고)

엽산(folic acid) 영아조제식품 또는 유아 조제식품에 관해서는 N-pteroyl-L-glumatic acid 를 의미한다. (2014 년 제 90 호 법률공고)

“이온화 방사선”(ionizing radiation) 다음에 의해 발산되는 광선 또는 방사선 외에 직간접적으로 이온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감마선, X 선 또는 입자선을 의미한다. 아래 항목 제외-

- (a) 계측 또는 검사 장비에 의해 발생한 것, 그리고

(b) 적정 최대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에너지 수준 (1996 년 제 80 호 법률공고)

비타민 A (vitamin A)—

(a) 부표 1 제 4 편와 부표 6A 제 1(1) 및 (3)항에 명시된 정의에 따르면, 레티놀당량(RE) 또는 International Unit(**IU**) (1 μg RE 은 3.33 IU 에 해당)으로 계산된 전-트랜스형- 레티놀(all-trans retinol)을 의미한다. 그리고

(b) 그 외의 경우에는 RE(베타카로틴 6 μg 은 1 μg RE 에 해당) 로 계산된, 식품에 들어있는 레티놀과 베타카로틴의 합계를 의미한다. (2014 년 제 90 호 법률공고)

비타민 C (vitamin C)—

(a) 영아 조제식품에 관해서는 아스코르빈산(ascorbic acid)과 디하이드로아스코르빈산(dehydroascorbic acid)를 의미한다. 그리고

(b) 유아 조제식품에 관해서는 아스코르빈산을 의미한다. (2014 년 제 90 호 법률공고)

비타민 E (vitamin E)—

(a) 영아조제식품에 관해서는 알파 토코페롤 당량 (α -**TE**) 또는 International Unit (**IU**) (1 IU 는 0.67 mg α -TE 에 해당) 로 계산된 디알파토코페놀(d-alpha-tocopherol)을 의미한다; 또한

(b) 유아 조제식품에 관해서는 α -TE 또는 IU 로 계산된 알파토코페놀 화합물(alpha-tocopherol compounds)을 의미한다-

(i) (천연 원료의 알파토코페놀 화합물의 경우) 1 IU 는 0.67 mg α -**TE** 에 해당한다.

또는

(ii) (합성 원료의 알파토코페놀 화합물의 경우) 1 IU 는 0.45 mg α -**TE** 에 해당한다. (2014 년 제 90 호 법률공고)

비타민 K (vitamin K) 영아조제식품 또는 유아조제식품에 관해서는 비타민 K1 을 의미한다. (2014 년 제 90 호 법률공고)

“라벨”, “라벨링”(labelling) 식품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식품과 관련되고, 식품 포장지에 표기되거나 식품관련 문서, 게시문, 라벨, 동그라미 속 문자, 구체적인 수치, 상표, 브랜드 명칭, 그림 또는 부호 (1985 년 제 222 호 법률공고)

“당류”(sugars) 식품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 및 다당류 일체를 의미한다. (2008 년 제 69 호 법률공고)

“식이섬유”(dietary fibre) 는 국제판 AOAC 로 알려진 식품과 농업 분석 방법의 검증 및 승인 차원에서 국제적인 공신력을 갖춘 기관에 의해 공식적인 방법으로 분석된 모든 섬유질을 의미한다. (2008 년 제 69 호 법률공고)

“방사선 조사 식품”(irradiated food)은 이온화방사선 처리를 거친 모든 식품을 의미한다. (1996 년 제 80 호 법률공고 ; 2008 년 제 69 호 법률공고)

영아조제식품 (infant formula)란 다음을 의미한다-

(a) 해당 제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12 개월 이하의 유아가 적절한 보충식품을 섭취하기 전까지 영양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특수 제조된 모유 대체 식품이다(사용설명서에 이와 같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 12 개월 이상의 영아도 섭취할 수 있다). 또는(2014 년 제 90 호 법률공고)

(b) “영아 조제식품”, “infant formula” 또는 유사한 의미의 문구로 표기된 제품 (2014 년 제 90 호 법률공고)

영양소 (nutrient) —

(a) 식품 속에 존재하며, 아래와 같은 설명에 부합되는 모든 물질-

(i) 아래 카테고리 중 하나가 해당되거나 그 일부의 구성-

(A) 단백질

(B) 탄수화물

(C) 지방

(D) 식이섬유

(E) 비타민

(F) 무기질, 그리고

(ii) 아래 기준 모두 충족-

(A) 에너지 공급 물질

(B) 신체 성장, 발달 및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

(C) 결핍 시 특징적인 생화학 또는 생리학적 변화를 유발하는 물질, 그리고

(b) 부표 1 제 IV부와 부표 6A 에 명시된 미오이노시톨(myo-inositol), L-카르니틴 (L-carnitine) 및 타우린(taurine)을 포함한다. (2014 년 제 90 호 법률공고)

“영양소 비교강조표시”(nutrient comparative claim)는 동일 식품이나 유사 식품의 각기 다른 형태에 관하여 에너지 값이나 영양소 함량을 비교하는 영양 강조표시를 의미한다. (2008 년 제 69 호 법률공고)

“영양소 기능강조표시”(nutrient function claim)는 신체의 성장, 발달 및 정상적 기능에 있어 영양소의 생리학적 역할을 강조하는 영양 강조표시를 의미한다. (2008 년 제 69 호 법률공고)

“영양소 함량강조표시”(nutrient content claim)는 특정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에너지 값이나 함량을 설명하는 영양소 강조표시를 의미한다. (2008 년 제 69 호 법률공고)

영양소 표 (list of nutrients)—

(a) 제 4B 조에서 적용되는 사전포장식품에 관련하여, 부표 5 제 1 항에 규정된 영양소 표를 의미한다. 그리고

(b) 영아 조제식품, 조제식품 또는 사전포장된 영유아식품에 관련하여, 부표 6A 제 1 항에 규정된 영양소 표를 의미한다. (2014 년 제 90 호 법률공고)

“영양소 기준치”(nutrient reference value) 부표 7 에 나열된 모든 기준치 (2008 년 제 69 호 법률공고)

“영양 강조표시”(nutrition claim)—

(a) 제 4B 조에서 적용되는 사전포장식품에 관련하여, 부표 5 제 1 항에 규정된 영양소 표를 의미한다. 그리고

(i) 에너지 값

(ii) 단백질, 가용 탄수화물, 총지방,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나트륨 및 당 함량, 또는

(iii) 비타민과 무기질 함량, 그리고

(b) 영양소 함량강조표시, 영양소 비교강조표시 및 영양소 기능강조표시를 포함한다. (2008 년 제 69 호 법률공고)

(1A) 제 (1)항 영아 조제식품 정의에서, 언급된 모유 또는 영아조제식품의 대체품(조제식품 대체)란 대체 조제식품과 같은 모든 대체품 또는 그것의 후속 대체물을 포함한다. (2014 년 제 90 호 법률공고)

(1B) 의혹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약 어떤 제품이 제 (1)항 속 영아 조제식품과 유아조제식품의 정의에 해당될 경우, 본 규정에서만 해당제품을 영아 조제식품으로 보며, 유아 조제식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4 년 제 90 호 법률공고)

(2) 본 규정을 실행하기 위해, 업무 과정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해당 장소 내에 판매 외의 방식으로 식품이 제공되더라도, 식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구매장소도 이에 따라 해석된다. (2008 년 제 69 호 법률공고)

조:	3	성분기준	L.N. 90 of 2014	13/12/2015
----	---	------	-----------------	------------

(1) 제 (2)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에, 부표 1 에 명시된 식품 및 약물 성분기준이 해당 식품 및 약물 성분기준이다. (2014 년 제 90 호 법률공고)

(2) 부표 1A 에 나열된 항목은 부표 1 제 IV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2014 년 제 90 호 법률공고)
(1996 년 제 80 호 법률공고)

조:	4	마크 및 라벨 추가		30/06/1997
----	---	------------	--	------------

부표 2 에서 명시된 식품과 약물은 반드시 해당 부표에서 제정한 방식에 따라 마크와 라벨을 추가해야 한다.

(1996 년 제 80 호 법률공고)

조:	4A	사전 포장 식품의 라벨 추가	L.N. 90 of 2014	13/12/2015
----	----	-----------------	-----------------	------------

세부내용 생략

조:	4B	사전 포장 식품의 영양 라벨 및 영양 강조표시	L.N. 90 of 2014	13/12/2015
----	----	---------------------------	-----------------	------------

세부내용 생략

조:	4C	영아 조제식품, 조금 큰 영아 및 유아 조제식품 및 사전 포장 영유아 식품의 영양 라벨	L.N. 90 of 2014	13/06/2016
----	----	--	-----------------	------------

세부내용 생략

조:	5	범죄 행위 및 벌칙	L.N. 90 of 2014	13/06/2016
----	---	------------	-----------------	------------

* (1) 제 3(2)조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군가 판매를 위한 홍보, 판매 혹은 판매를 위해 어떠한 식품이나 약물을 제조했을 때, 해당 식품 혹은 약물의 성분 조합이 부표 1 에서 제정한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식품 혹은 약물이 부표 2 에서 제정한 방식에 따라, 마크 및 라벨을 추가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범죄 행위로 5 등급 벌금 및 금고 6 개월에 처할 수 있다. (1985 년 제 222 호 법률공고 ; 1987 년 제 330 호 법률공고 ; 1996 년 제 80 호 법률공고 ; 1996 년 제 177 호 법률공고 ; 2008 년 제 69 호 법률공고 ; 2014 년 제 90 호 법률공고)

(1AA) 누군가 다음의 설명에 부합하는 어떠한 사전 포장 식품 판매를 위한 홍보, 판매 혹은 판매를 위해 제조할 경우, 범죄 행위로 5 등급 벌금 및 금고 6 개월에 처할 수 있다—

(a) 제 4A(1) 혹은 4B(1)조의 규정에 따라 마크 혹은 라벨을 부착하지 않았거나

(b) 그 라벨이 제 4B(5)조의 영양 강조표시에 부합하지 않는다. (2008 년 제 69 호 법률공고)

(1AB)예—

(a) 누군가 판매를 위해 어떠한 사전 포장 식품을 홍보하고,

(b) 이 홍보물에 제 4B(5)조에서 규정한 영양 강조표시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때, 당사자의 범죄 행위로 5 등급 벌금 및 금고 6 개월에 처할 수 있다. (2008 년 제 69 호 법률공고)

(1AC)누군가 어떠한 영아 조제식품, 조금 큰 영아 및 유아 조제식품 혹은 사전 포장 영유아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홍보, 판매 혹은 판매하기 위해 제조했을 때, 이 제품 혹은 식품이 제 4C(1)조에 따라

마크 혹은 라벨을 추가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범죄 행위로 5 등급 벌금 및 금고 6 개월에 처할 수 있다. (2014 년 제 90 호 법률공고)

(1A) 누군가 부표 3 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추가한 마크 혹은 라벨의 식품을 “이 날짜 혹은 그 전까지 식용”하라고 표시한 일자 이후 식품을 판매한 경우, 범죄 행위로 5 등급 벌금 및 금고 6 개월에 처할 수 있다. (1996 년 제 80 호 법률공고 ; 1996 년 제 177 호 법률공고 ; 2008 년 제 10 호 제 56 조)

(1B) 기존에 제 4, 4A, 4B 혹은 4C 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 혹은 약물에 마크 혹은 라벨을 추가할 책임이 없는 제조업체 혹은 포장업체가 마크 혹은 라벨이 추가된 식품 혹은 약물의 마크나 라벨을 수정, 이동, 제거할 경우, 범죄 행위로 5 등급 벌금 및 금고 6 개월에 처할 수 있다. (1996 년 제 80 호 법률공고 ; 1996 년 제 177 호 법률공고 ; 2008 년 제 69 호 법률공고 ; 2014 년 제 90 호 법률공고)

(2) 제(1), (1AA) 혹은 (1AB)항에서 제정한 홍보물 발행과 관련한 범죄 행위로 제기된 법률절차에서 피고인이 다음 중 하나를 증명하면 면책변호가 될 수 있다— (2008 년 제 69 호 법률공고)

(a) 관련 홍보물을 발행 혹은 편성하기 전, 피고인이 이미 모든 합리적인 절차를 채택해 홍보물의 모든 영양 강조표시가 제 4B(5)조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혹은

(b) 피고인의 업무가 홍보물 발행 혹은 편성이며 관련 홍보물은 피고인의 일상 업무 활동 중 받아 발행할 것이다. (2008 년 제 69 호 법률공고)

(2A) 홍보물 관련 제(1AC)조에서 규정한 범죄 행위로 제기한 법률절차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가 홍보물 발행 혹은 편성이며, 관련 홍보물은 피고인의 일상 업무 활동 중 받아 발행한 것임을 증명하면, 면책변호가 된다. (2014 년 제 90 호 법률공고)

(3) 판매와 관련하여 제 4, 4A(1) 혹은 4B(1)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 포장 식품에 마크 혹은 라벨을 추가하지 않아 제(1) 혹은 (1AA) 항에서 규정한 범죄 행위로 제기된 법률절차에서 피고인 자신이 해당 식품을 계약 판매하기 전에 이미 모든 합리적인 절차를 채택하였고 해당 식품은 이에 따라 마크 혹은 라벨을 추가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면책변호가 된다. (1985 년 제 222 호 법률공고 ; 1996 년 제 80 호 법률공고 ; 2008 년 제 69 호 법률공고 ; 2014 년 제 90 호 법률공고)

(3A) 제 (3)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원칙으로 제(1AA)항에서 규정한 부표 3 제 2(4E)항에 따라 마크 혹은 라벨을 추가하지 않은 사전 포장 식품의 범죄 행위와 관련해 제기된 법률절차에서 피고인이 다음 중 하나를 증명할 경우, 면책변호가 된다. (2008 년 제 69 호 법률공고)

(a) 그가 합리적이고 진실하게 관련 수입업체 혹은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식품에 해당 조항에서 제시된 어떠한 물질로 구성되었는지 여부 혹은 해당 식품에 해당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자료에 의존하였다. 혹은 (2008 년 제 69 호 법률공고)

(b) (i) 그가 이미 최대한으로 수입업체 혹은 제조업체에 해당 자료를 요청해 노력했지만 데이터를 제공받지 못했고

(ii) 그가 진실하게 해당 식품에 마크를 추가해 자신은 식품이 해당 물질로 구성되었거나 식품에 해당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를 모른다는 것을 표시하였다. (2004 년 제 85 호 법률공고 및 2004 년 제 139 호 법률공고)

(3B) 판매와 관련해 제 4C(1)조의 규정에 따라 영아 조제식품, 조금 큰 영아 및 유아 조제식품 혹은 사전 포장 영유아 식품에 마크 혹은 라벨을 추가하지 않아 제(1AC)조에서 규정한 범죄 행위로 제기된 법률절차에서 피고인 자신이 해당 제품 혹은 식품을 계약 판매하기 전 이미 모든 합리적인 절차를 채택하였고 해당 식품은 이에 따라 마크 혹은 라벨을 추가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면책변호가 된다. (2014 년 제 90 호 법률공고)

(4) 제(1B)항에서 제정한 범죄 행위로 제기된 법률절차에서 피고인의 각 항목의 수정, 이동, 제거(범죄로 지칭되는 것)가 해당 항목을 수정, 이동 혹은 제거할 수 있으며 해당 조문을 위반하지 않은

사람의 서면 위임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하면 면책번호가 된다. (1996 년 제 80 호 법률공고)

주:

* 본 조항은 《2003 년 식품 및 약물(성분조합 및 라벨)(수정) 규정》(2003 년 제 226 호 법률공고) 제 3 조 및 《2004 년 식품 및 약물(성분조합 및 라벨)(수정) 규정》(2004 년 제 85 호 법률공고) 제 6 조의 과도성 조문에 영향을 받는다.

2003 년 제 226 호 법률공고 제 3 조의 내용 기록은 다음과 같다—

“3. 과도성 조문

2005 년 6 월 18 일 혹은 그 이전에 판매를 위해 홍보, 판매 혹은 판매를 위해 제작된 모든 사전 포장 식품은 다음의 상황에서 《식품 및 약물(성분조합 및 라벨) 규정》(제 132 장, 부속법률 W)(“주요 규제”) 제 5(1)조에서 제정한 범죄 행위가 아니다: 해당 식품에 본 규제 수정 후 주요 규제 부표 3 제 2(6)부분에서 명시된 종류 이외의 첨가제가 함유되어 있고, 이 첨가제는 본 규제의 주요 규제 부표 3 제 2(6)부분에서 명시된 종류에 따라 시행되지 않았다.”

2004 년 제 85 호 법률공고 제 6 조의 내용 기록은 다음과 같다—

“6. 과도성 조문

만약 본 규제의 수정 《식품 및 약물(성분조합 및 라벨) 규정》(제 132 장, 부속법률 W)(“주요 규제”) 부표 3 제 2 및 4 부분의 규정에 따라 사전 포장 식품에 라벨을 추가하지 않고, 본 규제의 주요 규제 부표 3 제 2 및 4 부분의 규정에 따라 라벨을 추가하지 않았을 경우, 2007 년 7 월 7 일 당일 혹은 그 이전, 판매를 위한 홍보, 판매 혹은 판매를 위한 해당 포장 식품 제조는 주요 규제 제 5(1)조에서 제정한 범죄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2004 년 제 139 호 법률공고)”.

조:	6	법률절차 제기 시 사용 가능한 명의	L.N. 320 of	01/01/2000
----	---	---------------------	-------------	------------

형사 범죄 고발 기소와 관련한 기타 성문법규의 조문을 침해하지 않고 법무부 국장의 형사 범죄 고발 기소 관련 권력을 침해하지 않는 원칙에서 본 규제의 모든 조문에서 제정한 범죄 행위에 대한 고발 기소에서— (1997 년 제 362 호 법률공고)

(a) 모든 약물 범죄 행위는 위생처 처장의 명의로 제출할 수 있다. (1989 년 제 76 호 법률공고)

(b) 모든 식품 범죄행위는 식품환경위생처 처장의 명의로 제출할 수 있다. (1999 년 제 78 호 제 7 조)

(c) (1999 년 제 78 호 제 7 조로 폐기)

(1967 년 제 30 호 법률공고)

조:	7	기타 라벨 추가 규정의 준수		30/06/1997
----	---	-----------------	--	------------

본 규제는 누군가의 본 조례 중 기타 식품 라벨 추가 관련 조문 준수 면제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1985 년 제 222 호 법률공고)

부표 :	1		2014 년 L.N. 90	13/12/2015
------	---	--	----------------	------------

[제 2,3,5 조 및 부표 1A 와 2]

(1996 년 제 80 호 법률공고; 2008 년 제 69 호 법률공고; 2014 년 제 90 호 법률공고)

(본 부표에서의 비중 또는 비율은 무게 기준의 비중 또는 비율을 의미한다)

제 1A 부

우수제조관리기준

본 부표에서의 “우수제조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a) 식품에 첨가되는 첨가물의 양을 가급적 원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 (b) 식품 제조, 가공처리 또는 포장 과정에서 성분이 식품에 남아 있지만, 식품 자체에 대해 어떠한 물리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에 대해, 그 사용량을 최소로 하며 적정수준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 (c) 첨가물의 조제 및 처리방식은 식품원료의 조제 및 처리방식과 같다.

(2004 년 제 207 호 법률공고)

제 I 부

식품 및 약물(우유, 유제품 및 영아 조제식품 제외)의 성분조합

(2014 년 제 90 호 법률공고)

1. 약물 및 약물의 배합원료와 구성성분은 British Pharmacopoeia 또는 British Pharmacopoeia Codex(대영제국 약전)에서 명시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
2. 마가린이란 버터와 유사하지만 우유가 섞이지 않아야 하며, 버터와의 혼합여부는 상관없다. 마가린은 산패되지 않아야 하며, 16%이상의 수분이나 10%이상의 유지가 함유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커피는 아라비아 커피나무 또는 기타 커피나무의 씨앗으로서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아니 된다.
4. 돼지 기름이란 고기에서 추출한 순수 지방이다. 추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섞이는 돼지 비계 외의 물질은 1% 이상 혼합되면 아니 되고, 수분 함량이 1% 미만이어야 한다. 일체의 이물질은 혼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5. 식초는 중간 증류 없이 온전히 알코올 및 초산 발효를 통해 추출되는 액체이다. 식초 100 cm³당 초산이

4.0g 보다 적게 들어있으면 아니 되며, 캐러멜 이외의 어떠한 이물질도 섞여서는 아니 된다.

6. 맥아식초는 제 5 항에서 규정한 식초로, 온전히 발아보리에서 추출되어야 하며(곡물 첨가여부 상관없이), 발아보리의 전분은 맥아당화를 통해 단맛을 갖게된다.

본 조항 또는 제 5 항에서 규정된 내용은 Chit Ts'o (浙醋), Pak Ts'o (白醋) 또는 Hak Ts'o (黑醋)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중국의 전통 식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975 년 제 45 호 법률공고)

7. 벌꿀 속 자당의 함유량은 5% 미만이어야 한다.

8. 베이킹파우더가 발생시킨 잔류 이산화탄소는 본 중량의 1.5%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가용 이산화탄소는 본 중량의 8%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잔류 이산화탄소 및 가용 이산화탄소의 중량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a) 잔류 이산화탄소-

베이킹파우더 시료 2g 에 물 25mL 를 가하고 끓는 물 수조에서 증발 건조시킨 후 다시 물 25mL 를 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증발시킨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된 시료에 실온에서 과량의 묽은 황산을 가하고, 가열 또는 감압과 같은 방법으로 기체를 발생시키는데, 이때 발생한 기체의 무게가 잔류 이산화탄소 중량이며 이때 변화된 무게량을 측정하면 중량을 구할수 있다.

(b) 가용 이산화탄소-

가용 이산화탄소 중량은 총 이산화탄소 무게에서 시료를 (a)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얻은 잔류 이산화탄소를 뺀 값이다. 유사 베이킹파우더 시료에 실온에서 과량의 묽은 황산을 가하고, 5 분간 가열 또는 감압과 같은 방법으로 기체를 발생시키는데, 이때 발생한 기체의 중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총 중량을 결정할 수 있다.

제 II부

우유 및 유제품의 성분조합

9. 우유 및 환원유의 유지 함량은 3.25%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유지 외, 우유 및 환원유 속 유류 고체함량은 8.5%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9A. 유음료 속 유지 함량은 0.1%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1977 년 제 217 호 법률공고)

9B. 탈지유 속 유지 함량은 0.3%보다 많아서는 아니 된다. 유지 외, 탈지유 속 유류고체의 함량은 8.5%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1996 년 제 80 호 법률공고)

9C. 준탈지유 속 유지의 함량은 1.5%보다 적어서도 아니되며, 1.8%보다 많아서도 아니 된다. 유지 외, 준탈지유 속 유류고체 함량은 8.5%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1996 년 제 80 호 법률공고)

10. 크림은 우유 속 풍부한 지방이 있는 부분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제되어야 한다.

- (a) 응고된 크림-가열, 냉각 또는 탈지하는 방법으로 생산 및 분리; 또한
- (b) 기타 크림- 탈지 또는 기타방법으로 분리 (1977 년 제 217 호 법률공고)

11. (1) (2)~(6)에서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어떠한 명칭이든, 크림(싱글 크림, 푸어링 크림, 커피 크림, 과일 크림 또는 환원 크림) 속 유지 함량은 18%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 (2) 멸균 크림 속 유지 함량은 23%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 (3) 하프크림 및 멸균하프크림 속 유지 함량은 12%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 (4) 휘핑크림 및 거품크림 속 유지 함량은 35%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 (5) 더블 크림 및 헤비 크림 속 유지함량은 48%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 (6) 응고된 크림 속 유지 함량은 55%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1977 년 제 217 호 법률공고)

12. (1) (1A), (1B), (1C), (1D), (1E), (3) 그리고 (6)에서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크림 속 부표 제 Ⅲ부 제 3 부문 제 2 단에서 명시된 첨가물이 함유된 것(해당부분 제 3 단에 나열된 첨가물 에 명시된 함량이 최고 제한량)을 빼고는, 어떤 이물질도 함유되어서는 아니 된다. (2004 년 제 207 호 법률공고)

(1A) 크림에는 아래오 같은 성분을 안정제 또는 증점제로 첨가할 수 있다-

- (a) 우유 또는 유청에서 추출되어 모든 종류의 우유 단백질 함량이 35%이상 함유된 성분, 또한
- (b) 분유.

성분 및 분류의 총량은 크림 kg 당 20g 을 초과할 수 없다. (2004 년 제 207 호 법률공고)

(1B) 안정제로서 젤라틴과 전분을 크림 속에 첨가할 수 있으며, 그 함량은 우수제조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2004 년 제 207 호 법률공고)

(1C) 거품크림 및 에어로졸 용기에 담긴 크림에는 이산화탄소, 질소 또는 이산화질소가 포장가스 또는 추진제로 사용될 수 있다. (2004 년 제 207 호 법률공고)

(1D) 발효크림에는 무해한 미생물 발효제가 함유될 수 있다. (2004 년 제 207 호 법률공고)

(1E) 발효크림 또는 산화크림에는 다음과 같은 성분이 함유될 수 있다-

- (a) 염화나트륨
- (b) 응유효소, 또는
- (c) 기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응고작용이 있는 효소

(2) (2004 년 제 207 호 법률공고로 폐지)

(3) 제조 목적으로 제조사에 판매 또는 납품되거나, 급식을 목적으로 급식 시설에 납품되는 크림, 거품크림 또는 에어로졸 용기에 담긴 크림의 당 함유량이 13%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004 년 제 207 호 법률공고)

(4)-(5) (2004 년 제 207 호 법률공고로 인해 폐지)

(6) 응고된 크림에는 니신이 함유될 수 있다. (1997 년 제 217 호 법률공고)

13. 우유와 크림이 혼합된 것으로, "하프앤하프"라고 불리는 제품의 유지 함량이 11.5%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13A. 재조합 또는 환원 크림과 재조합 또는 환원 우유로 제조된 것은 재조합 또는 환원 "하프앤하프" 제품으로 불리며, 유지 함량이 11.5%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14. 가당연유는 일부 수분을 증발시켜 설탕을 첨가하여 제조한 우유로, 함유된 우유 고체의 총량이 28%보다 적어서는 아니되고, 유지는 8%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당, 염(염화나트륨) 및 본 부표 제 Ⅲ부 제 1 부문 제 2 단에 명시된 첨가물 외(해당부문 제 3 단은 해당 첨가물의 최대함량), 어떠한 이물질도 함유되어서는 아니 된다. (2004 년 제 85 호 법률공고; 2014 년 제 90 호 법률공고)
15. 가당 탈지유는 일부 수분을 증발시켜 설탕을 첨가하여 제조한 탈지유로, 함유된 우유 고체(지방 포함)의 총량이 24%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당, 염(염화나트륨) 및 본 부표 제 Ⅲ부 제 1 부문 제 2 단에 명시된 첨가물 외(해당부문 제 3 단은 해당 첨가물의 최대함량), 어떠한 이물질도 함유되어서는 아니 된다. (1961 년 A48 호 정부공고; 2004 년 제 85 호 법률공고; 2014 년 제 90 호 법률공고)
16. 무가당연유는 일부 수분을 증발시켜 설탕을 첨가하여 제조한 우유로, 함유된 우유 고체의 총량이 25.5%보다 적어서는 아니되고, 유지의 함량은 7.8%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염(염화나트륨) 및 본 부표 제 Ⅲ부 제 1 부문 제 2 단에 명시된 첨가물 외(해당부문 제 3 단은 해당 첨가물의 최대함량), 어떠한 이물질도 함유되어서는 아니 된다. (2004 년 제 85 호 법률공고; 2014 년 제 90 호 법률공고)
17. 무가당연유는 일부 수분을 증발시키고, 가열처리하여 조제된 탈지유로, 우유 고체(지방 포함)의 총량이 20%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1961 년 A48 호 정부공고)
18. 버터는 우유 또는 크림을 저어서 만든 것으로, 산패되지 않은 정화된 지방물질이다. 유지의 함량이 80%보다 적어서는 아니되고, 수분의 함량은 16%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염(염화나트륨)의 함량이 4%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버터 속에는 어떠한 지방 혹은 기름류의 이물질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염(염화나트륨), 허용된 색소 및 본 부표 제 Ⅲ부 제 2 부문 제 2 단에 명시된 첨가제 외에(해당부문 제 3 단은 해당 첨가물의 최대함량), 어떠한 이물질도 함유되어서는 아니 된다. (2004 년 제 85 호 법률공고; 2014 년 제 90 호 법률공고)
19. 치즈는 응유효소 또는 산성물질을 사용하여 우유를 응고시켜 고체 혹은 반고체 형태의 제품으로 만든 것이다. 발효촉진 효소, 양념, 염(염화나트륨) 및 허용된 색소는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치즈 속 수분이 없는 유지의 함량이 30%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어떤 지방이외의 이물질이 함유되어서도 아니 된다. (2014 년 제 90 호 법률공고)
20. 크림치즈는 우유 또는 크림으로 만든 치즈로, 수분이 없는 유지의 함량이 60%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21. 전유치즈는 우유 또는 크림으로 만든 치즈로, 수분이 없는 유지의 함량이 50%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22. 탈지유 치즈는 부분 탈지된 우유로 만들어진 치즈로, 수분이 없는 유지의 함량이 10%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23. 소•양의 젖에서 얻어 낸 인도 유지방은 우유(버팔로 젖 포함)로 만들어진 것으로, 해당 우유에서 추출된

지방 외에 다른 어떤 지방도 함유되어서는 아니 된다.

24. 아이스크림 속 지방함량은 5%, 당 함량은 10%, 지방이외의 우유고체는 7 1/2%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과일, 과육 또는 과일 푸레가 아이스크림에 함유되어있을 경우, 위와 같은 기준 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아이스크림의 지방, 당 및 지방 외의 우유고체의 총함량이 아이스크림(과일, 과육 또는 과일 푸레 포함(상황에 따라))의 25%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이와 같은 지방, 당 또는 지방 외 우유고체의 총함량에는 함유된 지방이 7 1/2%, 당이 10%, 그리고 지방 외 우유고체가 2%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위에서 언급된 아이스크림 관련 기준에서, “당”(sugar)란 자당, 설탕 또는 전분으로부터 추출된 모든 단맛이 나는 고체물질을 의미하며, 아이스크림 속 자당의 함량은 7 1/2%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제 Ⅲ부

여타 유제품 속 첨가물

제 1 부문

가당 연유, 가당 탈지유 및 무가당 연유 속 첨가물

항목	첨가물	최대함량
	응고제	
1.	Potassium chloride	무수물로서
2.	Calcium chloride	2g/kg(단일로 사용) 또는 3g/kg(혼합하여 사용)
	안정제	
3.	Sodium citrates	무수물로서
4.	Potassium citrates	2g/kg(단일로 사용) 또는 3g/kg(혼합하여 사용)
5.	Calcium citrates	사용)
	산도조절제	
6.	Calcium carbonates	무수물로서
7.	Sodium phosphates	2g/kg(단일로 사용) 또는 3g/kg(혼합하여 사용)
8.	Potassium phosphates	사용)
9.	Calcium phosphates	

10.	Diphosphates	
11.	Triphosphates	
12.	Polyphosphates	
13.	Sodium carbonates	
14.	Potassium carbonates	
	증점제	
15.	Carrageenan	150 mg/kg
	유화제	
16.	Lecithins	GMP

제 2 부문

버터 속 첨가물

항목	첨가물	최대함량
	산도 조절제	
1.	Sodium phosphates	2 g/kg
2.	Sodium carbonate	GMP
3.	Sodium hydrogen carbonate	
4.	Sodium hydroxide (2014 년 제 90 호 법률공고)	
5.	Calcium hydroxide	

제 3 부문

크림 속 첨가물

항목	첨가물	최대함량
	안정제	
1.	Calcium carbonates	GMP
2.	Sodium lactate	
3.	Potassium lactate	

4.	Calcium lactate	
5.	Sodium citrates	
6.	Potassium citrates	
7.	Calcium citrates	
8.	Calcium sulphate	
9.	Sodium phosphates	P ₂ O ₅ (phosphorus pentaoxide)으로서 단일로 사용할 경우와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모두 2 g/kg
10.	Potassium phosphates	
11.	Calcium phosphates	
12.	Diphosphates	
13.	Triphosphates	
14.	Polyphosphates	
	산도 조절제	
15.	Sodium carbonates	GMP
16.	Potassium carbonates	
17.	Lactic acid (L, D, and DL-)	
18.	Citric acid	
	증점제와 유화제	
19.	Lecithins	GMP
20.	Alginic acid	
21.	Sodium alginate	
22.	Potassium alginate	
23.	Ammonium alginate	
24.	Calcium alginate	
25.	Agar	
26.	Carrageenan and its sodium, potassium and ammonium salts	
27.	Carob bean gum	
28.	Guar gum	
29.	Gum Arabic	
30.	Xanthan gum	
31.	Gellan gum	
32.	Polyoxyethylene (20) sorbitan monolaurate	1 a/ka

33.	Polyoxyethylene (20) sorbitan monooleate	
34.	Polyoxyethylene (20) sorbitan monopalmitate	
35.	Polyoxyethylene (20) sorbitan monostearate	
36.	Polyoxyethylene (20) sorbitan tristearate	
37.	Pectins	GMP
38.	Cellulose	
39.	Methyl cellulose	
40.	Hydroxypropyl cellulose	
41.	Hydroxypropyl methyl cellulose	
42.	Methyl ethyl cellulose	
43.	Sodium carboxymethyl cellulose	
44.	Mono- and diglycerides of fatty acids	
45.	Acetic and fatty acid esters of glycerol	
46.	Lactic and fatty acid esters of glycerol	
47.	Citric and fatty acid esters of glycerol	GMP
48.	Potassium chloride	
49.	Calcium chloride	
50.	Monostarch phosphate	
51.	Distarch phosphate esterified with sodium trimetaphosphate; distarch phosphate esterified with phosphorus oxychloride	
52.	Phosphated distarch phosphate	
53.	Acetylated distarch phosphate	
54.	Starch acetate esterified with acetic anhydride	
55.	Acetylated distarch adipate	
56.	Hydroxypropyl starch	
57.	Hydroxypropyl distarch phosphate	
58.	Starch sodium octenyl succinate	

(2004 년 제 207 호 법률공고)

제 IV 부

영아 조제식품의 영양 및 영양성분

제 1 부문—열량

세부내용 생략

제 2 부문—영양소 함량

세부내용 생략

제 3 부문 - 기타 규정

세부내용 생략

부표 :	1A	부표 1 제 IV 부 면제 품목	L.N. 90 of 2014	13/12/2015
------	----	-------------------	-----------------	------------

세부내용 생략

부표 :	2	식품 및 약물의 마크 및 라벨	L.N. 90 of 2014	13/12/2015
------	---	------------------	-----------------	------------

세부내용 생략

부표 :	3	사전 포장 식품의 마크 및 라벨	L.N. 90 of 2014	13/12/2015
------	---	-------------------	-----------------	------------

세부내용 생략

부표 :	4	부표 3 규정 항목을 준수한 면제 획득	L.N. 69 of 2008	01/07/2010
------	---	-----------------------	-----------------	------------

세부내용 생략

부표 :	5	영양 라벨 및 영양 강조표시	L.N. 69 of 2008	01/07/2010
------	---	-----------------	-----------------	------------

세부내용 생략

부표 :	6	면제 획득으로 부표 5 제 1 부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항목	E.R. 2 of 2014	10/04/2014
------	---	----------------------------------	----------------	------------

세부내용 생략

부표 :	6A	영아 조제식품, 약간 큰 영아 및 유아 조제식품 및 사전 포장 영유아 식품의 영양 라벨	L.N. 90 of 2014	13/12/2015
------	----	--	-----------------	------------

세부내용 생략

부표 :	6B	면제 획득으로 부표 6A 제한을 받지 않는 항목	L.N. 90 of 2014	13/12/2015
------	----	----------------------------	-----------------	------------

세부내용 생략

부표 :	7	영양소에 따른 영양소 라벨의 영양소 참고값	L.N. 69 of 2008	01/07/2010
------	---	-------------------------	-----------------	------------

세부내용 생략

부표 :	8	영양소 함량 성명 관련 조건	L.N. 69 of 2008	01/07/2010
------	---	-----------------	-----------------	------------

세부내용 생략

5 식품 유해물질 규정

장 :	132AF	식품 유해물질 규정	헌보 번호	버전 일자
		효력부여 절	E.R. 2 of 2012	02/08/2012

(제 132 장 제 55(1)조)

[1983 년 5 월 27 일]

(본문 1983 년 제 174 호 법률공고)

(*형식 변경—2012 년 제 2 호 편집수정기록)

주 :

* 모든 규정의 형식은 현행 법례 양식으로 업데이트 되었다.

조:	1	인용 및 발효일	E.R. 2 of 2012	02/08/2012
----	---	----------	----------------	------------

(1) 본 규례는 식품 유해물질 규정으로 인용될 수 있다.

(2) 부표 1 제 2 항에 의거하여, 제 3 조는 1985 년 1 월 1 일부터 발효된다.

조:	2	해석	E.R. 2 of 2012	02/08/2012
----	---	----	----------------	------------

본 규정에서,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분유 (dried milk) 수분을 제거한 고체 혹은 분말 형태의 유류를 말한다. 단맛을 증가했거나, 변화 또는 복합과 상관없고, 탈지유 또는 부분탈지유로 농축한 유류도 해당한다. (2011 년 제 173 호 법률공고)

유류 (milk) 소, 버팔로, 염소의 젖을 의미하며, 크림, 탈지유 및 유음료를 포함한다. 하지만 분유, 연유 혹은 환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2008 년 제 215 호 법률공고 및 2008 년 제 253 호 법률공고)

유음료 (milk beverage) 식품첨가물 또는 기타물질의 함유와 상관없이, 액체유지와 우유에서 나온 기타 고체를 합성하여 만든 음료이다. (2008 년 제 215 호 법률공고 및 2008 년 제 253 호 법률공고)

환원유 (reconstituted milk) 우유성분(유지 및 우유에서 추출된 기타 고체(비유류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과 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제품이며, 냉동 연유로 만든 제품을 포함한다. (2011 년 제 173 호 법률공고)

육류 (meat) 사람이 섭취하기 위한—

(a) 각종 동물의 고기살 또는 식용 가능한 부위(피 포함) 또는

(b) 각종 조류의 고기살 또는 식용 가능한 부위(피 포함). (1986 년 제 173 호 법률공고; 2001 년 제 148 호 법률공고)

기름 또는 지방 (oil or fat) 각종 동물, 조류, 생선 또는 식물로부터 추출된 기름 또는 지방이며, 어떠한 정유도 포함되지 않는다.

땅콩 (peanut) 땅콩 또는 두과 식물 낙화생의 씨앗을 의미한다.

땅콩제품 (peanut products)은땅콩기름 또는 땅콩이 함유된 제품을 포함한다.

식용동물 (food animal) 식용을 위해 사육되는 동물 또는 조류를 의미한다. (2001 년 제 148 호 법률공고)

지방산 (fatty acid) 기름 또는 지방을 가수분해하여 얻어진 유기산, 그리고 기름 또는 지방에 함유된 유리상태의 유기산이다.

항공운송화물 (air transit cargo) 항공기로 수입 및 수출 위탁되는 모든 품목을 의미한다. (2000 년 제 29 호 제 5 조)

항공환적화물 (air transhipment cargo) 수출입법규(제 60 장) 제 2 조에서 지정된 의미를 가진다. (2000 년 제 29 호 제 5 조)

판매 (sell) 판매를 위한 계약, 노출 또는 판매 목적의 보관이 포함된다.

탈지유 (skimmed milk) 탈지유와 기계적 탈지유를 포함한다. (2011 년 제 173 호 법률공고)

생선 (fish) 활어는 포함하지 않는다(패류가공식품 제외). (1986 년 제 173 호 법률공고)

연유 (condensed milk) 조제 과정(조제방법은 일부의 수분을 증발, 설탕 가미여부 상관없음)을 거친 유류 및 아래와 같은 것을 포함—

(a)탈지유 또는 부분 탈지유가 조제 과정을 거친 유류 또는

(b)무가당연유 (2011 년 제 173 호 법률공고)

수송물품 (article in transit) 수출입법규(제 60 장) 제 2 조에서 지정된 의미를 가진다. (2000 년 제 29 호 제 5 조)

홍콩국제공항 화물환적구역 (cargo transhipment area of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수출입법규(제 60 장) 제 2 조에서 지정된 의미를 가진다. (2000 년 제 29 호 제 5 조)

(1985 년 제 67 호 법률공고 ; 1987 년 제 331 호 법률공고 ; 2001 년 제 148 호 법률공고 ; 2012 년 제 2 호 편집수정기록)

조:	3	특정물질의 농도가 과도하게 들어간 식품의 수입과 판매 금지	E.R. 2 of 2012	02/08/2012
----	---	----------------------------------	----------------	------------

부표 1 내 D 단에 나열된 식품유형에 상응하는 B 단 내 물질, 혹은 C 단에 묘사된 물질이 있을 경우, 해당 농도가 E 단에 명시된 농도를 초과한 식품은 누구도 수입, 위탁, 납품, 제조 혹은 판매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섭취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2001 년 제 148 호 법률공고)

조:	3A	금지물질이 함유된 생선, 육류 또는 우유 등의 수입과 판매 금지*	E.R. 2 of 2012	02/08/2012
----	----	--------------------------------------	----------------	------------

부표 2 에 명시된 물질이 함유된 생선, 육류, 우유, 분유, 연유 또는 환원유는 누구도 수입, 판매, 위탁, 납품할 수 없다.

(2001 년 제 148 호 법령공고 ; 2001 년 제 230 호 법령공고 ; 2011 년 제 173 호 법률공고)

주 :

* (2011 년 제 173 호 법률공고 개정)

조:	3B	항공 국경 통과 혹은 항공환적화물의 적용	E.R. 2 of 2012	02/08/2012
----	----	------------------------	----------------	------------

(1) 제 3 조에서 서술한 식품이 항공운송화물 혹은 항공환적화물일 경우, 해당 조항은 이 식품 수입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식품이 홍콩으로 반출된 기간 공항 화물 환적구역을 벗어난 경우, 이 조항을 시행한다—

(a)해당 식품이 해당 구역을 벗어났을 때 수입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b) 해당 식품을 항공운송화물 혹은 항공환적화물로 홍콩에 들어왔거나 해당 식품을 이렇게 홍콩에 가져온 사람은 식품이 해당 구역을 벗어났을 때 해당 식품을 수입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a) 혹은 (b)에서 지정한 범위를 제외하고 제 3 조는 본 조항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효력을 가지게 된다.

(2) 누군가 제 5 조에서 규정한 범죄 행위를 하였다고 고발 기소한 법률절차에서 만약 —

(a) 해당 법률절차가 제 3 조에서 서술한 수입과 관련되고 항공운송화물 혹은 항공환적화물인 식품일 때,
(b) 기소자는 해당 식품이 홍콩으로 반출된 기간 공항 화물 환적구역을 벗어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당사자가 이미 해당 식품이 이 구역을 떠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정을 채택하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이것으로 면책번호가 될 수 있다.

(3) 어떠한 법률절차에서 제 (2)항에서 규정한 면책번호 관련 사항이란 해당 범죄 행위의 발생이—

(a) 제삼자의 소행 혹은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b) 제삼자가 제공한 데이터에 의존해 발생한 것일 때,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해당 면책번호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이 해당 법률절차 10 일 전 혹은 그 이전에 청문해 기소자에게 서면 통보를 전달했을 때, 피고인이 이 통보를 전달해 알게 된—
(i) 제삼자의 모든 상세정보 및
(ii) 해당 소행, 과실 혹은 자료의 모든 상세정보는 예외에 속한다.

(4) 누군가 제 (2)항에서 제정한 면책번호를 인용할 때, 근거가 되는 이유가 제삼자가 제공한 데이터에 의존한 것일 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특히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후 해당 자료 의존이 정말 합리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면책번호를 인용할 수 없다—

(a) 해당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채택한 절차가 데이터 확인을 위해 마땅히 채택해야 할 절차이다.
그리고
(b) 그가 해당 자료를 신뢰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2000 년 제 29 호 제 5 조)

조:	4	부표 1 의 수정	E.R. 2 of 2012	02/08/2012
----	---	-----------	----------------	------------

식품환경위생처 처장은 헌보에 게재된 공지를 통해, 부표 1 내 E 단에서 명시한 각종 농도를 수정할 수 있다.
(1985 년 제 67 호 법률공고 ; 1986 년 제 173 호 법률공고 ; 1990 년 제 85 호 법률공고 ; 1999 년 제 78 호 제 7 조 ; 2001 년 제 148 호 법률공고)

조:	5	범죄 행위 및 벌칙	E.R. 2 of 2012	02/08/2012
----	---	------------	----------------	------------

제 3 조 혹은 제 3A 조의 조문을 위반할 경우 범죄 행위에 속하며, 5 등급 벌금 및 6 개월 금고에 처할 수 있다.
(1986 년 제 173 호 법률공고 ; 1987 년 제 331 호 법률공고 ; 1996 년 제 177 호 법률공고)

조:	6	범죄 행위에 법률절차 제기 시 사용 가능한 명의	E.R. 2 of 2012	02/08/2012
----	---	----------------------------	----------------	------------

형사 범죄 고발 기소와 관련한 기타 성문법규의 조문을 침해하지 않고 법무부 국장의 형사 범죄 고발 기소 관련 권력을 침해하지 않는 원칙에서 본 규례의 모든 조문에서 제정한 범죄 행위에 대한 고발 기소는 모두 식품환경위생처 처장의 명의로 제기된다.

(1997 년 제 362 호 법률공고 ; 1999 년 제 78 호 제 7 조)

부표 :	1	특정물질이 해당 식품에 함유될 수 있는 최고농도	E.R. 2 of 2012	02/08/2012
------	---	----------------------------	----------------	------------

[제 3 및 4 조]

A	B	C	D	E
항목	물질	물질 묘사	식품 유형	최고농도
1.	Aflatoxin	Bisfuranocoumarin 화합물 Aflatoxin B1, B2, G1, G2, M1, M2, P1 및 Aflatoxicol 포함	모든 식품(땅콩 또는 땅콩제품 제외) 땅콩 또는 땅콩제품	식품 kg 당 15µg 식품 kg 당 20µg
2.	Amoxycillin		모든 식용동물의 근육, 간 및 신장 우유	식품 kg 당 50µg 식품 kg 당 4µg
3.	Ampicillin		모든 식용동물의 근육, 간 및 신장 우유	식품 kg 당 50µg 식품 kg 당 4µg
4.	Bacitracin		소, 돼지, 가금류의 근육, 간 및 신장 우유	식품 kg 당 500µg 식품 kg 당 500µg
5.	Benzylpenicillin		모든 식용동물의 근육, 간 및 신장 우유	식품 kg 당 500µg 식품 kg 당 50µg
6.	Carbadox	Quinoxaline-2-carboxylic acid	돼지의 근육	식품 kg 당 4µg 식품 kg 당 5µg
7.	Ceftiofur	Desfuroylceftiofur	돼지의 간 소와 돼지의 근육 소와 돼지의 간 소와 돼지의 신장 우유	식품 kg 당 30µg 식품 kg 당 1000µg 식품 kg 당 2000µg 식품 kg 당 6000µg 식품 kg 당 100µg
8.	Chlortetracycline	사용성분과 그 4- epimer(이성질체)의 합	모든 식용동물의 근육	식품 kg 당 100µg
9.	Cloxacillin		모든 식용동물의 간 모든 식용동물의 신장 우유 모든 식용동물의 근육, 간 및 신장 우유	식품 kg 당 300µg 식품 kg 당 600µg 식품 kg 당 100µg 식품 kg 당 300µg 식품 kg 당 30µg
10.	Colistin		소, 돼지, 가금류의 근육과 간 소, 돼지, 가금류의 신장 우유	식품 kg 당 150µg 식품 kg 당 200µg 식품 kg 당 50µg
11.	Danofloxacin		소와 가금류의 근육 돼지의 근육 소와 가금류의 간 돼지의 간 소와 가금류의 신장 돼지의 신장	식품 kg 당 200µg 식품 kg 당 100µg 식품 kg 당 400µg 식품 kg 당 50µg 식품 kg 당 400µg 식품 kg 당 200µg
12.	Dicloxacillin		모든 식용동물의 근육, 간 및	식품 kg 당 300µg

13.	Dihydrostreptomycin	Dihydrostreptomycin 와 streptomycin 의 합	신장 우유 소, 돼지 및 가금류의 근육과 간 소, 돼지, 가금류의 신장 우유	식품 kg 당 30µg 식품 kg 당 500µg 식품 kg 당 1000µg 식품 kg 당 200µg
14.	Dimetridazole		돼지, 가금류의 근육, 간 및 신장	식품 kg 당 5µg
15.	Doxycycline		소, 돼지, 가금류의 근육 소, 돼지, 가금류의 간 소, 돼지, 가금류의 신장	식품 kg 당 100µg 식품 kg 당 300µg 식품 kg 당 600µg
16.	Enrofloxacin	Enrofloxacin 과 Ciprofloxacin 의 합	소, 돼지, 가금류의 근육 소의 간 돼지와 가금류의 간 소의 신장 돼지와 가금류의 신장 우유	식품 kg 당 100µg 식품 kg 당 300µg 식품 kg 당 200µg 식품 kg 당 200µg 식품 kg 당 300µg 식품 kg 당 100µg
17.	Erucic acid	cis-docos-13-enoic acid 지방산	기름,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이 첨가된 모든 식품	중량기준, 식품 내 모든 기름과 지방 속 지방산 함량의 5%
18.	Erythromycin		기름, 지방 또는 두 물질의 혼합물 소, 돼지, 가금류의 근육, 간 및 신장 우유	중량기준, 지방산 함량의 5% 식품 kg 당 400µg 식품 kg 당 40µg
19.	Flumequine		소, 돼지, 가금류의 근육과 간 소, 돼지, 가금류의 신장	식품 kg 당 500µg 식품 kg 당 3000µg
20.	Furaltadone		돼지, 가금류의 근육	식품 kg 당 0µg
21.	Furazolidone		소, 돼지, 가금류의 근육, 간 및 신장	식품 kg 당 0µg
22.	Gentamicin		소, 돼지, 가금류의 근육 소, 돼지의 간 소, 돼지의 신장 가금류의 간과 신장 우유	식품 kg 당 100µg 식품 kg 당 2000µg 식품 kg 당 5000µg 식품 kg 당 100µg 식품 kg 당 200µg
23.	Ivermectin	22, 23-Dihydroavermectin B1a(H2B1a)	소의 간	식품 kg 당 100µg
24.	Josamycin		돼지의 간 가금류의 근육과 간	식품 kg 당 15µg 식품 kg 당 200µg

25.	Kitasamycin		가금류의 신장	식품 kg 당 400µg
26.	Lincomycin		돼지, 가금류의 근육, 간 및 신장	식품 kg 당 200µg
			소, 돼지, 가금류의 근육	식품 kg 당 100µg
			소, 돼지 및 가금류의 간	식품 kg 당 500µg
			소, 돼지, 가금류의 신장	식품 kg 당 1500µg
26A.	Malachite green	Malachite green 과 Leucomalachite green 의 합	우유	식품 kg 당 150µg
			모든식품(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파충류 및 살아있는 가금류 포함)	식품 kg 당 0µg(2005 년 제 137 호 법률공고)
26B.	Melamine		우유	식품 kg 당 1mg
			36 개월 미만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식품 kg 당 1mg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식품 kg 당 1mg
			기타 모든 식품	식품 kg 당 2.5mg (2008 년 제 215 호 법률공고)
27.	Metronidazole		돼지, 가금류의 근육, 간 및 신장	식품 kg 당 0µg
28.	Neomycin		소, 돼지, 가금류의 근육과 간	식품 kg 당 500µg
			소, 돼지, 가금류의 신장	식품 kg 당 10000µg
			우유	식품 kg 당 500µg
29.	Oxolinic acid		소, 돼지, 가금류의 근육	식품 kg 당 100µg
			소, 돼지, 가금류의 간과 신장	식품 kg 당 150µg
30.	Oxytetracycline	사용성분과 그 4-epimer(이성질체)의 합	모든 식용동물의 근육	식품 kg 당 100µg
			모든 식용동물의 간	식품 kg 당 300µg
			모든 식용동물의 신장	식품 kg 당 600µg
			우유	식품 kg 당 100µg
31.	Sarafloxacin		가금류의 근육	식품 kg 당 10µg
			가금류의 간과 신장	식품 kg 당 80µg
32.	Spectinomycin		소, 돼지, 가금류의 근육	식품 kg 당 500µg
			소, 돼지, 가금류의 간	식품 kg 당 2000µg
			소, 돼지, 가금류의 신장	식품 kg 당 5000µg
			우유	식품 kg 당 200µg
33.	Streptomycin	Dihydrostreptomycin 와 streptomycin 의 합	소, 돼지, 가금류의 근육과 간	식품 kg 당 500µg

			소, 돼지, 가금류의 신장	식품 kg 당 1000μg
			우유	식품 kg 당 200μg
34.	Sulfonamides	Sulfonamide 그룹에 속하는 모든 물질의 합	모든 식용동물의 근육, 간 및 신장	식품 kg 당 100μg
			우유	식품 kg 당 100μg
35.	Tetracycline	사용성분과 그 4-epimer(이성질체)의 합	모든 식용동물의 근육	식품 kg 당 100μg
			모든 식용동물의 간	식품 kg 당 300μg
			모든 식용동물의 신장	식품 kg 당 600μg
			우유	식품 kg 당 100μg
36.	Tiamulin	8-alpha-hydromutilin 으로 가수분해 될 수 있는 대사물질의 합	돼지, 가금류의 근육	식품 kg 당 100μg
			돼지의 간	식품 kg 당 500μg
			가금류의 간	식품 kg 당 1000μg
37.	Trimethoprim		소, 돼지, 가금류의 근육, 간 및 신장	식품 kg 당 50μg
			우유	식품 kg 당 50μg
38.	Tylosin		소, 돼지, 가금류의 근육, 간 및 신장	식품 kg 당 200μg
			우유	식품 kg 당 50μg
39.	Virginiamycin		돼지의 근육	식품 kg 당 100μg
			돼지의 간	식품 kg 당 300μg
			돼지의 신장	식품 kg 당 400μg

(부표 1 은 2001 년 제 148 호 법률공고에 의해 대체)

부표 :	2	금지 물질	E.R. 2 of 2012	02/08/2012
------	---	-------	----------------	------------

[제 3A 조]

1. 염과 에스테르를 포함한 Dienoestro I((E,E)-4,4'-(diethylideneethylene) diphenol)
2. 염과 에스테르를 포함한 Diethylstilboestrol ((E)-α β -diethylstilbene-4,4'-diol)
3. 염과 에스테르를 포함한 Hexoestrol (meso-4,4'-(1,2-diethylethylene) diphenol)
4. Avoparcin. (2001년 제148호 법률공고)
5. Clenbuterol. (2001년 제148호 법률공고)
6. Chloramphenicol. (2001년 제148호 법률공고)
7. Salbutamol. (2001년 제148호 법률공고)

(1986 년 제 173 호 법률공고)

6 식품 이물(중금속 함량) 규정

장 :	132V	식품 이물 (중금속 함량) 규정	헌보 번호	버전 날짜
		효력부여 절		30/06/1997

(제 132 장 제 55(1)절)

[1983 년 5 월 27 일]

(본문 1983 년 제 173 호 법률공고)

조:	1	인용		30/06/1997
----	---	----	--	------------

본 규례는 식품 이물 (중금속 함량) 규정으로 인용될 수 있다.

조:	2	해석	29 of 2000	26/05/2000
----	---	----	------------	------------

본 규정에서,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금속”(metal) 금속의 화합물을 포함한다.

“항공운송화물”(air transit cargo)은 항공기로 수입 및 수출 위탁되는 모든 품목을 의미한다. (2000 년 제 29 호 제 5 조)

“항공환적화물”(air transhipment cargo) 은 수출입법규(제 60 장) 제 2 조에서 지정된 의미를 가진다. (2000 년 제 29 호 제 5 조)

“판매”(sell)란 판매를 위한 계약, 노출 또는 판매 목적의 보관이 포함된다.

“수송 물품”(article in transit)은 수출입법규(제 60 장) 제 2 조에서 지정된 의미를 가진다. (2000 년 제 29 호 제 5 조)

“홍콩국제공항 화물환적구역”(cargo transhipment area of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은 수출입법규(제 60 장) 제 2 조에서 지정된 의미를 가진다. (2000 년 제 29 호 제 5 조)

(1985 년 제 67 호 법률공고)

조:	3	금속이 함유된(자연 상태에서 특정 한도까지 존재하는 금속 제외) 식품 판매 금지 등		30/06/1997
----	---	--	--	------------

(1) 누구도 아래와 같은 식품은 식용을 위해 수입, 위탁, 납품, 제조 혹은 판매할 수 없다—

- (a) 부표 1 내 B 단에 나열된 식품유형에 부표 1 내 A 단 내에 상응하는 금속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자연상태에서 식품에 함유되고, 그 함량이 부표 C 단에서 제시한 농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외, 또는
- (b) 부표 2 내 B 단에 나열된 식품유형에 부표 A 단에 상응하는 금속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부표 C 단에서 제시한 농도를 초과한 것; 또는
- (c) 건강을 위협하거나 훼손할 만큼 금속이 함유된 식품.

(2) 제 (1)(C)항을 실행하기 위해, 식품 속 금속의 함량이 건강을 위협하거나 훼손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식품을 소비한 사람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양으로 해당 식품을 섭취하는 사람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누적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조:	3A	항공 국경 통과 혹은 항공 환적화물의 적용	29 of 2000	26/05/2000
----	----	-------------------------	------------	------------

- (1) 제 3 조에서 서술한 식품이 항공운송화물 혹은 항공환적화물일 경우, 해당 조항은 이 식품 수입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식품이 홍콩으로 반출된 기간 공항 화물 환적구역을 벗어난 경우, 이 조항을 시행한다—
- (a) 해당 식품이 해당 구역을 벗어났을 때 수입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 (b) 해당 식품을 항공운송화물 혹은 항공환적화물로 홍콩에 들어왔거나 해당 식품을 이렇게 홍콩에 가져온 사람은 식품이 해당 구역을 벗어났을 때 해당 식품을 수입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a) 혹은 (b)에서 지정한 범위를 제외하고 제 3 조는 본 조항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효력을 가지게 된다.
- (2) 누군가 제 5 조에서 규정한 범죄 행위를 하였다고 고발 기소한 법률절차에서 만약 —
- (a) 해당 법률절차가 제 3 조에서 서술한 수입과 관련되고 항공운송화물 혹은 항공환적화물인 식품일 때,
 - (b) 기소자는 해당 식품이 홍콩으로 반출된 기간 공항 화물 환적구역을 벗어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당사자가 이미 해당 식품이 이 구역을 떠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정을 채택하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이것으로 면책변호가 될 수 있다.
- (3) 어떠한 법률절차에서 제 (2)항에서 규정한 면책변호 관련 사항이란 해당 범죄 행위의 발생이—
- (a) 제삼자의 소행 혹은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 (b) 제삼자가 제공한 데이터에 의존해 발생한 것일 때,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해당 면책변호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이 해당 법률절차 10 일 전 혹은 그 이전에 청문해 기소자에게 서면 통보를 전달했을 때, 피고인이 이 통보를 전달해 알게 된—
 - (i) 제삼자의 모든 상세정보 및
 - (ii) 해당 소행, 과실 혹은 자료의 모든 상세정보는 예외에 속한다.
- (4) 누군가 제 (2)항에서 제정한 면책변호를 인용할 때, 근거가 되는 이유가 제삼자가 제공한 데이터에 의존한 것일 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특히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후 해당 자료 의존이 정말 합리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면책변호를 인용할 수 없다—
- (a) 해당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채택한 절차가 데이터 확인을 위해 마땅히 채택해야 할 절차이다. 그리고
 - (b) 그가 해당 자료를 신뢰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2000 년 제 29 호 제 5 조)

조:	4	부표의 수정	L.N. 320 of	01/01/2000
----	---	--------	-------------	------------

식품환경위생처 처장은 헌보에 게재된 공지를 통해 부표 1 및 2 의 C 단에서 명시된 각종 농도를 수정할 수 있다.

(1985 년 제 67 호 법률공고 ; 1990 년 제 85 호 법률공고 ; 1999 년 제 78 호 제 7 조)

조:	5	범죄 행위 및 벌칙		30/06/1997
----	---	------------	--	------------

제 3 조의 조문을 위반할 경우 범죄 행위에 속하며, 5 등급 벌금 및 6 개월 금고에 처할 수 있다.
(1987 년 제 329 호 법률공고 ; 1996 년 제 177 호 법률공고)

조:	6	범죄 행위에 법률절차 제기 시 사용 가능한 명의	L.N. 320 of	01/01/2000
----	---	----------------------------	-------------	------------

형사 범죄 고발 기소와 관련한 기타 성문법규의 조문을 침해하지 않고, 법무부 국장의 형사 범죄 고발 기소 관련 권력을 침해하지 않는 원칙에서 본 규례의 모든 조문에서 제정한 범죄 행위에 대한 고발 기소는 모두 식품환경위생처 처장의 명의로 제기된다.

(1997 년 제 362 호 법률공고 ; 1999 년 제 78 호 제 7 조)

부표 :	1	특정식품에 자연적으로 함유할 수 있는 금속의 최대 허용농도		30/06/1997
------	---	----------------------------------	--	------------

[제 3 조]

A 금속	B 식품유형	C 최대 허용농도 (ppm)
비소 (As ₂ O ₃)	고체식품(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6
	고체식품(조개류 및 조개류가공식품)	10

부표 :	2	특정식품에 함유할 수 있는 중금속의 최대 허용농도		30/06/1997
------	---	-----------------------------	--	------------

[제 3 조]

A (중)금	B 식품유형	C 최대 허용농도 (ppm)
안티몬 (Sb)	곡물 및 채소	1
	생선, 게살, 굴, 새우	1
	육류 및 가금육류	1
비소 (As ₂ O ₃)	아래에 나열되지 않은 고체식품— (i)생선 및 수산물가공식품 ; 및 (ii) 패류 및 패류가공식품	1.4
	모든 액상 식품	0.14
카드뮴 (Cd)	곡물 및 채소	0.1
	생선, 게살, 굴, 새우	2
	육류 및 가금육류	0.2

크롬 (Cr)	곡물 및 채소	1
	생선, 게살, 굴, 새우	1
	육류 및 가금육류	1
납 (Pb)	모든 고체 식품	6
	모든 액상 식품	1
수은 (Hg)	모든 고체 식품	0.5
	모든 액상 식품	0.5
주석 (Sn)	모든 고체 식품	230
	모든 액상 식품	230

부록II

홍콩 규정 원본

章：	132BD	《食物內防腐劑規例》	憲報編號	版本日期
----	-------	------------	------	------

		賦權條文		30/06/1997
--	--	------	--	------------

(第132章第55及143條)

[1973年2月2日]

(本為1973年第20號法律公告)

條：	1	(由2008年第85號法律公告廢除)	L.N. 85 of 2008	01/07/2008
----	---	--------------------	-----------------	------------

條：	2	釋義	L.N. 85 of 2008	01/07/2008
----	---	----	-----------------	------------

(1) 在本規例中，除文意另有所指外—

“合成食物”(compounded food) 指含有2種或多於2種配料的食物；

“有關食物”(relevant food) 就附表所列食物分類而言，指構成或屬於該附表所列食物分類的食物；(2008年第85號法律公告)

“抗氧化劑”(antioxidant) 指保護食物以避免因氧化作用而致變壞(包括脂肪酸敗及變色)的任何物質，但不包括—

- (a) 卵磷脂；
- (b) 抗壞血酸，或其鹽類或酯類；
- (c) 生育酚；
- (d) 異抗壞血酸、檸檬酸、酒石酸、磷酸、乳酸；或任何該等酸類的鈣鹽、鉀鹽或鈉鹽；
- (e) 葡萄糖酸的鈣鹽、鉀鹽或鈉鹽；
- (f) 醋酸和脂肪酸甘油酯、乳酸和脂肪酸甘油酯，或檸檬酸和脂肪酸甘油酯；或
- (g) 來自黑麴霉變種的葡萄糖氧化酶；(2008年第85號法律公告)

“防腐劑”(preservative) 指任何能抑制、減慢或遏止食物的發酵、發酸或其他變壞過程或能掩蓋食物腐爛徵狀的物質，但不包括—

- (a) (由2008年第85號法律公告廢除)
- (b) 任何准許染色料；
- (c) 食鹽(氯化鈉)；
- (d) 卵磷脂、糖或生育酚；
- (e) 煙酸或其酰胺；
- (f) 醋或醋酸、乳酸、抗壞血酸、檸檬酸、蘋果酸、磷酸、多磷酸或酒石酸或本段所指明的任何酸類的鈣鹽、鉀鹽或鈉鹽；
- (g) 甘油、酒精或適合飲用的烈酒、異丙醇、丙二醇、一醋精、二醋精或三醋精；
- (h) 草藥或蛇麻草浸膏；
- (i) 用作調味的香料或香精油；
- (j) 透過名為燻製的加工處理而添加於食物內的物質；
- (k) 將食物包裝在密封容器內時所使用的二氧化碳、氮或氫；
- (l) 用於製造已攪忌廉的一氧化二氮；或(2008年第85號法律公告)
- (m) 來自黑麴霉變種的葡萄糖氧化酶；(2008年第85號法律公告)

“附表所列食物分類”(scheduled food category) 指附表1第1欄所指明的食物分類或細分類；

- (2008年第85號法律公告)
- “食物添加劑”(food additive) 指防腐劑或抗氧化劑； (2008年第85號法律公告)
- “食品法典委員會”(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指世界衛生組織和糧食及農業組織為制訂食物標準、指引及相關文件而於1963年設立的團體； (2008年第85號法律公告)
- “航空過境貨物”(air transit cargo) 指在進口及托運出口時均是以飛機運載的過境物品； (2000年第29號第5條)
- “航空轉運貨物”(air transshipment cargo) 具有《進出口條例》(第60章)第2條給予該詞的涵義； (2000年第29號第5條)
- “准許抗氧化劑”(permitted antioxidant) 指附表1第2欄所指明的主要發揮抗氧化劑作用的物質； (2008年第85號法律公告)
- “准許防腐劑”(permitted preservative) 指附表1第2欄所指明的主要發揮防腐劑作用的物質； (2008年第85號法律公告)
- “准許染色料”(permitted colouring matter) 指《食物內染色料規例》(第132章，附屬法例H)所准許使用的任何染色料；
- “准許食物添加劑”(permitted food additive) 指附表1第2欄所指明的食物添加劑； (2008年第85號法律公告)
- “配製”(preparation) 就食物而言，包括製造及任何形式的處理方法；而“配製以供出售”(preparation for sale) 則包括包裝；
- “容器”(container) 包括任何形式的食物包裝，不論是將食物全部或部分加封或將食物附於其他物品上，作為單件出售，尤其包括包裹物或箍帶在內；
- “國際編碼系統”(INS) 指食品法典委員會採用作識別在任何預先包裝食物的配料表中的食物添加劑的名為“食物添加劑國際編碼系統”的系統； (2008年第85號法律公告)
- “售賣”(sell) 包括要約出售、為出售而展示或為出售而管有；
- “進口商”(importer) 包括管有或有關保管或控制任何從香港以外地方進口的食品的人，不論該人為擁有人、收貨人、代理人或經紀； (1986年第10號第32(2)條)
- “替代物”(alternative form) 就附表1A第1欄所列的准許食物添加劑而言，指在該附表第2欄中就該食物添加劑指明的物質； (2008年第85號法律公告)
- “貯存”(storage) 就食物而言，指貯存在任何農場、船塢、車輛、倉庫、燻蒸室、凍房或任何處於香港水域內的駁船或船舶；
- “最高准許含量”(maximum permitted level) 就附表1第2欄所列的准許食物添加劑而言，指在該附表第3欄中就該食物添加劑指明的分量； (2008年第85號法律公告)
- “預先包裝”(pre-packed) 指預先裝放於容器之內或之上，以供零售；在任何處所內有任何類別的食物是以上述方式裝放，或存放有或貯存有以上述方式裝放的任何種類的食物以供出售，則在該處所內發現的裝放於容器之內或之上的該類食物，除非相反證明成立，否則須當作已預先包裝；
- “飲食供應業”(catering business) 包括旅店、酒館、酒店、食肆、咖啡室、茶室、小食部、咖啡檔、任何公開營業的供應小食地方、會社、旅館、公寓、小食承包商、學校膳食中心、職員餐廳或食堂的業務或經營；
- “零售”(retail sale)、“以零售方式出售”(sale by retail) 均指向非為轉售而進行購買的人所作的售賣，但不包括向飲食供應商為其飲食供應業用途而作的售賣，或向製造商為其製造業用途而作的售賣；
- “過境物品”(article in transit) 具有《進出口條例》(第60章)第2條給予該詞的涵義； (2000年第29號第5條)
- “機場貨物轉運區”(cargo transshipment area of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具有《進

出口條例》(第60章)第2條給予該詞的涵義； (2000年第29號第5條)
“優良製造規範”(GMP) 包括符合下列各項規定的製造規範—

- (a) 添加於食物內的食物添加劑分量，以發揮添加該添加劑的預期作用所需的最低分量为限；
- (b) 因用於製造、加工處理或包裝某食物而成為該食物的成分的食物添加劑，如並非擬對該食物本身發揮任何物理或其他技術作用而使用，其分量被減低至合理地可能的程度；及
- (c) 有關食物添加劑的配製和處理方式，與配製和處理食物配料的方式一樣； (2008年第85號法律公告)

“變壞”(deterioration) 就食物而言，指因細菌、酵母或霉菌的作用而變壞；

“罐頭食物”(canned food) 指密封容器內的食物，而密封容器是已經加熱處理，足以消滅食物或容器內的任何肉毒桿菌，或密封容器的PH是低於4.5的。

(2008年第85號法律公告)

(2) 就本規例而言，百分率及百萬分率均按重量計算。

(3) (由2008年第85號法律公告廢除)

條：	2A	替代物的使用	L.N. 85 of 2008	01/07/2008
----	----	--------	-----------------	------------

(1) 只在下列情況下，可使用替代物代替在附表1A第1欄中就該替代物列明的准許食物添加劑—

- (a) 替代物的使用，可高達為有關的准許食物添加劑指明的最高准許含量，而除(b)段另有規定外，替代物須按該准許食物添加劑的形式計算；
- (b) 乙二胺四乙酸二鈉鈣，即乙二胺四乙酸二鈉的替代物，必須按無水乙二胺四乙酸二鈉鈣的形式計算。

(2) 在本規例中，凡提述准許食物添加劑，均須按照第(1)款解釋。

(2008年第85號法律公告)

條：	3	限制含食物添加劑食物的售賣等	L.N. 85 of 2008	01/07/2008
----	---	----------------	-----------------	------------

(1) 除本條另有規定外，任何人不得輸入、為供售賣而製造或售賣任何含有食物添加劑的食品。

(2) 任何有關食物可含有就其附表所列食物分類指明的准許食物添加劑，但分量不得超過最高准許含量。

(3) 除第(4)款另有規定外，任何有關食物或擬用作配製有關食物的任何食物—

- (a) 如在非零售性質的售賣中輸入，則該食物在輸入時，可含有任何分量的為其附表所列食物分類指明的准許防腐劑；或
- (b) 如依據非零售性質的售賣而託付或交付，則該食物在託付或交付時，可含有任何分量的為其附表所列食物分類指明的准許防腐劑。

(4) 第(3)款—

- (a) 只適用於賣方在輸入食物時或輸入食物前已給予進口商一份符合附表2所指明的格式的文件，或在售賣食物時或售賣食物前已給予買方一份符合附表2所指明的格式的文件，準確地述明該食物所含的防腐劑的名稱說明及最高含量；及
- (b) 不適用於經預先包裝的食物，或含有二氧化硫及擬作製造用途的水果或果肉。

(5) 凡就某附表所列食物分類指明2種或多於2種准許食物添加劑，則在下列情況下，屬該食物分類的任何有關食物可含有該等食物添加劑的混合物—

- (a) 每項該等食物添加劑均不超過有關的最高准許含量；或

- (b) 如附表1第4欄與該附表所列食物分類相對之處所提述的附註指明不同條件，則符合該條件而非(a)段。
- (6) 任何食物可含有分量不超過百萬分之5的來自下列物件的甲醛—
- (a) 含有以甲醛為基的樹脂的防濕包裹物；或
- (b) 採用甲醛為凝結成分的樹脂製造的塑膠食物容器或器皿。
- (7) 香蕉皮可含有制霉菌素，但香蕉肉不可。
- (8) 任何罐頭食物可含有尼生素，而任何食物則可含有因在其配製過程中使用含有尼生素的罐頭食物而導致加入的尼生素。
- (9) 如在配製任何合成食物的過程中因使用任何有關食物(但擬作製造用途的水果或果肉，或擬在聖餐時使用的任何未經發酵葡萄汁產品則除外)而導致加入任何准許食物添加劑，而該准許食物添加劑符合以下情況，則該合成食物可含有該准許食物添加劑—
- (a) 該准許食物添加劑是附表1為用於製造該合成食物的有關食物所屬的附表所列食物分類而指明的；及
- (b) 就所使用的有關食物的分量而言，存在於該合成食物中的准許食物添加劑的分量不超過其最高准許含量。
- (10) 第(1)款不適用於天然含有任何食物添加劑的食品。

(2008年第85號法律公告)

條：	4	含抗氧化劑食物不得推薦給嬰兒及幼童食用		30/06/1997
----	---	---------------------	--	------------

任何人不得—

- (a) 連同其所售出的食物附送或在出售食物時陳列任何標籤，不論該標籤是否附於或印於該食物的容器上；或
- (b) 為任何食物發布宣傳品或參與任何食物的發布宣傳品事宜；或
- (c) 在出售食物時或在與出售食物有關的事宜上使用名稱說明，

而該標籤、宣傳品或名稱說明附有或包括任何字樣或名稱說明，直接陳述或暗示該食物主要供嬰兒及幼童食用(如該標籤、宣傳品或名稱說明所關乎的食物裏面或表面含有添加的抗氧化劑)。

[比照 S.I. 1966/1500 r. 7 U.K.]

條：	5	防腐劑及抗氧化劑的售賣、標籤及宣傳	L.N. 85 of 2008	01/07/2008
----	---	-------------------	-----------------	------------

(1) 如貼放在盛載任何物質的容器上的標記或標籤，推薦該物質為可在食物中用作防腐劑或抗氧化劑，則除非該容器按照附表2的條文附有標籤，否則任何人不得售賣該物質。

(2) 凡任何容器按照第(1)款的條文須附有上述標籤，而該容器是以紙張或其他包裹物包裹，以致其所附的標籤不能清楚閱讀，則在為以零售方式出售而展示或要約以零售方式出售時，該容器的最外一層包裹物須附有標籤，猶如其為第(1)款適用的容器或盛器一樣。

(3) 任何人不得售賣或為出售而宣傳以下食物添加劑，以供配製食物時使用— (2008年第85號法律公告)

- (a) 任何並非准許食物添加劑的食物添加劑； (2008年第85號法律公告)
- (b) (由2008年第85號法律公告廢除)
- (c) 任何准許食物添加劑，而該人售賣或為出售而宣傳該食物添加劑的方式相當可能引致該食物添加劑在違反本規例的情況下被人使用。

[比照 S.I. 1962/1532 r. 6 U.K.]

條：	6	含有防腐劑或抗氧化劑的食物的標籤	L.N. 85 of 2008	01/07/2008
----	---	------------------	-----------------	------------

(1) 如附表2第1條所述的任何有關食物含有附表所列食物分類中就該食物指明的准許防腐劑或准許抗氧化劑，但並非盛載於按照附表2的條文附有標籤的容器內，則除本條條文另有規定外，任何人不得售賣、託付或交付該等食物；但就零售方面而言，如已在顯眼地方展示一份意思說明該食物含有防腐劑或抗氧化劑的中英文告示，使顧客易於閱讀，則不在此限。

(2) 凡任何容器按照第(1)款須附有上述標籤，而該容器是以紙張或其他包裹物包裹，以致其所附的標籤不能清楚閱讀，則在為以零售方式出售而展示或要約以零售方式出售時，該容器的最外一層包裹物須附有標籤，猶如其為該款所適用的容器一樣。

(3) 如有關食物是出售以供人在賣方的處所內或在任何攤檔內或流動小食車輛旁即時進食的，則本條不適用於有關的出售事宜。

(2008年第85號法律公告)
[比照 S.I. 1962/1532 r. 5 U.K.]

條：	7	本規例不適用於轉口的食物等		30/06/1997
----	---	---------------	--	------------

在本規例中，有關禁止食品含有防腐劑或抗氧化劑以及規定某些食品及作為防腐劑或抗氧化劑出售的物品須加上標籤的條文，對於輸入香港作轉口用途或在香港製造純作出口用途的食品或物品，並不適用。

(1986年第10號第32(2)條)

條：	7A	對航空過境或航空轉運貨物的適用	29 of 2000	26/05/2000
----	----	-----------------	------------	------------

(1) 如第3條所述的食品屬航空過境貨物或航空轉運貨物，則該條不適用於該食品的輸入；但如該食品自其被帶進至運出香港的期間內被移離機場貨物轉運區，則為施行該條—

(a) 該食品須當作是在被移離該區時輸入的；及

(b) 將該食品作為航空過境貨物或航空轉運貨物而帶進香港或致使該食物被如此帶進香港的人，須當作在該食品被移離該區時是輸入該食品的人，

而除非是在(a)或(b)段所指的範圍內，第3條須在猶如本款不曾制定的情況下具有效力。

(2) 在檢控某人犯第9條所訂的罪行的法律程序中，如一

(a) 該法律程序關乎輸入第3條所述並屬航空過境貨物或航空轉運貨物的食品；及

(b) 控方需證明該食品自其被帶進至運出香港的期間內被移離機場貨物轉運區，

則該人如證明他已採取所有合理步驟和已盡了合理的努力以避免該食品被如此移離該區，則可以此作為免責辯護。

(3) 在任何法律程序中，凡第(2)款所訂的免責辯護涉及一項指稱，謂該罪行的發生是—

(a) 另一人的作為或過失所致；或

(b) 倚賴另一人所提供的資料所致，

則被告人如沒有法院的許可，不得引用該免責辯護，但如被告人於聆訊該法律程序前10天或之前，已向檢控人送達書面通知，提供被告人在送達該通知時所知悉的關於—

(i) 該另一人的一切詳情；及

(ii) 該作為、過失或資料的一切詳情，

則屬例外。

(4) 任何人如擬引用第(2)款所訂的免責辯護，而所據的理由是他倚賴另一人所提供的資料，則除非他證明有鑑於整體情況，尤其是在顧及以下事宜後，倚賴該資料實屬合理，否則不得引用該免責辯護—

- (a) 他為核實該資料而已採取的步驟，及為核實該資料而理應已採取的步驟；及
(b) 他是否有任何理由不相信該資料。

(2000年第29號第5條)

條：	8	免責辯護	L.N. 85 of 2008	01/07/2008
----	---	------	-----------------	------------

(1) 在就本規例所訂的與發布宣傳品有關的罪行而提起的法律程序中，被告人如證明其本人的業務是發布或安排發布宣傳品，而有關的宣傳品是其本人在通常業務運作中收受以作發布的，即為免責辯護。 [比照 S.I. 1962/1532 r. 8(4) U.K.]

(2) 在就本規例所訂的與發布宣傳品有關的罪行而對製造商或進口商提起的法律程序中，被告人須負責證明其本人並無發布有關宣傳品或參與發布有關宣傳品。 [比照 S.I. 1966/1500 r. 10(2) U.K.]

(3) 在就第3條所訂罪行而提起的法律程序中，被告人如證明任何食物之所以含有並非准許防腐劑的防腐劑或任何並非有關食物的食物之所以含有准許防腐劑，是純粹由於在貯存食物時使用該防腐劑— (2008年第85號法律公告)

(a) 作為殺蟎劑、殺菌劑、殺蟲劑或殺鼠劑，而在上述每種情況下，該防腐劑均用以保護在貯存期間的食物；或

(b) 作為發芽阻化劑或抑制劑，但貯存食物的地方並非包裝食物以供零售的地方，即為免責辯護。 [比照 S.I. 1962/1532 r. 8(5) U.K.]

條：	9	罪行及罰則		30/06/1997
----	---	-------	--	------------

任何人違反第3、4、5或6條的任何條文，即屬犯罪，一經循簡易程序定罪，可處第5級罰款及監禁6個月。

(1984年第114號法律公告；1987年第334號法律公告；1996年第177號法律公告)

條：	10	就罪行提出法律程序時可用的名義	L.N. 320 of 1999	01/01/2000
----	----	-----------------	------------------	------------

在不損害與檢控刑事罪行有關的其他成文法則的條文，以及在不損害律政司司長關於檢控刑事罪行的權力的原則下，就本規例任何條文所訂罪行而作出的檢控，均可以食物環境衛生署署長的名義提出。

(1997年第362號法律公告；1999年第78號第7條)

條：	10A	過渡性條文：在過渡期內被廢除條文繼續適用	L.N. 85 of 2008	01/07/2008
----	-----	----------------------	-----------------	------------

(1) 在過渡期內，如任何人輸入、為供售賣而製造或售賣任何含有防腐劑或抗氧化劑(經修訂規例所界定者)的食品，而該項輸入、製造或售賣並不會違反舊有規例第3條的任何規定，則該人不屬違反第3條。

(2) 在過渡期內，如任何標籤、宣傳品或名稱說明所關乎的食物裏面或表面含有的抗氧化劑(經修訂規例所界定者)，並非舊有規例所指的抗氧化劑，則任何人均不屬違反第4條。

(3) 在過渡期內，如一

(a) 任何人售賣任何物質；而

(b) 該物質受推薦為可用作食物中的防腐劑或抗氧化劑(經修訂規例所界定者)，而該物質並非舊有規例所指的防腐劑或抗氧化劑，則該人沒有違反第5(1)條。

(4) 在過渡期內，如任何人以在配製食物時使用某防腐劑或抗氧化劑(經修訂規例所界定者)為

出發點，售賣或為售賣而宣傳該防腐劑或抗氧化劑，而該項售賣或宣傳並不會違反舊有規例第5(3)條，則該人不屬違反第5(3)條。

(5) 在過渡期內，如任何人售賣、託付或交付的任何食物含有舊有規例附表1所指明其獲准含有的添加防腐劑或抗氧化劑，而該人是按照舊有規例第6條售賣、託付或交付該食物，則該人並不屬違反第6條。

(6) 為免生疑問，現述明即使《2008年食物內防腐劑(修訂)規例》(2008年第85號法律公告)廢除或修訂舊有規例的某些條文，該等條文在施行本條所需的範圍內繼續適用。

(7) 為免生疑問，現述明本條(目的是為使舊有規例得以代替《2008年食物內防腐劑(修訂)規例》(2008年第85號法律公告)而繼續適用)不局限或損害《2008年食物內防腐劑(修訂)規例》(2008年第85號法律公告)的施行。

(8) 在本條中—

“經修訂規例”(Amended Regulation) 指經《2008年食物內防腐劑(修訂)規例》(2008年第85號法律公告)修訂的舊有規例；

“過渡期”(transitional period) 指由2008年7月1日起至2010年6月30日止的期間(包括首尾兩天)；

“舊有規例”(former Regulations) 指在緊接《2008年食物內防腐劑(修訂)規例》(2008年第85號法律公告)生效*之前有效的《食物內防腐劑規例》(第132章，附屬法例BD)。

(2008年第85號法律公告)

註：

* 生效日期：2008年7月1日。

條：	11	附表1的修訂	L.N. 85 of 2008	01/07/2008
----	----	--------	-----------------	------------

食物環境衛生署署長可藉憲報公告修訂附表1第3欄所指明的濃度。

(1984年第114號法律公告；1985年第67號法律公告；1990年第85號法律公告；1999年第78號第7條；2008年第85號法律公告)

附表：	1	可含食物添加劑的食物及在每個情況下食物添加劑的種類及分量	L.N. 85 of 2008	01/07/2008
-----	---	------------------------------	-----------------	------------

[第2、3及11條
及附表1A]

第1欄		第2欄		第3欄	第4欄
編號	食物分類或細分類	准許食物添加劑		最高准許含量 (百萬分率，除非另有指明)	附註
		國際編碼系統 編號	名稱說明		
1	乳製品及類似品，不包括嬰兒配方粉及幼兒配方粉及屬食物分類2及其細分類的製品				
1.1	加入飲料的奶精	319	特丁基對苯二酚	100	註1及2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1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100	註1及2
1.2	凝塊忌廉	234	尼生素	優良製造規範	
1.3	奶粉及忌廉粉(原味)，包括酪蛋白及酪蛋白酸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1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1.3.1	供自動售賣機銷售的奶粉	310	丙基酸鹽	200	註1及2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1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1.4	奶粉及忌廉粉的類似品	319	特丁基對苯二酚	100	註1及2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1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100	註1及2
1.5	乳酪及類似品				
1.5.1	未成熟乳酪(例如茅屋乳酪、忌廉乳酪及水牛乳酪)	200	山梨酸	1000	
		234	尼生素	12.5	
		235	游霉素	2毫克／平方分米	註3
		250	亞硝酸鈉	10	註8
		251	硝酸鈉	50	註8
		280	丙酸	優良製造規範	
1.5.2	成熟乳酪(例如卡門貝爾乳酪、切達乳酪、艾登乳酪及豪達乳酪)	200	山梨酸	3000	
		234	尼生素	12.5	
		235	游霉素	2毫克／平方分米	註3
		250	亞硝酸鈉	10	註8
		251	硝酸鈉	50	註8
		280	丙酸	3000	
		1105	溶菌酶	優良製造規範	
1.5.2.1	乳酪粉(供再造用(例如用以再造乳酪醬))	200	山梨酸	3000	
		234	尼生素	12.5	
		235	游霉素	2毫克／平方分米	註3
		250	亞硝酸鈉	10	註8
		251	硝酸鈉	50	註8
		280	丙酸	3000	
		1105	溶菌酶	優良製造規範	
15.2.2	波蘿伏洛乳酪	200	山梨酸	3000	
		234	尼生素	12.5	

		235	游霉素	2毫克／ 平方分米	註3
		239	六亞甲基四胺	25	註4
		250	亞硝酸鈉	10	註8
		251	硝酸鈉	50	註8
		280	丙酸	3000	
		1105	溶菌酶	優良製造規範	
1.5.3	乳清乳酪	200	山梨酸	1000	
		234	尼生素	12.5	
		235	游霉素	2毫克／ 平方分米	註3
		250	亞硝酸鈉	10	註8
		251	硝酸鈉	50	註8
		280	丙酸	3000	
1.5.4	加工乳酪	200	山梨酸	3000	註5
		234	尼生素	12.5	
		235	游霉素	2毫克／ 平方分米	註3
		250	亞硝酸鈉	10	註8
		251	硝酸鈉	50	註8
		280	丙酸	3000	註5
1.5.5	乳酪類似品，包括仿乳酪、仿乳酪混合物及仿乳酪粉	200	山梨酸	1000	
		235	游霉素	2毫克／ 平方分米	註3
		250	亞硝酸鈉	10	註8
		251	硝酸鈉	50	註8
1.5.6	乳清蛋白質乳酪(例如力可達乳酪)	200	山梨酸	3000	
		234	尼生素	12.5	
		235	游霉素	2毫克／ 平方分米	註3
		250	亞硝酸鈉	10	註8
		251	硝酸鈉	50	註8
		280	丙酸	3000	
1.6	以乳類為主的甜品(例如雪糕、布甸，及水果或調味酸乳酪)，不包括原味酸乳酪	210	苯甲酸	300	
		310	丙基梛酸鹽	90	註1及6
1.6.1	以水果為主的奶及忌廉甜品	200	山梨酸	300	註22
		210	苯甲酸	300	註22
		220	二氧化硫	100	註10
		310	丙基梛酸鹽	90	註1及6
1.6.2	水果酸乳酪	200	山梨酸	300	註18
		210	苯甲酸	300	註18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120	註18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120	註18
		220	二氧化硫	60	註10
		310	丙基梛酸鹽	90	註1及6
2	脂肪及油，以及脂肪乳狀液				
2.1	基本不含水的脂肪及油				
2.1.1	無水奶油及酥油	310	丙基梛酸鹽	100	註1及7
		311	辛基梛酸鹽	100	註1及7
		312	十二(烷)基梛酸鹽	100	註1及7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175	註1及7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75	註1及7
2.1.2	植物油脂	310	丙基梛酸鹽	200	註1及2
		311	辛基梛酸鹽	100	註1及2
		312	十二(烷)基梛酸鹽	100	註1及2
		314	愈瘡樹脂	1000	
		319	特丁基對苯二酚	200	註1及2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384	檸檬酸異丙酯類	200	
		388	硫代二丙酸	200	
2.1.3	豬油、牛羊油脂、魚油及其他動物脂肪	310	丙基梛酸鹽	200	註1及2
		311	辛基梛酸鹽	100	註1及2
		312	十二(烷)基梛酸鹽	100	註1及2
		314	愈瘡樹脂	1000	
		319	特丁基對苯二酚	200	註1及2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384	檸檬酸異丙酯類	200	
		388	硫代二丙酸	200	
2.2	主要為油中水類別的脂肪乳狀液				

2.2.1	脂肪含量至少為80%的乳狀液				
2.2.1.1	人造牛油及類似製品	200	山梨酸	1000	註18
		210	苯甲酸	1000	註18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1000	註18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1000	註18
		310	丙基梛酸鹽	200	註1及2
		319	特丁基對苯二酚	200	註1及2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384	檸檬酸異丙酯類	200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75	註9
		388	硫代二丙酸	200	
2.2.1.2	供製造用的牛油	310	丙基梛酸鹽	80	註1及23
		311	辛基梛酸鹽	80	註1及23
		312	十二(烷)基梛酸鹽	80	註1及23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160	註1及23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160	註1及23
2.2.1.3	牛油與人造牛油混合物	310	丙基梛酸鹽	200	註1及2
		314	愈瘡樹脂	1000	
		319	特丁基對苯二酚	200	註1及2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2.2.2	脂肪含量少於80%的乳狀液，包括減脂牛油、減脂人造牛油及兩者的混合物	200	山梨酸	2000	註21
		210	苯甲酸	1000	註21
		310	丙基梛酸鹽	200	註1及2
		319	特丁基對苯二酚	200	註1及2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384	檸檬酸異丙酯類	100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100	註9
		388	硫代二丙酸	200	
2.3	主要為水中油類別的脂肪乳狀液，包括以脂肪乳狀液為主的混合及／或調味製品，不包括脂肪成分來自奶脂的製品及屬食物分類2.4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甜品製品	210	苯甲酸	1000	
		310	丙基梛酸鹽	200	註1及2
		319	特丁基對苯二酚	200	註1及2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2.4	以脂肪為主的甜品，不包括屬食物分類1.6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以乳類為主的甜品製品	210	苯甲酸	1000	
		310	丙基梛酸鹽	200	註1及2
		319	特丁基對苯二酚	200	註1及2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3	可供食用的冰品，包括以水為主的冷凍甜品、甜點及巧點(例如雪糕及雪葩)	319	特丁基對苯二酚	200	註1及2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100	註1及2
4	水果及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及蘆薈)、海藻，及果仁和種子				
4.1	面層經處理的新鮮水果	220	二氧化硫	50	註10
4.1.1	蘋果	220	二氧化硫	50	註10
		324	乙氧基奎	3	
4.1.2	梨		碳酸銅	3	註24
		220	二氧化硫	50	註10
		324	乙氧基奎	3	
4.1.3	柑橘屬水果	220	二氧化硫	50	註10
		230	二苯基	100	
		231	鄰苯基苯酚	12	
4.2	冷凍切片蘋果	220	二氧化硫	500	註10
4.3	水果乾	210	苯甲酸	800	
		220	二氧化硫	1000	註10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265	註9
4.3.1	無花果乾	200	山梨酸	500	註22
		210	苯甲酸	800	註22

		220	二氧化硫	1000	註10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265	註9
4.3.2	梅脯	200	山梨酸	1000	註22
		210	苯甲酸	800	註22
		220	二氧化硫	1000	註10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265	註9
4.3.3	杏脯	200	山梨酸	500	註22
		210	苯甲酸	800	註22
		220	二氧化硫	2000	註10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265	註9
4.3.4	葡萄乾	210	苯甲酸	800	
		220	二氧化硫	1500	註10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265	註9
4.3.5	椰子乾	210	苯甲酸	800	
		220	二氧化硫	50	註10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265	註9
4.4	以醋、油或鹽水醃漬的水果	200	山梨酸	1000	
		210	苯甲酸	1000	註20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250	註20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250	註20
		220	二氧化硫	100	註10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250	註9
4.5	罐頭或瓶裝(經巴士德消毒法消毒或加熱消毒)水果	210	苯甲酸	800	註20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800	註20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800	註20
		220	二氧化硫	350	註10
		512	氯化亞錫	20	註11
4.6	果醬、果凍、柑橘果醬	200	山梨酸	1000	註18
		210	苯甲酸	1000	註18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500	註18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500	註18

		220	二氧化硫	100	註10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130	註9
4.7	以水果為主的塗醬(例如蘋果醬、檸檬酪及酸辣調味果醬), 不包括屬食物分類4.6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製品	200	山梨酸	1000	註22
		210	苯甲酸	1000	註22
		220	二氧化硫	500	註10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100	註9
4.8	糖漬水果	200	山梨酸	1000	註18
		210	苯甲酸	1000	註18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1000	註18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1000	註18
		220	二氧化硫	100	註10
4.9	水果配製品, 包括果肉、果泥、果醬料、食物面層的水果配料、椰奶及椰漿	200	山梨酸	1000	註18
		210	苯甲酸	1000	註18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800	註18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800	註18
		220	二氧化硫	500	註10
4.10	以水果為主的甜品, 包括以水為主的果味甜品, 不包括屬食物分類7.2.1及7.2.2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含水果精製烘焙食品、屬食物分類3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可供食用的果味冰品, 及屬食物分類1.6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含水果冷凍乳類甜品	210	苯甲酸	1000	
		310	丙基倍酸鹽	90	註1及6
4.11	發酵水果製品	200	山梨酸	1000	
		210	苯甲酸	1000	註20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250	註20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250	註20
		220	二氧化硫	100	註10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250	註9
4.12	糕餅果餡，不包括屬食物分類4.9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果泥	200	山梨酸	450	註18
		210	苯甲酸	1000	註18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800	註18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800	註18
		220	二氧化硫	100	註10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650	註9
4.13	經烹煮的水果	210	苯甲酸	1000	註20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800	註20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800	註20
		220	二氧化硫	350	註10
4.14	去皮、切開或切絲的新鮮馬鈴薯及白色類蔬菜	220	二氧化硫	50	註10
4.15	冷凍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及蘆薈)、海藻，及果仁和種子				
4.15.1	冷凍炸馬鈴薯條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100	註9
4.15.2	冷凍牛油果	220	二氧化硫	300	註10
4.15.3	冷凍馬鈴薯及白色類蔬菜	220	二氧化硫	50	註10
4.16	脫水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及蘆薈)、海藻，及果仁和種子	210	苯甲酸	1000	
		220	二氧化硫	500	註10
4.16.1	脫水馬鈴薯	210	苯甲酸	1000	
		220	二氧化硫	500	註10
		310	丙基倍酸鹽	50	註1及2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4.16.2	乾豆	210	苯甲酸	1000	
		220	二氧化硫	500	註10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800	註9及27

4.16.3	即食脫水蔬菜	210	苯甲酸	1000	
		220	二氧化硫	500	註10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200	註9及27
4.16.4	乾葫蘆條	210	苯甲酸	1000	
		220	二氧化硫	5000	註10
4.17	以醋、油、鹽水或豉油醃漬的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及海藻, 不包括屬食物分類12.13和12.14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發酵大豆製品, 及屬食物分類4.21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發酵蔬菜	200	山梨酸	1000	註18
		210	苯甲酸	2000	註18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250	註18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250	註18
		220	二氧化硫	100	註10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250	註9
4.17.1	醃漬橄欖	200	山梨酸	500	註18
		210	苯甲酸	2000	註18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250	註18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250	註18
		220	二氧化硫	100	註10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250	註9
		579	葡萄糖酸亞鐵	150	註12
4.18	罐頭或瓶裝(經巴士德消毒法消毒或加熱消毒)或以殺菌軟袋包裝的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及海藻	220	二氧化硫	50	註10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365	註9
		512	氯化亞錫	25	註11
4.19	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 及蘆薈)、海藻, 及果仁和種子泥及塗醬(例如番茄泥、花生醬及腰果醬)	210	苯甲酸	1000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250	註9
4.19.1	經加工減低能量的製品	210	苯甲酸	1000	
		220	二氧化硫	500	註10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250	註9

			鈉		
4.19.2	番茄泥	210	苯甲酸	1000	註20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800	註20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800	註20
		220	二氧化硫	350	註10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250	註9
4.20	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及蘆薈)、海藻，及果仁和種子肉漿、糊及配製品(例如蔬菜甜品及蔬菜醬料，以及糖漬蔬菜)，不包括屬食物分類4.19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製品	210	苯甲酸	3000	
		220	二氧化硫	500	註10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80	註9
4.20.1	番茄肉漿及番茄糊	210	苯甲酸	3000	註20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800	註20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800	註20
		220	二氧化硫	500	註10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80	註9
4.20.2	加糖的果仁糊	200	山梨酸	1000	註22
		210	苯甲酸	3000	註22
		220	二氧化硫	500	註10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80	註9
4.20.3	辣根肉漿	210	苯甲酸	3000	註20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250	註20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250	註20
		220	二氧化硫	500	註10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80	註9
4.21	發酵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及蘆薈)及海	200	山梨酸	1000	註18
		210	苯甲酸	1000	註18
		214	對羥基苯甲酸乙	250	註18

	藻製品，不包括屬食物分類12.13及12.14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發酵大豆製品		酯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250	註18
		220	二氧化硫	500	註10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250	註9
4.22	已烹煮或煎炸的蔬菜(包括菇和真菌、根和塊根或莖、豆和豆莢，及蘆薈)及海藻	210	苯甲酸	1000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250	註9
4.22.1	已烹煮及預先包裝的甜菜根	210	苯甲酸	1000	註20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250	註20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250	註20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250	註9

5	甜點				
5.1	可可製品及朱古力製品，包括仿朱古力及朱古力代替品				
5.1.1	可可混合物(粉)及可可塊/油餅	310	丙基棓酸鹽	200	註1
5.1.2	可可混合物(糖漿)	210	苯甲酸	700	註20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700	註20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700	註20
		310	丙基棓酸鹽	200	註1
5.1.3	以可可為主的塗醬，包括餡料(例如可可脂)	210	苯甲酸	1500	
		310	丙基棓酸鹽	200	註1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50	註9
5.1.4	可可及朱古力製品，包括外加朱古力的果仁及水果	310	丙基棓酸鹽	200	註1
5.1.4.1	白朱古力	310	丙基棓酸鹽	200	註1及2
		319	特丁基對苯二酚	200	註1及2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5.1.4.2	外加朱古力的棉花糖	200	山梨酸	1000	
		310	丙基倍酸鹽	200	註1
5.1.5	仿朱古力製品、朱古力代替品	210	苯甲酸	1500	
		310	丙基倍酸鹽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5.2	甜點，包括硬糖、軟糖及鳥結糖，不包括屬食物分類5.1、5.3及5.4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製品	210	苯甲酸	1500	
		310	丙基倍酸鹽	200	註1及2
		319	特丁基對苯二酚	200	註1及2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5.2.1	杏仁糖膏	200	山梨酸	1000	註22
		210	苯甲酸	1500	註22
		310	丙基倍酸鹽	200	註1及2
		319	特丁基對苯二酚	200	註1及2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5.3	香口膠	210	苯甲酸	1500	
		310	丙基倍酸鹽	1000	註2
		314	愈瘡樹脂	1500	
		319	特丁基對苯二酚	400	註2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400	註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400	註2
5.4	裝飾材料(例如供精製烘焙食品用的裝飾材料)、食物面層配料(非水果類)及甜味醬料	200	山梨酸	1000	註22
		210	苯甲酸	1500	註22
		310	丙基倍酸鹽	200	註1及2
		319	特丁基對苯二酚	200	註1及2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6	穀類和以穀粒、根及塊根或莖、豆和豆莢製成的穀類製品，不包括屬食物分類7及其細分類的烘焙食品				

6.1	原粒穀物、碎穀物或穀物片，包括大麥、粟米、燕麥、大米、高粱、大豆及小麥	310	丙基倍酸鹽	100	註1
6.2	麵粉	220	二氧化硫	200	註10
6.3	澱粉	220	二氧化硫	50	註10
6.4	早餐穀類食品，包括燕麥片	310	丙基倍酸鹽	200	註1及2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100	註1及2
6.5	預煮的麵食製品及麵條，以及類似製品	210	苯甲酸	1000	
		220	二氧化硫	20	註10
		310	丙基倍酸鹽	100	註1及2
		319	特丁基對苯二酚	200	註1及2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6.5.1	即食麵	200	山梨酸	2000	
		210	苯甲酸	1000	
		220	二氧化硫	20	註10
		310	丙基倍酸鹽	200	註1及2
		319	特丁基對苯二酚	200	註1及2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6.6	以穀類及澱粉為主的甜品(例如大米布甸、木薯布甸)，包括以穀類或澱粉為主的甜品餡料	210	苯甲酸	1000	
		310	丙基倍酸鹽	90	註1及6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315	註9

7	烘焙食品				
7.1	麵包、普通烘焙食品及混合料，包括各類沒有甜味的烘焙食品及以麵包製成的製品				
7.1.1	麵包及麵包捲，例如白麵包、裸麥麵包、提子乾麵包、全麥麵包、全麥麵包捲及蘇打麵包	210	苯甲酸	1000	
		280	丙酸	3000	
		319	特丁基對苯二酚	200	註1及2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7.1.2	薄脆餅乾(例如蘇打餅乾、裸麥餅乾), 不包括屬食物分類14.1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調味薄脆餅乾	200	山梨酸	1000	註5
		210	苯甲酸	1000	
		280	丙酸	1000	註5
		319	特丁基對苯二酚	200	註1及2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7.1.3	其他普通烘焙食品(例如比高包、比得包及英式鬆餅)	210	苯甲酸	1000	
		280	丙酸	3000	
		310	丙基倍酸鹽	100	註1及2
		319	特丁基對苯二酚	200	註1及2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7.1.4	麵包類製品, 包括以麵包製成的餡料及麵包糠	210	苯甲酸	1000	
		280	丙酸	3000	
		319	特丁基對苯二酚	200	註1及2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7.1.5	蒸包(例如饅頭及包子)	210	苯甲酸	1000	
		280	丙酸	3000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7.1.6	供製作麵包及普通烘焙食品用的混合料	210	苯甲酸	1000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7.2	精製烘焙食品及混合料				
7.2.1	蛋糕、曲奇餅及批(例如乳酪蛋糕、西式蛋糕、月餅、燕麥曲奇餅、果餡批及吉士批)	200	山梨酸	1000	註5
		210	苯甲酸	1000	
		220	二氧化硫	50	註10
		280	丙酸	1000	註5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7.2.2	其他精製烘焙食品(例如班戟、窩芙、丹麥酥、雪糕筒、麵粉製甜點、冬甩、甜麵包捲、烤餅及鬆餅)	200	山梨酸	1000	註5
		210	苯甲酸	1000	
		220	二氧化硫	50	註10
		280	丙酸	1000	註5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7.2.3	供製作精製烘焙食品用的混合料(例如蛋糕混合料、麵粉製甜點混合料、班戟混合料、批混合料及窩芙混合料)	210	苯甲酸	1000	
		220	二氧化硫	50	註10
		310	丙基倍酸鹽	200	註1及2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8	肉及肉製品，包括家禽及野味				
8.1	新鮮禽畜及野味碎肉	384	檸檬酸異丙酯類	200	
8.2	原隻或切件的加工禽畜及野味肉製品				
8.2.1	原隻或切件，非經加熱處理的醃製(包括鹽醃)加工禽畜及野味肉製品	250	亞硝酸鈉	200	
		251	硝酸鈉	500	
		310	丙基倍酸鹽	200	註1及2
		319	特丁基對苯二酚	100	註1、2及25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100	註1、2及25
8.2.2	原隻或切件，非經加熱處理的醃製(包括鹽醃)及脫水加工禽畜及野味肉製品	210	苯甲酸	1000	
		235	游霉素	6	
		250	亞硝酸鈉	200	
		251	硝酸鈉	500	
		310	丙基倍酸鹽	200	註1及2
		319	特丁基對苯二酚	100	註1、2及25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100	註1、2及25
8.2.3	原隻或切件，非經加熱	384	檸檬酸異丙酯類	200	
		250	亞硝酸鈉	200	

	處理的發酵加工禽畜及野味肉製品	251	硝酸鈉	500	
		310	丙基棓酸鹽	200	註1及2
		319	特丁基對苯二酚	100	註1、2及25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100	註1、2及25
8.2.4	原隻或切件，經加熱處理的加工禽畜及野味肉製品，包括煮熟(包括醃製並煮熟，以及脫水並煮熟)、經加熱處理(包括消毒)及罐頭肉塊	310	丙基棓酸鹽	200	註1及2
		319	特丁基對苯二酚	100	註1、2及25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100	註1、2及25
8.2.4.1	經加熱處理的醃製肉類	250	亞硝酸鈉	125	
		251	硝酸鈉	500	
		310	丙基棓酸鹽	200	註1及2
		319	特丁基對苯二酚	100	註1、2及25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100	註1、2及25
8.2.5	原隻或切件，冷凍的加工禽畜及野味肉製品，包括經冷凍的生及熟肉塊	310	丙基棓酸鹽	200	註1及2
		319	特丁基對苯二酚	100	註1、2及25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1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100	註1、2及25
8.3	加工禽畜及野味碎肉製品				
8.3.1	非經加熱處理的醃製(包括鹽醃)加工禽畜及野味碎肉製品	220	二氧化硫	450	註10
		250	亞硝酸鈉	200	
		251	硝酸鈉	500	
		310	丙基棓酸鹽	200	註1及2
		319	特丁基對苯二酚	100	註1、2及26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100	註1、2及26
8.3.2	非經加熱處理的醃製(包括鹽醃)及脫水加工禽畜及野味碎肉製品	210	苯甲酸	1000	
		220	二氧化硫	450	註10
		235	游霉素	1毫克／ 平方分米	註3
		250	亞硝酸鈉	200	

		251	硝酸鈉	500	
		310	丙基梛酸鹽	200	註1及2
		319	特丁基對苯二酚	100	註1、2及26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100	註1、2及26
		384	檸檬酸異丙酯類	200	
8.3.3	非經加熱處理的發酵加工禽畜及野味碎肉製品	220	二氧化硫	450	註10
		250	亞硝酸鈉	200	
		251	硝酸鈉	500	
		310	丙基梛酸鹽	200	註1及2
		319	特丁基對苯二酚	100	註1、2及26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100	註1、2及26
8.3.4	經加熱處理的加工禽畜及野味碎肉製品，包括煮熟(包括醃製並煮熟，以及脫水並煮熟)、經加熱處理(包括消毒)及罐頭碎肉製品(例如鵝肝醬及肉／肝醬、及熟肉丸)	310	丙基梛酸鹽	200	註1及2
		319	特丁基對苯二酚	100	註1、2及26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100	註1、2及26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35	註9
8.3.4.1	經加熱處理的醃製加工禽畜及野味碎肉製品(例如煮熟的醃碎肉、罐頭鹹牛肉及午餐肉)	220	二氧化硫	450	註10
		250	亞硝酸鈉	125	
		251	硝酸鈉	500	
		310	丙基梛酸鹽	200	註1及2
		319	特丁基對苯二酚	100	註1、2及26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100	註1、2及26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35	註9
8.3.4.2	經加熱處理的漢堡碎肉餅或類似製品	220	二氧化硫	450	註10
		310	丙基梛酸鹽	200	註1及2
		319	特丁基對苯二酚	100	註1、2及26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100	註1、2及26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35	註9
8.3.4.3	經加熱處理的香腸或香腸肉(例如早餐香腸)	220	二氧化硫	450	註10
		310	丙基棓酸鹽	200	註1及2
		319	特丁基對苯二酚	100	註1、2及26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100	註1、2及26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35	註9
8.3.5	冷凍的加工禽畜及野味碎肉製品, 包括生、半熟及全熟的製品(例如沾麵包糠或炸漿的冷凍雞條)	310	丙基棓酸鹽	200	註1及2
		319	特丁基對苯二酚	100	註1、2及26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100	註1、2及26
8.3.5.1	冷凍的漢堡碎肉餅或類似製品	220	二氧化硫	450	註10
		310	丙基棓酸鹽	200	註1及2
		319	特丁基對苯二酚	100	註1、2及26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100	註1、2及26
9	魚及魚製品, 包括水棲脊椎動物(魚及水棲哺乳類動物(例如鯨魚))、水棲無脊椎動物(例如水母)、軟體類動物(例如蜆及蝸牛)、甲殼類動物(例如蝦、蟹及龍蝦)及棘皮類動物(例如海膽及海參)				
9.1	新鮮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	220	二氧化硫	100	註10
9.2	加工魚及魚製品, 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				
9.2.1	冷凍(包括新鮮及半熟)的魚、魚柳及魚製品, 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例如冷凍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的蜆、冷凍的鱈魚柳、 冷凍的蟹、冷凍的鱈 魚、冷凍的龍蝦、冷凍 的蝦、冷凍的魚子及冷 凍的魚漿)	386	乙二胺四乙酸二 鈉	75	註9
9.2.1.1	冷凍的軟體類、甲殼類 及棘皮類動物	220	二氧化硫	100	註10
		320	經丁化作用的羥 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 基甲苯	200	註1及2
		386	乙二胺四乙酸二 鈉	75	註9
9.2.2	冷凍、沾炸漿及未經烹 煮的魚、魚柳及魚製 品，包括軟體類、甲殼 類及棘皮類動物(例如 冷凍沾麵包糠的魚手指 及冷凍沾炸漿的魚柳)	320	經丁化作用的羥 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 基甲苯	200	註1及2
		386	乙二胺四乙酸二 鈉	75	註9
		388	硫代二丙酸	200	註1
9.2.3	煮熟(不包括煎炸)的魚 及魚製品，包括熟魚 漿、熟魚糊及熟魚子	386	乙二胺四乙酸二 鈉	50	註9
9.2.3.1	煮熟(不包括煎炸)的魚 丸及魚餅	200	山梨酸	1000	註18
		210	苯甲酸	1000	註18
		214	對羥基苯甲酸乙 酯	1000	註18
		218	對羥基苯甲酸甲 酯	1000	註18
		386	乙二胺四乙酸二 鈉	50	註9
9.2.4	煮熟(不包括煎炸)的軟 體類、甲殼類及棘皮類 動物	220	二氧化硫	150	註10
9.2.4.1	煮熟(不包括煎炸)的軟 體類、甲殼類及棘皮類 動物的丸及餅	200	山梨酸	1000	註18
		210	苯甲酸	1000	註18
		214	對羥基苯甲酸乙 酯	1000	註18
		218	對羥基苯甲酸甲 酯	1000	註18
		220	二氧化硫	150	註10
9.2.4.2	煮熟(不包括煎炸)的蝦	210	苯甲酸	2000	
		220	二氧化硫	150	註10
9.2.4.2.	煮熟(不包括煎炸)的褐	210	苯甲酸	6000	

1	蝦	220	二氧化硫	150	註10
9.2.5	煎炸魚丸及魚餅，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	200	山梨酸	1000	註18
		210	苯甲酸	1000	註18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1000	註18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1000	註18
9.2.6	煙燻、脫水、發酵及／或鹽醃的魚及魚製品，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	210	苯甲酸	200	
		220	二氧化硫	30	註10
		310	丙基倍酸鹽	100	註1及2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9.2.6.1	乾魚絲，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	200	山梨酸	1000	註18
		210	苯甲酸	200	註18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200	註18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200	註18
		220	二氧化硫	30	註10
		310	丙基倍酸鹽	100	註1及2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9.2.6.2	發酵魚製品	210	苯甲酸	1000	
		220	二氧化硫	30	註10
		310	丙基倍酸鹽	100	註1及2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9.2.6.3	鹹魚	200	山梨酸	200	
		210	苯甲酸	200	
		220	二氧化硫	30	註10
		310	丙基倍酸鹽	100	註1及2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9.3	半防腐的魚及魚製品，包括軟體類、甲殼類及				

	棘皮類動物				
9.3.1	以醋或酒浸泡及／或以膠凍配製的魚及魚製品，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	200	山梨酸	1000	註18
		210	苯甲酸	2000	註18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250	註18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250	註18
		220	二氧化硫	100	註10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9.3.2	醃漬及／或以鹽水浸泡的魚及魚製品，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	200	山梨酸	1000	註18
		210	苯甲酸	2000	註18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250	註18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250	註18
		220	二氧化硫	100	註10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250	註9
9.3.3	鹽醃及／或以防腐劑處理的半防腐三文魚代替品、魚子醬及其他魚子製品	200	山梨酸	1000	註18
		210	苯甲酸	2000	註18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250	註18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250	註18
		220	二氧化硫	100	註10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9.3.3.1	半防腐魚子醬	200	山梨酸	1000	註18
		210	苯甲酸	2500	註18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250	註18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250	註18
		220	二氧化硫	100	註10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9.3.4	半防腐的魚及魚製品，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例如傳統的東方魚糊)，不包括屬食物分類9.3.1至9.3.3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製品	210	苯甲酸	2000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9.3.4.1	蝦醬	210	苯甲酸	2000	註20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1000	註20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1000	註20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9.4	完全防腐(包括罐頭或發酵)的魚及魚製品，包括軟體類、甲殼類及棘皮類動物	220	二氧化硫	150	註10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340	註9
9.4.1	罐頭鮑魚	220	二氧化硫	1000	註10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340	註9
10	蛋製品				
10.1	經巴士德消毒法消毒及化學防腐(例如加鹽)的液體蛋製品，包括全蛋、蛋黃及蛋白	210	苯甲酸	5000	
10.2	脫水及／或以熱凝固(經巴士德消毒法消毒)的蛋製品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200	註9及15

10.3	以蛋為主的甜品(例如蛋吉士及供精製烘焙食品用的吉士餡料)	210	苯甲酸	1000	
		310	丙基倍酸鹽	90	註1及6
11	糖及餐桌甜味劑，不包括乳糖及蜂蜜				
11.1	白糖、無水葡萄糖、一水葡萄糖、果糖	220	二氧化硫	15	註10
11.2	糖粉、葡萄糖粉	220	二氧化硫	15	註10
11.3	綿白糖、紅綿糖、葡萄糖漿、葡萄糖乾漿、原蔗糖	220	二氧化硫	20	註10
11.3.1	用於製造糖果製品的葡萄糖乾漿	220	二氧化硫	150	註10
11.3.2	用於製造糖果製品的葡萄糖漿	220	二氧化硫	400	註10
11.4	耕地白糖或壓榨法白糖	220	二氧化硫	70	註10
11.5	紅糖(例如紅蔗糖)，不包括屬食物分類11.3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製品	220	二氧化硫	40	註10
11.6	糖液及糖漿，以及(部分)轉化糖，包括糖蜜，但不包括屬食物分類11.3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製品	220	二氧化硫	70	註10
11.7	其他糖及糖漿(例如木糖、楓糖漿及用作食物面層裝飾的糖)	210	苯甲酸	1000	
		220	二氧化硫	40	註10
11.8	餐桌甜味劑，包括含有高甜度甜味劑(例如醋磺內酯鉀及山梨醇)者	210	苯甲酸	2000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1000	註9及16
12	香料、佐料、湯、醬料、沙律、酵母及類似製品、豉油、發酵大豆，以及大豆蛋白粉及其混合物				
12.1	香草及香料(例如羅勒、皮薩草、辣椒醬及咖喱醬)	220	二氧化硫	150	註10
		310	丙基倍酸鹽	200	註1及2
		319	特丁基對苯二酚	200	註1及2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70	註9
12.1.1	咖喱醬	210	苯甲酸	350	註20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350	註20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350	註20
		220	二氧化硫	150	註10
		310	丙基梛酸鹽	200	註1及2
		319	特丁基對苯二酚	200	註1及2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70	註9
12.2	佐料(例如鬆肉粉、洋蔥鹽及蒜鹽)，不包括佐料醬料(例如茄汁、蛋黃醬及芥末)	210	苯甲酸	1000	
		220	二氧化硫	200	註10
		310	丙基梛酸鹽	200	註1及2
		319	特丁基對苯二酚	200	註1及2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70	註9
12.3	醋，包括蘋果醋、酒醋、麥芽醋、酒精醋、穀醋、葡萄乾醋及果(酒)醋	210	苯甲酸	1000	
		220	二氧化硫	100	註10
12.4	芥末	210	苯甲酸	1000	
		220	二氧化硫	250	註10
		319	特丁基對苯二酚	200	註1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75	註9
12.4.1	第戎芥末	210	苯甲酸	1000	
		220	二氧化硫	500	註10
		319	特丁基對苯二酚	200	註1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75	註9
12.5	即食湯及肉湯，包括罐	200	山梨酸	500	註22

	頭、瓶裝及冷凍製品 (例如肉汁清湯、清肉 湯、以水及忌廉為主的 湯、周打湯及海鮮濃 湯)	210	苯甲酸	500	註22
		310	丙基棓酸鹽	200	註1及2
		319	特丁基對苯二酚	200	註1及2
		320	經丁化作用的羥 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 基甲苯	200	註1及2
12.6	供調製湯及肉湯用的混 合料(例如肉汁清湯粉 及塊、粉狀及濃縮湯， 以及高湯塊及粉)	200	山梨酸	500	註22
		210	苯甲酸	500	註22
		218	對羥基苯甲酸甲 酯	175	
		310	丙基棓酸鹽	200	註1及2
		319	特丁基對苯二酚	200	註1及2
		320	經丁化作用的羥 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 基甲苯	200	註1及2
12.7	乳化醬汁(例如蛋黃醬 及沙律醬)	200	山梨酸	1000	註18
		210	苯甲酸	1000	註18
		214	對羥基苯甲酸乙 酯	250	註18
		218	對羥基苯甲酸甲 酯	250	註18
		220	二氧化硫	300	註10
		236	甲酸	200	
		310	丙基棓酸鹽	200	註1及2
		314	愈瘡樹脂	600	註1
		319	特丁基對苯二酚	200	註1及2
		320	經丁化作用的羥 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 基甲苯	100	註1及2
		386	乙二胺四乙酸二 鈉	100	註9
12.8	非乳化醬汁，包括以 水、椰奶及奶為主的醬 汁(例如燒烤醬汁、茄 汁、乳酪醬汁、忌廉醬 汁、喼汁、濃肉汁及辣 椒醬)	200	山梨酸	1000	註18
		210	苯甲酸	1000	註18
		214	對羥基苯甲酸乙 酯	250	註18
		218	對羥基苯甲酸甲 酯	250	註18
		220	二氧化硫	300	註10
		236	甲酸	200	
		310	丙基棓酸鹽	200	註1及2

		314	愈瘡樹脂	600	註1
		319	特丁基對苯二酚	200	註1及2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100	註1及2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75	註9
12.9	供調製醬汁及肉汁用的混合料(例如用於調製乳酪醬、荷蘭醬及沙律醬的混合料)	210	苯甲酸	1000	
		220	二氧化硫	300	註10
		236	甲酸	200	
		310	丙基棓酸鹽	200	註1及2
		314	愈瘡樹脂	600	註1
		319	特丁基對苯二酚	200	註1及2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100	註1及2
12.10	魚露及蠔油	200	山梨酸	1000	註18
		210	苯甲酸	1000	註18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1000	註18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1000	註18
		220	二氧化硫	300	註10
		236	甲酸	200	
		310	丙基棓酸鹽	200	註1及2
		314	愈瘡樹脂	600	註1
		319	特丁基對苯二酚	200	註1及2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100	註1及2
12.11	沙律(例如通心粉沙律、馬鈴薯沙律)及三文治塗醬, 不包括屬食物分類4.19及5.1.3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以可可及果仁為主的塗醬	210	苯甲酸	1500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100	註9
12.12	酵母及類似製品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
12.13	豉油	200	山梨酸	1000	註18

		210	苯甲酸	550	註18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550	註18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550	註18
12.13.1	非發酵豉油	200	山梨酸	1000	註18
		210	苯甲酸	1000	註18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550	註18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550	註18
12.14	發酵大豆(例如豆豉)	210	苯甲酸	1000	註20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1000	註20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1000	註20
12.15	大豆蛋白粉及混合物 (供再造用(例如用作調製大豆飲料及自家製軟豆腐))	210	苯甲酸	1000	

13	飲料，不包括乳製品				
13.1	果汁	200	山梨酸	1000	註18
		210	苯甲酸	800	註18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800	註18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800	註18
		220	二氧化硫	50	註10
13.1.1	葡萄汁製品(未經發酵及擬於聖餐時使用)	200	山梨酸	1000	註18
		210	苯甲酸	2000	註18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2000	註18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2000	註18
		220	二氧化硫	70	註10
13.2	蔬菜汁	200	山梨酸	400	註18
		210	苯甲酸	160	註18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160	註18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160	註18
		220	二氧化硫	50	註10

13.3	濃縮果汁	200	山梨酸	1000	註14及18
		210	苯甲酸	800	註18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800	註18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800	註18
		220	二氧化硫	50	註10及14
13.4	濃縮蔬菜汁	200	山梨酸	2000	註18
		210	苯甲酸	800	註18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800	註18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800	註18
		220	二氧化硫	50	註10及14
13.5	果蜜飲料	200	山梨酸	1000	註18
		210	苯甲酸	800	註18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800	註18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800	註18
		220	二氧化硫	50	註10
13.6	蔬菜蜜飲料	200	山梨酸	400	註18
		210	苯甲酸	160	註18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160	註18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160	註18
		220	二氧化硫	50	註10
13.7	濃縮果蜜飲料	200	山梨酸	1000	註14及18
		210	苯甲酸	800	註18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800	註18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800	註18
		220	二氧化硫	50	註10及14
13.8	濃縮蔬菜蜜飲料	200	山梨酸	2000	註18
		210	苯甲酸	600	註18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600	註18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600	註18
		220	二氧化硫	50	註10及14
13.9	以水為主的調味飲料，	200	山梨酸	400	註18

	包括碳酸及非碳酸飲料、濃縮物、“運動”、“能量”或“電解質”飲料、顆粒飲料、即飲咖啡及茶類飲料，及以香草為主的飲料(例如凍茶、果味凍茶及冰凍的罐裝泡沫咖啡飲料)	210	苯甲酸	160	註18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160	註18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160	註18
		236	甲酸	100	
		242	二甲基二碳酸鹽	250	註13
		310	丙基梛酸鹽	1000	註1
		384	檸檬酸異丙酯類	200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200	註9
		388	硫代二丙酸	1000	註1
		512	氯化亞錫	20	註11
13.9.1	以果汁為主的飲料和無甜度薑汁飲料	200	山梨酸	400	註18
		210	苯甲酸	160	註18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160	註18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160	註18
		220	二氧化硫	70	註10及14
		236	甲酸	100	
		242	二甲基二碳酸鹽	250	註13
		310	丙基梛酸鹽	1000	註1
		384	檸檬酸異丙酯類	200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200	註9
		388	硫代二丙酸	1000	註1
		512	氯化亞錫	20	註11
13.9.2	每10公升含有不少於2.3公斤葡萄糖漿的葡萄糖飲料	200	山梨酸	400	註18
		210	苯甲酸	800	註18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800	註18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800	註18
		236	甲酸	100	
		242	二甲基二碳酸鹽	250	註13
		310	丙基梛酸鹽	1000	註1
		384	檸檬酸異丙酯類	200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200	註9
		388	硫代二丙酸	1000	註1
13.9.3	供調製以水為主調味飲	200	山梨酸	2000	註18

	料用的濃縮物(液體或固體)	210	苯甲酸	800	註18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800	註18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800	註18
		236	甲酸	100	
		242	二甲基二碳酸鹽	250	註13
		310	丙基梛酸鹽	1000	註1
		384	檸檬酸異丙酯類	200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200	註9
		388	硫代二丙酸	1000	註1
		512	氯化亞錫	20	註11
13.10	咖啡、咖啡代替品、茶、香草茶，以及其他穀類及穀物熱飲料，包括用於製造咖啡製品的已處理咖啡豆，不包括可可	210	苯甲酸	1000	註20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450	註20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450	註20
		242	二甲基二碳酸鹽	250	註13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35	註9
13.10.1	固體咖啡精	210	苯甲酸	1000	註20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450	註20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450	註20
		220	二氧化硫	150	註10
		242	二甲基二碳酸鹽	250	註13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35	註9
13.11	啤酒及麥芽飲料	210	苯甲酸	70	註20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70	註20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70	註20
		220	二氧化硫	50	註10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25	註9
13.12	蘋果酒及梨酒	200	山梨酸	200	
		220	二氧化硫	200	註10
		242	二甲基二碳酸鹽	250	註13
		1105	溶菌酶	500	
13.12.1	乙醇含量少於7%的蘋果	200	山梨酸	200	註22

	酒及梨酒	210	苯甲酸	1000	註22
		220	二氧化硫	200	註10
		242	二甲基二碳酸鹽	250	註13
		1105	溶菌酶	500	
13.13	葡萄酒	200	山梨酸	400	
		220	二氧化硫	350	註10
		242	二甲基二碳酸鹽	200	註13
		1105	溶菌酶	500	
13.13.1	白酒	200	山梨酸	400	
		220	二氧化硫	400	註10
		242	二甲基二碳酸鹽	200	註13
		1105	溶菌酶	500	

13.14	酒(葡萄酒、蘋果酒及梨酒除外)(例如米酒(日本清酒)及有氣泡及無氣泡的果酒)	200	山梨酸	400	註22
		210	苯甲酸	1000	註22
		220	二氧化硫	200	註10
		242	二甲基二碳酸鹽	250	註13
13.15	蜂蜜酒	200	山梨酸	400	註22
		210	苯甲酸	1000	註22
		220	二氧化硫	200	註10
		242	二甲基二碳酸鹽	200	註13
13.16	酒精含量超過15%的蒸餾酒精飲料	200	山梨酸	400	
		220	二氧化硫	200	註10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25	註9
13.17	加香味的酒精飲料(例如酒及含酒精的清涼飲料, 以及低酒精的清涼飲料)	200	山梨酸	400	註22
		210	苯甲酸	1000	註22
		220	二氧化硫	70	註10
		386	乙二胺四乙酸二鈉	25	註9

14	即食小食				
14.1	以馬鈴薯、穀類、麵粉或澱粉(取自根及塊根或莖、豆和豆莢)為主的小食, 包括各類原味及調味的小食(例如薯片、爆穀及調味薄脆餅乾), 不包括屬食物分類7.1.2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原味薄脆餅乾	210	苯甲酸	1000	
		220	二氧化硫	50	註10
		310	丙基酸鹽	200	註1及2
		319	特丁基對苯二酚	200	註1及2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388	硫代二丙酸	200	
14.2	加工果仁, 包括有沾	310	丙基酸鹽	200	註1及2

	裹層的果仁及果仁混合物(例如混有水果乾)	319	特丁基對苯二酚	200	註1及2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388	硫代二丙酸	200	
14.3	以魚為主的小食，不包括屬食物分類9.2.6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魚乾小食及屬食物分類8.3.2及其細分類(如適用的話)的肉乾小食	319	特丁基對苯二酚	2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
		388	硫代二丙酸	200	

15	雜項				
15.1	食物添加劑				
15.1.1	染色料(如以准許染色料溶液的形式出現)	200	山梨酸	1000	註18
		210	苯甲酸	2000	註18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2000	註18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2000	註18
15.1.2	只用准許甜味劑及水配製的食物	210	苯甲酸	750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250	註17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250	註17
15.1.3	二甲基聚硅氧烷	200	山梨酸	1000	註19
		210	苯甲酸	2000	註19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2000	註19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2000	註19
		220	二氧化硫	1000	註10及19
15.2	調味劑及調味糖漿	210	苯甲酸	800	註19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800	註19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800	註19
		220	二氧化硫	350	註10及19
15.3	酶				
15.3.1	液體凝乳酶	210	苯甲酸	2000	註20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2000	註20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2000	註20
15.3.2	固體番瓜素	220	二氧化硫	30000	註10
15.3.3	水溶液番瓜素	200	山梨酸	1000	註19
		220	二氧化硫	5000	註10及19
15.3.4	非指明的酶製劑的水溶液，包括固定酶製劑的水溶液	200	山梨酸	3000	註19
		210	苯甲酸	3000	註19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3000	註19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3000	註19
		220	二氧化硫	500	註10及19
15.4	香精油及香精油濃縮物的分離物	310	丙基梛酸鹽	1000	註1及2
		311	辛基梛酸鹽	1000	註1及2
		312	十二(烷)基梛酸鹽	1000	註1及2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1000	註1及2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1000	註1及2
15.5	食物面層流質泡沫物	210	苯甲酸	10000	註19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10000	註19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10000	註19
		220	二氧化硫	5000	註10及19
15.6	明膠	220	二氧化硫	1000	註10
15.7	明膠製藥囊	200	山梨酸	3000	
15.8	矽酮抗泡沫乳狀液	200	山梨酸	1000	註18
		210	苯甲酸	2000	註18
		214	對羥基苯甲酸乙酯	2000	註18
		218	對羥基苯甲酸甲酯	2000	註18
15.9	液體果膠	220	二氧化硫	250	註10
15.10	部分丙三醇酯	310	丙基梛酸鹽	100	註1及28
		311	辛基梛酸鹽	100	註1及28
		312	十二(烷)基梛酸鹽	100	註1及28
		320	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	100	註1及28

		321	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	200	註1及28
--	--	-----	------------	-----	-------

- 註1 計算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丙基梛酸鹽、辛基梛酸鹽、十二(烷)基梛酸鹽、特丁基對苯二酚、硫代二丙酸及愈瘡樹脂的含量，是按食物中的脂肪或油的重量計算。
- 註2 就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丙基梛酸鹽、辛基梛酸鹽、十二(烷)基梛酸鹽及特丁基對苯二酚而言，可混合使用其中2種或多於2種添加劑，但前提是必須符合以下條件：當食物所含的每種該等食物添加劑的分量以其在該食物的最高准許含量所佔百分率的方式顯示時，該等百分率合計不超過100。
- 註3 游霉素須施用於食物表面，並只可存在於離食物表面不多於5毫米處。每1毫克／平方分米(以食物適用表面計)相等於百萬分之20。
- 註4 六亞甲基四胺的含量，是按甲醛計算。
- 註5 可混合使用山梨酸及丙酸，但前提是必須符合以下條件：當食物所含的每種該等食物添加劑的分量以其在該食物的最高准許含量所佔百分率的方式顯示時，該等百分率合計不超過100。
- 註6 丙基梛酸鹽的含量，是按乾成分、乾重、乾混合料或濃縮物計算。
- 註7 可視乎情況適當而混合使用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丙基梛酸鹽、辛基梛酸鹽及十二(烷)基梛酸鹽，但前提是混合使用時的總含量，不得超過百萬分之200，亦不得超過個別食物添加劑在單獨使用時的最高准許含量。
- 註8 可混合使用硝酸鈉及亞硝酸鈉，但前提是必須符合以下條件：當食物所含的每種該等食物添加劑的分量以其在該食物的最高准許含量所佔百分率的方式顯示時，該等百分率合計不超過100。
- 註9 乙二胺四乙酸二鈉的含量，是按無水乙二胺四乙酸二鈉鈣計算。
- 註10 二氧化硫的含量，是按二氧化硫殘留計算。
- 註11 氯化亞錫的含量，是按錫計算。
- 註12 葡萄糖酸亞鐵的含量，是按鐵計算。
- 註13 最高准許含量，是指在製造食物時加在食物中的分量。
- 註14 有關食物添加劑的含量，是按食物按照製造商指示調製後或以供消費者食用的形式計算。
- 註15 乙二胺四乙酸二鈉的含量，是按蛋黃的乾重計算。
- 註16 乙二胺四乙酸二鈉的含量，是按高甜度甜味劑的乾重計算。
- 註17 可混合使用對羥基苯甲酸乙酯及對羥基苯甲酸甲酯，但前提是必須符合以下條件：當食物所含的每種該等食物添加劑的分量以其在該食物的最高准許含量所佔百分率的方式顯示時，該等百分率合計不超過100。
- 註18 可視乎情況適當而混合使用苯甲酸、對羥基苯甲酸乙酯、對羥基苯甲酸甲酯及山梨酸，但前提是必須符合以下條件：當食物所含的每種該等食物添加劑的分量以其在該食物的最高准許含量所佔百分率的方式顯示時，該等百分率合計不超過100。
- 註19 可視乎情況適當而混合使用苯甲酸、對羥基苯甲酸乙酯、對羥基苯甲酸甲酯、山梨酸及二氧化硫，但前提是必須符合以下條件：當食物所含的每種該等食物添加劑的分量以其在該食物的最高准許含量所佔百分率的方式顯示時，該等百分率合計不超過100。
- 註20 可視乎情況適當而混合使用苯甲酸、對羥基苯甲酸乙酯及對羥基苯甲酸甲酯，但前提是必須符合以下條件：當食物所含的每種該等食物添加劑的分量以其在該食物的最高准許含量所佔百分率的方式顯示時，該等百分率合計不超過100。
- 註21 可混合使用苯甲酸及山梨酸，但前提是混合使用時的總含量，不得超過百萬分之2000，亦不得超過個別食物添加劑在單獨使用時的最高准許含量。

- 註22 可混合使用苯甲酸及山梨酸，但前提是必須符合以下條件：當食物所含的每種該等食物添加劑的分量以其在該食物的最高准許含量所佔百分率的方式顯示時，該等百分率合計不超過100。
- 註23 可混合使用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丙基羧酸鹽、辛基羧酸鹽及十二(烷)基羧酸鹽，但前提是混合使用時的總含量不得超過百萬分之240，而丙基羧酸鹽、辛基羧酸鹽或十二(烷)基羧酸鹽的單獨含量或其混合物的含量不得超過百萬分之80，而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或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的單獨含量或其混合物的含量不得超過百萬分之160。
- 註24 碳酸銅的含量，是按銅計算。
- 註25 只供用於脫水製品。
- 註26 只供用於脫水製品和沙樂美類製品。
- 註27 乙二胺四乙酸二鈉的含量，是按食物的乾重計算。
- 註28 可混合使用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丙基羧酸鹽、辛基羧酸鹽及十二(烷)基羧酸鹽，但前提是混合使用時的總含量不得超過百萬分之300，而丙基羧酸鹽、辛基羧酸鹽或十二(烷)基羧酸鹽的單獨含量或其混合物的含量不得超過百萬分之100，而經丁化作用的羥基茴香醚或經丁化作用的羥基甲苯的單獨含量分別不得超過百萬分之100和200或其混合物的含量不得超過百萬分之200。

(附表1由2008年第85號法律公告代替)

附表：	1A		L.N. 85 of 2008	01/07/2008
-----	----	--	-----------------	------------

[第2及2A條]

項	第1欄	第2欄
	附表1所指明的准許食物添加劑 (包括國際編碼系統編號)	可使用的准許食物添加劑的替代物 (包括國際編碼系統編號) (以第1欄所示的准許食物添加劑 的形式計算)
1.	山梨酸(200)	山梨酸鈉(201) 山梨酸鉀(202) 山梨酸鈣(203)
2.	苯甲酸(210)	苯甲酸鈉(211) 苯甲酸鉀(212) 苯甲酸鈣(213)
3.	對羥基苯甲酸乙酯(214)	對羥基苯甲酸乙酯鈉(215)
4.	對羥基苯甲酸甲酯(218)	對羥基苯甲酸甲酯鈉(219)
5.	二氧化硫(220)	亞硫酸鈉(221) 亞硫酸氫鈉(222) 焦亞硫酸鈉(223) 焦亞硫酸鉀(224) 亞硫酸鉀(225) 亞硫酸鈣(226) 亞硫酸氫鈣(227)

		亞硫酸氫鉀(228) 硫代硫酸鈉(539) 亞硫酸
6.	鄰苯基苯酚(231)	鄰苯基苯酚鈉(232)
7.	亞硝酸鈉(250)	亞硝酸鉀(249)
8.	硝酸鈉(251)	硝酸鉀(252)
9.	丙酸(280)	丙酸鈉(281) 丙酸鈣(282) 丙酸鉀(283)
10.	乙二胺四乙酸二鈉(386)	乙二胺四乙酸二鈉鈣(385)
11.	硫代二丙酸(388)	硫代二丙酸二月桂酯(389)

(附表1A由2008年第85號法律公告增補)

附表：	2	含防腐劑或抗氧化劑食品的標籤 防腐劑或抗氧化劑的標籤及食品含過量准許防腐劑的陳述	L.N. 85 of 2008	01/07/2008
-----	---	--	-----------------	------------

[第3、5及6條]
(2008年第85號法律公告)

1. 附表列出的標籤規則所適用的含防腐劑食物(即有關食物)為香腸、香腸肉餡、液體咖啡精、液體茶精、醃製食品及調味汁及(凡苯甲酸的分量超過百萬分之800時)擬在聖餐時使用的未經發酵葡萄汁產品及任何含抗氧化劑食物。(2008年第85號法律公告)

2. (1) 每個與第6條有關的容器，均須附有標籤，按以下的聲明格式，印上清楚顯眼的真實陳述——

(X) PRESERVATIVE(S))

(2) 在填寫該項聲明時，須於(X)處加上“*This*”或“*These*”字樣，再於其後加上本附表第1條所指明的食物的常用或一般名稱。(2008年第85號法律公告)

(3) 如屬本規例適用的擬在聖餐時使用的未經發酵葡萄汁產品，須於聲明上加上“*and is not intended for use as a beverage*”字樣。

3. 凡上述任何食品含有抗氧化劑，則須附有標籤，就其所含的每種添加抗氧化劑，印上——

- (a) 該種抗氧化劑的正確名稱說明；及
- (b) 該種抗氧化劑的最高含量，以百萬分率(按重量估計)計算。

4. (1) 與第3(3)及(4)條有關的陳述，須按以下的聲明格式清楚顯明地印上—— (2008年第85號法律公告)

(X) NOT MORE THAN (Y) PER

CENT OF (Z)	
(Y)	PER
CENT OF (Z)	
AND IS/ARE NOT FOR RETAIL SALE	

(2) 在填寫該項聲明時，須於(X)處加上“*This*”或“*These*”字樣，再於其後加上食物的常用或一般名稱，並須於(Y)處以文字及數字(例如“*seventy (70)*”)加上食物所含的每種防腐劑按重量計的最高百分率(調整至最接近的整數)及須於(Z)處加上與該百分率有關的防腐劑的正確名稱說明：但該項聲明中的“*per cent*”字樣可由“*parts per million*”字樣代替，而在該種情況下，於(Y)處加上文字及數字須為食物所含的每種防腐劑按重量計的百萬分率。

5. (1) 每個與第5(1)條有關的容器，均須附有標籤，按以下的聲明格式，印上清楚顯眼的真實陳述—

THIS PRESERVATIVE CONTAINS	
(X)	PER CENT
OF (Y)	
(X)	PER CENT
OF (Y)	

(2) 在填寫該項聲明時，須於(X)處以文字及數字(例如“*seventy (70)*”)加上該容器內物質所含的每種防腐劑按重量計的百分率(調整至最接近的整數)及須於(Y)處加上與該百分率有關的防腐劑的正確名稱說明：

但該項聲明中的“*per cent*”字樣可由“*parts per million*”字樣代替，而在該種情況下，於(X)處加上文字及數字須為該容器內物質所含的每種防腐劑按重量計的百萬分率。

6. (1) 如屬抗氧化劑，每個與第5(1)條有關的容器，均須附有標籤，按以下的聲明格式，印上真實陳述—

This antioxidant contains
(X)
(Y)

(2) 每項該等聲明中的(X)處，均須加上以數字或以文字及數字顯示該容器所盛載配製品所含的每種抗氧化劑按重量計的正確百分率或百萬分率(不計分數並調整至最接近的整數)的真實陳述以及與該項陳述有關的每種抗氧化劑的正確名稱說明。至於聲明中的(Y)處，則須加上該容器所盛載配製品所含任何其他物質的正確名稱說明。凡該等物質多於一種，須按照製造商出售配製品時，該等物質在配製品中所佔分量的比例(按重量計)，由高至低地列出該等物質的正確名稱說明。

7. 本附表所訂明的每項聲明，均須以深色字體清楚可閱地印在淺色底上或以淺色字體清楚可閱地印在深色底上，字體高度不得少於3毫米，聲明須印於圍線內，而圍線內不得印有任何其他東西。該等聲明內的字樣及數字，大小及顏色均須一致，圍線內的底色亦須一致，但該等字樣的第一個字母可較其他字母為大。(1979年第89號法律公告)

8. 本附表所規定的標籤，須穩固貼在包裹物或容器上，或為包裹物或容器的一部分，並在任何情況下，其位置均須清楚可見，以及須為主要標籤的一部分或為貼放近主要標籤的獨立標籤；但如物品附有標籤，其內載有該物品的名稱、商標或代表該物品牌子的設計，或載有製造商或經銷商的名稱及地址，則訂明的聲明須印作該標籤的一部分。
9. 如屬以下任何一種情況，本附表所訂明的聲明亦須以易於閱讀的中文字印寫—
 - (a) 包裹物或容器內的物品是在香港製造、加工處理或包裝的；或
 - (b) 包裹物或容器內的食物是輸入香港以供在香港出售之用，並附有印上中文字的標籤或標記。
10. 標籤、包裹物或容器上不得附有對訂明的聲明的評論或解釋(防腐劑或抗氧化劑的使用方法除外)。

章：	132H	《食物內染色料規例》	憲報編號	版本日期
		賦權條文		30/06/1997

(第132章第55條)

[1960年11月11日] 1960年A132號政府公告

(本為1960年A72號政府公告)

條：	1	引稱		30/06/1997
----	---	----	--	------------

本規例可引稱為《食物內染色料規例》。

條：	2	釋義	29 of 2000	26/05/2000
----	---	----	------------	------------

在本規例中，除文意另有所指外—

“加工處理”(processed) 包括燻製以及能導致食物自然狀態實質改變的任何處理方法或工序，但不包括去骨、削皮、研磨、切割、清潔或切除表面部分，而“未經加工處理”(unprocessed) 一詞須據此解釋；

“色素索引編號”(Colour Index Number) 指在英國漂染師及印染師學會*及美國紡織化學師與印染師協會#所擬備的《色素索引》中所使用的識別號碼； (1993年第368號法律公告)

“航空過境貨物”(air transit cargo) 指在進口及托運出口時均是以飛機運載的過境物品； (2000年第29號第5條)

“航空轉運貨物”(air transhipment cargo) 具有《進出口條例》(第60章)第2條給予該詞的涵義； (2000年第29號第5條)

“准許染色料”(permitted colouring matter) 指附表1所指明的染色料或多於一種該類染色料的混合物；

“售賣”(sell) 包括為出售而展示、要約出售或為出售而管有，而“出售”(sale) 一詞須據此解釋；

“過境物品”(article in transit) 具有《進出口條例》(第60章)第2條給予該詞的涵義； (2000年第29號第5條)

“蔬菜”(vegetable) 包括豆類；

“機場貨物轉運區”(cargo transhipment area of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具有《進出口條例》(第60章)第2條給予該詞的涵義。 (2000年第29號第5條)

註：

* “英國漂染師及印染師學會” 乃 “British Society of Dyers and Colourists” 之譯名。

“美國紡織化學師與印染師協會” 乃 “American Association of Textile Chemists and Colourists” 之譯名。

條：	3	限制使用准許染色料以外的染色料		30/06/1997
----	---	-----------------	--	------------

擬供出售給人食用的食物，不得含有並非准許染色料的添加染色料，而任何人不得將該等不符合本條條文的食物售賣、託付、交付或輸入香港。

(1986年第10號第32(2)條)

條：	4	禁止在某些商品中使用染色料	30/06/1997
----	---	---------------	------------

(1) 未經烹煮及未經加工處理的肉類、野味、家禽、魚、水果或蔬菜，如擬供出售給人食用，則除非是作為標記用途，否則不得加進或加上任何染色料：

但如已按下述規定辦理，柑橘屬的水果可加進或加上准許染色料—

- (a) 在該類水果皮上以准許染色料標明“加有色素”字樣；及
- (b) 該等字樣印寫清楚可閱，大小明顯易見。

(2) 任何人不得將第(1)款提述而不符合該款條文的食物售賣、託付、交付或輸入香港。
(1986年第10號第32(2)條)

條：	5	限制出售或宣傳准許染色料以外的染色料	30/06/1997
----	---	--------------------	------------

(1) 任何人不得售賣或為出售而宣傳任何用於食物而並非准許染色料的染色料。

(2) 在就第(1)款所訂的與發布宣傳品有關的罪行而提起的法律程序中，被告人如證明其本人的業務是發布或安排發布宣傳品，而有關的宣傳品是其本人在通常業務運作中收受以作發布的，即為免責辯護。

(3) 任何人不得售賣、託付或交付用於食物的任何染色料或任何色素及調味化合物，但載於附有符合附表2規定的標籤的容器內者，則不在此限。

條：	5A	對航空過境或航空轉運貨物的適用	29 of 2000	26/05/2000
----	----	-----------------	------------	------------

(1) 如第3及4(2)條所述的食物屬航空過境貨物或航空轉運貨物，則該兩條不適用於該食物的輸入；但如該食物自其被帶進至運出香港的期間內被移離機場貨物轉運區，則為施行第3及4(2)條(視屬何情況而定)—

- (a) 該食物須當作是在被如此移離該區時輸入的；及
- (b) 將該食物作為航空過境貨物或航空轉運貨物而帶進香港或致使該食物被如此帶進香港的人，須當作在該食物被移離該區時是輸入該食物的人，

而除非是在(a)或(b)段所指的範圍內，第3及4(2)條(視屬何情況而定)須在猶如本款不曾制定的情況下具有效力。

(2) 在檢控某人犯第6條所訂的罪行的法律程序中，如一

- (a) 該法律程序關乎輸入第3或4(2)條所述並屬航空過境貨物或航空轉運貨物的食物；及
- (b) 控方需證明該食物自其被帶進至運出香港的期間內被移離機場貨物轉運區，

則該人如證明他已採取所有合理步驟和已盡了合理的努力以避免該食物被如此移離該區，則可以此作為免責辯護。

(3) 在任何法律程序中，凡第(2)款所訂的免責辯護涉及一項指稱，謂該罪行的發生是一

- (a) 另一人的作為或過失所致；或
- (b) 倚賴另一人所提供的資料所致，

則被告人如沒有法院的許可，不得引用該免責辯護，但如被告人於聆訊該法律程序前10天或之前，已向檢控人送達書面通知，提供被告人在送達該通知時所知悉的關於—

- (i) 該另一人的一切詳情；及
- (ii) 該作為、過失或資料的一切詳情，

則屬例外。

(4) 任何人如擬引用第(2)款所訂的免責辯護，而所據的理由是他倚賴另一人所提供的資料，則

除非他證明有鑑於整體情況，尤其是在顧及以下事宜後，倚賴該資料實屬合理，否則不得引用該免責辯護—

- (a) 他為核實該資料而已採取的步驟，及為核實該資料而理應已採取的步驟；及
- (b) 他是否有任何理由不相信該資料。

(2000年第29號第5條)

條：	6	罪行及罰則	30/06/1997
----	---	-------	------------

任何人違反第3、4或5(1)或(3)條的任何條文，即屬犯罪，一經循簡易程序定罪，可處第5級罰款及監禁6個月；如該罪行屬持續的罪行，則就該罪行持續期間內的每一天，罰款\$300。

(1987年第326號法律公告；1996年第177號法律公告)

條：	7	提出法律程序時可用的名義	L.N. 320 of 1999	01/01/2000
----	---	--------------	------------------	------------

在不損害與檢控刑事罪行有關的其他成文法則的條文，以及在不損害律政司司長關於檢控刑事罪行的權力的原則下，就本規例任何條文所訂罪行而作出的檢控，均可以食物環境衛生署署長的名義提出。

(1965年第107號法律公告；1997年第362號法律公告；1999年第78號第7條)

附表：	1	准許染色料	L.N. 98 of 2008	01/12/2008
-----	---	-------	-----------------	------------

[第2條]

第I部—煤焦油色素

色素常用名稱	科學名稱	色素索引編號(1982)
日落黃FCF	1-對磺苯偶氮基-2-萘酚基-6-磺酸二鈉鹽。	15985
立索玉紅BK	3-羥基-4-[(2-磺基-對甲苯甲酰)偶氮基]-2-萘甲酸二鈉鹽。	15850
朱古力棕HT	2:4-二羥-3:5-二-(4-磺基-1-萘偶氮)苯甲醇二鈉鹽。	20285
赤蘚紅(BS)	2:4:5:7-四碘螢光素的二鈉或二鉀鹽。	45430
亮藍FCF (亮藍FD及C第1號)	4-[(4-(N-乙基-對磺苯甲氨基)-苯基)-(2-鈹苯基)-亞甲基]-(1-(N-乙基-N-對磺苯甲基)-△2,5-環己二烯-亞基)二鈉鹽。	42090
酒石黃	5-羥基-1-對磺苯基-4-對磺苯偶氮基-吡啶-3-羧酸三鈉鹽。	19140
專利藍V	(4-[a-(對(二乙基)苯基)-5-羥基-2,4-二磺苯亞甲基]-2,5-環己二烯-1-亞基)二乙基-氫氧化銨內鈣鹽。	42051
淡紅	2-(4-磺基-1-萘偶氮基)-1-萘酚基-4-磺酸二鈉鹽。	14720
棕FK	混合物，基本成分為1:3-二氨基-4:6-二-(對磺苯偶氮基)苯的二鈉鹽和2:4-二氨基-5-(對磺苯偶氮基)甲苯的鈉鹽。	-
黑PN (亮黑BN)	8-乙酰氨基-2-(7-磺基-4-對磺苯偶氮基-1-萘偶氮基)-1-萘酚基-3:5-二磺酸四鈉鹽。	28440
綠S	二-(對二甲氨基)-2-羥基-3:6-二磺萘甲醇酞鈉鹽。	44090
酸性喹啉黃	2-(2-喹啉基)-1,3-茚滿二酮的二磺酸二鈉鹽。	47005

靛藍 (靛藍洋紅)	靛藍-5:5'-二磺酸二鈉鹽。	73015
雞冠花紅；莧菜 紅；藍光酸 性紅	1-(4-磺基-1-萘偶氮基)-2-萘酚基-3:6-二磺酸三鈉鹽。	16185
麗春紅4R	1-(4-磺基-1-萘偶氮基)-2-萘酚基-6:8-二磺酸三鈉鹽。	16255
Allura紅AC	6-羥基-5-[(2-甲氧基-5-甲基-4-磺苯基)-偶氮基]-2-萘磺酸二鈉鹽。	16035

(1970年第146號法律公告；1976年第102號法律公告；1982年第376號法律公告；1993年第368號法律公告；2008年第98號法律公告)

第II部—其他色素

類別	色素索引編號 (1982)
醬色	-
胭脂蟲紅(胭脂紅酸)	75470
食用水果或蔬菜的天然染色料，或從該等天然色素分離出來或人工合成的純色素，並包括—	
(a) 胭脂樹橙	75120
(b) 木炭	-
(c) 胡蘿蔔素	75130
(d) β -衍-8'-胡蘿蔔醛	40820
(e) β -衍-8'-胡蘿蔔酸乙酯	40825
(f) 葉綠素及葉綠酸	75810
包括銅的絡合物	75815
(g) 藏花	75100
(h) 羌黃(姜黃素)	75300
氧化鐵	77491
二氧化鈦	77891
只供糖衣藥丸外用染色及糖衣粉製甜點裝飾用的箔狀或粉狀銀、金及鋁	-
附表所列可溶於水的任何色素的鋁鹽或鈣鹽(色澱)	-

(1993年第368號法律公告)

附表：	2	染色料、色素及調味化合物的標籤	30/06/1997
-----	---	-----------------	------------

[第5(3)條]

1. 第5(3)條所關乎的容器，每個均須附有標籤，按以下其中一項聲明格式，以中英文印上真實的陳述—
- 就染色料而言—

THIS FOOD COLOUR CONFORMS
TO THE LEGAL REQUIREMENTS
OF HONG KONG
此食品色素符合香港法例規定

就色素及調味化合物而言—

THE FOOD COLOUR IN THIS
COMPOUND CONFORMS TO THE
LEGAL REQUIREMENTS OF
HONG KONG
此化合物內之食品色素符合
香港法例規定

但容器裝載分量如少於100克或100毫升(視屬何情況而定)，則標籤上以中英文清楚可閱地印有“食物色素”(FOOD COLOUR)、“食物色素及調味化合物”(FOOD COLOUR AND FLAVOURING COMPOUND)(視屬何情況而定)或意思相同的聲明，即已足夠。(1979年第89號法律公告)

2. 所有聲明均須以深色楷體字清楚可閱地印在淺色底上；按照前段但書所規定處理者除外，每項聲明均須印於圍線內，而圍線內不得印有任何其他東西。裝載分量超過1公斤或1升(視屬何情況而定)的容器，所用字體高度不得少於5毫米，裝載分量少於1公斤或1升但超過100克或100毫升(視屬何情況而定)的容器，所用字體高度則不得少於3毫米。(1979年第89號法律公告)

3. 標籤須穩固地貼在包裹物或容器上，或為包裹物或容器的一部分，而在任何情況下，均須貼放在清楚可見的位置，以及須為主要標籤的一部分或為貼近主要標籤的獨立標籤。

章：	132U	《食物內甜味劑規例》	憲報編號	版本日期
----	------	------------	------	------

		賦權條文	L.N. 225 of 2003	19/12/2003
--	--	------	------------------	------------

(第132章第55及143條)

[1970年1月1日]

(本為1969年第183號法律公告)

註：

本規例的引稱由《食物攪雜(人造糖)規例》修訂為《食物內甜味劑規例》—見2003年第225號法律公告。

條：	1	引稱	L.N. 225 of 2003	19/12/2003
----	---	----	------------------	------------

本規例可引稱為《食物內甜味劑規例》。

(2003年第225號法律公告)

條：	2	釋義	L.N. 225 of 2003	19/12/2003
----	---	----	------------------	------------

在本規例中，除文意另有所指外—

“航空過境貨物”(air transit cargo) 指在進口及托運出口時均是以飛機運載的過境物品；
(2000年第29號第5條)

“航空轉運貨物”(air transhipment cargo) 具有《進出口條例》(第60章)第2條給予該詞的涵義；
(2000年第29號第5條)

“甜味劑”(sweetener) 指任何帶甜味的化合物，但不包括糖或其他碳水化合物或多羥醇；
(2003年第225號法律公告)

“售賣”(sell) 包括為出售而展示、要約出售或為出售而管有；

“過境物品”(article in transit) 具有《進出口條例》(第60章)第2條給予該詞的涵義；
(2000年第29號第5條)

“碳水化合物”(carbohydrate) 指只含有碳、氫及氧的物質，其中氫及氧的比例與水的氫及氧的比例相同；

“糖”(sugar) 指任何可溶解於水中的帶甜味碳水化合物物質；

“機場貨物轉運區”(cargo transhipment area of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具有《進出口條例》(第60章)第2條給予該詞的涵義。
(2000年第29號第5條)

條：	3	限制出售與使用甜味劑	L.N. 225 of 2003	19/12/2003
----	---	------------	------------------	------------

(1) 任何人不得售賣、託付、交付或輸入任何非附表內所指明的甜味劑以供人食用。

(2) 任何人不得售賣、託付、交付或輸入任何含有非附表內所指明的甜味劑並擬供人食用的食物。

(2003年第225號法律公告)

條：	3A	對航空過境或航空轉運貨物的適用	L.N. 225 of 2003	19/12/2003
----	----	-----------------	------------------	------------

(1) 如第3條所述的甜味劑或食物屬航空過境貨物或航空轉運貨物，則該條不適用於該甜味劑或食物的輸入；但如該甜味劑或食物自其被帶進至運出香港的期間內被移離機場貨物轉運區，則為施行該條— (2003年第225號法律公告)

- (a) 該甜味劑或食物須當作是在被移離該區時輸入的；及
- (b) 將該甜味劑或食物作為航空過境貨物或航空轉運貨物而帶進香港或致使該甜味劑或食物被如此帶進香港的人，須當作在該甜味劑或食物被移離該區時是輸入該甜味劑或食物的人，

而除非是在(a)或(b)段所指的範圍內，第3條須在猶如本款不曾制定的情況下具有效力。

(2) 在檢控某人犯第4條所訂的罪行的法律程序中，如一

- (a) 該法律程序關乎輸入第3條所述並屬航空過境貨物或航空轉運貨物的甜味劑或食物；及
- (b) 控方需證明該甜味劑或食物自其被帶進至運出香港的期間內被移離機場貨物轉運區，

則該人如證明他已採取所有合理步驟和已盡了合理的努力以避免該甜味劑或食物被如此移離該區，則可以此作為免責辯護。

(3) 在任何法律程序中，凡第(2)款所訂的免責辯護涉及一項指稱，謂該罪行的發生是一

- (a) 另一人的作為或過失所致；或
- (b) 倚賴另一人所提供的資料所致，

則被告如沒有法院的許可，不得引用該免責辯護，但如被告於聆訊該法律程序前10天或之前，已向檢控人送達書面通知，提供被告在送達該通知時所知悉的關於一

- (i) 該另一人的一切詳情；及
- (ii) 該作為、過失或資料的一切詳情，

則屬例外。

(4) 任何人如擬引用第(2)款所訂的免責辯護，而所據的理由是他倚賴另一人所提供的資料，則除非他證明有鑑於整體情況，尤其是在顧及以下事宜後，倚賴該資料實屬合理，否則不得引用該免責辯護—

- (a) 他為核實該資料而已採取的步驟，及為核實該資料而理應已採取的步驟；及
- (b) 他是否有任何理由不相信該資料。

(2000年第29號第5條；2003年第225號法律公告)

條：	4	罪行及罰則	L.N. 225 of 2003	19/12/2003
----	---	-------	------------------	------------

任何人違反第3條的任何條文，即屬犯罪，一經循簡易程序定罪，可處第5級罰款及監禁6個月。

(1983年第299號法律公告；1987年第328號法律公告；1996年第177號法律公告)

條：	5	提出法律程序時可用的名義	L.N. 225 of 2003	19/12/2003
----	---	--------------	------------------	------------

在不損害與檢控刑事罪行有關的其他成文法則的條文，以及在不損害律政司司長關於檢控刑事罪行的權力的原則下，就本規例所訂罪行而作出的檢控，均可以食物環境衛生署署長的名義提出。

(1997年第362號法律公告；1999年第78號第7條)

附表：		附表	L.N. 61 of 2010	01/08/2010
-----	--	----	-----------------	------------

[第3條]

經准許的甜味劑

1. 醋磺內酯鉀
2. 縮二氨酸基酰胺
3. 天冬酰胺
4. 天冬酰胺-醋磺內酯鹽
5. 環己基氨基磺酸(和鈉、鉀、鈣鹽)
6. 糖精(和鈉、鉀、鈣鹽)
7. 三氯半乳蔗糖
8. 索馬甜
9. 紐甜 (2010年第61號法律公告)
10. 甜菊醇糖苷 (2010年第61號法律公告)

(附表由2003年第225號法律公告代替)

章：	132W	《食物及藥物(成分組合及標籤)規例》	憲報編號	版本日期
		賦權條文		30/06/1997

(第132章第55條)

[1960年11月11日] 1960年A132號政府公告

(本為1960年A74號政府公告)

條：	1	引稱		30/06/1997
----	---	----	--	------------

本規例可引稱為《食物及藥物(成分組合及標籤)規例》。

條：	2	釋義	L.N. 90 of 2014	13/12/2015
----	---	----	-----------------	------------

(1) 在本規例中，除文意另有所指外—

“反式脂肪酸”(trans fatty acids) 指所有含最少一個非共軛反式雙鍵的不飽和脂肪酸的總和；
(2008年第69號法律公告)

“加工製嫩肉類”(tenderized meat) 指經解肌酵素處理的肉類及取自經解肌酵素處理的活的動物或活的禽鳥的肉類； (1970年第116號法律公告)

“主管當局”(Authority) 指食物環境衛生署署長； (1999年第78號第7條)

“可獲得的碳水化合物”(available carbohydrates) 指總碳水化合物，但不包括膳食纖維；
(2008年第69號法律公告)

“奶類”(milk) 指牛奶，並包括忌廉及離脂奶，但不包括奶粉、煉奶、再造奶、水牛奶或山羊奶；
(1963年第32號第20條)

“奶類飲品”(milk beverage) 指將流質奶脂與從奶類衍生的其他固體合成的飲品，不論其中有無食物添加劑或其他物質； (1977年第217號法律公告)

“冰凍甜點”(frozen confection) 指任何通常以冰凍或冷藏狀態出售供人食用的甜點； (1969年第163號法律公告)

“再造奶”(reconstituted milk) 指將奶類的成分，即奶脂及從奶類衍生的其他固體(不包括其他物質)，再與水混合而成的產品，並包括冰凍濃縮奶經溶解而成的產品，而“再造奶”(to reconstitute milk) 須據此解釋； (1967年第30號法律公告)

“肉類”(meat) 指擬供人食用的—

(a) 任何動物的肉或其他可食部分；或

(b) 任何禽鳥的肉或其他可食部分； (1970年第116號法律公告；1985年第222號法律公告)

“食物添加劑國際編碼系統”(International Numbering System for Food Additives) 指食品法典委員會採用作識別在預先包裝食物的配料表中的食物添加劑的編碼系統； (2004年第85號法律公告)

“食品法典委員會”(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指世界衛生組織和糧食及農業組織為制訂食品標準、指引及相關文件而於1963年設立的團體； (2004年第85號法律公告)

“宣傳品”(advertisement) 指用意以公眾為對象，並以包括以下方式發布的任何形式的宣傳—

(a) 報章或其他刊物；

(b) 電視或電台廣播；

- (c) 電子訊息；
- (d) 陳列公告、告示、標籤、宣傳牌或貨品；
- (e) 派發樣品、傳單、貨品目錄、價目表或其他材料；或
- (f) 展示圖片或模型，或放映影片，

而“宣傳”(advertise)須據此解釋；(2008年第69號法律公告)

“配料”(ingredient)指用於製造或配製食物並繼續存在於製成品中的任何物質(即使形態已有所更改)，包括任何添加劑或合成配料的任何成分；(1985年第222號法律公告)

特殊醫用嬰幼兒配方產品(formula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指符合以下說明的產品—

(a) 該產品按照其描述或使用指示，是經特別加工或配製，用於符合指明情況的、年齡未滿36個月的人的膳食管理，及擬供該等人士作唯一食物或其中一種食物(即使該產品的描述或使用指示，如適用的話，也聲稱該產品適合年齡滿36個月的人士食用亦然)，上述指明情況，是指有關的人—

- (i) 進食、消化、吸收或代謝普通食物或其中某些營養素的能力，受到限制或損害；
- (ii) 經醫學斷定，具有特殊營養需要；或
- (iii) 不能僅靠食用作特殊膳食用途的其他食物或調節正常膳食，以達致其膳食管理；且

(b) 該產品只可在醫生指示下使用；(2014年第90號法律公告)

“准許染色料”(permitted colouring matter)指《食物內染色料規例》(第132章，附屬法例H)附表1所指明的染色料或該等染色料的任何混合物；

“能量”(energy)就任何食物而言，指由該食物提供的、符合以下說明的能量—

- (a) 以該食物所含的可獲得的碳水化合物(如該食物是嬰兒配方產品，則指總碳水化合物、蛋白質、總脂肪、乙醇及有機酸所提供的能量總數計算所得的；及(2014年第90號法律公告)
- (b) 按照食品法典委員會採用的《食典營養標籤準則》計算的；(2008年第69號法律公告)

“容器”(container)包括各類包封有物品或物質的箱盒、瓶、金屬罐、紙板箱盒、包裝或包裹物，但不包括因託付或交付而另加的外封套或外包裹物；

“添加劑”(additive)指於任何階段中添加於或使用於食物內或食物上面通常不視為或用作食物的任何物質，用以影響食物的耐藏性、組織、稠度、外形、味道、氣味、鹼性或酸性，或對食物起任何其他科技上的作用，並包括作用如前述般添加於或使用於食物內或食物上的加工處理助劑，但不包括—

- (a) 僅用以增強或增濃食物養分或回復食物成分的維他命、礦物質或其他營養素；
- (b) 用以調味的香草或香料；
- (c) 蛇麻子；
- (d) 鹽；
- (e) 酵母或酵母精；
- (f) 食物蛋白質任何水解作用或自溶作用的全部產品；
- (g) 發酵劑；
- (h) 麥芽或麥芽精；
- (i) 僅因添加於動物、禽鳥或魚的飼料而存在於食物中的物質，或僅因用於農作物耕作、畜牧、獸疾醫療或貯存所進行的某種程序或處理方法而存在於食物中的物質(包括任何除害劑、溴甲烷、發芽抑制劑或獸醫藥物)；或
- (j) 空氣或水分；(1985年第222號法律公告)

“售賣”(sell) 包括要約出售或為出售而展示以及為出售而管有，而“出售”(sale) 及“售出”(sold) 須據此解釋； (1985年第222號法律公告)

“飲食供應機構”(catering establishment) 指在業務運作中，配製食物交付最後消費者即時食用的食肆、食堂、會社、酒館、學校、醫院或其他機構(包括車輛、固定攤檔或流動攤檔)； (1985年第222號法律公告)

“最後消費者”(ultimate consumer) 指非為以下目的而進行購買的任何在香港的人—

- (a) 供轉售之用；
- (b) 供飲食供應機構之用；或
- (c) 供製造業之用； (1985年第222號法律公告)

較大嬰兒及幼兒配方產品 (follow-up formula) 指符合以下說明的產品—

- (a) 該產品按照其描述或使用指示—
 - (i) 被表述為母乳或嬰兒配方產品的替代品；及
 - (ii) 是擬供年齡滿6個月但未滿36個月的人，在逐步多元化膳食中，作為液體成分食用(即使該產品的描述或使用指示，如適用的話，也聲稱該產品適合任何其他年齡人士食用亦然)；或
- (b) 該產品被加上“較大嬰兒及幼兒配方產品”或“follow-up formula”的標記或標籤，或帶有具類似意思的任何其他文字； (2014年第90號法律公告)

“預先包裝食物”(prepackaged food) 指任何經全部或部分包裝食物以致—

- (a) 如不打開或不改變包裝，則不能將包裝內的食物變更；及
- (b) 該食物可隨時作為單份食品，交給最後消費者或飲食供應機構； (1985年第222號法律公告)

預先包裝嬰幼兒食物 (prepackaged food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指符合以下說明的預先包裝食物：該食物按照其描述或使用指示，是擬供年齡未滿36個月的人食用(即使該食物的描述或使用指示，如適用的話，也聲稱該食物適合年齡滿36個月的人士食用亦然)，但不包括嬰兒配方產品或較大嬰兒及幼兒配方產品； (2014年第90號法律公告)

煙酸 (niacin)—

- (a) 就嬰兒配方產品而言，指煙酰胺連同煙鹼酸；及
- (b) 就較大嬰兒及幼兒配方產品而言，指煙酰胺； (2014年第90號法律公告)

葉酸 (folic acid) 就嬰兒配方產品或較大嬰兒及幼兒配方產品而言，指N-蝶酰-L-谷氨酸； (2014年第90號法律公告)

“電離輻射”(ionizing radiation) 指任何能夠直接或間接產生離子的伽馬射線、X射線或微粒輻射，但下述的射線或輻射除外—

- (a) 由測量或檢查裝置發出的射線或輻射；及
- (b) 以不高於適當的最高水平的能量水平發出的射線或輻射； (1996年第80號法律公告)

維他命A (vitamin A)—

- (a) 在附表1第IV部及附表6A第1(1)及(3)條中，指按視黃醇當量或國際單位計算的所有反式視黃醇(以1 微克視黃醇當量相等於3.33國際單位計)；及
- (b) 在任何其他情況下，指有關食物所含的、按視黃醇當量計算的視黃醇及 β -胡蘿蔔素的總和(以6微克 β -胡蘿蔔素相等於1微克視黃醇當量計)； (2014年第90號法律公告)

維他命C (vitamin C)—

- (a) 就嬰兒配方產品而言，指抗壞血酸連同脫氫抗壞血酸；及
- (b) 就較大嬰兒及幼兒配方產品而言，指抗壞血酸； (2014年第90號法律公告)

維他命E (vitamin E)—

- (a) 就嬰兒配方產品而言，指按 α -生育酚當量或國際單位計算的d- α -生育酚(以1 國際

單位相等於0.67毫克 α -生育酚當量計)；及

- (b) 就較大嬰兒及幼兒配方產品而言，指按 α -生育酚當量或國際單位計算的 α -生育酚化合物—
 - (i) (來自天然成分的 α -生育酚化合物)以1國際單位相等於0.67毫克 α -生育酚當量計；或
 - (ii) (來自人工合成的 α -生育酚化合物)以1國際單位相等於0.45毫克 α -生育酚當量計； (2014年第90號法律公告)

維他命K (vitamin K) 就嬰兒配方產品或較大嬰兒及幼兒配方產品而言，指維他命K1； (2014年第90號法律公告)

“標籤”、“加上標籤”(labelling) 就食物而言，包括與食物有關並出現於食物包裝上或出現於附連食物的文件、告示、標籤、圓環或圈扣上的文字、詳細資料、商標、牌子名稱、圖畫或符號； (1985年第222號法律公告)

“糖”(sugars) 指所有存在於食物中的單糖和雙糖； (2008年第69號法律公告)

“膳食纖維”(dietary fibre) 指藉著就認可及核准食物及農作物測定方法而獲國際認可的、名為AOAC INTERNATIONAL的獨立組織所採用的任何正式方法而測定的任何纖維； (2008年第69號法律公告)

“輻照食物”(irradiated food) 指任何經電離輻射處理的食物； (1996年第80號法律公告；2008年第69號法律公告)

嬰兒配方產品 (infant formula) 指符合以下說明的產品—

- (a) 該產品按照其描述或使用指示，是擬作母乳的替代品食用的，且經特別製造，以在該人獲餵哺適當的補充食品之前，單憑該產品本身即滿足年齡為12個月及以下的人的營養需要(即使該產品的描述或使用指示，如適用的話，也聲稱該產品適合年齡滿12個月以上的人士食用亦然)；或 (2014年第90號法律公告)
- (b) 該產品被加上“嬰兒配方產品”或“infant formula”的標記或標籤，或帶有具類似意思的任何其他文字； (2014年第90號法律公告)

營養素 (nutrient) —

- (a) 指存在於食物中的、符合以下說明的任何物質—
 - (i) 屬以下其中一項類別，或是以下其中一項類別的成分—
 - (A) 蛋白質；
 - (B) 碳水化合物；
 - (C) 脂肪；
 - (D) 膳食纖維；
 - (E) 維他命；
 - (F) 礦物質；及
 - (ii) 符合以下任何條件—
 - (A) 該物質提供能量；
 - (B) 該物質是身體生長、發育及維持身體正常功能所需的；
 - (C) 缺少該物質，將導致出現生化或生理的特性變化；及
- (b) 在附表1 第IV 部及附表6A中，包括肌-肌醇，L-肉鹼及牛磺酸； (2014年第90號法律公告)

“營養素比較聲稱”(nutrient comparative claim) 指比較相同食物的不同版本的能量值或營養素含量水平的營養聲稱，或比較類似食物的不同版本的能量值或營養素含量水平的營養聲稱； (2008年第69號法律公告)

“營養素功能聲稱”(nutrient function claim) 指描述某營養素在身體生長、發育及維持身體正

常功能方面所擔當的生理角色的營養聲稱； (2008年第69號法律公告)

“營養素含量聲稱”(nutrient content claim) 指描述食物所含能量值或營養素含量水平的營養聲稱； (2008年第69號法律公告)

營養素表 (list of nutrients) —

(a) 就第4B條適用的預先包裝食物而言，指附表5第1條規定的營養素表；及

(b) 就嬰兒配方產品、較大嬰兒及幼兒配方產品或預先包裝嬰幼兒食物而言，指附表6A第1條規定的營養素表； (2014年第90號法律公告)

“營養素參考值”(nutrient reference value) 指附表7列出的任何參考值； (2008年第69號法律公告)

“營養聲稱”(nutrition claim) —

(a) 就第4B條適用的預先包裝食物而言，指附表5第1條規定的營養素表；及

(i) 能量值；

(ii) 蛋白質、可獲得的碳水化合物、總脂肪、飽和脂肪酸、反式脂肪酸、鈉及糖的含量；或

(iii) 維他命及礦物質的含量；及

(b) 包括營養素含量聲稱、營養素比較聲稱及營養素功能聲稱。 (2008年第69號法律公告)

(1A) 在第(1)款**較大嬰兒及幼兒配方產品**的定義中，提述母乳或嬰兒配方產品的替代品(**替代配方產品**)包括提述任何產品作為替代配方產品的替代品或任何替代配方產品其後的替代品。 (2014年第90號法律公告)

(1B) 為免生疑問，如任何產品兼屬第(1)款中**嬰兒配方產品**及**較大嬰兒及幼兒配方產品**的定義所指者，則就本規例而言，該產品須視作嬰兒配方產品，而不視作較大嬰兒及幼兒配方產品。 (2014年第90號法律公告)

(2) 為施行本規例，凡在業務運作中供應食物的地方，或在該等地方之內，或從該等地方，以非出售方式供應食物，須當作出售該食物，而凡提述買方之處，亦須據此解釋。 (1985年第222號法律公告)

(2008年第69號法律公告)

條：	3	成分組合標準	L.N. 90 of 2014	13/12/2015
----	---	--------	-----------------	------------

(1) 除第(2)款另有規定外，附表1所指明的食物及藥物的成分組合標準，即為該附表就該等食物及藥物而訂明的標準。 (2014年第90號法律公告)

(2) 附表1A所列項目，獲豁免而不受附表1第IV部的標準規限。 (2014年第90號法律公告)

(1996年第80號法律公告)

條：	4	加上標記及標籤		30/06/1997
----	---	---------	--	------------

附表2所指明的食物及藥物須依照該附表所訂明的方式加上標記及標籤。

(1996年第80號法律公告)

條：	4A	預先包裝食物的加上標籤	L.N. 90 of 2014	13/12/2015
----	----	-------------	-----------------	------------

(1) 在不影響第4、4B及4C條的原則下，除第(2)款另有規定外，預先包裝食物須依照附表3所訂明的方式加上標記及標籤。 (2008年第69號法律公告；2014年第90號法律公告)

(2) 附表4所列項目，按該附表所指明的範圍，豁免受本條的規定規限。

(3) 主管當局可藉憲報公告將附表4修訂。

(1985年第222號法律公告；1996年第80號法律公告)

條：	4B	預先包裝食物的營養標籤以及營養聲稱	L.N. 90 of 2014	13/12/2015
----	----	-------------------	-----------------	------------

(1) 在不影響第4、4A及4C條的原則下，除第(2)、(6)及(7)款另有規定外，預先包裝食物須符合附表5第1部的規定，加上標明其能量值及營養素含量的標記或標籤。(2014年第90號法律公告)

(2) 除第(3)及(4)款另有規定外，以下項目獲豁免而不受第(1)款規限—

- (a) 附表6第1部訂明的任何項目；或
- (b) 根據附表6第2部獲授予豁免的任何項目。

(3) 如—

- (a) 附表6第1部訂明的任何項目，被加上標明其能量值或任何營養素含量的標記或標籤；或
- (b) 在附表6第1部訂明的任何項目的標籤上或宣傳品中，有作出任何營養聲稱，

則第(1)款就該項目而適用。

(4) 如—

- (a) 根據附表6第2部獲授予豁免的任何項目，並無以主管當局所規定的方式加上標籤或陳列以供出售；或
- (b) 在根據附表6第2部獲授予豁免的任何項目的標籤上或宣傳品中，有作出任何營養聲稱，

則第(1)款就該項目而適用。

(5) 除第(6)及(7)款另有規定外，在預先包裝食物的標籤上或宣傳品中作出的任何營養聲稱，均須符合附表5第2部的規定。(2014年第90號法律公告)

(6) 本條不適用於—

- (a)-(b) (由2014年第90號法律公告廢除)
- (c) 供特殊膳食之用的食物。(2014年第90號法律公告)

(7) 在不影響第(6)款的原則下，如預先包裝食物(該食物)是嬰兒配方產品、較大嬰兒及幼兒配方產品或預先包裝嬰幼兒食物，則本條只在以下情況下適用於該食物：該食物的描述或使用指示，聲稱該食物適合年齡滿36個月的人士食用。(2014年第90號法律公告)

(2008年第69號法律公告)

條：	4C	嬰兒配方產品、較大嬰兒及幼兒配方產品及預先包裝嬰幼兒食物的營養標籤	L.N. 90 of 2014	13/06/2016
----	----	-----------------------------------	-----------------	------------

(1) 在不影響第4、4A及4B條的原則下，除第(2)款另有規定外，任何嬰兒配方產品、較大嬰兒及幼兒配方產品或預先包裝嬰幼兒食物，須符合附表6A的規定，加上標明其能量值及營養素含量的標記或標籤。

(2) 附表6B所列項目，獲豁免而不受第(1)款的規定規限。

(2014年第90號法律公告)

條：	5	罪行及罰則	L.N. 90 of 2014	13/06/2016
----	---	-------	-----------------	------------

* (1) 除第3(2)條另有規定外，如任何人為出售而宣傳、售賣或為供出售而製造任何食物或藥物，而該食物或藥物的成分組合，不符合附表1所訂明的有關規定，或該食物或藥物並無依照附表2所訂明的方式，加上標記及標籤，該人即屬犯罪，可處第5級罰款及監禁6個月。(1985年第222號

法律公告；1987年第330號法律公告；1996年第80號法律公告；1996年第177號法律公告；2008年第69號法律公告；2014年第90號法律公告)

(1AA) 任何人為出售而宣傳、售賣或為供出售而製造任何符合以下說明的預先包裝食物，即屬犯罪，可處第5級罰款及監禁6個月—

(a) 並無符合第4A(1)或4B(1)條的規定加上標記或標籤；或

(b) 在其標籤上有任何不符合第4B(5)條的規定的營養聲稱。 (2008年第69號法律公告)

(1AB) 如一

(a) 任何人為出售而宣傳任何預先包裝食物；及

(b) 該宣傳品中含有任何不符合第4B(5)條的規定的營養聲稱，

該人即屬犯罪，可處第5級罰款及監禁6個月。 (2008年第69號法律公告)

(1AC) 如任何人為出售而宣傳、售賣或為供出售而製造任何嬰兒配方產品、較大嬰兒及幼兒配方產品或預先包裝嬰幼兒食物，而該產品或食物並無符合第4C(1)條的規定，加上標記或標籤，該人即屬犯罪，可處第5級罰款及監禁6個月。 (2014年第90號法律公告)

(1A) 任何人在為施行附表3的規定而加上標記或標籤的食物上所示的“此日期或之前食用”日期之後將食物售賣，即屬犯罪，可處第5級罰款及監禁6個月。 (1996年第80號法律公告；1996年第177號法律公告；2008年第10號第56條)

(1B) 凡任何人不是原本負責為施行第4、4A、4B或4C條的規定而在食物或藥物上加上標記或標籤的製造商或包裝商，如該人更改、移去或塗掉如此加上標記或標籤的食物或藥物的標記或標籤，該人即屬犯罪，可處第5級罰款及監禁6個月。 (1996年第80號法律公告；1996年第177號法律公告；2008年第69號法律公告；2014年第90號法律公告)

(2) 在就第(1)、(1AA)或(1AB)款所訂的與發布宣傳品有關的罪行而提起的法律程序中，被告人如證明以下其中一項，即可以之作為免責辯護— (2008年第69號法律公告)

(a) 於發布或安排發布有關的宣傳品前，被告人已採取一切合理步驟，以確保該宣傳品中的所有營養聲稱均符合第4B(5)條的規定；或

(b) 被告人的業務是發布或安排發布宣傳品，而有關的宣傳品是被告人在通常業務運作中收受以作發布的。 (2008年第69號法律公告)

(2A) 在就關於發布宣傳品的第(1AC)款所訂的罪行而提起的法律程序中，被告人如證明自己的業務是發布或安排發布宣傳品，而有關的宣傳品是被告人在通常業務運作中收受以作發布的，即為免責辯護。 (2014年第90號法律公告)

(3) 在就關於出售並無符合第4、4A(1)或4B(1)條的規定加上標記或標籤的預先包裝食物的、第(1)或(1AA)款所訂的罪行而提起的法律程序中，被告人如證明自己已於要約出售該食物之前，採取一切合理步驟，以確保該食物如此加上標記或標籤，即為免責辯護。 (1985年第222號法律公告；1996年第80號法律公告；2008年第69號法律公告；2014年第90號法律公告)

(3A) 在不影響第(3)款的原則下，在就第(1AA)款所訂的與任何沒有按照附表3第2(4E)條加上標記或標籤的預先包裝食物的罪行有關而提起的法律程序中，被告人如證明以下任何一項，即為免責辯護— (2008年第69號法律公告)

(a) 他合理和真誠地倚賴有關進口商或製造商所提供的關於該食物是否由該條提述的任何物質組成或該食物是否含有任何該等物質的資料；或 (2008年第69號法律公告)

(b) (i) 他已盡最大努力向有關進口商或製造商索取該資料，但並未獲提供該資料；及

(ii) 他已真誠地在該食物上加上標記，表示他不知道該食物是否由任何該等物質組成或該食物是否含有任何該等物質。 (2004年第85號法律公告及2004年第139號法律公告)

(3B) 在就關於出售並無符合第4C(1)條的規定加上標記或標籤的嬰兒配方產品、較大嬰兒及幼兒配方產品或預先包裝嬰幼兒食物的、第(1AC)款所訂的罪行而提起的法律程序中，被告人如證明

自己已於要約出售該產品或食物之前，採取一切合理步驟，以確保該產品或食物如此加上標記或標籤，即為免責辯護。（2014年第90號法律公告）

(4) 在就第(1B)款所訂的罪行而提起的法律程序中，被告人如證明每項更改、移去或塗掉(就其被指稱犯罪者)，是在一名能夠作出該項更改、移去或塗掉而並無違反該條文的人的書面授權下作出的，即為免責辯護。（1996年第80號法律公告）

註：

* 本條受《2003年食物及藥物(成分組合及標籤)(修訂)規例》(2003年第226號法律公告)第3條及《2004年食物及藥物(成分組合及標籤)(修訂)規例》(2004年第85號法律公告)第6條的過渡性條文影響。

2003年第226號法律公告第3條的內容載錄如下—

“3. 過渡性條文

在2005年6月18日或以前為出售而宣傳、售賣或為供出售而製造任何預先包裝食物，在以下情況下不構成《食物及藥物(成分組合及標籤)規例》(第132章，附屬法例W)(“主體規例”)第5(1)條所訂罪行：該食物含有任何按經本規例修訂後的主體規例附表3第2(6)段中指明的所屬類別之外的類別表列的添加劑，而該添加劑是按倘若本規例並未實施則本會主體規例附表3第2(6)段中指明的所屬類別表列的。”

2004年第85號法律公告第6條的內容載錄如下—

“6. 過渡性條文

如任何沒有按照經本規例修訂的《食物及藥物(成分組合及標籤)規例》(第132章，附屬法例W)(“主體規例”)附表3第2及4段的規定加上標籤的預先包裝食物，是按照假使本規例不曾實施即會是主體規例附表3第2及4段規定的規定加上標籤的，則在2007年7月9日當日或以前，為出售而宣傳、售賣或為供出售而製造該預先包裝食物不構成主體規例第5(1)條所訂的罪行。(2004年第139號法律公告)”。

條：	6	提出法律程序時可用的名義	L.N. 320 of 1999	01/01/2000
----	---	--------------	------------------	------------

在不損害與檢控刑事罪行有關的其他成文法則的條文，以及在不損害律政司司長關於檢控刑事罪行的權力的原則下，就本規例任何條文所訂罪行而作出的檢控—（1997年第362號法律公告）

- (a) 凡罪行是就藥物而犯的，均可以衛生署署長的名義提出；（1989年第76號法律公告）
- (b) 凡罪行是就食物而犯的，均可以食物環境衛生署署長的名義提出。（1999年第78號第7條）
- (c) (由1999年第78號第7條廢除)

(1967年第30號法律公告)

條：	7	對其他須加上標籤規定的遵從		30/06/1997
----	---	---------------	--	------------

本規例不得解釋為豁免任何人遵從本條例中任何其他關於在食物加上標籤的條文。

(1985年第222號法律公告)

附表：	1	L.N. 90 of 2014	13/12/2015
-----	---	-----------------	------------

[第2、3及5條及附表1A及2]

(1996年第80號法律公告；2008年第69號法律公告；2014年第90號法律公告)

(本附表中所提述的比例或百分率指按重量計算的比例或百分率)

第IA部

優良製造規範

就本附表而言，“優良製造規範”(good manufacturing practice) 包括符合下列各項規定的製造規範—

- (a) 添加於食物內的添加劑分量，以發揮該添加劑的預期作用所需的最低分量為限；
- (b) 因用於製造、加工處理或包裝某食物而成為該食物的成分的添加劑，如並非為對該食物本身發揮任何物理或其他技術作用而使用，其分量被減低至合理地可能的程度；及
- (c) 有關添加劑的配製和處理方式，與配製和處理食物配料的方式一樣。

(2004年第207號法律公告)

第I部

食物及藥物(奶類、奶類產品及嬰兒配方產品除外)的成分組合

(2014年第90號法律公告)

1. 藥物及藥物的配料與合成部分須分別符合《英國藥典》或《英國藥制規定》所指明的標準。
2. 人造牛油須為任何類似牛油而非屬溶合奶類的牛油的食物，不論其本身有否混合牛油。人造牛油不得發出酸敗氣味，且不得含有超過16%水分或10%牛油脂肪。
3. 咖啡須為阿拉伯咖啡樹及其他種類咖啡樹的種子，且不得含有任何雜質。
4. 豬油須為提煉自豬肉的淨化脂肪，含有提煉過程中無可避免摻加的非豬脂肪物質不得超過1%，水分亦不得超過1%，且不得含有任何雜質。
5. 醋須為完全衍生自酒精及醋酸發酵而中間不經蒸餾的液體，每100立方厘米所含醋酸不得少於4.0克，且除焦糖外，不得含有任何其他雜質。
6. 麥芽醋須為第5項所訂明的醋，但須完全衍生自發芽的大麥(不論有否添加穀類)，而發芽大麥的澱粉是經麥芽的糖化而變成甜味的。
本項或第5項所訂明的規定不適用於以浙醋、白醋或黑醋名稱售出的中國土醋。(1975年第45號法律公告)
7. 蜜糖所含蔗糖不得超過5%。
8. 發粉所產生的剩餘二氧化碳不得超過其本身重量的1.5%，而所產生的可用二氧化碳則不得少於

其本身重量的8%。剩餘二氧化碳及可用二氧化碳的重量是分別按以下方法釐定的一

(a) 剩餘二氧化碳—

將2克發粉樣本用25毫升水處理，在沸水池內蒸發至乾，然後再用25毫升水處理，以同樣方式蒸發。經上述方法處理的樣本，於室內溫度中再用超量稀硫酸處理，以燒煮或減壓方法使氣體完成散發，而所散發氣體的重量即為剩餘二氧化碳的重量。

(b) 可用二氧化碳—

二氧化碳的總重量與按(a)分節所訂明的方式處理發粉樣本所得剩餘二氧化碳重量之差，即為可用二氧化碳的重量。將類似的發粉樣本，於室內溫度中用超量稀硫酸處理，燒煮5分鐘或以減壓方法使氣體完成散發，即可藉確定所散發氣體的重量而決定二氧化碳的總重量。

第II部

奶類及奶類產品的成分組合

9. 奶類及再造奶所含奶脂不得少於3.25%，而除奶脂外，奶類及再造奶中的奶類固體含量不得少於8.5%。

9A. 奶類飲品所含奶脂不得少於0.1%。（1977年第217號法律公告）

9B. 脫脂奶所含奶脂不得多於0.3%，而除奶脂外，脫脂奶中的奶類固體含量不得少於8.5%。（1996年第80號法律公告）

9C. 半脫脂奶所含奶脂不得少於1.5%和不得多於1.8%，而除奶脂外，半脫脂奶中的奶類固體含量不得少於8.5%。（1996年第80號法律公告）

10. 忌廉須由奶類含豐富脂肪的部分組成，並經以下方法製成一

(a) 凝塊忌廉—用加熱、冷卻及脫脂方法離脂製成；及

(b) 其他忌廉—用脫脂或其他方法離脂而成。（1977年第217號法律公告）

11. (1) 除第(2)至(6)節另有規定外，不論冠以什麼名稱，忌廉(包括淡忌廉、稀忌廉、咖啡忌廉、拌水果忌廉或再造忌廉)所含奶脂不得少於18%。

(2) 消毒忌廉所含奶脂不得少於23%。

(3) 半忌廉及消毒半忌廉所含奶脂不得少於12%。

(4) 攪用忌廉及已攪忌廉所含奶脂不得少於35%。

(5) 二次分離稀忌廉及濃忌廉所含奶脂不得少於48%。

(6) 凝塊忌廉所含奶脂不得少於55%。（1977年第217號法律公告）

12. (1) 除第(1A)、(1B)、(1C)、(1D)、(1E)、(3)及(6)節另有規定外，忌廉除含有本附表第III部第3分部第2欄指明的添加劑(以該分部第3欄就有關添加劑所指明的含量為上限)以外，不得含有任何配料。（2004年第207號法律公告）

(1A) 忌廉中可加入以下配料作為穩定劑或增稠劑—

(a) 單從奶類或乳清衍生並含有任何類別的奶類蛋白質達到或超過35%的配料；及

(b) 奶粉。

有關配料及奶粉的總分量為在每千克忌廉中不得多於20克。(2004年第207號法律公告)

(1B)忌廉中可加入明膠和澱粉作為穩定劑，其分量由優良製造規範所管限。(2004年第207號法律公告)

(1C)已攪忌廉及用噴霧劑容器裝載的忌廉可含有二氧化碳、氮或一氧化二氮作為包裝氣體或推進劑。(2004年第207號法律公告)

(1D)發酵忌廉可含有無害微生物發酵劑。(2004年第207號法律公告)

(1E)發酵忌廉及酸化忌廉可含有一

(a) 氯化鈉；

(b) 粗製凝乳酶；或

(c) 其他可供人安全食用的有凝結作用的酵素。(2004年第207號法律公告)

(2) (由2004年第207號法律公告廢除)

(3) 售出或交付予製造商作為其製造業務用途或售出或交付予飲食供應商作為其飲食供應業務用途的忌廉，以及已攪忌廉及用噴霧劑容器裝載的忌廉，可含有不超過13%的糖。(2004年第207號法律公告)

(4)-(5) (由2004年第207號法律公告廢除)

(6) 凝塊忌廉可含有尼生素。(1977年第217號法律公告)

13. 由奶類與忌廉混合而成，稱為“兩種成分各半”的產品，其所含奶脂不得少於11.5%。

13A. 由再合成忌廉或再造忌廉與再合成奶或再造奶製成，稱為再合成或再造“兩種成分各半”的產品，其所含奶脂不得少於11.5%。

14. 加糖煉奶或加糖淡奶須為其部分水分經蒸發並加糖製煉而成的奶類，其所含奶類固體總量不得少於28%，奶脂則不得少於8%，且除糖、鹽(氯化鈉)及本附表第III部第1分部第2欄指明的添加劑(以該分部第3欄相對於該添加劑之處指明的含量為上限)以外，不得含有任何雜質。(2004年第85號法律公告；2014年第90號法律公告)

15. 加糖脫脂煉奶或加糖離脂煉奶須為其部分水分經蒸發並加糖製煉而成的脫脂奶或離脂奶，其所含奶類固體(包括脂肪)總量不得少於24%，且除糖、鹽(氯化鈉)及本附表第III部第1分部第2欄指明的添加劑(以該分部第3欄相對於該添加劑之處指明的含量為上限)以外，不得含有任何雜質。(1961年A48號政府公告；2004年第85號法律公告；2014年第90號法律公告)

16. 不加糖煉奶或不加糖淡奶須為其部分水分經蒸發並加熱處理製煉而成的奶類，其所含奶類固體總量不得少於25.5%，奶脂則不得少於7.8%，且除鹽(氯化鈉)及本附表第III部第1分部第2欄指明的添加劑(以該分部第3欄相對於該添加劑之處指明的含量為上限)以外，不得含有任何雜質。(2004年第85號法律公告；2014年第90號法律公告)

17. 不加糖脫脂或離脂煉奶或不加糖脫脂或離脂淡奶須為其部分水分經蒸發並加熱處理製煉而成的脫脂奶或離脂奶，其所含奶類固體(包括脂肪)總量不得少於20%。(1961年A48號政府公告)

18. 牛油須為由奶類或忌廉攪製而成，無酸敗氣味的淨化脂肪物質，其所含奶脂不得少於80%，水分不得超過16%，而鹽(氯化鈉)則不得超過4%。牛油不得摻有任何雜質脂肪或雜質油類，且除鹽(氯化鈉)、准許染色料及本附表第III部第2分部第2欄指明的添加劑(以該分部第3欄相對於該添加劑之處指明的含量為上限)外，不得含有任何雜質。(2004年第85號法律公告；2014年第90號法律公告)

19. 乳酪須為採用粗製凝乳酶或酸性物質使奶類凝結而成的固體或半固體產品，可加入或不加入促進發酵的酵素、調味品、鹽(氯化鈉)及准許染色料。乳酪所含的不含水分奶脂不得少於30%，且不得含有任何雜質脂肪。(2014年第90號法律公告)

20. 忌廉乳酪須為用奶類及忌廉製造的乳酪，其所含的不含水分奶脂不得少於60%。

21. 全脂奶類乳酪須為用奶類製造的乳酪，其所含的不含水分奶脂不得少於50%。

22. 脫脂奶類乳酪須為用部分脫脂奶類製造的乳酪，其所含的不含水分奶脂不得少於10%。

23. 印度酥油須由奶類(包括水牛奶)製成，且除衍生自該奶類的脂肪外，不得含有任何其他脂肪。

24. 雪糕所含脂肪不得少於5%，糖不得少於10%，而脂肪以外的奶類固體則不得少於7 1/2%：

但雪糕如含有任何水果、果肉或果漿，則須符合上述標準或以下的標準：雪糕的脂肪、糖及脂肪以外的奶類固體的總含量不得少於雪糕(包括水果、果肉或果漿(視屬何情況而定))的25%，而在此等脂肪、糖及脂肪以外的奶類固體的總含量中，所包括的脂肪不得少於7 1/2%，糖不得少於10%，而脂肪以外的奶類固體則不得少於2%。

就上述有關雪糕的標準而言，“糖”(sugar)指蔗糖、糖或衍生自澱粉的任何帶甜味固體物質，但雪糕所含蔗糖不得少於7 1/2%。

第III部

若干奶類產品中的添加劑

第1分部

加糖煉奶、加糖淡奶、加糖脫脂煉奶、 加糖離脂煉奶、不加糖煉奶 及不加糖淡奶中的添加劑

項	添加劑	最高含量
固化劑		
1.	氯化鉀	凡含有一種添加劑，每千克含2克在無水物質狀態的該添加劑；凡含有多於一種添加劑，每千克含3克在無水物質狀態的該等添加劑
2.	氯化鈣	
穩定劑		
3.	檸檬酸鈉類	凡含有一種添加劑，每千克含2克在無水物質狀態的該添加劑；凡含有多於一種添加劑，每千克含3克在無水物質狀態的該等添加劑
4.	檸檬酸鉀類	
5.	檸檬酸鈣類	

酸度調節劑

6.	碳酸鈣類	凡含有一種添加劑，每千克含2克在無水物質狀態的該添加劑；凡含有多於一種添加劑，每千克含3克在無水物質狀態的該等添加劑
7.	磷酸鈉類	
8.	磷酸鉀類	
9.	磷酸鈣類	
10.	二磷酸鹽類	
11.	三磷酸鹽類	
12.	聚磷酸鹽類	
13.	碳酸鈉類	
14.	碳酸鉀類	

增稠劑

15.	卡拉膠	每千克含150毫克
-----	-----	-----------

乳化劑

16.	卵磷脂	受優良製造規範限制
-----	-----	-----------

第2分部

牛油中的添加劑

項	添加劑	最高含量
---	-----	------

酸度調節劑

1.	磷酸鈉類	 每千克含2克 受優良製造規範限制
2.	碳酸鈉	
3.	碳酸氫鈉	
4.	氫氧化鈉	
5.	氫氧化鈣	

(2014年第90號法律公告)

第3分部

忌廉中的添加劑

項	添加劑	最高含量
---	-----	------

穩定劑

1.	碳酸鈣類	 受優良製造規範限制
2.	乳酸鈉	
3.	乳酸鉀	

- | | | |
|-----|-------|--|
| 4. | 乳酸鈣 | |
| 5. | 檸檬酸鈉類 | |
| 6. | 檸檬酸鉀類 | |
| 7. | 檸檬酸鈣類 | |
| 8. | 硫酸鈣 | |
| 9. | 磷酸鈉類 | } 無論使用一種或多於一種添加劑，每千克含2克(以五氧化二磷(P ₂ O ₅)計) |
| 10. | 磷酸鉀類 | |
| 11. | 磷酸鈣類 | |
| 12. | 二磷酸鹽類 | |
| 13. | 三磷酸鹽類 | |
| 14. | 聚磷酸鹽類 | |

酸度調節劑

- | | | |
|-----|--------------|-------------|
| 15. | 碳酸鈉類 | } 受優良製造規範限制 |
| 16. | 碳酸鉀類 | |
| 17. | 乳酸(左旋、右旋和消旋) | |
| 18. | 檸檬酸 | |

增稠劑及乳化劑

- | | | |
|-----|-------------------|-------------|
| 19. | 卵磷脂 | } 受優良製造規範限制 |
| 20. | 藻朊酸 | |
| 21. | 藻朊酸鈉 | |
| 22. | 藻朊酸鉀 | |
| 23. | 藻朊酸鉍 | |
| 24. | 藻朊酸鈣 | |
| 25. | 瓊脂 | |
| 26. | 卡拉膠及其鈉、鉀及鉍鹽 | |
| 27. | 角豆膠 | |
| 28. | 瓜耳膠 | |
| 29. | 阿拉伯膠 | } 每千克含1克 |
| 30. | 黃原膠 | |
| 31. | 結冷膠 | |
| 32. | 聚氧乙烯(20)山梨醇酐單月桂酸酯 | |
| 33. | 聚氧乙烯(20)山梨醇酐單油酸酯 | |
| 34. | 聚氧乙烯(20)山梨醇酐單棕櫚酸酯 | |
| 35. | 聚氧乙烯(20)山梨醇酐單硬脂酸酯 | |
| 36. | 聚氧乙烯(20)山梨醇酐三硬脂酸酯 | |
| 37. | 果膠類 | } 受優良製造規範限制 |
| 38. | 纖維素 | |
| 39. | 甲基纖維素 | |
| 40. | 羥丙基纖維素 | |

41. 經丙基甲基纖維素
42. 甲基乙基纖維素
43. 羧甲基纖維素鈉
44. 脂肪酸一甘油酯和脂肪
酸二甘油酯
45. 醋酸和脂肪酸甘油酯
46. 乳酸和脂肪酸甘油酯
47. 檸檬酸和脂肪酸甘油酯
48. 氯化鉀
49. 氯化鈣
50. 磷酸單澱粉
51. 用三偏磷酸鈉酯化的磷酸
雙澱粉；用磷酰氯酯化的
磷酸雙澱粉
52. 磷酸鹽化磷酸雙澱粉
53. 乙酰化磷酸雙澱粉
54. 用乙酐酯化的乙酸澱粉
55. 乙酰化己二酸雙澱粉
56. 經丙基澱粉
57. 經丙基磷酸雙澱粉
58. 辛烯基琥珀酸鈉澱粉

} 受優良製造規範限制

(2004年第207號法律公告)

第IV部

嬰兒配方產品的能量及營養成分組合

第1分部—能量值

	每100毫升的最低含量(以 按照所提供的任何使用指 示調製後或供食用的形式)	每100毫升的最高含量(以 按照所提供的任何使用指 示調製後或供食用的形式)
能量	60千卡或250千焦	70千卡或295千焦

第2分部—營養素含量

項	營養素	最低含量		最高含量	
		每100千卡	每100千焦	每100千卡	每100千焦
蛋白質					
1.	蛋白質(以牛奶蛋白質為基礎的)	1.8克	0.45克	3.0克	0.7克

嬰兒配方產品)					
2.	蛋白質(以大豆分離蛋白質為基礎的嬰兒配方產品)	2.25克	0.5克	3.0克	0.7克
脂肪					
3.	總脂肪	4.4克	1.05克	6.0克	1.4克
4.	亞油酸	300毫克	70毫克	—	—
5.	α -亞麻酸	50毫克	12毫克	—	—
碳水化合物					
6.	總碳水化合物	9.0克	2.2克	14.0克	3.3克
維他命					
7.	維他命A	60微克	14微克	180微克	43微克
	視黃醇	視黃醇	視黃醇	視黃醇	視黃醇
	當量	當量	當量	當量	當量
8.	維他命D3	1微克	0.25微克	2.5微克	0.6微克
9.	維他命E	0.5毫克	0.12毫克	—	—
	α -生育酚	α -生育酚			
	當量	當量			
10.	維他命K	4微克	1微克	—	—
11.	硫胺素	60微克	14微克	—	—
12.	核黃素	80微克	19微克	—	—
13.	煙酸	300微克	70微克	—	—
14.	維他命B6	35微克	8.5微克	—	—
15.	維他命B12	0.1微克	0.025微克	—	—
16.	泛酸	400微克	96微克	—	—
17.	葉酸	10微克	2.5微克	—	—
18.	維他命C	10毫克	2.5毫克	—	—
19.	生物素	1.5微克	0.4微克	—	—
礦物質					
20.	鐵	0.45毫克	0.1毫克	—	—
21.	鈣	50毫克	12毫克	—	—
22.	磷	25毫克	6毫克	—	—
23.	鎂	5毫克	1.2毫克	—	—

24.	鈉	20毫克	5毫克	60毫克	14毫克
25.	氯化物	50毫克	12毫克	160毫克	38毫克
26.	鉀	60毫克	14毫克	180毫克	43毫克
27.	錳	1微克	0.25微克	—	—
28.	碘	10微克	2.5微克	—	—
29.	硒	1微克	0.24微克	—	—
30.	銅	35微克	8.5微克	—	—
31.	鋅	0.5毫克	0.12毫克	—	—
其他					
32.	膽鹼	7毫克	1.7毫克	—	—
33.	肌-肌醇	4毫克	1毫克	—	—
34.	L-肉鹼	1.2毫克	0.3毫克	—	—
35.	牛磺酸(如加入)	—	—	12毫克	3毫克

第3分部—其他規定

1. 亞油酸與 α -亞麻酸的比例，最少須為5:1，但不得多於15:1。
2. 鈣與磷的比例，最少須為1:1，但不得多於2:1。
3. 月桂酸與肉豆蔻酸的混合含量，不得超過脂肪酸總含量的20%。
4. 反式脂肪酸的含量，不得超過脂肪酸總含量的3%。
5. 芥酸的含量，不得超過脂肪酸總含量的1%。
6. 在任何情況下，維他命E 的含量於每克多元不飽和脂肪酸中，均不得少於0.5毫克 α -生育酚當量，而該含量是因應配方產品中的脂肪酸雙鍵的數量，按以下因素調整—
 - (a) 0.5毫克 α -生育酚當量/克亞油酸(18:2n-6)；
 - (b) 0.75毫克 α -生育酚當量/克 α -亞麻酸(18:3n-3)；
 - (c) 1.0毫克 α -生育酚當量/克花生四烯酸(20:4n-6)；
 - (d) 1.25毫克 α -生育酚當量/克二十碳五烯酸(20:5n-3)；
 - (e) 1.5毫克 α -生育酚當量/克二十二碳六烯酸(22:6n-3)。
7. 如有加入任何二十二碳六烯酸(DHA)—
 - (a) 花生四烯酸的含量，不得少於DHA的含量；及
 - (b) 二十碳五烯酸的含量，不得超過DHA的含量。

(2014年90號法律公告)
(2004年第85號法律公告；2004年第207號法律公告)

附表：	1A	獲豁免而不受附表1第IV部規限的項目	L.N. 90 of 2014	13/12/2015
-----	----	--------------------	-----------------	------------

[第3條]

1. 有加上符合以下所有說明的標記或標籤的特殊醫用嬰幼兒配方產品—

- (a) 有“特殊醫用配方產品”或“formula for special medical purposes”的字樣，或具類似意思的任何其他文字，該等字樣或文字屬在配方產品名稱中標明，或在包裝的顯眼處標明，而該處並不貼近包裝上的其他資料；
- (b) 有“在醫生指示下使用”或“USE UNDER MEDICAL SUPERVISION”的粗體字樣，或具類似意思的任何其他粗體文字，該等字樣或文字屬在包裝的顯眼處標明，而該處並不貼近包裝上的其他資料；
- (c) 述明“作(寫上該產品擬用於針對的疾病、失調或健康狀況，或該產品已知有效針對的疾病、失調或健康狀況)的膳食管理用途”的陳述，或具類似意思的任何其他文字；及
- (d) (凡沒有在該陳述中述明的疾病、失調或健康狀況的人食用該產品時，該產品對健康構成危險)有對該危險的警告陳述及解釋，該陳述及解釋屬在包裝的顯眼處以粗體字樣標明，而該處並不貼近包裝上的其他資料。

(附表1A由2014年第90號法律公告增補)

附表：	2	食物及藥物的標記及標籤	L.N. 90 of 2014	13/12/2015
-----	---	-------------	-----------------	------------

[第4及5條]

(1996年第80號法律公告；2008年第69號法律公告)

1. (由1996年第80號法律公告廢除)

2. 離脂奶、脫脂奶、部分脫脂奶、脫脂煉奶或脫脂淡奶及部分脫脂煉奶或部分脫脂淡奶。

(1) 每個盛載離脂奶、脫脂奶、部分脫脂奶、脫脂煉奶或脫脂淡奶或部分脫脂煉奶或部分脫脂淡奶的容器，均須附有標籤，按適用情況而印有以下其中一項聲明—

(a) 離脂奶—

SEPARATED MILK (離脂奶) Children under one year of age should not be fed on this milk except under medical advice. (除由醫生指導外不應用以餵哺一歲以下之嬰兒)

(b) 脫脂奶—

SKIMMED MILK

(脫脂奶)

Children under one year of age should not be fed on this milk except under medical advice.

(除由醫生指導外不應用以餵哺一歲以下之嬰兒)

(c) 部分脫脂奶—

PARTLY SKIMMED MILK

(部分脫脂奶)

Children under one year of age should not be fed on this milk except under medical advice.

(除由醫生指導外不應用以餵哺一歲以下之嬰兒)

(d) 脫脂煉奶或脫脂淡奶及部分脫脂煉奶或部分脫脂淡奶(按適用情況而採用以下其中一項聲明)—

CONDENSED SKIMMED MILK

(脫脂煉奶)

Children under one year of age should not be fed on this milk except under medical advice.

(除由醫生指導外不應用以餵哺一歲以下之嬰兒)

CONDENSED PARTLY SKIMMED MILK

(部分脫脂煉奶)

Children under one year of age should not be fed on this milk except under medical advice.

(除由醫生指導外不應用以餵哺一歲以下之嬰兒)

但在該等聲明內—

- (i) “(EVAPORATED)”及“蒸發”字樣或“(EVAPORATED)”及“淡”字樣可分別替代“(CONDENSED)”及“煉”字樣；
 - (ii) “(MACHINE-SKIMMED)”及“機械脫脂”字樣可分別替代“(SKIMMED)”及“脫脂”字樣；
 - (iia) “(SEMI-)”及“半”字樣可分別替代“(PARTLY)”及“部分”字樣；（1996年第80號法律公告）
 - (iii) 如奶類並無加糖，可在構成奶類名稱說明的英文字及中文字中分別加上“(UNSWEETENED)”及“未加糖”字樣；及
 - (iv) 如奶類已加有糖，須在構成奶類名稱說明的英文字及中文字中分別加上“(SWEETENED)”及“加糖”字樣。
- (2) 第(1)節所訂明的每項聲明均須—
- (a) 清楚可閱地以中英文標明；
 - (b) 以深色楷體字印在淺色底上，或以淺色楷體字印在深色底上；
 - (c) 圍以圍線；
 - (d) 在圍線內只載有第(1)節所訂明的內容。
- (3) 第(1)節所訂明的每項標籤，均須穩固地貼在容器上或構成容器的一部分，其位置須在容器的側面或頂部，以收清楚可見之效。
- (4) 標籤或容器上不得附有對訂明的聲明的評論或解釋。

3. 再造奶及忌廉。

- (1) 除第(2)節條文另有規定外，每個盛載再造奶或再造忌廉的容器均須清楚可閱地—
- (a) 標明“RECONSTITUTED MILK(再造奶)”或“RECONSTITUTED CREAM(再造忌廉)”字樣（視屬何情況而定），中文字及大楷英文字須同樣大小及同樣顯著，並須較容器上所見的其他中文字及英文字更為顯著；
 - (b) 以中文或英文或以中英文標明該內含物質加工處理者的姓名或名稱及地址；及
 - (c) 以中文或英文或以中英文標明該內含物質加工處理所用的熱處理方法的聲明。
- (2) (a) 每個盛載再造脫脂奶的容器均須附有主管當局所批准的標籤。（1985年第222號法律公告）
- (b) 主管當局除非信納以下條文已獲實質遵從，否則不得批准某項標籤—（1985年第222號法律公告）
- (i) 第(1)節中關於再造奶的條文；及
 - (ii) 第2項中關於脫脂奶的條文。

3A. 經巴士德消毒的忌廉及超高溫處理的忌廉。

(1) 除第(2)節另有規定外，每個盛載經巴士德消毒的忌廉或超高溫處理的忌廉的容器，均須清楚可閱地如下標明—

- (a) 以大楷英文字“PASTEURIZED”及中文字“巴士德消毒”標明；
- (b) 以大楷英文字“ULTRA HEAT TREATED”及中文字“超高溫處理”標明；或
- (c) 以大楷英文字“U.H.T.”及中文字“超高溫處理”標明，

或以上述各分節中的任何一個字或詞句標明。

(2) 第(1)節不適用於盛載凝塊忌廉的容器。

(1996年第80號法律公告)

4. 奶類。

每個盛載奶類的容器均須清楚可閱地以中文或英文或以中英文標明—

- (a) 奶類加工處理者的姓名或名稱及地址；及
- (b) 關於奶類加工處理所用的熱處理方法的聲明。

5. 含有奶類或再造奶的飲品。

(1) 每個盛載含有奶類或再造奶的飲品(其成分組合符合附表1第II部所指明的標準)的容器，均須清楚可閱地以中文或英文或以中英文標明—

- (a) 飲品加工處理者的姓名或名稱及地址；
- (b) 關於飲品加工處理所用的熱處理方法的聲明。

(2) 主管當局可在任何情況下免除或放寬第(1)(b)節的規定。 (1985年第222號法律公告)

6. 被描述為奶類或忌廉的飲品或類似奶類的飲品。

每個盛載以下飲品的容器—

- (a) 含有奶類或再造奶的飲品，但成分組合不符合附表1第II部所指明的標準；或
- (b) 為出售飲品而在任何名稱、商標或商品說明的描述中包括有“奶”或“忌廉”的中文字，或“milk”或“cream”的英文字，或任何暗示該飲品為奶類或忌廉或含有奶類或忌廉的中文字或英文字；或
- (c) 黃豆漿或椰汁(在整個椰子內者除外)，或任何其他在顏色、味道、外觀或稠度方面與奶類相似的飲品，

均須於顯眼位置清楚可閱地以中英文標明飲品主要配料的準確名稱說明。

6A. 較大嬰兒及幼兒配方產品。

任何盛載較大嬰兒及幼兒配方產品的容器，不得加上表明該產品適合年齡未滿6個月的人士食用的標記或標籤。 (2014年第90號法律公告)

7. 冰凍甜點。

每個盛載冰凍甜點的容器均須清楚可閱地以英文標明冰凍甜點製造者的姓名或名稱及地址。

(1969年第163號法律公告)

8. (由1985年第222號法律公告廢除)

9. 加工製嫩肉類。

- (a) 每個盛載加工製嫩肉類的容器均須清楚可閱地以大楷字母標明“(TENDERIZED MEAT)”和標明“加工製嫩肉類”中文字樣。
- (b) 無容器裝載或盛載的加工製嫩肉類須貼有或附有標籤，清楚可閱地以大楷字母標明“(TENDERIZED MEAT)”和標明“加工製嫩肉類”中文字樣。 (1970年第116號法律公告)

10. 輻照食物。

每個盛載輻照食物的容器均須清楚可閱地標明“輻照食物”中文字樣和以大楷英文字母標明“IRRADIATED”或“TREATED WITH IONIZING RADIATION”。 (1996年第80號法律公告)

(1967年第30號法律公告；1996年第80號法律公告)

附表：	3	預先包裝食物的標記及標籤	L.N. 90 of 2014	13/12/2015
-----	---	--------------	-----------------	------------

[第4A及5條及附表4及5]
(1996年第80號法律公告；2008年第69號法律公告)

1. 名稱或稱號

- (1) 預先包裝食物須加上標明其食物名稱或稱號的可閱標記或標籤。(1996年第80號法律公告)
- (2) 該食物名稱或稱號不得在任何方面就食物的性質有虛假、誤導或詐騙成分。(1996年第80號法律公告)
- (3) 如任何牌子名稱(包括任何花巧名稱)或任何商標，相當可能在食物性質的任何方面誤導買方，則須緊接在該名稱或商標之後印上“牌子”(Brand)或“商標”(TM)一詞(視屬何情況而定)，字體必須可閱及高度不少於3毫米。
- (4) 於本規例生效日期前已在香港用作某一食物的習慣名稱或傳統名稱，可繼續用作該食物的名稱，除非與直至主管當局藉憲報公告禁止使用該名稱為止。
- (5) 凡遺漏以下說明便會誤導買方，食物的名稱須包括或附有以下說明—
 - (a) 食物是粉狀的或在其他狀態；或
 - (b) 食物經弄乾、凍乾、冷凝、濃縮或煙燻，或經其他方法處理。

2. 配料表

- (1) 預先包裝食物須加上可閱的標記或標籤，用以表列食物的配料，該表並須冠以適當標題，而標題中須載有或包括任何“配料”(ingredients)、“成分組合”(composition)、“內含物質”(contents)的字樣或具類似意思的文字。(1996年第80號法律公告)
- (2) 除第(3)、(4)、(4A)及(4B)款另有規定外，各種配料須按其用於食物包裝時所佔的重量或體積，由大至小依次表列(佔食物體積不足5%的水分除外)。(1996年第80號法律公告；2008年第69號法律公告)
- (3) 如某種配料是以濃縮或脫水的形式用於食物，並會於食物配製供人食用時恢復水分，則決定該種配料在配料表上排列次序的重量或體積，可按其濃縮或脫水前的重量或體積計算。
- (4) 在不損害第(3)款的原則下，如擬以加水方法將濃縮或脫水的食物恢復水分，而該食物配料表的標題包括或附有“恢復水分產品的配料”(ingredients of the reconstituted product)或“即食產品的配料”(ingredients of the ready to use product)字樣，或其他意思相同的說明，則該食物的各種配料可按其於該食物按指示恢復水分後所佔的重量或體積，由大至小依次表列。(2008年第69號法律公告)
- (4A)在不損害第(4B)款的原則下，如食物由雜果、果仁、蔬菜、香料或草藥組成，或含有雜果、果仁、蔬菜、香料或草藥，而沒有一種雜果、果仁、蔬菜、香料或草藥的重量佔顯著多數，則在下述情況中，該等配料可無須按重量由大到小依次表列—(2008年第69號法律公告)
 - (a) 如屬完全由上述混合物組成的食物，配料表的標題乃包括或附有“可變比例”(invariable proportion)的字樣，或其他說明配料表列次序的性質的文字；或
 - (b) 如屬含有上述混合物的食物，列表中該等配料的名稱出現的部分附有“可變比例”(invariable proportion)的字樣，或其他說明該等配料表列次序的性質的文字。
- (1996年第80號法律公告)
- (4B) 在符合第(4D)款的規定下—(2008年第69號法律公告)
 - (a) 如某食物以存在某種配料為特性，該食物的標籤不得特別強調該種配料存在於該食物

- 中，除非標籤包括一項該種配料在重量方面佔該食物的最低百分率的聲明，或一項該種配料在該食物中的實際分量的聲明，而該百分率或分量乃在該種配料用於配製該食物時釐定者；
- (b) 如某食物以某種配料含量低為特性，該食物的標籤不得特別強調該種配料含量低，除非標籤包括一項該種配料在重量方面佔該食物的最高百分率的聲明，或一項該種配料在該食物中的實際分量的聲明，而該百分率或分量乃在該種配料用於配製該食物時釐定者。（1996年第80號法律公告）
- (4C) (a) 第(4B)款所規定的聲明，須載於—（2008年第69號法律公告）
- (i) 食物名稱的旁邊；或
- (ii) 在配料表內貼近有關配料的名稱處。
- (b) 第(4B)款所提述的某種配料在某食物中的實際分量，須藉提述內含物質的數量或該種配料的淨重量或淨體積而表示，而該項表示須符合第7(2)條的規定。（1996年第80號法律公告；2008年第69號法律公告）
- (4D) 就第(4B)款而言—（2008年第69號法律公告）
- (a) 在食物名稱中提述某種配料，本身並不構成特別強調該種配料的存在或低含量；
- (b) 在食物的標籤中提述某種用量小兼且只用作調味料的配料，本身並不構成特別強調該種配料的存在或低含量；及（1996年第80號法律公告；2008年第69號法律公告）
- (c) “配料”（ingredient）不包括任何營養素。（2008年第69號法律公告）
- (4E) (a) 如食物由下列任何物質組成，或含有下列任何物質—
- (i) 含有麩質的穀類（即小麥、黑麥、大麥、燕麥、裂穀小麥、它們的混合變種及它們的製品）；
- (ii) 甲殼類動物及甲殼類動物製品；
- (iii) 蛋類及蛋類製品；
- (iv) 魚類及魚類製品；
- (v) 花生、大豆及它們的製品；
- (vi) 奶類及奶類製品（包括乳糖）；
- (vii) 木本堅果及堅果製品，
- 該等物質的名稱須在配料表中指明。
- (b) 如食物由濃度達到或超過百萬分之十的亞硫酸鹽組成或含有上述濃度的亞硫酸鹽，有關的亞硫酸鹽的作用類別及其名稱須在配料表中指明。（2004年第85號法律公告）
- (5) 除本條例第58條另有規定及主管當局於個別情況下容許外，添加劑（第(7)款指明的添加劑除外）如構成食物的配料，須列明該添加劑的作用類別及—（2004年第85號法律公告；2008年第69號法律公告）
- (a) 其本身所用名稱；或（2014年第90號法律公告）
- (b) 它在食物添加劑國際編碼系統中的識別編號；或
- (c) 它在食物添加劑國際編碼系統中以“E”或“e”為詞頭的識別編號。（2004年第85號法律公告）
- (6) 就第(5)款而言，添加劑的作用類別為—（2004年第85號法律公告；2008年第69號法律公告）
- 上光劑(Glazing agent)
- 水分保持劑(Humectant)（2004年第85號法律公告）
- 色素(Colour)
- 抗氧化劑(Antioxidant)
- 抗結劑(Anti-caking agent)

防腐劑(Preservative)
 固化劑(Firming agent) (2004年第85號法律公告)
 乳化劑(Emulsifier)
 乳化鹽(Emulsifying salt)
 消泡劑(Anti-foaming agent)
 甜味劑(Sweetener) (2003年第226號法律公告)
 推進劑(Propellant) (2004年第85號法律公告)
 發泡劑(Foaming agent) (2004年第85號法律公告)
 酸味劑(Acid)
 酸度調節劑(Acidity regulator)
 增味劑(Flavour enhancer) (2004年第85號法律公告)
 增稠劑(Thickener)
 增體劑(Bulking agent) (2004年第85號法律公告)
 膠凝劑(Gelling agent)
 膨脹劑(Raising agent)
 穩定劑(Stabilizer)
 麵粉處理劑(Flour treatment agent) (2004年第85號法律公告)
 護色劑(Colour retention agent)。
 (2003年第226號法律公告；2004年第85號法律公告)

(7) 構成食物的配料並屬下列任何類別的添加劑，須按其所屬類別的名稱列明—

- (a) 調味料及調味劑(flavour and flavouring)；
- (b) 改性澱粉(modified starch)，

而“調味料”一詞，可視乎情況而用“天然”、“等同天然”、“人造”的字眼或該等字眼的組合形容。(2004年第85號法律公告)

3. 獲豁免食物的配料表

即使任何預先包裝食物獲豁免遵從第2條的規定，但如該食物附有標記或標籤表列其配料，則該配料表在各方面均須符合本附表的規定。

(2008年第69號法律公告)

4. “此日期前最佳”或“此日期或之前食用”日期的說明

(2008年第10號第57條)

- (1) 預先包裝食物須加上說明適當保質期的可閱的標記或標籤，即—
 - (a) 除(b)段適用的情況外，須說明“此日期前最佳”(best before)日期；及 (2008年第69號法律公告)
 - (b) 如預先包裝食物從微生物觀點看是非常易毀消的，因此在一段短時期之後相當可能對人類健康構成即時的危險，則須說明“此日期或之前食用”(use by)日期。
- (2) “此日期前最佳”(best before)日期須以下述方式說明—
 - (a) 以中文字“此日期前最佳”及英文字“best before”說明，並在旁列出如加以適當貯存，可合理地預期在該日及該日之前食物能保存其特質的日期；及
 - (b) 說明為保存食物的特質至上述日期而須遵照的貯存方法。
- (3) “此日期或之前食用”(use by)日期須以下述方式說明— (2008年第10號第57條)

- (a) 以中文字“此日期或之前食用”及英文字“use by”說明，並在旁列出如加以適當貯存，食物被推薦在該日或該日之前食用；及（2008年第10號第57條）
- (b) 說明為保存食物的品質屬性至上述日期而須遵照的貯存方法。
- (4) “此日期前最佳”（best before）日期須以阿拉伯數字或中英文表示，並且除第(7)款另有規定外，須以日、月及年表達，但以下情況則屬例外——（2004年第85號法律公告；2008年第69號法律公告）
 - (a) 如可合理地預期食物能保存其特質不超過3個月，該日期可以日及月表達；
 - (b) 如可合理地預期食物能保存其特質超過3個月但不超過18個月，而日期以中文字“底”一字緊隨其後並以“end”英文字加於日期前，該日期可以月及年表達；或
 - (c) 如可合理地預期食物能保存其特質超過18個月，而日期以中文字“底”一字緊隨其後並以“end”英文字加於日期前，該日期可以月及年表達，或可以年份表達。（2004年第85號法律公告）
- (5) “此日期或之前食用”（use by）日期須以阿拉伯數字或中英文表示，並且除第(7)款另有規定外，須以日及月表達，或以日、月及年表達。（2004年第85號法律公告；2008年第10號第57條；2008年第69號法律公告）
- (6) “此日期前最佳”（best before）日期或“此日期或之前食用”（use by）日期，可在食物標籤上與緊接該日期前面出現的字樣分開列出，但在該等字樣之後須提述該日期在何處出現。（2008年第10號第57條）
- (7) 如“此日期前最佳”（best before）日期或“此日期或之前食用”（use by）日期是以阿拉伯數字表示，則該日期須分別——（2008年第10號第57條）
 - (a) 以英文字母“DD”、“dd”、“D”或“d”並以中文字“日”標明日子；
 - (b) 以英文字母“MM”、“mm”、“M”或“m”並以中文字“月”標明月份；及
 - (c) 以英文字母“YY”、“yy”、“Y”或“y”並以中文字“年”標明年份，而日、月、年可按任何次序標明。（2004年第85號法律公告）

（1996年第80號法律公告；2008年第10號第57條）

5. 特別貯存方式或使用指示的陳述

- (1) 凡任何預先包裝食物的貯存需使用特別方法，該食物須加上陳述該等方法的可閱標記或標籤。
- (2) 凡任何預先包裝食物的適當使用需遵從特別指示，該食物須加上說明該等指示的可閱標記或標籤。
- (3) 任何根據本條列於食物的標記或標籤的陳述或指示，均須盡量符合本附表的其他規定。（2008年第69號法律公告）

6. 製造商或包裝商的姓名或名稱及地址

- (1) 除第(2)或(3)款另有規定外，預先包裝食物須加上可閱的標記或標籤，列明製造商或包裝商的全名或商業名稱及其註冊或主要辦事處的全址或詳情。（2008年第69號法律公告）
- (2) 預先包裝食物如屬以下情況，則第(1)款並不適用——（2008年第69號法律公告）
 - (a) 所加上的標記或標籤列有—
 - (i) 食物原產國家的說明；
 - (ii) 香港的經銷商或牌子擁有人的姓名或名稱；及
 - (iii) 香港的經銷商或牌子擁有人的註冊辦事處或主要辦事處的地址；及

- (b) 香港的經銷商或牌子擁有人已以書面將食物原產國家製造商或包裝商的全址通知主管當局。
- (3) 預先包裝食物如屬以下情況，則第(1)款並不適用— (2008年第69號法律公告)
- (a) (i) 所加上的標記或標籤列有原產國家說明，並有代碼標記以識別該國的製造商或包裝商；及
- (ii) 製造商或包裝商或香港的經銷商或牌子擁有人已以書面將該代碼標記以及其所關乎的製造商或包裝商的詳情通知主管當局；或
- (b) 製造或包裝該食物的工廠或其他地方為原產國家的政府所擁有、經營或管理，而食物所加上的標記或標籤亦說明其為該政府的產品。

7. 數量、重量或體積

- (1) 預先包裝食物須加上標記或標籤，清楚列明內含物質的數量或食物的淨重量或淨體積。
- (2) 在切實可行的範圍內，淨重量及淨體積均須按照《度量衡條例》(第68章)或《十進制條例》(第214章)附表1所列的國際單位制表示。

8. 適當語文

- (1) 除第4(2)、(3)、(4)、(5)及(7)條及第(3)款另有規定外，為施行本附表，預先包裝食物所加上的標記或標籤須使用中文或英文，或中英文兼用。(1996年第80號法律公告；2004年第85號法律公告；2008年第69號法律公告)
- (2) 如預先包裝食物所加上的標記或標籤中英文兼用，則食物的名稱及配料表須以中英文列出，但除此之外，只須使用中文或英文即已符合本附表的規定。
- (3) 除主管當局在個別情況下另作規定外，如預先包裝食物是製造國家的土產或傳統產品，且通常不在其他國家製造，則其按照本附表所加上的標記及標籤，可使用其製造國家的語文。
- (1985年第222號法律公告)

附表：	4	獲豁免遵從附表3規定的項目	L.N. 69 of 2008	01/07/2010
-----	---	---------------	-----------------	------------

[第4A條]
(1996年第80號法律公告)

項	項目獲豁免遵從的 附表3部分
含有根據《應課稅品條例》(第109章)第53條釐定的以容積計算的酒精濃度超過1.2%但少於10%的飲品 (2004年第85號法律公告；2004年第139號法律公告)	附表全部(第3及4條除外)
在飲食供應機構售出以供即時食用的預先包裝食物	附表全部(第3條除外)
獨立花巧包裝並擬作單份出售的甜點	附表全部
獨立包裝並擬作單份出售的涼果，而其本身是再無其他包裝的	附表全部
包裝在容器內的預先包裝食物，而容器的最大平面面積少於10平方厘米 (1985年第313號法律公告)	第2、5及6條
新鮮水果及新鮮蔬菜	第2及4條
除二氧化碳外並無添加任何其他配料的汽水，而有關說明亦表示其已加入碳酸氣	第2條

從單一基本產品經發酵作用而衍生的醋，不加任何其他配料	第2及4條
除以下配料外並無添加任何其他配料的乳酪、牛油、發酵奶類及發	第2條
酵忌廉—	
(i) 乳酸產品、酵素及製造有關食物項目所必須培養的微生物；或	
(ii) 製造熟乳酪所需的鹽	
含有單一配料的食品	第2條
調味料	第2條
烹飪用的鹽	第4條
除防腐劑外不加任何配料的糖	第4條
香口膠及其他類似產品 (1996年第80號法律公告)	第4條
葡萄酒、甜酒、有氣葡萄酒、加香葡萄酒、果酒、有氣果酒和其他含	附表全部(第3條除外)
有根據《應課稅品條例》(第109章)第53條釐定的以容積計算的酒精	
濃度達到或超過10%的飲品 (2004年第85號法律公告；2004年第139	
號法律公告)	
(1985年第222號法律公告；1996年第80號法律公告；2008年第69號法律公告)	

附表：	5	營養標籤及營養聲稱	L.N. 69 of 2008	01/07/2010
-----	---	-----------	-----------------	------------

[第2及4B條及附表6]

第1部

營養標籤

1. 營養素表

- (1) 預先包裝食物須加上一個營養素表的可閱標記或標籤，以列出一
 - (a) 該食物所含的能量值；
 - (b) 該食物所含的以下營養素的含量—
 - (i) 蛋白質；
 - (ii) 可獲得的碳水化合物；
 - (iii) 總脂肪；
 - (iv) 飽和脂肪酸；
 - (v) 反式脂肪酸；
 - (vi) 鈉；及
 - (vii) 糖；及
 - (c) (如在該食物的標籤上或宣傳品中，有就該食物所含的任何其他營養素作出營養聲稱) 該等營養素的含量(如適用的話)。
- (2) 在不損害第(1)款的原則下，營養素表亦可列出該食物所含的任何其他營養素的含量。
- (3) 在不損害第(1)款的原則下，如在預先包裝食物的標籤上或其宣傳品中，有就該食物所含的任何脂肪類別作出營養聲稱，則營養素表亦須列出該食物所含的膽固醇含量。
- (4) 就第(1)(b)(ii)款而言—
 - (a) 可獲得的碳水化合物可在營養素表中標明或標籤為“碳水化合物”或“carbohydrates”；

- (b) 營養素表可列出預先包裝食物所含的總碳水化合物含量，以取代可獲得的碳水化合物的含量，條件是該營養素表亦須列出該食物所含的膳食纖維的含量。
- (5) 營養素表可列出其他資料，條件是該等資料不得在任何方面就該食物的營養或膳食價值有虛假、誤導或詐騙成分。

2. 表達能量值

- (1) 除第(2)款另有規定外，在營養素表中列出的能量值須—
 - (a) 以每100克或100毫升食物的千卡(kcal)含量表達；或
 - (b) 以每100克或100毫升食物的千焦(kJ)含量表達。
- (2) 凡—
 - (a) 一包食物含單一個食用分量，在營養素表中列出的能量值可以每包食物的千卡(kcal)或千焦(kJ)含量表達；
 - (b) 一包食物含單一個食用分量，且—
 - (i) 已用克(g)或毫升(mL)量化該單一個食用分量，並在該食物包裝上如此指明；及
 - (ii) 該食物包裝上已指明該包食物含一個食用分量，
 在營養素表中列出的能量值可以每個食用分量的千卡(kcal)或千焦(kJ)含量表達；
 - (c) 一包食物含多於一個食用分量，且—
 - (i) 已用克(g)或毫升(mL)量化一個食用分量，並在該食物包裝上如此指明；及
 - (ii) 該包食物所含的食用分量數目已在該食物包裝上指明，
 在營養素表中列出的能量值可以每個食用分量的千卡(kcal)或千焦(kJ)含量表達。
- (3) 在不損害第(1)及(2)款的原則下，能量值可進一步以能量值與以下項目的比率(須為百分率)表達—
 - (a) 能量的營養素參考值；或
 - (b) 任何國家衛生當局或國際衛生當局採用的任何其他關於能量的參考值。

3. 表達營養素含量

- (1) 除第(2)款另有規定外，在營養素表中列出的第1(1)(b)及(c)及(3)條所提述的營養素含量須—
 - (a) 以每100克或100毫升食物的克(g)含量表達；
 - (b) 以每100克或100毫升食物的毫克(mg)含量表達；或
 - (c) 以每100克或100毫升食物的微克(μ g)含量表達。
- (2) 凡—
 - (a) 一包食物含單一個食用分量，在營養素表中列出的第1(1)(b)及(c)及(3)條所提述的營養素含量可以每包食物的克(g)、毫克(mg)或微克(μ g)含量表達；
 - (b) 一包食物含單一個食用分量，且—
 - (i) 已用克(g)或毫升(mL)量化該單一個食用分量，並在該食物包裝上如此指明；及
 - (ii) 該食物包裝上已指明該包食物含一個食用分量，
 在營養素表中列出的第1(1)(b)及(c)及(3)條所提述的營養素含量可以每個食用分量的克(g)、毫克(mg)或微克(μ g)含量表達；
 - (c) 一包食物含多於一個食用分量，且—
 - (i) 已用克(g)或毫升(mL)量化一個食用分量，並在該食物包裝上如此指明；及
 - (ii) 該包食物所含的食用分量數目已在該食物包裝上指明，

在營養素表中列出的第1(1)(b)及(c)及(3)條所提述的營養素含量可以每個食用分量的克(g)、毫克(mg)或微克(μ g)含量表達。

(3) 在不損害第(1)及(2)款的原則下，營養素的含量可進一步以該營養素的含量與以下項目的比率(須為百分率)表達—

(a) 該營養素的營養素參考值；或

(b) 任何國家衛生當局或國際衛生當局採用的任何其他關於該營養素的參考值。

(4) 如任何其他營養素的含量在營養素表中以百分率表達，則該營養素的含量須以第(3)款指明的方式表達。

4. 營養素表的格式

(1) 除第(2)款另有規定外，營養素表須在包裝的顯眼處以列表格式展示，並須配以適當標題。

(2) 如包裝的總表面面積小於200平方厘米，則營養素表可以直線格式展示。

(3) 就本附表而言，預先包裝食物上的標記或標籤須使用—

(a) 英文；

(b) 中文；或

(c) 中英文兼用，

但數字可以阿拉伯數字表達。

(4) 在不損害附表3第8(2)條的原則下，如預先包裝食物上的標記或標籤是中英文兼用，則營養素表須使用中文及英文。

(5) 除主管當局在任何個別情況下另作規定外，如任何預先包裝食物是製造國家的土產或傳統產品，且通常不在任何其他國家製造，則該食物按照本附表所加上的標記或標籤，可使用其製造國家的語文。

第2部

營養聲稱

5. 營養聲稱

就本規例而言，以下項目不構成營養聲稱—

(a) 附表3第2條規定的在配料表中提及任何營養素含量；

(b) 就任何附表3第2(4E)(a)條指明的營養素含量而作出的任何數量性或質量性聲明；

(c) 法律規定的就能量值或任何營養素含量而作出的其他數量性或質量性聲明；

(d) 就關乎因改變基因程序引致營養價值更改而作出的任何數量性或質量性聲明；

(e) 任何屬預先包裝食物的名稱、品牌名稱或商標一部分的聲稱；及

(f) 就預先包裝食物所含的能量值或任何營養素含量而作出的、符合以下說明的任何數量性聲明—

(i) 以—

(A) 實際分量表達的；或

(B) 第2或3條指明的任何方式表達的；及

(ii) 並無特別強調該食物所含的能量或該營養素含量高、含量低、存在或不存在於該食物中。

6. 營養素含量聲稱

除非符合以下條件，否則不得在預先包裝食物的標籤上或宣傳品中，作出營養素含量聲稱—

- (a) 該聲稱是就該食物所含的能量或在附表8第2欄中指明的營養素而作出的；
- (b) 該聲稱使用在附表8第3欄中指明的、適用於能量或該營養素的任何描述；及
- (c) 該食物符合在附表8第4欄中與以下項目相對之處列出的適用的條件—
 - (i) 在該附表第2欄中指明的“能量”字樣或有關營養素的名稱；及
 - (ii) 在該附表第3欄中指明的有關描述。

7. 營養素比較聲稱

(1) 除非符合以下條件，否則不得在預先包裝食物的標籤上或宣傳品中，作出營養素比較聲稱—

- (a) 該聲稱比較能量值或在附表8第2欄中指明的營養素的含量水平；
- (b) 該聲稱比較相同食物或類似食物的不同版本；
- (c) 該聲稱比較相同數量的食物；
- (d) 該聲稱符合第(2)款的規定；及
- (e) 該聲稱符合第(3)、(4)、(5)、(6)、(7)、(8)或(9)款訂明的條件(視何者適用而定)。
- (2) 以下資料須於貼近營養素比較聲稱處顯示—
 - (a) 對被比較的食物描述；
 - (b) 被比較的食物之間的能量值差額或營養素含量水平差額，該差額須—
 - (i) 以下述條文(視何者適用而定)指明的方式，以絕對值表達—
 - (A) 第2(1)或(2)條；或
 - (B) 第3(1)或(2)條；或
 - (ii) 以百分率或分數表達。
- (3) 如營養素比較聲稱比較能量值—
 - (a) 被比較的食物之間的能量值差額的相對值，不得少於25%；及
 - (b) 該差額的絕對值，不得少於在附表8第4欄中與在該附表第3欄中為能量指明的“低”含量的描述相對之處列出的最高分量。
- (4) 如營養素比較聲稱比較總脂肪、糖或鈉的含量水平—
 - (a) 被比較的食物之間的營養素含量差額的相對值，不得少於25%；及
 - (b) 該差額的絕對值，不得少於在附表8第4欄中與以下項目相對之處列出的最高分量—
 - (i) 在該附表第2欄中指明的有關營養素的名稱；及
 - (ii) 在該附表第3欄中為該營養素指明的“低”含量的描述。
- (5) 如營養素比較聲稱比較飽和脂肪酸或膽固醇的含量水平—
 - (a) 被比較的食物之間的營養素含量差額的相對值，不得少於25%；及
 - (b) 該差額的絕對值，不得少於在附表8第4欄(a)(i)或(b)(i)段中與以下項目相對之處列出的最高分量—
 - (i) 在該附表第2欄中指明的有關營養素的名稱；及
 - (ii) 在該附表第3欄中為該營養素指明的“低”含量的描述。
- (6) 如營養素比較聲稱比較反式脂肪酸的含量水平—
 - (a) 被比較的食物之間的反式脂肪酸含量差額的相對值，不得少於25%；及
 - (b) 該差額的絕對值，不得少於在附表8第4欄(a)(i)或(b)(i)段中與在該附表第3欄中為反式脂肪酸指明的“不含”含量的描述相對之處列出的最高分量。

- (7) 如營養素比較聲稱比較蛋白質的含量水平—
 - (a) 被比較的食物之間的蛋白質含量差額的相對值，不得少於25%；及
 - (b) 該差額的絕對值—
 - (i) 就固體食物而言，不得少於在附表8第4欄(a)或(c)段中與在該附表第3欄中為蛋白質指明的“來源”含量的描述相對之處列出的最低分量；
 - (ii) 就液體食物而言，不得少於在附表8第4欄(b)或(c)段中與在該附表第3欄中為蛋白質指明的“來源”含量的描述相對之處列出的最低分量。
- (8) 如營養素比較聲稱比較膳食纖維的含量水平—
 - (a) 被比較的食物之間的膳食纖維含量差額的相對值，不得少於25%；及
 - (b) 該差額的絕對值，不得少於在附表8第4欄中與在該附表第3欄中為膳食纖維指明的“來源”含量的描述相對之處列出的最低分量。
- (9) 如營養素比較聲稱比較任何設有營養素參考值的維他命或礦物質(鈉除外)的含量水平—
 - (a) 被比較的食物之間的該維他命或礦物質的營養素參考值差額的相對值，不得少於10%；及
 - (b) 該差額的絕對值—
 - (i) 就固體食物而言，不得少於在附表8第4欄(a)或(c)段中與在該附表第3欄中為設有營養素參考值的維他命及礦物質(鈉除外)指明的“來源”含量的描述相對之處列出的最低分量；
 - (ii) 就液體食物而言，不得少於在附表8第4欄(b)或(c)段中與在該附表第3欄中為設有營養素參考值的維他命及礦物質(鈉除外)指明的“來源”含量的描述相對之處列出的最低分量。

8. 營養素功能聲稱

- (1) 除非符合以下條件，否則不得在預先包裝食物的標籤上或宣傳品中，作出營養素功能聲稱—
 - (a) 該聲稱符合第(2)款的規定；及
 - (b) 除第(3)款另有規定外，有關的營養素含量不少於在附表8第4欄中與以下項目相對之處列出的最低分量—
 - (i) 在該附表第2欄中指明的該營養素的名稱；及
 - (ii) 在該附表第3欄中為該營養素指明的“來源”含量的描述。
- (2) 營養素功能聲稱—
 - (a) 不得—
 - (i) 為並無設有營養素參考值的營養素作出；或
 - (ii) 為並非在附表8第2欄中指明的營養素作出；
 - (b) 須以科學證據及科學共識作為基礎；及
 - (c) 須載有關於有關營養素所擔當的生理角色的資料。
- (3) 第(1)(b)款不適用於為符合以下說明的營養素作出的營養素功能聲稱—
 - (a) 並非在附表8第2欄中指明的；或
 - (b) 在附表8第2欄中指明，但在該附表第3欄中並無為該營養素指明“來源”含量的描述。

(附表5由2008年第69號法律公告增補)

附表：	6	獲豁免而不受附表5第1部所規限的項目	E.R. 2 of 2014	10/04/2014
-----	---	--------------------	----------------	------------

[第4B條]

第1部

根據本規例第4B(2)(a)條獲豁免而不受附表5第1部所規限的項目

1. 含有以容積計算的酒精濃度(以《應課稅品條例》(第109章)第53條**酒精濃度**的定義中所描述的方式釐定者)超過1.2%的預先包裝食物。
2. 在飲食供應機構售出的、通常購買作即時食用的預先包裝食物。
3. 獨立花巧包裝並擬作單份出售的甜點。
4. 獨立包裝並擬作單份出售的涼果，而其本身是再無其他包裝的。
5. 包裝在總表面面積小於100平方厘米的容器內的預先包裝食物。
6. 符合以下說明的水果或蔬菜(不論是新鮮、冷凍、冷凝或乾的)—
 - (a) 包裝在並無載有其他配料的容器內；及
 - (b) 並無添加其他配料。
7. 符合以下說明的汽水—
 - (a) 除二氧化碳外並無添加其他配料；及
 - (b) 該汽水的標記或標籤表示該汽水已加入碳酸氣。
8. 泉水及礦泉水(包括經人工添加礦物質的、被描述為礦泉水的水)。
9. 並無任何能量值或並無含附表5第1(1)(b)條所提述的任何營養素含量的預先包裝食物。
10. 符合以下說明的肉、海魚、淡水魚或通常用作供人食用的任何其他種類的水中生物—
 - (a) 未經烹煮；
 - (b) 包裝在並無載有其他配料的容器內；及
 - (c) 並無添加其他配料。
11. 含多種配料並符合以下說明的預先包裝食物—
 - (a) 在同一處所內製備並售出予最後消費者；
 - (b) 並非擬出售供即時食用；及
 - (c) 擬經過烹煮處理使之適合人類食用。
12. 含多種配料並符合以下說明的湯包—
 - (a) 在製造過程中並無經過加熱處理；
 - (b) 並非擬出售供即時食用；及
 - (c) 擬經過烹煮處理使之適合以湯形式供人類食用。
13. 符合以下說明的預先包裝食物—

- (a) 由根據《稅務條例》(第112章)第88條獲豁免繳稅的屬公共性質的慈善機構或信託售出；及
- (b) 在為慈善目的舉辦的活動中售出。

14. 符合以下說明的預先包裝食物—

- (a) 在同一處所內加工處理並售予最後消費者；或
 - (b) 該食物在某地方加工處理，並在某處所售予最後消費者，而該地方是在該處所的毗鄰或緊接該處所的附近地方，
- 而且該食物並非在(a)或(b)段所提述的處所外要約出售。

15. 作單份項目而售予飲食供應機構的預先包裝食物。

註： 在本部中—

加工處理 (processed) 包括任何能導致任何食物的自然狀態產生實質更改的處理方法或工序，而在本註**製備**的定義中，**加工處理** (processing) 須據此解釋；

製備 (prepared) 包括去骨、削皮、研磨、切割、清洗、切除表面部分、調味或包裝，但不包括加工處理。

第2部

每年銷售量不超過30000件的預先包裝食物根據本規例第4B(2)(b)條可獲豁免 而不受附表5第1部所規限

1. 豁免而不受附表5第1部所規限

- (1) 除第3(1)條另有規定外，凡主管當局應根據第(2)款提出的申請，信納與任何預先包裝食物屬相同版本的食物在香港的每年銷售量不會超過30000件，則可就該預先包裝食物授予豁免，使之毋須符合附表5第1部的規定。
- (2) 任何預先包裝食物的進口商或製造商，可根據第(1)款以主管當局決定的方式，向主管當局申請豁免。
- (3) 根據第(2)款提出的申請一經批准，申請人須向主管當局繳付—
 - (a) 如主管當局為以電子方式提出申請而提供一個聯線通訊系統，而有關申請是透過該系統以電子方式提出—\$265；或
 - (b) 如申請是以任何其他方式提出—\$345。（2014年第3號法律公告）
- (4) 主管當局可—
 - (a) 施加主管當局認為合適的條件；及
 - (b) 要求申請人作出承諾，遵從主管當局不時就豁免所適用的預先包裝食物施加的條件。
- (5) 根據第(1)款授予的豁免的有效期—
 - (a) (凡並無其他根據該款授予的豁免在當其時就有關預先包裝食物的版本而有效)為一年；
 - (b) (凡僅有一項其他根據該款授予的豁免在當其時就有關預先包裝食物的版本而有效)直至該項其他豁免屆滿的日期為止；或
 - (c) (凡有2項或多於2項其他根據該款授予的豁免在當其時就有關預先包裝食物的版本而有效)直至該等豁免中的首項屆滿的日期為止。

2. 豁免的續期

- (1) 除第3(2)條另有規定外，凡主管當局應根據第(2)款提出的申請—
 - (a) (凡並無其他根據第1(1)條授予的豁免在當其時就有關預先包裝食物的版本而有效)信納該預先包裝食物的版本在該項豁免有效期內，在香港的總銷售量不會超過30000件；
 - (b) (凡僅有一項其他根據第1(1)條授予的豁免在當其時就有關預先包裝食物的版本而有效)信納該預先包裝食物的版本在該項其他豁免有效期內，在香港的總銷售量不會超過30000件；或
 - (c) (凡有2項或多於2項其他根據第1(1)條授予的豁免在當其時就有關預先包裝食物的版本而有效)信納該預先包裝食物的版本在該等豁免中的首項的有效期內，在香港的總銷售量不會超過30000件，
 則可將根據第1(1)條授予的豁免續期。
- (2) 獲授予豁免的人可在該項豁免的有效期屆滿前，以主管當局決定的方式，向主管當局申請將該項豁免續期。
- (3) 根據第(2)款提出的申請一經批准，申請人須向主管當局繳付—
 - (a) 如主管當局為以電子方式提出申請而提供一個聯線通訊系統，而有關申請是透過該系統以電子方式提出—\$250；或
 - (b) 如申請是以任何其他方式提出—\$335。 (2014年第3號法律公告)
- (4) 第(1)款所指的續期—
 - (a) 於有關豁免的有效期屆滿之日的翌日生效；及
 - (b) 有效期為一年或主管當局指明的較短期間。

3. 拒絕授予豁免、拒絕將豁免續期或撤銷豁免

- (1) 如—
 - (a) 申請人在過去2年內，沒有就該申請所關乎的預先包裝食物遵從根據第1(4)條施加的任何條件；或
 - (b) 在過去2年的任何一年內，該申請所關乎的預先包裝食物的版本，在香港的每年銷售量超過30000件，
 主管當局可拒絕根據第1(1)條授予豁免。
- (2) 如申請人在過去2年內，沒有就該申請所關乎的預先包裝食物遵從根據第1(4)條施加的任何條件，主管當局可拒絕根據第2(1)條將豁免續期。
- (3) 如—
 - (a) 根據第1(1)條獲授予豁免或根據第2(1)條豁免獲續期(該項豁免)的進口商或製造商(豁免享有人)，沒有遵從根據第1(4)條施加的任何條件；或
 - (b) 該項豁免所適用的預先包裝食物的版本在該項豁免有效期內，在香港的總銷售量超過30000件，
 主管當局可撤銷該項豁免。
- (4) 除非主管當局—
 - (a) 以書面通知豁免享有人—
 - (i) 主管當局撤銷豁免的意圖；及
 - (ii) 主管當局擬以何理由撤銷該項豁免；
 - (b) 准許豁免享有人在該通知指明的期間內，以書面向主管當局作出申述；及
 - (c) 考慮豁免享有人作出的申述(如有的話)，

否則主管當局不得撤銷該項豁免。

- (5) 主管當局如撤銷豁免，須在切實可行的範圍內，盡快以書面通知有關的豁免享有人，並須在該通知中指明—
- (a) 該項撤銷的理由；及
 - (b) 該項撤銷生效的日期。
- (6) 撤銷在撤銷該項豁免的決定作出之日後30天屆滿時生效。

(附表6由2008年第69號法律公告增補)
(格式變更—2014年第2號編輯修訂紀錄)

附表：	6A	嬰兒配方產品、較大嬰兒及幼兒配方產品及預先包裝嬰幼兒食物的營養標籤	L.N. 90 of 2014	13/12/2015
-----	----	-----------------------------------	-----------------	------------

[第2及4C條及附表6B]

1. 營養素表

- (1) 任何嬰兒配方產品須加上一個營養素表的可閱標記或標籤，列出一
- (a) 該產品所含的能量值；及
 - (b) 該產品所含的以下營養素的含量—
 - (i) 蛋白質；
 - (ii) 總脂肪；
 - (iii) 總碳水化合物；
 - (iv) 維他命A；
 - (v) 維他命D3；
 - (vi) 維他命E；
 - (vii) 維他命K；
 - (viii) 硫胺素；
 - (ix) 核黃素；
 - (x) 煙酸；
 - (xi) 維他命B6；
 - (xii) 維他命B12；
 - (xiii) 泛酸；
 - (xiv) 葉酸；
 - (xv) 維他命C；
 - (xvi) 生物素；
 - (xvii) 鐵；
 - (xviii) 鈣；
 - (xix) 磷；
 - (xx) 鎂；
 - (xxi) 鈉；
 - (xxii) 氯化物；
 - (xxiii) 鉀；
 - (xxiv) 錳；
 - (xxv) 碘；
 - (xxvi) 硒；

- (xxvii) 銅；
 - (xxviii) 鋅；及
 - (xxix) 膽鹼。
- (2) 如任何嬰兒配方產品的氟化物含量(以按照所提供的任何使用指示調製後或供食用的形式)，每100千卡超過100微克或每100千焦超過24微克，該產品須在標記或標籤上載有陳述—
- (a) 示明食用該產品可導致氟斑牙；及
 - (b) 建議應與醫生或衛生專業人員討論氟斑牙的風險。
- (3) 任何較大嬰兒及幼兒配方產品須加上一個營養素表的可閱標記或標籤，列出一—
- (a) 該產品所含的能量值；及
 - (b) 該產品所含的以下營養素的含量—
 - (i) 蛋白質；
 - (ii) 總脂肪；
 - (iii) 可獲得的碳水化合物；
 - (iv) 維他命A；
 - (v) 維他命D；
 - (vi) 維他命E；
 - (vii) 維他命K；
 - (viii) 硫胺素；
 - (ix) 核黃素；
 - (x) 煙酸；
 - (xi) 維他命B6；
 - (xii) 維他命B12；
 - (xiii) 泛酸；
 - (xiv) 葉酸；
 - (xv) 維他命C；
 - (xvi) 生物素；
 - (xvii) 鐵；
 - (xviii) 鈣；
 - (xix) 磷；
 - (xx) 鎂；
 - (xxi) 鈉；
 - (xxii) 氯化物；
 - (xxiii) 鉀；
 - (xxiv) 碘；及
 - (xxv) 鋅。
- (4) 任何預先包裝嬰幼兒食物須加上一個營養素表的可閱標記或標籤，列出一—
- (a) 該食物所含的能量值；及
 - (b) 該食物所含的以下營養素的含量—
 - (i) 蛋白質；
 - (ii) 總脂肪；

- (iii) 可獲得的碳水化合物；
 - (iv) 鈉；
 - (v) 維他命A(如加入)；及
 - (vi) 維他命D(如加入)。
- (5) 在不影響第(1)、(3)及(4)款的原則下，營養素表亦可列出有關嬰兒配方產品、較大嬰兒及幼兒配方產品或預先包裝嬰幼兒食物所含的任何其他營養素的含量。
- (6) 就第(3)(b)(iii)及(4)(b)(iii)款而言—
- (a) 可獲得的碳水化合物，可在營養素表中，標明或標籤為“碳水化合物”或“carbohydrates”；
 - (b) 營養素表可列出總碳水化合物的含量，以取代可獲得的碳水化合物的含量，前提是該營養素表亦須列出膳食纖維的含量。
- (7) 營養素表可列出其他資料，前提是該等資料不得在任何方面，就有關嬰兒配方產品、較大嬰兒及幼兒配方產品或預先包裝嬰幼兒食物的營養或膳食價值，有虛假、誤導或詐騙成分。

2. 表達能量值

- (1) 在任何嬰兒配方產品的營養素表中列出的能量值，須按以下方式，以千卡(kcal)或千焦(kJ)表達，或同時以兩者表達—
- (a) 每100克配方產品(以準備好作出售形式)；或
 - (b) 每100毫升配方產品(以準備好作出售形式，或以按照所提供的任何使用指示調製後或供食用的形式)。
- (2) 在任何較大嬰兒及幼兒配方產品或預先包裝嬰幼兒食物的營養素表中列出的能量值，須按以下方式，以千卡(kcal)或千焦(kJ)表達，或同時以兩者表達—
- (a) 每100克配方產品或食物(以準備好作出售形式)；
 - (b) 每100毫升配方產品或食物(以準備好作出售形式，或以按照所提供的任何使用指示調製後或供食用的形式)；或
 - (c) 每個建議食用分量(以克(g)或毫升(mL)指明)。

3. 表達營養素含量

- (1) 在任何嬰兒配方產品的營養素表中，列出的本附表第1(1)(b)條所提述的營養素含量，須按以下方式，以(如屬蛋白質、總脂肪及總碳水化合物)克(g)或(如屬其他營養素)某適當單位表達—
- (a) 每100克配方產品(以準備好作出售形式)；或
 - (b) 每100毫升配方產品(以準備好作出售形式，或以按照所提供的任何使用指示調製後或供食用的形式)。
- (2) 在任何較大嬰兒及幼兒配方產品或預先包裝嬰幼兒食物的營養素表中，列出的本附表第1(3)(b)或(4)(b)條所提述的營養素含量，須按以下方式，以(如屬蛋白質、總脂肪及可獲

得的碳水化合物)克(g)或(如屬其他營養素)某適當單位表達—

- (a) 每100克配方產品或食物(以準備好作出售形式)；
- (b) 每100毫升配方產品或食物(以準備好作出售形式，或以按照所提供的任何使用指示調製後或供食用的形式)；或
- (c) 每個建議食用分量(以克(g)或毫升(mL)指明)。

(3) 在不影響第(1)及(2)款的原則下，在任何嬰兒配方產品或較大嬰兒及幼兒配方產品的營養素表中，列出的本附表第1(1)(b)或(3)(b)條所提述的營養素含量，可進一步按以下方式，以(如屬蛋白質、總脂肪、總碳水化合物及可獲得的碳水化合物)克(g)或(如屬其他營養素)某適當單位表達—

- (a) 每100千卡配方產品；或
- (b) 每100千焦配方產品。

4. 營養素表的格式

- (1) 除第(2)款另有規定外，任何嬰兒配方產品、較大嬰兒及幼兒配方產品或預先包裝嬰幼兒食物的營養素表，須在包裝的顯眼處以列表格式展示，並須配以適當標題。
- (2) 如包裝的總表面面積小於200平方厘米，則預先包裝嬰幼兒食物的營養素表可用直線格式展示。
- (3) 就本附表而言，標記或標籤須—
 - (a) 使用英文；
 - (b) 使用中文；或
 - (c) 兼使用中文及英文。
- (4) 然而，數字可用阿拉伯數字表達。
- (5) 如有關嬰兒配方產品、較大嬰兒及幼兒配方產品或預先包裝嬰幼兒食物的標記或標籤兼使用中文及英文，則營養素表須使用中文及英文。

(附表6A由2014年第90號法律公告增補)

附表：	6B	獲豁免而不受附表6A規限的項目	L.N. 90 of 2014	13/12/2015
-----	----	-----------------	-----------------	------------

[第4C條]

- 1. 有加上符合以下所有說明的標記或標籤的特殊醫用嬰幼兒配方產品—
 - (a) 有“特殊醫用配方產品”或“formula for special medical purposes”的字樣，或具類似意思的任何其他文字，該等字樣或文字屬在配方產品名稱中標明，或在包裝的顯眼處標明，而該處並不貼近包裝上的其他資料；
 - (b) 有“在醫生指示下使用”或“USE UNDER MEDICAL SUPERVISION”的粗體字樣，或具類似意思的任何其他粗體文字，該等字樣或文字屬在包裝的顯眼處標明，而該處並不貼近包裝上的其他資料；
 - (c) 述明“作(寫上該產品擬用於針對的疾病、失調或健康狀況，或該產品已知有效針對的疾病、失調或健康狀況)的膳食管理用途”的陳述，或具類似意思的任何其他文字；及

(d) (凡沒有在該陳述中述明的疾病、失調或健康狀況的人食用該產品時，該產品對健康構成危險)有對該危險的警告陳述及解釋，該陳述及解釋屬在包裝的顯眼處以粗體字樣標明，而該處並不貼近包裝上的其他資料。

2. 以總表面面積小於250平方厘米的容器包裝的嬰兒配方產品或較大嬰兒及幼兒配方產品。

3. 以總表面面積小於100平方厘米的容器包裝的預先包裝嬰幼兒食物。

(附表6B由2014年第90號法律公告增補)

附表：	7	不同營養素就營養標籤而言的營養素參考值	L.N. 69 of 2008	01/07/2010
-----	---	---------------------	-----------------	------------

[第2條]

項	能量／營養素	營養素參考值
1.	能量(千卡)	2000
	(千焦)	8400
2.	蛋白質(克)	60
3.	總脂肪(克)	60
4.	膳食纖維(克)	25
5.	飽和脂肪酸(克)	20
6.	膽固醇(毫克)	300
7.	總碳水化合物(克)	300
8.	鈣(毫克)	800
9.	磷(毫克)	700
10	鉀(毫克)	2000
.		
11	鈉(毫克)	2000
.		
12	鐵(毫克)	15
.		
13	鋅(毫克)	15
.		
14	銅(毫克)	1.5
.		
15	碘(微克)	150
.		
16	硒(微克)	50
.		
17	鎂(毫克)	300
.		
18	錳(毫克)	3
.		
19	鉻(微克)	50
.		

20	鉬(微克)	40
21	氟(毫克)	1
22	維他命A(視黃醇當量；微克)	800
23	維他命C(毫克)	100
24	維他命D(微克)	5
25	維他命E(α-生育酚當量；毫克)	14
26	維他命K(微克)	80
27	維他命B1(毫克)	1.4
28	維他命B2(毫克)	1.4
29	維他命B6(毫克)	1.4
30	維他命B12(微克)	2.4
31	煙酸(毫克)	14
32	葉酸(膳食葉酸當量；微克)	400
33	泛酸(毫克)	5
34	生物素(微克)	30
35	膽鹼(毫克)	450

(附表7由2008年第69號法律公告增補)

附表：	8	關乎營養素含量聲稱的條件	L.N. 69 of 2008	01/07/2010
-----	---	--------------	-----------------	------------

[附表5]

項	能量／ 營養素	聲稱的描述	條件
1.	能量	(1) “低”或“Low”、“少”或“Little”、“提供少量”或“Low source”或“含量低”或“Contains	(a) 該食物是固體食物，且每100克食物含不超過40千卡(170千焦)能量。或 (b) 該食物是液體食物，且

	a small amount of” 的字樣或任何其他具類似意思的文字或任何其他代表類似意思的符號	每100毫升食物含不超過20千卡(80千焦)能量。
	(2) “不含”或“Free”、“零”或“Zero”、“無”或“No”或“沒有”或“Without”的字樣或任何其他具類似意思的文字或任何其他代表類似意思的符號	該食物是液體食物，且每100毫升食物含不超過4千卡(17千焦)能量。
2. 總脂肪	(1) “低”或“Low”、“少”或“Little”、“提供少量”或“Low source”或“含量低”或“Contains a small amount of”的字樣或任何其他具類似意思的文字或任何其他代表類似意思的符號	(a) 該食物是固體食物，且每100克食物含不超過3克總脂肪。或 (b) 該食物是液體食物，且每100毫升食物含不超過1.5克總脂肪。
	(2) “不含”或“Free”、“零”或“Zero”、“無”或“No”或“沒有”或“Without”的字樣或任何其他具類似意思的文字或任何其他代表類似意思的符號	(a) 該食物是固體食物，且每100克食物含不超過0.5克總脂肪。或 (b) 該食物是液體食物，且每100毫升食物含不超過0.5克總脂肪。
3. 飽和脂肪酸	(1) “低”或“Low”、“少”或“Little”、“提供少量”或“Low source”或“含量低”或“Contains a small amount of”的字樣或任何其他具類似意思的文字或任何其他代表類似意思的符號	(a) 該食物是固體食物，且符合下述說明— (i) 每100克食物含不超過1.5克飽和脂肪酸及反式脂肪酸(兩者合計)；及 (ii) 飽和脂肪酸及反式脂肪酸之和提供不超過10%能量。或 (b) 該食物是液體食物，且符合下述說明— (i) 每100毫升食物含不超過0.75克飽和脂肪酸及反式脂肪酸(兩

- 者合計)；及
- (ii) 飽和脂肪酸及反式脂肪酸之和提供不超過10%能量。
- (2) “不含”或“Free”、“零”或“Zero”、“無”或“No”或“沒有”或“Without”的字樣或任何其他具類似意思的文字或任何其他代表類似意思的符號
4. 膽固醇
- (1) “低”或“Low”、“少”或“Little”、“提供少量”或“Low source”或“含量低”或“Contains a small amount of”的字樣或任何其他具類似意思的文字或任何其他代表類似意思的符號
- (a) 該食物是固體食物，且每100克食物含不超過0.1克飽和脂肪酸及反式脂肪酸(兩者合計)。或
- (b) 該食物是液體食物，且每100毫升食物含不超過0.1克飽和脂肪酸及反式脂肪酸(兩者合計)。
- (a) 該食物是固體食物，且符合下述說明—
- (i) 每100克食物含不超過0.02克膽固醇；
- (ii) 每100克食物含不超過1.5克飽和脂肪酸及反式脂肪酸(兩者合計)；及
- (iii) 飽和脂肪酸及反式脂肪酸之和提供不超過10%能量。或
- (b) 該食物是液體食物，且符合下述說明—
- (i) 每100毫升食物含不超過0.01克膽固醇；
- (ii) 每100毫升食物含不超過0.75克飽和脂肪酸及反式脂肪酸(兩者合計)；及
- (iii) 飽和脂肪酸及反式脂肪酸之和提供不超過10%能量。
- (2) “不含”或“Free”、“零”或“Zero”、“無”或“No”或“沒有”或“Without”的字樣或任何其他具類似意思的文字或任何其他代表類似意思的符號
- (a) 該食物是固體食物，且符合下述說明—
- (i) 每100克食物含不超過0.005克膽固醇；
- (ii) 每100克食物含不超過1.5克飽和脂肪酸及反式脂肪酸

- (兩者合計)；及
- (iii) 飽和脂肪酸及反式脂肪酸之和提供不超過10%能量。或
- (b) 該食物是液體食物，且符合下述說明—
- (i) 每100毫升食物含不超過0.005克膽固醇；
- (ii) 每100毫升食物含不超過0.75克飽和脂肪酸及反式脂肪酸(兩者合計)；及
- (iii) 飽和脂肪酸及反式脂肪酸之和提供不超過10%能量。
5. 反式脂肪酸 “不含”或“Free”、“零”或“Zero”、“無”或“No”或“沒有”或“Without”的字樣或任何其他具類似意思的文字或任何其他代表類似意思的符號
- (a) 該食物是固體食物，且符合下述說明—
- (i) 每100克食物含不超過0.3克反式脂肪酸；
- (ii) 每100克食物含不超過1.5克飽和脂肪酸及反式脂肪酸(兩者合計)；及
- (iii) 飽和脂肪酸及反式脂肪酸之和提供不超過10%能量。或
- (b) 該食物是液體食物，且符合下述說明—
- (i) 每100毫升食物含不超過0.3克反式脂肪酸；
- (ii) 每100毫升食物含不超過0.75克飽和脂肪酸及反式脂肪酸(兩者合計)；及
- (iii) 飽和脂肪酸及反式脂肪酸之和提供不超過10%能量。
6. 糖 (1) “低”或“Low”、“少”或“Little”、“提供少
- (a) 該食物是固體食物，且每100克食物含不超過5

	量”或“Low source”或“含量低”或“Contains a small amount of”的字樣或任何其他具類似意思的文字或任何其他代表類似意思的符號	克糖。或 (b) 該食物是液體食物，且每100毫升食物含不超過5克糖。
	(2) “不含”或“Free”、“零”或“Zero”、“無”或“No”或“沒有”或“Without”的字樣或任何其他具類似意思的文字或任何其他代表類似意思的符號	(a) 該食物是固體食物，且每100克食物含不超過0.5克糖。或 (b) 該食物是液體食物，且每100毫升食物含不超過0.5克糖。
7. 鈉	(1) “低”或“Low”、“少”或“Little”、“提供少量”或“Low source”或“含量低”或“Contains a small amount of”的字樣或任何其他具類似意思的文字或任何其他代表類似意思的符號	該食物(不論是固體或液體)每100克或100毫升食物含不超過0.12克鈉。
	(2) “很低”或“Very low”、“極低”或“Extremely low”或“超低”或“Super low”的字樣或任何其他具類似意思的文字或任何其他代表類似意思的符號	該食物(不論是固體或液體)每100克或100毫升食物含不超過0.04克鈉。
	(3) “不含”或“Free”、“零”或“Zero”、“無”或“No”或“沒有”或“Without”的字樣或任何其他具類似意思的文字或任何其他代表類似意思的符號	該食物(不論是固體或液體)每100克或100毫升食物含不超過0.005克鈉。
8. 蛋白質	(1) “低”或“Low”、“少”或“Little”、“提供少量”或“Low source”或“含量低”或“Contains	該食物(不論是固體或液體)含提供不超過5%能量的蛋白質。

a small amount of” 的字樣或任何其他具類似意思的文字或任何其他代表類似意思的符號

- (2) “來源”或“Source”、“含”或“Contains”、“提供”或“Provides”或“有”或“Has”的字樣或任何其他具類似意思的文字或任何其他代表類似意思的符號

- (3) “高”或“High”、“含豐富”或“Rich in”或“含大量”或“Good source of”的字樣或任何其他具類似意思的文字或任何其他代表類似意思的符號

- (a) 該食物是固體食物，且每100克食物含不少於蛋白質營養素參考值10%的蛋白質。或
(b) 該食物是液體食物，且每100毫升食物含不少於蛋白質營養素參考值5%的蛋白質。或
(c) 該食物(不論是固體或液體)符合下述說明—
(i) 每100千卡食物含不少於蛋白質營養素參考值5%的蛋白質；或
(ii) 每1兆焦食物含不少於蛋白質營養素參考值12%的蛋白質。

- (a) 該食物是固體食物，且每100克食物含不少於蛋白質營養素參考值20%的蛋白質。或
(b) 該食物是液體食物，且每100毫升食物含不少於蛋白質營養素參考值10%的蛋白質。或
(c) 該食物(不論是固體或液體)符合下述說明—
(i) 每100千卡食物含不少於蛋白質營養素參考值10%的蛋白質；或
(ii) 每1兆焦食物含不少於蛋白質營養素參考值24%的蛋白質。

9. 膳食纖維 (1) “來源”或“Source”、“含”或“Contains”、

- (a) 該食物是固體食物，且每100克食物含不少於3

		“提供”或“Provides”或“有”或“Has”的字樣或任何其他具類似意思的文字或任何其他代表類似意思的符號	克膳食纖維。或 (b) 該食物是液體食物，且每100毫升食物含不少於1.5克膳食纖維。
		(3) “高”或“High”、“含豐富”或“Rich in”或“含大量”或“Good source of”的字樣或任何其他具類似意思的文字或任何其他代表類似意思的符號	(a) 該食物是固體食物，且每100克食物含不少於6克膳食纖維。或 (b) 該食物是液體食物，且每100毫升食物含不少於3克膳食纖維。
10	設有營養素參考值的維他命及礦物質(鈉除外)	(1) “來源”或“Source”、“含”或“Contains”、“提供”或“Provides”或“有”或“Has”的字樣或任何其他具類似意思的文字或任何其他代表類似意思的符號 (2) “高”或“High”、“含豐富”或“Rich in”或“含大量”或“Good source of”的字樣或任何其他具類似意思的文字或任何其他代表類似意思的符號	(a) 該食物是固體食物，且每100克食物含不少於有關維他命或礦物質營養素參考值15%的有關維他命或礦物質。或 (b) 該食物是液體食物，且每100毫升食物含不少於有關維他命或礦物質營養素參考值7.5%的有關維他命或礦物質。或 (c) 該食物(不論是固體或液體)符合下述說明— (i) 每100千卡食物含不少於有關維他命或礦物質營養素參考值5%的有關維他命或礦物質；或 (ii) 每1兆焦食物含不少於有關維他命或礦物質營養素參考值12%的有關維他命或礦物質。 (a) 該食物是固體食物，且每100克食物含不少於有關維他命或礦物質營養素參考值30%的有關維他命或礦物質。或 (b) 該食物是液體食物，且每100毫升食物含不少於

有關維他命或礦物質營養素參考值15%的有關維他命或礦物質。或

(c) 該食物(不論是固體或液體)符合下述說明—

(i) 每100千卡食物含不少於有關維他命或礦物質營養素參考值10%的有關維他命或礦物質；或

(ii) 每1兆焦食物含不少於有關維他命或礦物質營養素參考值24%的有關維他命或礦物質。

(附表8由2008年第69號法律公告增補)

章：	132AF	《食物內有害物質規例》	憲報編號	版本日期
----	-------	-------------	------	------

		賦權條文	E.R. 2 of 2012	02/08/2012
--	--	------	----------------	------------

(第132章第55(1)條)

[1983年5月27日]

(本為1983年第174號法律公告)

(*格式變更—2012年第2號編輯修訂紀錄)

註：

* 整條規例的格式已按現行法例樣式更新。

條：	1	引稱及生效日期	E.R. 2 of 2012	02/08/2012
----	---	---------	----------------	------------

(1) 本規例可引稱為《食物內有害物質規例》。

(2) 就適用於附表1第2項而言，第3條由1985年1月1日起生效。

條：	2	釋義	E.R. 2 of 2012	02/08/2012
----	---	----	----------------	------------

在本規例中，除文意另有所指外—

奶粉 (dried milk) 指任何已藉除去水分而濃縮成固體或粉狀物的奶類，不論它是否經增加甜味、調質或複合，並包括任何用脫脂奶或部分脫脂奶製造的該等經濃縮奶類；（2011年第173號法律公告）

奶類 (milk) 指牛奶、水牛奶及山羊奶，並包括忌廉、離脂奶及奶類飲品，但不包括奶粉、煉奶或再造奶；（2008年第215號法律公告及2008年第253號法律公告）

奶類飲品 (milk beverage) 指將流質奶脂與從奶類衍生的其他固體合成的飲品，不論其中有無食物添加劑或其他物質；（2008年第215號法律公告及2008年第253號法律公告）

再造奶 (reconstituted milk) 指將奶類的成分(即奶脂及來自奶類的不含非奶類物質的其他固體)與水再結合而成的產品，並包括冰凍濃縮奶溶解而成的產品；（2011年第173號法律公告）

肉類 (meat) 指擬供人食用的一

(a) 任何動物的肉或其他可食部分(包括血)；或

(b) 任何禽鳥的肉或其他可食部分(包括血)；（1986年第173號法律公告；2001年第148號法律公告）

油或脂肪 (oil or fat) 指取自任何動物、禽鳥、魚或植物的油或脂肪，但不包括任何香精油；

花生 (peanut) 指地豆或豆科植物落花生的種子；

花生產品 (peanut products) 包括花生油或任何含有花生作為其配料的產品；

食用動物 (food animal) 指通常飼養供人食用的動物或禽鳥；（2001年第148號法律公告）

脂肪酸 (fatty acid) 指油或脂肪水解後所得的任何羧酸，並包括油或脂肪所含的任何處於游離狀態的羧酸；

航空過境貨物 (air transit cargo) 指在進口及托運出口時均是以飛機運載的過境物品；（2000年第29號第5條）

航空轉運貨物 (air transhipment cargo) 具有《進出口條例》(第60章)第2條給予該詞的涵義；（2000年第29號第5條）

售賣 (sell) 包括要約出售、為出售而展示或為出售而管有；

脫脂奶 (skimmed milk) 包括離脂奶及機械脫脂奶； (2011年第173號法律公告)

魚 (fish) 不包括活魚(介貝類水產動物除外)； (1986年第173號法律公告)

煉奶 (condensed milk) 指經稠煉(稠煉方法是將其部分水分蒸發，不論有否加糖)的奶類，並包括

(a) 任何用脫脂奶或部分脫脂奶製造的該等經稠煉奶類；及

(b) 淡奶； (2011年第173號法律公告)

過境物品 (article in transit) 具有《進出口條例》(第60章)第2條給予該詞的涵義； (2000年第29號第5條)

機場貨物轉運區 (cargo transshipment area of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具有《進出口條例》(第60章)第2條給予該詞的涵義。 (2000年第29號第5條)

(1985年第67號法律公告；1987年第331號法律公告；2001年第148號法律公告；2012年第2號編輯修訂紀錄)

條：	3	禁止輸入和出售含有某些濃度過高物質的食物	E.R. 2 of 2012	02/08/2012
----	---	----------------------	----------------	------------

如附表1內D欄所指明的任何食物含有B欄內與其相對之處所指明的物質，或C欄內所指明該物質的描述，而其濃度是超過E欄內與其相對之處所指明的濃度者，則任何人不得輸入、託付、交付、製造或售賣該等食物以供人食用。

(2001年第148號法律公告)

條：	3A	禁止輸入和出售含有違禁物質的魚、肉類或奶類等*	E.R. 2 of 2012	02/08/2012
----	----	-------------------------	----------------	------------

任何人不得輸入、售賣或為供出售而託付或交付含有附表2所指明的物質的任何魚、肉類、奶類、奶粉、煉奶或再造奶，以供人食用。

(2001年第148號法律公告；2001年第230號法律公告；2011年第173號法律公告)

註：

* (由2011年第173號法律公告修訂)

條：	3B	對航空過境或航空轉運貨物的適用	E.R. 2 of 2012	02/08/2012
----	----	-----------------	----------------	------------

(1) 如第3條所述的食物屬航空過境貨物或航空轉運貨物，則該條不適用於該食物的輸入；但如該食物自其被帶進至運出香港的期間內被移離機場貨物轉運區，則為施行該條—

(a) 該食物須當作是在被移離該區時輸入的；及

(b) 將該食物作為航空過境貨物或航空轉運貨物而帶進香港或致使該食物被如此帶進香港的人，須當作在該食物被移離該區時是輸入該食物的人，

而除非是在(a)或(b)段所指的範圍內，第3條須在猶如本款不曾制定的情況下具有效力。

(2) 在檢控某人犯第5條所訂的罪行的法律程序中，如一

(a) 該法律程序關乎輸入第3條所述並屬航空過境貨物或航空轉運貨物的食物；及

(b) 控方需證明該食物自其被帶進至運出香港的期間內被移離機場貨物轉運區，

則該人如證明他已採取所有合理步驟和已盡了合理的努力以避免該食物被如此移離該區，則可以此作為免責辯護。

(3) 在任何法律程序中，凡第(2)款所訂的免責辯護涉及一項指稱，謂該罪行的發生是—

(a) 另一人的作為或過失所致；或

- (b) 倚賴另一人所提供的資料所致，
則被告如沒有法院的許可，不得引用該免責辯護，但如被告於聆訊該法律程序前10天或之前，已向檢控人送達書面通知，提供被告在送達該通知時所知悉的關於—
(i) 該另一人的一切詳情；及
(ii) 該作為、過失或資料的一切詳情，
則屬例外。
- (4) 任何人如擬引用第(2)款所訂的免責辯護，而所據的理由是他倚賴另一人所提供的資料，則除非他證明有鑑於整體情況，尤其是在顧及以下事宜後，倚賴該資料實屬合理，否則不得引用該免責辯護—
(a) 他為核實該資料而已採取的步驟，及為核實該資料而理應已採取的步驟；及
(b) 他是否有任何理由不相信該資料。

(2000年第29號第5條)

條：	4	附表1的修訂	E.R. 2 of 2012	02/08/2012
----	---	--------	----------------	------------

食物環境衛生署署長可藉憲報刊登的公告，修訂附表1內E欄所指明的各種濃度。

(1985年第67號法律公告；1986年第173號法律公告；1990年第85號法律公告；1999年第78號第7條；2001年第148號法律公告)

條：	5	罪行及罰則	E.R. 2 of 2012	02/08/2012
----	---	-------	----------------	------------

任何人違反第3或3A條，即屬犯罪，可處第5級罰款及監禁6個月。

(1986年第173號法律公告；1987年第331號法律公告；1996年第177號法律公告)

條：	6	提出法律程序時可用的名義	E.R. 2 of 2012	02/08/2012
----	---	--------------	----------------	------------

在不損害與檢控刑事罪行有關的其他成文法則的條文，以及在不損害律政司司長關於檢控刑事罪行的權力的原則下，就本規例任何條文所訂罪行而作出的檢控，均可以食物環境衛生署署長的名義提出。

(1997年第362號法律公告；1999年第78號第7條)

附表：	1	指明食物所含某些物質的最高濃度	E.R. 2 of 2012	02/08/2012
-----	---	-----------------	----------------	------------

[第3及4條]

A	B	C	D	E
項	物質	物質之描述	食物類別	最高濃度
1.	黃曲霉毒素	雙呋喃氧雜茶鄰酮屬的化合物，並包括黃曲霉毒素 B ₁ 、B ₂ 、G ₁ 、G ₂ 、M ₁ 、M ₂ 、P ₁ 及黃曲霉毒素醇	任何食物(花生或花生產品除外) 花生或花生產品	每公斤食物含15微克。 每公斤食物含20微克。

2. 羥氨苄青霉素		所有食用動物的肌肉、肝及腎	每公斤食物含50微克。
		奶類	每公斤食物含4微克。
3. 氨苄青霉素		所有食用動物的肌肉、肝及腎	每公斤食物含50微克。
		奶類	每公斤食物含4微克。
4. 杆菌肽		牛、豬及家禽的肌肉、肝及腎	每公斤食物含500微克。
		奶類	每公斤食物含500微克。
5. 苄青霉素		所有食用動物的肌肉、肝及腎	每公斤食物含50微克。
		奶類	每公斤食物含4微克。
6. 卡巴氧	喹喔啉-2-羧酸	豬的肌肉	每公斤食物含5微克。
		豬的肝	每公斤食物含30微克。
7. Ceftriaxone (譯名頭孢噻肟)	Desfuroylceftriaxone	牛及豬的肌肉	每公斤食物含1000微克。
		牛及豬的肝	每公斤食物含2000微克。
		牛及豬的腎	每公斤食物含6000微克。
		奶類	每公斤食物含100微克。
8. 金霉素	藥物母質及其4-差	所有食用動物的肌肉	每公斤食物含100微

	向異構體之和	克。
	所有食用動物的肝	每公斤食物含300微克。
	所有食用動物的腎	每公斤食物含600微克。
	奶類	每公斤食物含100微克。
9. 鄰氯青霉素	所有食用動物的肌肉、肝及腎	每公斤食物含300微克。
	奶類	每公斤食物含30微克。
10. 多粘菌素E	牛、豬及家禽的肌肉及肝	每公斤食物含150微克。
	牛、豬及家禽的腎	每公斤食物含200微克。
	奶類	每公斤食物含50微克。
11. Danofloxacin (譯名丹奴 氟沙星)	牛及家禽的肌肉	每公斤食物含200微克。
	豬的肌肉	每公斤食物含100微克。
	牛及家禽的肝	每公斤食物含400微克。
	豬的肝	每公斤食物含50微克。
	牛及家禽的腎	每公斤食物含400微克。
	豬的腎	每公斤食物含200微克。

12. 雙氯青霉素		所有食用動物的肌肉、肝及腎	每公斤食物含300微克。
		奶類	每公斤食物含30微克。
13. 二氫鏈霉素	二氫鏈霉素及鏈霉素之和	牛、豬及家禽的肌肉和肝	每公斤食物含500微克。
		牛、豬及家禽的腎	每公斤食物含1000微克。
		奶類	每公斤食物含200微克。
14. 二甲硝咪唑		豬及家禽的肌肉、肝及腎	每公斤食物含5微克。
15. 強力霉素		牛、豬及家禽的肌肉	每公斤食物含100微克。
		牛、豬及家禽的肝	每公斤食物含300微克。
		牛、豬及家禽的腎	每公斤食物含600微克。
16. 英氟沙星	英氟沙星及環丙沙星之和	牛、豬及家禽的肌肉	每公斤食物含100微克。
		牛的肝	每公斤食物含300微克。
		豬及家禽的肝	每公斤食物含200微克。
		牛的腎	每公斤食物含200微克。
		豬及家禽的腎	每公斤食物含300微克。
		奶類	每公斤食物含100微克。

17. 芥酸	脂肪酸順(式)13-二十二(碳)烯酸	加有油或脂肪或加有兩者的混合物的任何食物	以重量計食物內全部油及脂肪所含脂肪酸的百分之五。
		任何油或脂肪或兩者的混合物	以重量計其所含脂肪酸的百分之五。
18. 紅霉素		牛、豬及家禽的肌肉、肝及腎	每公斤食物含400微克。
		奶類	每公斤食物含40微克。
19. 氟甲喹		牛、豬及家禽的肌肉及肝	每公斤食物含500微克。
		牛、豬及家禽的腎	每公斤食物含3000微克。
20. 呋喃他酮		豬及家禽的肌肉	每公斤食物含0微克。
21. 呋喃唑酮		牛、豬及家禽的肌肉、肝及腎	每公斤食物含0微克。
22. 慶大霉素		牛、豬及家禽的肌肉	每公斤食物含100微克。
		牛及豬的肝	每公斤食物含2000微克。
		牛及豬的腎	每公斤食物含5000微克。
		家禽的肝及腎	每公斤食物含100微克。
		奶類	每公斤食物含200微克。
23. 伊維菌素	22, 23-二氫阿凡曼菌素	牛的肝	每公斤食物含100微克。

	B1a(H2B1a)	豬的肝	每公斤食物含15微克。
24. 交沙霉素		家禽的肌肉及肝	每公斤食物含200微克。
		家禽的腎	每公斤食物含400微克。
25. 柱晶白霉素		豬及家禽的肌肉、肝及腎	每公斤食物含200微克。
26. 林可霉素		牛、豬及家禽的肌肉	每公斤食物含100微克。
		牛、豬及家禽的肝	每公斤食物含500微克。
		牛、豬及家禽的腎	每公斤食物含1500微克。
		奶類	每公斤食物含150微克。
26A 孔雀石綠	孔雀石綠及無色孔雀石綠之和	任何食物(包括活魚、活的爬蟲及活的家禽)	每公斤食物含0微克。 (2005年第137號法律公告)
26B 三聚氰胺		奶類	每公斤食物含1毫克。
		擬主要供涵蓋36個月以下幼兒的某年齡組別的人食用的任何食物	每公斤食物含1毫克。
		擬主要供懷孕或授乳的女性食用的任何食物	每公斤食物含1毫克。
		任何其他食物	每公斤食物含2.5毫克。

(2008年第215號法律公告)		
27. 甲硝唑	豬及家禽的肌肉、肝及腎	每公斤食物含0微克。
28. 新霉素	牛、豬及家禽的肌肉及肝	每公斤食物含500微克。
	牛、豬及家禽的腎	每公斤食物含10000微克。
	奶類	每公斤食物含500微克。
29. 噁喹酸	牛、豬及家禽的肌肉	每公斤食物含100微克。
	牛、豬及家禽的肝及腎	每公斤食物含150微克。
30. 土霉素	藥物母質及其4-差向異構體之和	所有食用動物的肌肉
		每公斤食物含100微克。
		所有食用動物的肝
		每公斤食物含300微克。
		所有食用動物的腎
		每公斤食物含600微克。
		奶類
31. Sarafloxacin (譯名沙拉氟沙星)	家禽的肌肉	每公斤食物含10微克。
	家禽的肝及腎	每公斤食物含80微克。
32. 大觀霉素	牛、豬及家禽的肌肉	每公斤食物含500微克。
	牛、豬及家禽的肝	每公斤食物含2000微克。

		牛、豬及家禽的腎	每公斤食物含5000微克。
		奶類	每公斤食物含200微克。
33. 鏈霉素	二氫鏈霉素及鏈霉素之和	牛、豬及家禽的肌肉及肝	每公斤食物含500微克。
		牛、豬及家禽的腎	每公斤食物含1000微克。
		奶類	每公斤食物含200微克。
34. 磺胺類藥	所有屬於磺胺類藥物質之和	所有食用動物的肌肉、肝及腎	每公斤食物含100微克。
		奶類	每公斤食物含100微克。
35. 四環素	藥物母質及其4-差向異構體之和	所有食用動物的肌肉	每公斤食物含100微克。
		所有食用動物的肝	每公斤食物含300微克。
		所有食用動物的腎	每公斤食物含600微克。
		奶類	每公斤食物含100微克。
36. 替爾謀寧	可水解為8- α -hydroxymutilin的代謝物之和	豬及家禽的肌肉	每公斤食物含100微克。
		豬的肝	每公斤食物含500微克。
		家禽的肝	每公斤食物含1000微克。
37. 甲氧苄氨嘧啶		牛、豬及家禽的	每公斤食物含50微

	肌肉、肝及腎	克。
	奶類	每公斤食物含50微克。
38. 泰樂菌素	牛、豬及家禽的肌肉、肝及腎	每公斤食物含200微克。
	奶類	每公斤食物含50微克。
39. 維及霉素	豬的肌肉	每公斤食物含100微克。
	豬的肝	每公斤食物含300微克。
	豬的腎	每公斤食物含400微克。
(附表1由2001年第148號法律公告代替)		

附表：	2	違禁物質	E.R. 2 of 2012	02/08/2012
-----	---	------	----------------	------------

[第3A條]

1. 乙二烯雌酚((E,E)-4,4'-(二亞乙基烯)聯苯酚)，並包括其鹽及酯在內。
2. 乙二基已烯雌酚((E)- α β -二乙基反二苯代乙烯-4,4'-二醇)，並包括其鹽及酯在內。
3. 已烷雌酚(介-4,4'-(1,2-二乙基乙烯)聯苯酚)，並包括其鹽及酯在內。
4. 阿伏霉素。(2001年第148號法律公告)
5. 鹽酸克崙特羅。(2001年第148號法律公告)
6. 氯霉素。(2001年第148號法律公告)
7. 沙丁胺醇。(2001年第148號法律公告)

(1986年第173號法律公告)

章：	132V	《食物攙雜(金屬雜質含量)規例》	憲報編號	版本日期
		賦權條文		30/06/1997

(第132章第55(1)條)

[1983年5月27日]

(本為1983年第173號法律公告)

條：	1	引稱		30/06/1997
----	---	----	--	------------

本規例可引稱為《食物攙雜(金屬雜質含量)規例》。

條：	2	釋義	29 of 2000	26/05/2000
----	---	----	------------	------------

在本規例中，除文意另有所指外—

“金屬”(metal) 包括金屬的化合物；

“航空過境貨物”(air transit cargo) 指在進口及托運出口時均是以飛機運載的過境物品；
(2000年第29號第5條)

“航空轉運貨物”(air transhipment cargo) 具有《進出口條例》(第60章)第2條給予該詞的涵義；
(2000年第29號第5條)

“售賣”(sell) 包括要約出售、為出售而展示或為出售而管有。

“過境物品”(article in transit) 具有《進出口條例》(第60章)第2條給予該詞的涵義；
(2000年第29號第5條)

“機場貨物轉運區”(cargo transhipment area of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具有《進出口條例》(第60章)第2條給予該詞的涵義。
(2000年第29號第5條)

(1985年第67號法律公告)

條：	3	含有金屬食物(所含金屬是天然蘊藏且不超過某一限度者除外)的禁止出售等		30/06/1997
----	---	------------------------------------	--	------------

(1) 任何人不得輸入、託付、交付、製造或售賣下述食物以供人食用—

(a) 附表1內B欄所指明的食物類別，而其中含有該附表A欄內與其相對之處所指明的金屬者，除非所含金屬是天然蘊藏於該食物內，且濃度不超過該附表C欄內與其相對之處所指明的濃度；或

(b) 附表2內B欄所指明的食物類別，而其中含有該附表A欄內與其相對之處所指明的金屬，且濃度超過該附表C欄內與其相對之處所指明的濃度者；或

(c) 金屬含量足以危害或損害健康的任何食物。

(2) 為施行第(1)(c)款，在決定某種食物的金屬含量是否足以危害或損害健康時，除顧及該種食物頗有可能對食用的人的健康造成的影響外，亦須顧及以普通分量食用成分組合與該種食物實質上相同的食物後，頗有可能對人體健康造成的累積影響。

條：	3A	對航空過境或航空轉運貨物的適用	29 of 2000	26/05/2000
----	----	-----------------	------------	------------

(1) 如第3條所述的食物屬航空過境貨物或航空轉運貨物，則該條不適用於該食物的輸入；但如該食物自其被帶進至運出香港的期間內被移離機場貨物轉運區，則為施行該條—

(a) 該食物須當作是在被移離該區時輸入的；及

(b) 將該食物作為航空過境貨物或航空轉運貨物而帶進香港或致使該食物被如此帶進香港的人，須當作在該食物被移離該區時是輸入該食物的人，而除非是在(a)或(b)段所指的範圍內，第3條須在猶如本款不曾制定的情況下具有效力。

(2) 在檢控某人犯第5條所訂的罪行的法律程序中，如一

(a) 該法律程序關乎輸入第3條所述並屬航空過境貨物或航空轉運貨物的食物；及

(b) 控方需證明該食物自其被帶進至運出香港的期間內被移離機場貨物轉運區，則該人如證明他已採取所有合理步驟和已盡了合理的努力以避免該食物被如此移離該區，則可以此作為免責辯護。

(3) 在任何法律程序中，凡第(2)款所訂的免責辯護涉及一項指稱，謂該罪行的發生是—

(a) 另一人的作為或過失所致；或

(b) 倚賴另一人所提供的資料所致，

則被告如沒有法院的許可，不得引用該免責辯護，但如被告於聆訊該法律程序前10天或之前，已向檢控人送達書面通知，提供被告在送達該通知時所知悉的關於—

(i) 該另一人的一切詳情；及

(ii) 該作為、過失或資料的一切詳情，

則屬例外。

(4) 任何人如擬引用第(2)款所訂的免責辯護，而所據的理由是他倚賴另一人所提供的資料，則除非他證明有鑑於整體情況，尤其是在顧及以下事宜後，倚賴該資料實屬合理，否則不得引用該免責辯護—

(a) 他為核實該資料而已採取的步驟，及為核實該資料而理應已採取的步驟；及

(b) 他是否有任何理由不相信該資料。

(2000年第29號第5條)

條：	4	附表的修訂	L.N. 320 of 1999	01/01/2000
----	---	-------	------------------	------------

食物環境衛生署署長可藉憲報刊登的公告，修訂附表1及2內C欄所指明的各種濃度。

(1985年第67號法律公告；1990年第85號法律公告；1999年第78號第7條)

條：	5	罪行及罰則		30/06/1997
----	---	-------	--	------------

任何人違反第3條的任何條文，即屬犯罪，可處第5級罰款及監禁6個月。

(1987年第329號法律公告；1996年第177號法律公告)

條：	6	提出法律程序時可用的名義	L.N. 320 of 1999	01/01/2000
----	---	--------------	------------------	------------

在不損害與檢控刑事罪行有關的其他成文法則的條文，以及在不損害律政司司長關於檢控刑事罪行的權力的原則下，就本規例任何條文所訂罪行而作出的檢控，均可以食物環境衛生署署長的名義提出。

(1997年第362號法律公告；1999年第78號第7條)

附表：	1	指明食物所天然蘊藏的某些金屬的最高准許濃度	30/06/1997
-----	---	-----------------------	------------

[第3條]

A 金屬	B 食物類別	C 最高准許濃度 (百萬分率)
砷 (As ₂ O ₃)	固體食物(魚及魚產品)	6
	固體食物(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10

附表：	2	指明食物所蘊藏的某些金屬的最高准許濃度	30/06/1997
-----	---	---------------------	------------

[第3條]

A 金屬	B 食物類別	C 最高准許濃度 (百萬分率)
銻 (Sb)	穀類及蔬菜	1
	魚、蟹肉、蠔、明蝦及小蝦	1
	動物肉類及家禽肉類	1
砷 (As ₂ O ₃)	不屬於以下類別的固體食物— (i) 魚及魚產品；及 (ii) 介貝類水產動物及介貝類水產動物產品	1.4
	所有液體食物	0.14
鎘 (Cd)	穀類及蔬菜	0.1
	魚、蟹肉、蠔、明蝦及小蝦	2
	動物肉類及家禽肉類	0.2
鉻 (Cr)	穀類及蔬菜	1
	魚、蟹肉、蠔、明蝦及小蝦	1
	動物肉類及家禽肉類	1
鉛 (Pb)	所有固體食物	6
	所有液體食物	1
汞 (Hg)	所有固體食物	0.5
	所有液體食物	0.5
錫 (Sn)	所有固體食物	230
	所有液體食物	230

2016 홍콩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보고서 기획 및 작성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정보부
(사)한국식품산업협회 연구기획사업단

발행일 2016

발행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061-931-1114 <http://www.at.or.kr>

자료문의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3

- 본 자료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www.kati.ne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제, 복사는 법에 저촉됩니다.